정책연구 2019_15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방향 연구

정광렬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정책연구 2019-15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방향 연구

정광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책임

정광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정보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서 문

문화정책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고, 부문별 기본계획이 많기 때문에 종합적인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은 중요합니다. 문화기본법은 문화권의 확립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정책 영역의 철학과 가치를 체계화하고,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문화정책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화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처럼, 문화정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도록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화기본법에 근거한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이 2019년에 종료됩니다.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은 성과와 함께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에 수립된 계획이지만, 정부 교체뿐만이 아니라 문화정책 환경은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향후 5년 동안 더 많은 변화를 보일 것입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미래지향적인 전략으로 문화정책의 혁신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예술가 및 문화인력 모두가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 연구는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연구과정에서 비판과 제안을 해 주시고, 어려운 질문으로 구성된 FGI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분들과 연구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를 기초로 후속 연구, 공론화 과정, 실제 문화진흥기본계획 작성 작업 등을 거쳐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발표될 것입니다. 이 연구가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1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 장 **김 대 관**

연구개요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1. 목적, 범위 및 방법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문화기본법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법정 문화진흥 기본계획이며, 제1차 계획(2019~2019)이 2019년에 만료됨에 따라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제2차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기본법에는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범위를 관광 및 체육을 제외한 문화 분야 전반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연구는 한계상 문화콘텐츠 및 문화재를 제외한 문화 분야 영역으로 국한하였다.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전체를 포괄하는 문화비전 2030이 수립되었으므로, 제2차 계획은 문화비전 2030의 가치와 전략과제를 반영하면서도 장기 비전의 특성상 문화비전 2030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였거나, 문화 분야에 특화된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화 분야 부문별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문화정책의 효율성 및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제1차 계획의 성과평가, 제2차 계획 기간 동안의 환경변화를 PEST 분석을 통하여 전망하고, 분야별 연구진의 워크샵,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 대상 FGI 등을 거쳐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외국의 문화 분야 중기계획 사례와 흐름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2. 제2차 계획 수립을 위한 분석

문화 관련 37개 법률 중 27개 법률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중 문화콘텐츠 분야를 제외한 협의의 문화 분야는 13개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수립중이다. 외국에서는 일본이 문화예술기본법에 따라 "문화예술의 다양한 가치를 살려 미래를 만든다"라는 비전으로 문화예술추진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은 법정계획이 없지만, 문화예술 지원기관인 미국의 NEA 전략계획(2014~2018), 영국의 ACE 전략계획(2020~2030)도 분석하여 참고하였다.

외국의 전략계획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모두 문화의 본질적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영향 등을 중점적인 가치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 과학기술변화에 따른 복융합과 혁신, 지역분권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문화청의의 교토 이전 추진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문화생태계 조성, 문화예술교육 강화 및 인력양성, 모든 사람들에게 문화접근 기회 확충과 공유 확산, 공동체 강화,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등 강조하고 있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성과지표와 함께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상을 설정하고 평가하며, 기존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제1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문화가 융성한 부강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5개의 정책목표, 18개의 추진과제, 58개의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과제들은 대부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성과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성과지표는 대부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성과지표를 너무 높게 설정하였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정책목표 기준으로 보면 "문화가 있는 삶", "지역에서 꽃피는 문화" 등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남북의 통로가 되는 문화", "문화진흥 기반구축" 등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1차 계획의 정책과제별로 살펴보면, 문화영향평가의 도입 등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책, 생활문화 정책과 가치의 확산,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정책과 가치 확산, 문화누리카드로 대표되는 문화복지정책의 확산 및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 문화가 있는 삶 등 참여·체감형 문화정책 추진, 인문학 진흥과 가치 확산,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과 문화도시 조성, 한류의 확산, 연구개발 및 문화인력 양성의 강화, 문화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도 기반 도입과 실행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성과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문화향유율 지표가 71.3%(2014)에서 81.5%(2018)로 4년

만에 10.1%가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사태나 미투 운동이 나타내듯이 문화계의 구조적인 문제는 그동안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다. 문화기본법과 문화진흥기본계획이 최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문화권의 신장과 자율성이 미흡한 수준인 것이다. 또한 사회적 갈등과 혐오의 확산은 문화가 가진 특성인 다양성, 공동체성의 가치가 여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 제안

향후 5년간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개인주의화 등으로 인한 문화시장의 변화, 자치분권과 지역 인구의 감소에 따른 기회와 위기요인의 중복, 저성장과 이로 인한 양극화로 문화복지의 수요 증가, 일과 삶의 균형과 문화가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새로운 문화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신한류의 확산에 따른 한국문화 선호와 확산의 기회 활용, 문화시장구조의 혁신과 융합에 따른 혁신적인 문화생태계의 조성, 공유경제와 시공간의 장벽이 없는 초몰입과 문화경험, 공유문화경제, 소비자 중심 문화유통체계 등 새로운 변화가 몰려 올 것이다.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은 PEST 미래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새로운 문화정책 목표와 방향, 문화정책 영역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제시하기 위한 진흥전략, 문화계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현 방안, 미래지향적인 아젠더 제시를 통한 문화정책의 효과성 제고,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추진하였다.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비전은 문화비전 2030과의 연계성을 위하여 문화비전 2030의 비전인 “사람이 있는 문화”로 설정하고, 핵심가치는 문화기본법과 문화비전 2030의 가치인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으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정책목표는 ① 모두가 행복한 삶이 있는 문화, ②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실현, ③ 포용적·참여적 문화복지 확립, ④ 소통과 공동

체 문화의 가치 확산, ⑤ 문화의 미래가치 제고, ⑥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문화진흥기반 구축 등으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하여 21개의 정책과제, 55개의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표 1〉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전략체계도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	
가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정책목표	정책과제
	1. 모두가 행복한 문화가 있는 삶	1.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강화 및 혁신 2. 일과 삶의 균형으로 삶이 있는 문화 조성 3. 문화자본과 문화역량 축적 4.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2.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실현	5. 문화다양성의 보존과 진흥을 통한 문화생태계 조성 6.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문화활동 강화 7. 성평등 문화 실현 8. 공정·상생·협력의 문화시장 조성
	3. 포용적·참여적 문화복지 확립	9. 문화소외계층 참여적 문화복지 확산 10. 100세 시대 고령자의 활력 있는 문화적 삶 조성 11. 문화인력의 지위와 및 권리 보장
	4. 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가치 확산	12. 함께 하는 문화적 활동과 가치 확산 13. 문화를 통한 갈등 해소와 소통 강화 14. 미래와 평화를 위한 남북 문화협력 확대 15. 공감과 지속가능한 국제문화협력 확산
	5. 문화의 미래 가치 제고	16. 문화자원과 시장의 융합역량 강화 17. 지속가능한 젊은 예술인력 활동 기반 조성 18. 혁신적인 문화예술시장의 기반 구축
	6.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문화진흥기반 구축	19. 분권·효율적인 문화거버넌스 체계 구축 20. 지역문화분권 및 지역중심 문화기반 조성 21. 자율·미래·문화권 확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

첫째, 모두가 행복한 삶이 있는 문화는 주 52시간 상한 근무제, 일과 여

가의 균형, 개인주의화 대응과제, 수요자 관점에서의 문화역량 축적과 문화정책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실현은 지방분권, 문화생태계 조성, 문화활동에서 정부의 간섭 배제와 자율성 및 문화권 확립, 성평등 문화, 공정·상생의 문화시장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포용적·참여적 문화복지 확립은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과 연계하여 참여적 문화복지, 고령화 사회 대응, 문화인력의 지위와 권리 보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가치 확산은 문화의 본질적 가치인 공유와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문화정책의 방향을 개인적·정서적 관점에서 사회적·공동체적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다섯째, 문화의 미래가치 제고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문화영역간 융복합, 문화생산과 유통체계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혁신,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전문인력 및 시민들의 육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섯째,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문화진흥기반 구축은 분권과 문화권 확산, 거버넌스 등 새로운 문화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자치분권에 대응한 지역중심 문화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서는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① 문화활동 지원은 혜택의 관점에서 문화적 권리(문화권)으로, ② 문화지원의 방법은 칸막이·분리 지원에서 문화생태계의 선순환구조와 융합 지원으로, ③ 문화정책의 대상은 선별적 접근에서 보편적 접근으로, ④ 문화생활은 일과 여가의 분리에서 일상의 삶 속의 문화(일과 여가의 균형)로, ⑤ 문화의 가치는 도구주의에서 국민행복과 문화자체로, ⑥ 문화예술의 접근은 개인화된 주관적 정서에서 공동체와 리터러시로, ⑦ 정책성과는 문화향유 수준에서 문화참여와 문화적 삶으로, ⑧ 문화행정은 하향식 전달체계에서 거버넌스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문화정책은 다른 문화정책영역과 동일한 차원이 아닌 지역중심의 문화정책 추진과 기본계획의 체계성을 가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4.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방향

문화기본법 및 문화진흥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문화가 중심이 되는 삶과 문화, 행복사회를 위하여 문화권을 확립하고, 문화정책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 전체 차원으로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칸막이화된 분야별 문화정책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진흥기본계획은 각 부분별 계획의 단순한 종합계획이 아니라 문화정책의 가치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효과적인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문별 정책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화진흥기본계획과 부문별 계획 간의 정합성이 미흡하므로, 제도적으로 체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전략가치 및 계획 기간의 체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과제 제시도 중요하지만,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프로세스의 혁신 등 사업 중심이 아닌 전략중심으로 문화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적절한 성과지표의 설정과 주기적이고 실질적인 성과평가와 환류의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가적인 공론화 및 수정작업, 세부 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할 것이다.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방향 연구로서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범위와 내용 등은 이 연구와 연계한 후속과제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할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은 핵심적인 내용으로 요약되어 발표된다. 이 연구의 내용과 향후 발표될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이 다를 수 있지만,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기본적인 배경, 분석, 전략과 목표, 방향과 과제, 추진전략 등을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1. 연구배경 ····· 3
2. 연구목적 ····· 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7
1. 연구범위 ····· 7
2. 연구방법 ····· 9

제2장 문화진흥기본계획 개요 및 제1차 계획 성과분석

제1절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배경 및 개요 ····· 15
1.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배경 ····· 15
2. 문화진흥기본계획 개요 ····· 17

제2절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성과 분석 ····· 20
1.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주요 내용 ····· 20
2.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성과분석 총괄 ····· 26
3. 추진과제별 성과와 추진실적 ····· 33

제3절 문화정책 중기계획 외국사례 분석 ····· 63
1. 일본의 문화예술 추진 기본계획 ····· 63
2. 미국 : NEA Strategic Plan FY 2018~2022 ····· 72
3. 영국 : ACE 전략계획(2020~2030) ····· 75
4. 프랑스 문화부 및 중장기계획 ····· 81

제3장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환경변화 및 수요 분석

제1절 계획 기간 정치·경제·사회 환경 변화 분석 ····· 95
1. 사회문화 환경변화 분석 ····· 95
2. 정치·행정 환경변화 분석 ····· 106
3. 과학기술 환경변화 분석 ····· 114
4. 경제 환경 변화 분석 ····· 116

제2절 계획 기간 문화정책 환경변화 분석 ····· 121

1.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 및 실현 ····· 121
2. 문화예술교육의 창조성 및 다양성 강화 ····· 141
3.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의 활성화 ····· 150
4. 국제문화교류의 체계화·다양화·활성화 ····· 162

제3절 정부의 상위 계획 및 문화 분야 중장기 계획 체계 분석 ·· 167

1. 정부의 상위 계획(포용국가 비전) ····· 167
2. 문화비전 2030 분석 ····· 168
3. 문화 분야 영역별 중기계획 체계 분석 ····· 181

제4절 전문가 FGI 조사결과 분석 ····· 192

1. 전문가 FGI 조사개요 ····· 192
2. 전문가 FGI 조사결과 ····· 193

제4장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전략체계

제1절 종합분석 및 제2차 계획 반영방향 ····· 209

1. 계획기간 국내외 사례 및 조사결과 종합분석 ····· 209
2. 계획기간 환경변화 종합 분석 및 계획수립 반영방향 ····· 214
3.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방향 ····· 218

제2절 기본계획의 전략체계 ····· 221

1.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위상 ····· 221
2.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체계 ····· 224
3.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정책과제 개요 ····· 235

제5장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

제1절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와 방향 ····· 243

1. (정책목표 1) 모두가 행복한 문화가 있는 삶 ····· 243
2. (정책목표 2)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실현 ····· 245
3. (정책목표 3) 포용적·참여적 문화복지 확립 ····· 246
4. (정책목표 4) 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가치 확산 ····· 248
5. (정책목표 5) 문화의 미래가치 제고 ····· 250
6. (정책목표 6)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문화진흥기반 구축 ·· 252

제2절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추진전략 ····· 254
1. 기본계획의 추진체계 ····· 254
2.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 258

제6장 결론 및 제안

결론 및 제안 ····· 265

참고문헌 ····· 270

ABSTRACT ····· 275

부 록

부록 1.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FGI 질문지 ····· 281

부록 2. 문화 분야 영역별 기본계획 개요 ····· 287

표 목차

〈표 2-1〉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전략체계 ····· 21
〈표 2-2〉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과제 ····· 23
〈표 2-3〉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달성목표 ····· 26
〈표 2-4〉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총괄 성과지표 달성현황 ····· 28
〈표 2-5〉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정책목표별 주요성과와 한계 ····· 34
〈표 2-6〉 정책목표 1. 문화가 있는 삶 추진실적 ····· 36
〈표 2-7〉 정책목표 2. 지역에서 꽃피는 문화 추진실적 ····· 47
〈표 2-8〉 정책목표 3.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 추진실적 ····· 51
〈표 2-9〉 정책목표 4. 남북의 통로가 되는 문화 추진실적 ····· 55
〈표 2-10〉 정책목표 5. 문화진흥 기반 구축 추진실적 ····· 57
〈표 2-11〉 일본 문화예술추진기본계획 전략체계 ····· 66
〈표 2-12〉 일본 문화예술추진기본계획의 방향 및 미래상 ····· 67
〈표 2-13〉 일본 문화예술추진기본계획 성과지표 ····· 67
〈표 2-14〉 일본 문화청의 새로운 조직도 ····· 71
〈표 3-1〉 문화이용권 분야별 이용건수 추이 ····· 102
〈표 3-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사업 ····· 107
〈표 3-3〉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추이(2000년~2019년) ····· 113
〈표 3-4〉 문화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2018~2022) ····· 113
〈표 3-5〉 OECD 국가별 BLI 지수와 GDP(2017년 기준) ····· 118
〈표 3-6〉 가구 문화여가비 지출 비중 ····· 120
〈표 3-7〉 문화비전 2030 전략체계 ····· 170
〈표 3-8〉 문화비전 2030 추진과제 ····· 170
〈표 3-9〉 문화 분야 영역별 문화비전 2030 과제 ····· 177
〈표 3-10〉 문화정책 영역별 중기계획 근거 및 현황 비교 ····· 182
〈표 3-11〉 문화예술 분야 부문별 주요 중기계획 현황 ····· 185
〈표 3-12〉 전문가 FGI 개요 ····· 193
〈표 4-1〉 부문별 기본계획과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연계 ····· 213
〈표 4-2〉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PEST 분석 요인 ····· 215
〈표 4-3〉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PEST 분석 반영방향 ····· 216

〈표 4-4〉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전략체계도 ····· 229
〈표 4-5〉 제2차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별 환경분석 연계성 ····· 232
〈표 4-6〉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233
〈표 4-7〉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세부과제 ····· 238
〈표 5-1〉 모두가 행복한 문화가 있는 삶 과제 개요 ····· 244
〈표 5-2〉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실현 과제 개요 ····· 246
〈표 5-3〉 포용적·참여적 문화복지 확립 과제 개요 ····· 248
〈표 5-4〉 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가치 확산 과제 개요 ····· 250
〈표 5-5〉 문화의 미래가치 제고 과제 개요 ····· 251
〈표 5-6〉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문화진흥기반 구축 과제 개요 ····· 253

그림 목차

[그림 2-1] NEA Strategic Plan FY 2018~2022 전략체계 ····· 74
[그림 2-2] ACE 전략계획(2020~2030)의 7가지 성과목표 ····· 78
[그림 2-3] 프랑스 문화부 조직도 ····· 82
[그림 3-1] 고령층 인구추계 ····· 97
[그림 3-2] 1인 가구 변화 추이 : 2000-2017년 ····· 99
[그림 3-3] 세대별 인구 및 소비력 추정 ····· 101
[그림 3-4] 가구 품목별 소비증감률(2012~2017년) ····· 117
[그림 3-5] GDP와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2017년 기준) ····· 119
[그림 3-6] 문화다양성 협약에 따른 개념구조 ····· 123
[그림 3-7] 문화다양성 협약의 개념구조와 문화비전 2030 다양성 의제의 관계도 ····· 126
[그림 3-8] 생활문화 정책수립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 ····· 156
[그림 3-9] 공공과 민간의 교류대상국 현황 ····· 163
[그림 3-10] 공공과 민간의 교류영역 현황 ····· 164
[그림 3-11] 공공과 민간의 교류분야 현황 ····· 164
[그림 3-12] 공공과 민간의 교류방식 현황 ····· 165
[그림 3-13]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 ····· 168
[그림 4-1] PEST 분석을 통한 제2차 기본계획 반영방향 요약 ····· 216
[그림 4-2] 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 체계도 ····· 224
[그림 4-3] 문화비전 2030과 문화진흥기본계획 과제의 연계도 ····· 230
[그림 4-4] 포용국가 비전과 제2차 기본계획의 연계도 ····· 23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문화기본법에 의한 법정계획의 수립 준비

문화진흥기본계획은 문화기본법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법정 문화진흥계획이며, 제1차 계획(2015～2019)이 2019년에 만료됨에 따라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하여야 한다.

문화진흥기본계획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인 2019년에 수립하여야 하므로,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 정립 등이 필요하다.

□ 문화비전 2030의 추진을 위한 문화 분야 법정계획 도출

2018년에 수립된 문화비전 2030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영역을 대상으로 한 장기비전이며, 문화진흥기본계획은 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한 중기 기본계획이다, 문화진흥기본계획은 문화비전 2030을 바탕으로 비전 실현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중기 전략계획과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문화비전 2030은 중장기 비전으로서 구체적인 과제 보다는 비전에 초점을 두고 있고, 비전의 특성상 문화진흥기본계획이 포괄하여야 하는 문화정책 전반의 세부 영역을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제3장에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영역을 다루고 있는 문화비전 2030의 가치와 전략과제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비전의 특성상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거나 소홀히 다룬

문화정책과제와 방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비전 2030은 비법정계획으로서 실행가능성에 제약이 있지만, 문화진흥기본계획은 국가차원의 법정계획으로서 실행가능성에 더 가치를 두게 된다.

또한 문화비전 2030 이외에 포용국가 비전 등 문화정책과 관련된 중장기 비전 및 계획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부의 상위계획과의 문화정책의 연계성 및 관련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근거한 제2차 계획 방향 설정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은 최초의 상위 문화정책 법정계획으로서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인 강화와 한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2차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제1차 계획은 비전 및 정책목표-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도출하였지만, 계획 수립의 관점에 일부 한계가 있다. 즉, 전반적으로 기존 정책을 중심으로 확장하는 관점(AS IS)에서 수립하고, 각 과제별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전략 및 구체적인 정책목표 등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반면에 문화비전 2030은 비전으로서 새로운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과제 및 목표의 체계성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와 장점을 보완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1차 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추진하였으나, 실제 발표된 계획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연구 완료 후 계획 수립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으므로, 제2차 계획 수립에서는 방향 연구와 기본계획 수립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참고로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 공론화 및 세부과제 발굴 등의 연구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가 작업을 걸쳐 발표할 계획이다.

□ 영역별 중단기 계획과의 연계를 문화정책의 효율성 제고

문화관련 법률 35개 중 6개를 제외한 29개 법률에서 영역별 중단기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정광렬, 2018b). 그 이후 변화에 따라 현재는 37개 법률 중 27개 법률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새 예술정

책,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문학진흥 기본계획,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 등 영역별 중단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발표되고 있으며,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도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진흥기본계획은 영역별 기본계획(발전계획)의 상위 기본계획으로서 다양한 세부 영역별 기본계획의 정합성과 지침 제시를 통한 문화정책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이것이 문화기본법의 제정 및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의 목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획 수립 방향 설정과 함께 문화기본법 및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의 취지를 제고하기 위한 영역별 계획의 체계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가. 연구목적

이 연구는 문화기본법에 의한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을 연구하여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문화비전 2030 등 정부의 새로운 문화정책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문화기본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문화정책 목표와 방향 설정, 문화권의 신장 및 세부 영역별 문화정책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문화정책의 효과성 및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나. 연구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5년간 국가 차원의 문화정책의 목표와 방향, 문화의 본질적 가치 실현을 위한 패러다임과 전략을 제시하여 문화가 중심이 되는 사회, 행복사회에 실현에 기여한다.

둘째, 문화진흥을 위한 전략과 방향, 미래지향적인 전략 제시와 함께 문화가 당면한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전략을 제안하여 문화정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둘째, 상위 문화진흥기본계획으로서 각 부문별 계획과의 정합성 및 체계성 확보로 문화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넷째, 문화비전 2030에 기초한 정책과제 및 목표, 방향 등의 제시로 문화비전 2030의 실현에 기여한다.

다섯째, 직접적인 기대효과로 2019년도 내에 수립되어야 하는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기본자료로 활용하여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원활한 수립에 기여한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가. 시간적 범위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기간은 2020~2024년까지의 5년이다. 본 연구는 이 기간 동안의 환경변화와 계획을 연구한다. 5개년간의 계획수립 방향 연구를 위하여 계획 기간 전후, 예를 들어 제1차 계획에 대한 분석을 추진하며, 각종 성과분석과 통계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2018년으로 한다.

나. 대상적 범위

□ **대상적 범위 : 문화정책 전반**

문화기본법에 규정된 문화진흥기본계획은 문화전반을 다루고 있지만,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는 연구기간, 연구규모, 연구의 성격 등 한계상 법률에 규정된 영역과는 달리 축소하여 다룬다. 즉, 문화예술, 문화여가 및 생활문화, 문화복지, 지역문화,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문화자원, 문화경관, 국제문화교류 및 남북 문화교류, 문화다양성, 문화권, 문화생태계 등을 다룬다.

문화기본법에 규정된 영역 중 문화산업 및 문화재는 다루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당 분야 중기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한류 및 전통문화·문화유산은 부분적으로 다룬다.

또한 문화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문별 계획 작성 지침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책과제의 한계를 고려하여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아닌 목표 및 방향설정에 초점을 두도록 하며, 연차별 계획 및 재원투자계획은 다루지 않는다.

다. 내용적 범위

이 연구는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었다. 첫째,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의 성과 분석 및 제2차 계획 반영방향을 다루었다.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성과를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체계 및 추진체계를 분석하였다. 제1차 계획의 성과분석은 사업이 너무 많으므로 총괄적인 성과 및 전략과제 중심으로 다루었다. 법령에 따른 문화진흥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성과도 살펴보았다. 둘째, 계획 기간 정책환경 및 문화정책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제2차 계획 기간 중 문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 미래전망 등 전반적인 환경분석을 실시하였고, 제2차 계획 기간 중 문화정책 트렌드를 분석하고, 문화 관련 수요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셋째, 계획 기간 정부의 정책 및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였다.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 등 정부의 정책변화 및 중장기계획 등이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살펴보았다. 문화 분야는 법률에 영역별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영역별 중기계획을 체계화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주요한 국가의 중기 문화정책을 살펴보았다. 넷째, 문화비전 2030의 추진과제별 추진전략을 분석하고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지를 다루었다. 문화비전 2030의 추진과제 및 방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화비전 2030의 추진과제의 우선순위, 장단기 정책과제를 분류하며, 문화정책 영역과 문화비전 2030을 비교 분석하였다. 다섯째,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전략체계 및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비전 및 전략과제, 정책목표별 추진과제를 개발하였다. 여섯째,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추진과제의 추진방향을 다루었다. 과제별 추진방향 및 주요 목표를 제시하였다. 다만, 방향 연구이므로 전반적으로 방향 중심으로 다루고, 주요과제에 한하여 상대적으로 세부적으로 접근하였다.

일곱째,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추진전략을 다루었다.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환류 및 성과 점검 체계를 제안하고, 세부 영역별 계획 및 정책의 연계체계 등을 다루었다.

2. 연구방법

가. 연구수행방법

이 연구는 문헌조사,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과 자문회의, 연구진 회의·워크샵 및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첫째, 문헌조사는 문화비전 2030과 포용국가 비전 등 정부의 상위 계획, 부문별 문화정책 중기계획(종합계획),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정책 및 성과, 선행연구 및 정책 환경 관련 자료·통계 등 폭 넓은 문헌을 조사하였다. 성과분석을 위해서는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연차계획, 문화체육관광부의 성과관리계획 등을 조사하여 기본계획이 주요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시행되는지 파악하였다.

둘째 외국의 문화 분야 중기계획 사례를 조사하였다. 미국의 국립예술기금(NEA)의 중기계획, 영국 예술위원회(ACE)의 중장기 계획, 일본 문화청의 중기계획, 프랑스 문화부의 중기계획 등을 조사하였다. 중기계획의 추진과 관련하여 일본 문화청의 교토 이전계획, 프랑스 문화통신부의 조직 체계 등도 조사하였다. 사례조사는 연구진에서 담당하되, 일본 사례 등 언어적 접근이 제한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하였다. 즉, 일본 사례는 송은옥, 프랑스 사례는 손동기에게[1] 의뢰하여 조사한 것을 재구성하였다.

셋째, 전문가 자문을 통한 의견을 반영하였다. 5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하였고, 전문가 FGI를 통하여 제2차 계획의 전략 우선순위 도출에 참고하였다. 전문가 FGI는 설계 및 최종분석은 연구팀에서 담당하고, 조사는 외부업체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여 추진하였다. 조사대상은 문화

1) 송은옥(한국문화원연합회 차장), 손동기(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초빙연구원)

비전 2030 계획 참여자를 포함하여 문화 분야 전문가 40명을 조사하고, 제1차 계획 성과평가, 정책과제 우선순위, 중점방향 및 목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진 워크샵과 함께 수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전체 연구진 워크샵은 총 6회 실시하고, 내부 연구진은 별도로 수시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연구는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연구이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가적인 공론화 및 작업을 거쳐 문화진흥기본계획을 작성하게 되므로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고 중요하다.

나. 연구방향

2018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전체의 장기비전으로 문화비전 2030이 발표되었으므로, 본 연구는 문화비전 2030의 전략체계 및 과제를 토대로 중단기적으로 실현하여야 하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추진방향에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부분의 중기계획은 별도의 계획수립 연구를 통하여 계획수립이 이루어지지만,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은 본 연구 이외에 별도로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략과제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문화비전 2030 수립시 미래전망 및 환경분석은 주로 문화 분야 내부 사항을 위주로 다루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문화진흥기본계획에 영향을 주는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국가차원의 법정 기본계획으로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문화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문화정책 목표와 방향 제시,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전략계획으로서 미래지향적 계획과 함께 현재의 당면하고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도 균형 있게 고려하였다.

문화 분야의 법정 상위계획으로서 영역별 계획과의 연계성 및 체계를 강화하

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문화비전 2030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민간 주도로 오랫동안 과정을 거쳐 수립된 계획이지만, 법정계획이 아닌 한계가 있으므로 실행을 위한 전략과제 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문화비전 2030은 장기비전이므로 법정계획인 문화진흥기본계획이 포괄하여야 할 영역과 계획이 전략적·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 법률에 따라 수립기간이 각기 다른 영역별 계획 간의 체계와 과제, 연계성 및 한계 등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상위 법정계획으로서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체계성 강화를 위한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문화기본법의 취지에서는 각 부문별 기본계획 및 정책의 체계성을 위한 기본지침으로서 수립하여야 하지만, 이미 각 부문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부문별 계획과의 연계성 및 체계성 확보가 중요하다. 즉, 자칫 기존 부문별 계획의 종합적인 취합 계획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기존 계획과의 체계성이 확보되도록 접근하였다.

문화진흥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지만, 계획 기간 중 정부가 교체되면 새 정부에서 다시 새로운 전략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법정계획으로서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상 과제별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다루지 않지만,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전략체계 및 정책과제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

문화진흥기본계획 개요 및 제1차 계획 성과분석

제1절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배경 및 개요

1.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배경

가. 사회문화적 배경

문화진흥기본계획은 2014년 3월 제정 및 시행된 「문화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은 2015년에 발표되었다. 당시 한국사회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를 예상하고('14년 기준 28,180달러), 국가의 경제적 위상과 국민소득이 높아진 반면에 행복 지표는 주요국가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 실정이었다. 한편 주요국가에서는 소득의 증가에 따른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삶의 질 향상, 사회갈등 심화와 사회통합 등을 위한 문화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었다. 유럽연합에서는 역사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증진 및 유럽연합 수준에서 시민의 민주주의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Europe for Citizens(2014-2020)'수립,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진흥 프로그램 '에라스무스+'가 시행되었다. 또한 영국에서는 2010년 문화예술위원회가 향후 문화향유 체험 확대를 위한 'Achieving Great Art For Everyone (2010-19)', '문화예술교육계획 2013-2015'이 수립·추진되었다.

더불어 인문학에 대한 관심 증대, 고령화로 인한 노년층의 여가활동 및 문화예술 활동 수요 증대, 1인 가구 비중 증가 및 다문화 사회의 진전 등은 다양한 문화수요층의 확대로 이어졌으며, 이에 적극적인 문화정책이 요구되었다. 또한 세계경제의 흐름이 산업경제, 지식경제에서 창조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창조산업의 기반으로 문화의 가치를 주목하고, 국제 및 남북관계에서도 문화의

소프트파워 역할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와 필요성의 인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정과제로 설정된 2014년「문화기본법」시행을 근거로 문화권을 국민의 기본 권리로 법률로 보장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 새로운 문화정책 방향을 중장기 전략으로 추진하고자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정책적 배경

문화 분야는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거 법률이 다양하며 지향가치와 체계가 달라 정책의 체계성에 한계가 있었다. 문화 분야의 영역 분리주의는 문화정책에도 투영되어 문화정책의 효과적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당시 사회의 복융합화는 문화정책의 규범적 지향가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문화정책의 추진, 지속가능한 문화정책의 기반 조성 등이 요구되었다. 문화기본법은 이러한 문화정책과 근거법률의 체계성 강화를 위한 목적이 중요한 배경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문화기본법 제정 배경과 연계하여 법정계획으로서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통하여 문화정책의 지속성 제고, 체계적·효과적 정책 수립과 추진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문화정책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계 내에 국한하고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문화가 중심이 되는 사회 실현을 가치보다는 미시적인 가치로 축소되게 하였다. 문화가 중심이 되는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문화권 확립이 최우선적인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문화진흥기본계획은 국가차원의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과 문화권 신장을 위한 계획 수립을 강조하였으며, 이것은 다른 부문별 기본계획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2. 문화진흥기본계획 개요

가. 문화진흥기본계획의 법적 근거

문화진흥기본계획의 근거법인 「문화기본법」은 국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법 제8조는 문화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문화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2015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발표하였다.

> 문화기본법
>
>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진흥기본계획에는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관련 문화정책(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국어의 발전과 보전, 문화예술의 진흥, 문화산업의 진흥,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문화복지의 증진, 여가문화의 활성화,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국제 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지역문화의 활성화,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문화·여가 시설 등의 조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문화정책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문화기본법
>
> 제8조(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9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문화정책
   1.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2. 국어의 발전과 보전, 3. 문화예술의 진흥, 4. 문화산업의 진흥, 5.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6. 문화복지의 증진, 7. 여가문화의 활성화, 8.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9. 국제 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10. 지역문화의 활성화, 11.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5.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7. 문화·여가 시설 등의 조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8.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정책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문화기본법 시행령에는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활용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을 종합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나.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과정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2건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먼저 2013년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박영정, 2013)에서는 추진체계 및 과정 등의 연구(정책과제)로서 내용적인 연구는 다루지 않았다. 다음으로 2014년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14)는 실제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제)이지만, 최종 발표된 계획과는 정책범주, 전략체계, 정책과제 등에서 차이가 있다. 기본계획 수립 연구가 최종 발표된 계획과 차이가 있는 것은 많은 연구자들이 세부 영역별로 과제를 작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전체적인 전략체계 및 방향 등을 도출하고 기본계획의 체계성을 제시하는데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은 문화기본법의 규정과는 달리 문화산업 및 전통문화를 제외하고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국한하여 수립되었다.

제2절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성과 분석

1.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주요 내용

가. 비전과 정책 목표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은 문화정책의 환경 변화와 대응하여 한국 문화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비전과 5개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18개의 추진과제, 58개의 실천과제와 2019년까지 주요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문화가 융성한 부강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① 문화가 있는 삶, ② 지역에서 꽃피는 문화, ③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 ④ 남북의 통로가 되는 문화, ⑤ 문화진흥 기반구축 등 5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2-1〉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전략체계

비전	문화가 융성한 부강한 대한민국	
정책목표	정책목표	추진과제(18개 추진과제, 58개 세부추진과제)
	문화가 있는 삶	1. 인문정신문화의 진흥(3) 2.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8) 3. 대상별 맞춤형 문화참여 기회 확대(7) 4. 문화 소외계층 대상 문화복지 강화(4) 5 참여·체감형 문화향유 환경 조성(3)
	지역에서 꽃피는 문화	6.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4) 7. 지역문화 가치 발굴 및 브랜드 정립(4) 8.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확대(2)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	9. 문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2) 10. 호혜적 국제 문화교류 강화(2) 11. 지속가능한 신한류 창출(2)
	남북의 통로가 되는 문화	12. 남북 문화교류협력 추진체계 구축(2) 13.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 지원(2)
	문화진흥 기반구축	14. 문화재정 확충 및 재정운용 효율화(2) 15. 문화예술계 비정상의 정상화(2) 16. 문화예술 창작기반 구축(3) 17. 문화인력 육성 및 연구강화(4) 18. 문화시설 운영 효율화 및 확충(2)

나. 정책과제별 주요 내용

첫 번째 정책목표인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한 추진과제로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 대상별 맞춤형 문화참여 기회 확대,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복지 강화, 참여·체감형 문화향유 환경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성숙한 시민성 함양을 위한 인문정신문화 향유 환경 조성, 인문정신문화와 콘텐츠 융·복합 확대로 향유저변 확대, 인문정신 소통을 통한 갈등해소 프로그램 확대 등을 계획하였다. 또한 공공디자인 진흥을 통한 문화

적 국토 조성, 문화를 통한 지역의 재생 및 발전 지원, 치유·휴양 등 산림복지 확산 및 녹색공간 확충, 인문·예술교육을 통한 전인적 창의인재 양성, 소외계층 등 문화 사각지대 해소, 군대 내 문화예술 체험 및 참여를 위한 환경조성, 농촌 문화자원 활용 기반마련 및 문화향유 기회확대, 문화영향평가 추진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창의력·감수성 증진을 위한 기반 강화, 학교 및 사회에서의 문화예술교육·참여기회 확대, 맞춤형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노인 친화적 문화여가환경 조성, 직장인 대상 문화 활동 참여 기회 확산, 가족단위 문화 활동 활성화로 유대와 결속 강화 등도 계획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서비스 확대, 장애인 대상 문턱 없는 문화향유 환경 조성, 다문화 등 다양한 소수문화 계층을 위한 문화적 소통 강화,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 국민의 문화활동 참여를 위한 기반 조성, 체험·체감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강화,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및 국민 인식 제고 등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정책목표인 '지역에서 꽃피는 문화'를 위한 추진과제로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지역문화가치 발굴 및 브랜드 정립,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통문화자원의 창조적 계승과 확산, 지역 전통 문화상품 발굴·기획·제작 인프라 조성, 지역 문화자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를 위한 지원 강화, 현대화·대중화를 통한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계획하였다. 또한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지역문화브랜드 구축 및 확산 지원, 문화도시의 지정 및 육성 강화, 문화지구 제도의 운영제도 개선, 근·현대 역사문화공간 및 유휴 공간의 창조적 재생. 지역 문화유산의 활용 활성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세 번째 정책목표인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를 위한 추진과제로 문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호혜적 국제문화교류 강화, 지속가능한 신한류 창출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가상징' 정립 및 확산, 해외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전략적 기반 확충 및 운영 내실화, 호혜적 발전을 위한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한류

콘텐츠와 타산업의 융합 강화 및 디지털 한류 조성, 예술분야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목표하고 있다.

네 번째 정책목표인 '남북의 통로가 되는 문화'를 위한 추진과제로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체계 구축,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남북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전담기구 및 문화협정 체결,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 및 교육 확대, 문화유산 공동 발굴·보존 및 교류, 문화예술·체육 등 분야별 남북 문화교류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

다섯 번째 정책목표인 '문화진흥 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로 문화재정 확충 및 재정운용 효율화, 문화예술계 비정상의 정상화, 문화예술창작기반구축, 문화인력 육성 및 연구강화, 문화시설 운영 효율화 및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문화재정 확충, 효율적 운용기반 마련, 문화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 예술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작지원제도 개선, 예술인 사회안전망 확대, 문화예술후원 사회적 인식 확산 및 제도 개선, 예술 유통 활성화 및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문화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체계 구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반 마련, 문화 분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기능 강화, 문화예술교육 자원 정보망 구축, 효율적 문화시설 설치 및 기능 조정 체계마련,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표 2-2〉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과제

정책목표	추진과제	실천과제
문화가 있는 삶	인문정신문화의 진흥(3)	성숙한 시민성 함양을 위한 인문정신문화 향유환경 조성
		인문정신문화와 콘텐츠 융복합 확대로 향유 저변확대
		인문적 소통을 통한 갈등해소 프로그램 확대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8)	공공디자인 진흥을 통한 문화적 국토 조성
		문화를 통한 지역의 재생 및 발전 지원
		치유·휴양 등 산림복지 확산 및 녹색공간 확충
		인문예술교육을 토한 전인적 창의인재 양성

정책목표	추진과제	실천과제
		소외계층 등 문화 사각지대 해소
		군대내 문화예술체험 및 참여를 위한 환경 조성
		농촌 문화자원 활용 기반마련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영향평가 추진체계 구축
	대상별 맞춤형 문화참여기회 확대(7)	창의력·감수성 증진을 위한 기반 강화
		학교 및 사회에서의 문화예술교육·참여기회 확대
		맞춤형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노인 친화적 문화여가환경 조성
		직장인 대상 문화활동 참여기회 확산
		가족단위 문화활동 활성화로 유대와 결속 강화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복지 강화(4)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서비스 확대
		장애인 대상 문턱 없는 문화향유 환경 조성
		다문화 등 다양한 소수문화 계층을 위한 문화적 소통 강화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
	참여·체감형 문화향유 환경조성(3)	국민의 문화활동 참여를 위한 기반 조성
		체험·체감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강화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및 국민인식 제고
지역에서 꽃피는 문화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4)	전통문화자원의 창조적 계승과 확산
		지역전통 문화상품 발굴·기획·제작 인프라 조성
		지역문화자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를 위한 지원 강화
		현대화·대중화를 통한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 확보
	지역문화 가치발굴 및 브랜드 정립(4)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지역문화브랜드 구축 및 확산 지원
		문화도시의 지정 및 육성 강화
		문화지구 제도의 운영제도 개선 및 활성화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확대(2)	근·현대 역사문화공간 및 유휴공간의 창조적 재생

정책목표	추진과제	실천과제
		지역문화유산의 활용 활성화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	문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2)	대한민국 대표 국가상징 정립 및 확산
		해외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전략적 기반확충 및 운영내실화
	호혜적 국제문화교류 강화(2)	호혜적 발전을 위한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문화 분야 공정개발원조 전략적 확대
	지속가능한 신한류 창출(2)	한류 콘텐츠와 타산업의 융합 강화 및 디지털 한류 조성
		예술분야 국제적 인지도 제고 추진
남북의 통로가 되는 문화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체계 구축(2)	남북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전담기구 및 문화협정 체결 추진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 및 교육 확대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지원(2)	문화유산·언어 등 공동 발굴·보존 및 교류
		문화예술·체육 등 분야별 남북 문화교류 추진
문화진흥 기반구축	문화재정 확충 및 재정운용 효율화(2)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문화재정 2% 달성
		효과적인 재정사업 운용체계 마련
	문화예술계 비정상의 정상화(2)	문화예술계 공정거래 환경조성
		예술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작지원제도 개선
	문화예술 창작기반 구축(3)	예술인 사회안전망 확대
		문화예술후원 사회적 인식확산 및 제도 개선
		예술유통활성화 및 제도 개선
	문화인력 육성 및 연구강화(4)	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반 마련
		문화 분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기능 강화
		문화예술교육 자원정보망 구축
	문화시설 운영 효율화 및 확충(2)	효율적 문화시설 설치 및 기능조정 체계 마련
		세종시내 다양한 주제의 국립박물관 조성
합계	5개 정책목표 18개 추진과제 58개 실천과제	

다. 달성목표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양적 성과지표는 달성목표로 설정되어 있는데, 다음의 〈표 2-3〉과 같다. 전체적으로 문화향유와 국제교류 등 2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7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 2-3〉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달성목표

구 분		2014년	2019년
문화향유	문화예술교육참여자수	267만명	380만명
	생활문화 참여율	5%	10%
	문화기반시설수	2,515개	3,375개
	문화예술관람율	71.3%	80%
	문화복지수혜자수(누리카드)	144만명	200만명
국제교류	한국문화원수	28개소	34개소
	세종학당수	130개소	180개소

각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목표는 과제에 따라 제시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2.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성과분석 총괄

가.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성과분석 개요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은 문화기본법 규정과는 달리 문화콘텐츠 분야가 누락되고 문화예술 분야만 발표되었다.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은 5개의 정책목표, 18개의 추진과제, 58개의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총괄적인 성과지표가 제시되어 있지만, 성과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규모 및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과제의 추진방향 위주로 제시되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성과분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가 초점이 아니므로 실천과제가 아닌 추진과제 단위에서 성과를 분석하고 반영하였다. 이행실적 조사를 위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계획의 추진현황을 검토하였고, 각 부처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2019년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재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우수 및 미흡한 과제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 FGI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나. 핵심지표의 달성도 분석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생활문화 참여율, 문화기반시설수, 문화예술 관람률, 문화복지수혜자 수(누리카드), 한국문화원 수, 세종학당수 등 7개 지표의 2019년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앞의 5개는 문화향유 영역의 지표, 뒤의 2개는 국제문화교류 지표이다. 5개의 정책목표 중에서 문화가 있는 삶의 목표와 국제문화교류의 목표에 해당하는 성과지표는 있지만, 지역문화, 남북문화교류, 기반조성의 목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국제문화교류의 경우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라는 정책목표, 호혜적 국제문화교류의 추진과제 등의 방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부 차원의 한국문화원수 및 세종학당수 등만이 성과지표로 제시되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제1차 계획의 성과지표가 문화진흥기본계획의 목표 및 전략을 측정하기에는 적절성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18년 기준 현황으로 달성목표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7개 목표지표 중 문화예술관람율은 2018년 현재시점에서 이미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고, 세종학당수는 19년 목표치 180개 대비 18년 현재 172개소로 목표달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문화복지수혜자 수, 문화기반시설수, 한국문화원 수는 현재의 재정투입 상황과 추진속도를 고려할 때 2019년 목표달성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생활문화 참여율은 “생활문화 참여”의 개념 정의가 없고, 어떠한 기준으로 2014년 기준을 5%로 설정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측정이

어렵다.

〈표 2-4〉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총괄 성과지표 달성현황

목표 지표		목표치		현황	목표달성 가능성
		2014년	2019년	2018년	
문화향유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267만명	380만명	269만명	△
	생활문화 참여율	5%	10%		
	문화기반 시설 수	2,515개	3,375개	2,749개*	△
	문화예술관람율	71.3%	80%	81.5%	◎
	문화복지수혜자 수(누리카드)	144만명	200만명	164만명	△
한국문화원 수		28개소	34개소	32개소	△
세종학당수		130개소	180개소	172개소	○

◎ : 18년 현재 초과달성
○ : 19년 목표달성 가능성 높음
△ : 19년 목표달성 가능성 낮음
* 문화기반시설수는 2018.1.1. 기준

다. 성과분석 총괄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핵심 성과지표 기준에서 볼 때 대체로 목표를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말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겠지만, 현재 여건에서 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첫째, 7개 성과지표 중에서 생활문화참여율 및 문화예술관람율 등 2개 지표는 결과지표이지만, 나머지 5개 성과지표는 투입지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문화기반시설수, 한국문화원수, 문화누리카드수혜자수 등은 모두 재정투입 증가에 따라 달라지는 지표이다.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문화재정 확충 2%의 과제를 제시하였지만, 2019년 기준 1.53%로서 목표 2% 달성에 실패함에 따라 당초 계획한 대로 재정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화진흥기본계획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와는 달리 국가차원의 재정투입도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성과

지표가 투입지표 위주로 구성되면 계획의 성과달성 여부가 주로 재정투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2차 계획 수립 시에는 이를 유의하여 산출지표 또는 결과지표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제1차 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방향 등을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화융성, 문화재정 2%, 국가브랜드 제고,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 문화가 있는 삶,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등이 주요 정책목표 또는 추진과제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향후 환경변화에 따른 문화진흥의 전략 방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국가에 대한 문화의 가치를 너무 중시하다 보니, 정책목표 중에서 문화가 있는 삶을 제외하고는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방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국제문화교류, 남북문화교류가 별도의 정책목표로 설정되어 있지만, 전략적 방향은 명확하지 않고 추진과제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셋째,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수는 재정투입과도 연계되어 있지만, 학교예술강사사업에 따른 학생참여자수가 가장 비중이 큰데, 취학자수의 감소로 오히려 학교예술강사에 따른 학생참여자수는 증가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문화누리카드수혜자수의 경우에도 대상은 차상위계층까지인데, 약 164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2018년도의 경우에는 1,645천명 대비 96.7%인 1,591천명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았다. 문화누리카드는 1인당 지원금액을 증액시키고 있지만, 대상자를 증가시키는 것은 현재 여건에서 불가능하며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수혜대상자수 증가가 아니라 1인당 지원금액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즉, 지원금액은 제1차 계획 수립 1차년도인 2015년 당시 5만원에서 매년 1만원씩 인상하여 2019년에 8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10만원 달성을 앞두고 있다. 또한 정치·행정적인 환경변화는 잘 반영하고 있지만, 고령화 이외에는 정책환경 변화 분석과 이에 따른 전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문화다양성, 1인 가구, 문화트렌드, 과학기술 변화와 문화생활 변화의 관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주로 기존 사업 중심의 재구성 비율이 높은 편이다.

넷째, 예측 불가능한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정책이 변화되거나 추진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 남북문화교류 관련 과제가 대표적으로 남북문화교류는 정책과제로 설정되어 있지만, 남북한 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남북문화교류 관련 과제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다섯째, 제1절의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개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천과제는 구체적인 목표 및 규모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인 기준에서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여섯째,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략적 방향 보다는 국정과제에 기존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을 혼합하여 구성하다 보니 계획의 전략체계에서 한계가 있었다. 즉, 정책목표-추진과제 간의 인과성 및 포괄성에서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지역에서 꽃피는 문화는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적인 전략적 가치가 제대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지역문화분권, 특성화, 자율성, 문화격차해소, 균형발전 등의 전략적 가치와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못하고, 기존의 협의의 지역문화 관련 사업이 재구성되어 있다.

일곱째, 문화진흥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문화기본법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시행계획에서 전년도 사업추진실적이 간략하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피드백을 위한 제도화된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 매년 문화진흥기본계획 성과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문화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에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제 각 부서에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인동기와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는 제도화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는 문체부 조직·부서장 등의 인사평가와 연동되어 있고, 재정사업의 경우 평가결과는 차기 예산확보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있다. 그러나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과 가장 밀접한 2016~2020 문화체육관광부의 성과관리전략계획을 보면, 기존의 재정사업 위주로 수립되어 문화진흥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기본계획이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천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

라서 제2차 기본계획의 과제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성과관리계획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라. 우수한 성과 및 미흡한 과제

1) 긍정적 성과

전문가 FGI 조사결과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긍정적인 과제는 ①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② 참여·체감형 문화 향유 환경 조성, ③ 문화인력 육성 및 운영강화, ④ 문화시설 운영 효율화 및 확충 등 4개 과제가 제시되었다.

첫째,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추진과제 1)은 제1차 기본계획 이전에는 거의 강조되지 않았던 과제로 시대적 흐름이기도 했지만,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강화에 따라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과제이다. 박물관·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인문독서 아카데미, 이야기 할머니 등 다양한 인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을 통하여 인문학의 가치를 폭 넓게 확산시켰다. 문화정책의 특성상 인문학이 전문가 중심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 확산시키고, 정부의 사업을 통하여 민간에도 생태계를 구축한 것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참여·체감형 문화 향유 환경 조성(추진과제 5)과제가 우수한 과제로 평가되었다. 새롭게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 생활 SOC 조성, 문화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하여 문화 향유 환경조성과 실제 참여자 확산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특히 제1차 계획기간 동안 생활문화의 가치가 확산되고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셋째, 문화인력 육성 및 운영강화(추진과제 17) 과제가 우수한 과제로 평가되었다. 문화예술인력을 양성기관 지정 및 제도적인 교육, 문화전문인력 양성과 활동을 위한 예술가 파견 지원, 양성,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지원사업 등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 정부에서 문화인력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사업내용의 달성도를 보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정비(조직 신설, 교육사 등

인력 운영체계 등) 등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문화시설 운영 효율화 및 확충(추진과제 18) 과제가 우수한 과제로 평가되었다. 지속적인 문화기반시설 확충, 생활 SOC 확충 정책 등의 기반 위에서 운영효율화를 위한 공립박물관·미술관 사전평가제, 평가 인증제도, 수장고 확충 등 계획된 과제가 대부분 추진되었다. 특히 문화재생,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산업시설 및 유휴시설의 문화시설 조성, 생활밀착형 다양한 문화시설 확충 등이 높은 평가를 거두었다.

2) 미흡한 정책목표 및 과제

정책목표 전체에서 보면 ① 남북의 통로가 되는 문화, ② 문화진흥 기반구축 등 2개 정책목표가 미흡하다고 평가되었다. 남북문화교류는 문화정책 내적인 요인이 아니라 정치적인 외부환경에 기인한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등 계기성으로 남북 문화교류가 추진되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문화를 통한 남북한 교류 활성화, 동질성 회복 등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사업내용을 보면 통일문화교육, 아카이브 구축 등의 사업은 과제의 계획대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진흥기반 구축의 정책목표가 미흡하다고 평가된 것은 핵심적인 과제인 문화재정 2% 달성, 예술인 사회안전망(사회보험 등) 구축, 공정·상생 환경 조성, 지원체계 혁신 등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즉, 블랙리스트, 예술가의 권리,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문제 등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성과에 대한 인식을 낮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는 성과가 미흡하였지만, 우수한 과제로 평가된 문화인력 육성 및 운영강화, 문화시설 운영 효율화 및 확충 등 2개 과제는 문화진흥기반 구축의 정책목표 영역의 과제이다.

추진과제 중에서 미흡하다고 평가된 과제는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 참여·체감형 문화 향유 환경 조성, 문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등 3개 과제이다. 첫째,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 과제가 미흡하다고 평가되었다. 특수 소외계층 및 농어촌 대상 과제는 정상 추진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세부과제 중심으로 구

성되어 공공디자인, 녹색공간 조성 등 일부 과제의 추진실적이 미흡하고, 무엇보다도 문화적 가치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높았기 때문이다.

둘째, 참여·체감형 문화 향유 환경 조성은 긍정적 인식과 함께 미흡하다는 인식이 모두 제시된 과제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양적인 측면에서 문화향유 환경조성의 성과는 있지만, 문화활동이 참여·체감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와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문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과제가 미흡하다고 평가되었다. 국가상징 이미지 개발 보급, 재외문화원 확충, 한류 확산, ODA 활성화 등 세부과제는 대부분 정상 추진되었지만, 전반적으로 효과가 미흡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한류 확산 등은 정부의 성과라기보다는 민간의 노력에 기인한 것이라는 인식이 높았고, 정부는 간접적이고 기반조성에 국한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평가된 것이다.

3. 추진과제별 성과와 추진실적

가. 정책목표별 주요 성과와 한계

정책목표별로 총괄하여 보면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은 추진실적과 함께 성과를 거두었다. 단순히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를 추진하였다는 것을 넘어 정책이 목표로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인문학 진흥, 생활문화 확산과 기반조성, 일과 삶의 균형, 문화영향평가 등은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 실질적으로 새롭게 추진되거나 대폭 강화되어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업이다. 문화복지 확충, 문화적 도시재생, 한류확산, 문화인력의 권리강화와 연구개발 기능 강화 등도 중요한 성과이다. 반면에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성과에 한계를 보이고, 구조적인 혁신과 변화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와 한계는 다음의 〈표 2-5〉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표 2-5〉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정책목표별 주요성과와 한계

정책목표	주요성과	한계
문화가 있는 삶	• 인문학 진흥 사업의 대중화 및 가치 확산 • 참여·체감형 문화향유 조성(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센터) 확산, 생활SOC 등) • 문화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일자리 창출 • 일과 여가의 균형을 위한 정책 및 가치 확산 • 문화향유율 대폭 확대 •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액 확대, 다문화, 소수자 등 대상자별 프로그램 추진 • 문화영향평가 시범 추진	• 일과 여가의 균형, 국민행복의 체감도 미흡 •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 한계 • 공공디자인 진흥은 대부분 계획 및 초기 단계 • 치유·휴양 등 녹색문화공간 조성 미흡 •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확산 미흡 • 문화영향평가의 확산 및 가치 정립 미흡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미흡, 소통과 갈등 해소 미흡
지역에서 꽃피는 문화	• 지역 문화콘텐츠 자원 개발 및 활용 추진 • 도시재생, 유휴공간의 문화시설 조성,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조성 • 문화도시 지정 및 육성	• 지역 문화콘텐츠 지원에 비해 성과 미흡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미흡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	• 한류의 확산 및 융합콘텐츠 개발 • 문화 ODA 지속 추진 • 재외문화원 및 세종학당 확충 • 국가상징 브랜드 개발	한류의 확산과 경제규모에 상응한 국가 브랜드 제고 미흡
남북의 통로가 되는 문화	• 계기성 남북 문화교류 추진 •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문화교육, 아카이브 구축	정치적인 문제로 본격 추진 미흡
문화진흥 기반 구축	• 문화인력의 권리 강화 기반 조성 • 문화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인력 양성 • 연구개발 기능 강화(문화관광연구원 법정기관화 및 기능 강화) • 박물관 등 사전평가제/인증제, • 생활SOC 등을 통한 문화시설 확충	• 블랙리스트, 미투 사태 등 근본적 변화 미흡 • 예술가 권리, 사회안전망, 공정·상생 환경 미흡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정비는 준비 단계 • 문화재정 2% 미달성(1.53%) • 기금 재정위기로 예술지원체계 혁신 미흡 • 문화유통체계 혁신 미흡

나. 추진과제별 추진실적 총괄

정책목표와 추진과제별로 세부사업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9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문화진흥계획 특성상 계획목표와 추진전략이 추상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사업이행 평가를 계량적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어 세부사업의 내용적으로 충실한 이행정도를 검토하는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행실적 점검 유형은 ① 정상추진, ② 변경추진, ③ 미흡추진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다. 정상추진은 2015년 계획수립 당시의 계획을 현재 모두 이행하고 있으며 내역사업을 추가하여 배치한 경우도 이 유형에 포함하였다. 변경추진은 2015년 계획수립 당시의 계획에서 일부 혹은 전부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한 경우이며, 미흡추진은 2015년 계획의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 미이행한 경우를 포함하였다. 변경추진 혹은 미이행 요인으로는 정책 및 정부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하거나 법·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과제, 남북문제와 같이 예측 불가능한 환경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점검결과 몇 가지 1차 계획의 보완점을 발견하였는데, 계획내용상 구체성을 갖춘 실천적 전략이 부족하거나 사업성격(장단기, 예산 확보여부 등)과 세부사업 수준에서도 사업위계에 편차가 있었고 세부사업 간 중복성이 있었다. 예를 들어 토요문화학교 운영 확대, 문화원 및 문예회관 연계 프로그램은 1개 이상의 세부사업에서 목표치로 중복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계획목표와 세부사업의 범위는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니 전략적인 사업우선순위보다는 문체부의 정책사업을 포괄적으로 담고 재배치하여 형식적으로 포함된 사업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1차계획은 전략적으로 내외부 환경에 따라 사업내용과 계획, 목표치를 수정하는 노력보다는 주어진 일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 정책목표별 추진실적 개요

□ 정책목표 1. 문화가 있는 삶

〈표 2-6〉 정책목표 1. 문화가 있는 삶 추진실적

추진과제		1차 문화진흥계획(2015년)	문화진흥 시행계획(2019년)	추진 현황	비고
1-1. 인문 정신문화의 진흥	1. 성숙한 시민성 함양을 위한 인문정신문화 향유 환경조성	o (학교) 초중등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o (지역) 전국 문화시설을 활용한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확산	o (학교) 초중등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o (지역) 전국 문화시설을 활용한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확산 o (전국) 전통문화를 활용한 생활 속 정신문화 확산	정상 추진	– 학교 내 인생나눔멘토 파견 : (목표) 15년 40개교 →19년 100개)/(실적) 18년 28개교 – 길 위의 인문학 : (목표) 15년 도서관 280개관, 박물관 120개관 →19년 도서관360개관, 박물관 220개관) /(실적) 18년 도서관 404개관, 박물관 116개관 – 전통문화를 활용한 생활 속 정신문화 확산 사업 추가
	2. 인문정신문화와 콘텐츠 융·복합 확대로 향유 저변 확대	o '예술로 인문정신 문화 보기' 전시·공연 확대 o 방송·온라인·모바일 등 매체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o 국립박물관·미술관 중심 '예술로 인문정신 문화보기' 전시·공연 확대 o 방송·온라인·모바일 등 매체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정상 추진	–
	3. 인문적 소통을 통한 갈등해소 프로그램 확대	o 감성과 창의성 증진, 관계 개선을 위한 '인문예술캠프' 개최 o 소외계층 대상 미래설계 및 잠재적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독서	o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책을 매개로 지역 문화 자원과 연계한 독서문화 캠프 프로그램 운영	변경 추진	– 전국 5개 권역별 '독서문화캠프'추진 계획이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변경 추진

추진과제		1차 문화진흥계획(2015년)	문화진흥 시행계획(2019년)	추진 현황	비고
		치유 프로그램 확대	o 소외계층 대상 미래설계 및 잠재적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독서치유 프로그램 확대		
1-2.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	1. 공공디자인 진흥을 통한 문화적 국토 조성	o 일상 속 생활환경의 디자인 개선 및 사회 취약시설의 문화적 공간 조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공공디자인 구현 o 도심 폐 산업시설과 군사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재조성	o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7개소 내외) o 문화시설 대상 유니버설 디자인(2개소) o 공공디자인 진흥 기반 구축 마련 o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미흡 추진	– 서울 서계동 부지(옛 기무사 수송부대)에 예술 창작, 공연 관광,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등이 가능한 복합 문화관광시설 건립 추진
	2. 문화를 통한 지역의 재생 및 발전 지원	o 주요 시범 지역 선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문체부의'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사업 등을 협력적으로 시범사업 추진 o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으로 국토도시 품격 향상	o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 도시 및 지역 자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형 및 문화마을형 육성 지원 o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유휴 다중이용공간을 지역의 문화·역사, 도시문제, 주민수요 등을 고려해 문화적으로 활용한 기획안 지원	미흡 추진	– 지자체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경우 사업비 지원
	3. 치유·휴양 등 산림복지 확산 및 녹색공간 확충	o 산림휴양·치유공간 확충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산림청) o 생활권 산림복지공간 확대 및	o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인프라 확대 및 서비스 특성화 o 산림복지바우처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서비스 제공 확	미흡 추진	– 자연휴양림 : (목표) 14년 156개 → 19년 200개소 – 삼림욕장 : (목표) 14년 179개 → 19년 250개소/(실적) 19년 121개소

추진과제		1차 문화진흥계획(2015년)	문화진흥 시행계획(2019년)	추진 현황	비고
		도시민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산림청) o 개발제한구역내 녹지 공간 조성 등 일상 생활여건 개선(국토부)	대 o 시민·기업이 함께하는 도시녹화운동으로 도시숲 확대		– 치유의 숲 : (목표) 14년 5개 → 19년 40개소/(실적) 19년 58개소 – 모델수목장림 : (목표) 14년 3개 → ('19) 23개소 – 도시숲 : (목표) 14년 2,681개 → 19년 3,624개 / (실적) 19년 4,034개소 – 학교숲 : (목표) 14년 1,341개 → 19년 3,061개/(실적) 19년 1,866개소 – 숲태교, 유아숲체험원, 청소년 산림교육센터 등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산림복지바우처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추가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 등 환경·문화사업 확대 추진
	4. 인문·예술교육을 통한 전인적 창의인재 양성	o 초·중등학생 대상 독서교실 운영, 북 콘서트 등 체험행사 개최하고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o 청소년들의 상시 체험활동 공간 조성(어울림마당) 및 다양한 활동 구심점으로서 동아리 운영 지원	o 자기주도적 청소년활동 환경 확대를 위해 기존의 시도 대표 어울림마당에서 운영하던 청소년 기획단을 시군구 단위까지 운영 o 청소년들의 진로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 대표 어울림마당 행사 운영시 진로체험을 주제로 하는 어울림마당 행사 추진	정상 추진	–

추진과제		1차 문화진흥계획(2015년)	문화진흥 시행계획(2019년)	추진 현황	비고
	5. 소외 계층 등 문화 사각지대 해소	o 소년원학교 등 인성함양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강화 o 수형자 대상 체험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통해 수형자 인성 변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o 심리적 상처를 가진 소외계층(학교폭력·범죄·재난사고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특화된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 갈등 치유에 기여	o 전국 교정시설 대상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 제공 o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o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정상 추진	– (목표) 소년원학교(10개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상(12개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설·운영/(실적) 19년 소년원학교(11개소), 교정시설(52개소) – 찾아가는 문화공연 : (목표) 15년 52개 기관 → 18~19년 55개/(실적) 19년 61개 – 체험형 문화예술프로그램 : (목표) 15년 44개 기관 → 18~19년 50개 기관/(실적) 19년 75개 –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 (목표) 15년 77개→ 19년 150개/(실적) 19년 120개
	6. 군대 내 문화예술 체험 및 참여를 위한 환경 조성	o 군대 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예술단체 부대 방문공연 o 군대 내 도서시설 확충 및 독서 코칭 등 책 읽는 분위기 조성	o 군 장병 대상 군부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o 국방부 협업, 참여 부대 선정, 병영 독서프로그램 운영	미흡 추진	– 인문학 중심의 독서멘토 부대 파견 및 도서 지원 : (목표) 15년 150개 부대 →19년 480개 부대/(실적) 19년 270개 부대 – 수혜대상(장병→지휘관) 확대
	7. 농촌 문화자원 활용 기반마련 및 문화향유 기회확대	o 농촌 경관·체험 등을 소재로 한 주민 주도의 마을·권역단위 축제 기획·프로그램·홍보 컨설팅 등 지원 강화	o 농산어촌 지역 주민 대상 찾아가는 문화예술 순회공연 o 농촌 마을·권역단위 축제 지원 o 농촌 교육·문화·복지 프로그	정상 추진	– 축제지원 : 19년 65개소, 10억원, 연중 컨설팅 및 현장모니터링 – 찾아가는 문화예술 순회공연 : 18년 915회

추진과제		1차 문화진흥계획(2015년)	문화진흥 시행계획(2019년)	추진 현황	비고
		o 전통적인 농촌자원을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관리하여 농업과 관련한 전통적인 유산 보존·활용 지원 추진 o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관광휴양자원(관광농원, 농촌민박, 테마공원) 개발 지원을 통해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 문화관광공간 확대 o 산간벽지 농촌 지역 주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순회공연 및 농촌형 작은 문화교실(작은 도서관, 미술관, 학교 등) 지원	램 지원 o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 강화 o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 주민공동체를 대상으로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 19년 200개소내외, 27억원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및 농업유산 자원 발굴·복원 지원(연중), 세계중요농업등재 추진 중
	8. 문화영향평가 추진 체계 구축	o 문화영향평가제도 시행 방안 마련 o 문화영향평가제도 교육 및 홍보 추진	o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 및 약식평가 추진	미흡 추진	– 전문평가 : 19년 18건 내외 추진 – 약식평가 : 19년 20건 추진 – 문화영향평가 업무지침, 설명회, 평가결과보고대회 등 성과체가 기회 제공 – 문화영향평가 국민 홍보 캠페인
1-3. 대상별 맞춤형 문화 참여기회확대	1. (미래세대①) 창의력·감수성 증진을 위한 기반 강화	o 호기심·상상력을 자극하는 어린이 '창조놀이터' 개발 및 확산 o 문화·체육·관광 아동청소년	o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미흡 추진	– 지역 기반시설 활용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19년 50여개 – 어린이 '창조놀이터' 개발 및 확산

추진과제		1차 문화진흥계획(2015년)	문화진흥 시행계획(2019년)	추진 현황	비고
		패널조사 및 문화향수 실태조사 실시 o 유아 발달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운영하고 교육·문화적 조건이 취약한 도서벽지, 농산어촌, 중소도시에 우선 지원			미이행 –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체육·관광 패널조사 및 문화향수 실태조사 미이행
	2. (미래세대②) 학교 및 사회에서의 문화예술교육·참여기회 확대	o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강화 o 일상,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 감상·체험·참여 프로그램 확대	o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o 토요문화학교 운영 o 지역아동센터 대상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미흡 추진	– 초중고 예술강사 파견 및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목표) 14년 7,809개교→17년 11,000개교/(실적) 19년 8,481개교 – 토요문화학교 : (목표) 14년 800개소→17년 1,000개소/(실적) 19년 700여개 – 지역아동센터 대상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 (목표) 17년 468개소→17년 600개소/(실적) 19년 690개소 – 문화예술분야 교과과정 도입 미이행
	3. (노인세대①) 맞춤형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o 건강한 젊음 유지를 위한 노인층 대상 생활체육 활성화 o 노인층의 문화참여 실태 등을 파악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강사 확대, 어르신과 각 세대가 함께하는 실버문화 대축	o 노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o 어르신문화예술교육 및 동아리 등 지원	미흡 추진	– 문화예술 분야별 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강사 파견 : (목표) 14년 190개소 → 17년 319개소/(실적) 19년 230개소 – 어르신 동아리 지원 :(목표) 15년 70개→17년 100개/(실적) 19년 80개

추진과제		1차 문화진흥계획(2015년)	문화진흥 시행계획(2019년)	추진 현황	비고
		제 개최(정례화) o 세대 간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버문화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으로 실버문화에 대한 이해와 세대 간 격차 해소			– 노인층의 '1人 2技'(문화예술 1개, 스포츠 1개) 문화캠페인 미이행 – 이동식 체력향상교실(공원쉼터), 주거복지시설 순회지도 등 – 노인 영상미디어교육 지원
	4. (노인세대②)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o 노인층의 재능과 경력을 활용 문화나눔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o 노인층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발굴	o 이야기할머니 신규양성 및 현장 파견활동 지원	미흡 추진	– 이야기할머니 : (목표) 15년 2,100명→19년 3,000명/(실적) 19년 3,130명 –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목표) 15년 100개→19년 150개/(실적) – 노인층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발굴
	5. (노인세대③) 노인친화적 문화여가환경 조성	o 지역 내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등을 노인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 o 일부 공공기관 및 분야별로 시행중인 경로우대 할인제도 확대 o 노인들의 취미·여가·일자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소개하는 '노인 문화·여가박람회' 개최	o 샤이니스타를 찾아라(양악, 국악, 무용, 연극 등의 구성을 갖춘 중·노년층으로 구성된 단체 지역별 오디션) o 문화나눔한마당	변경 추진	– 중노년층 대상으로 이벤트(공연무대 기회 제공, 체험, 전시, 마켓 등) 중심으로 변경 추진 – 지역 내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등을 노인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 – 65세 이상 노인의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지자체 조례 개정) 추진 – 노인 문화·여가박람회 개최
	6. (직장) 직장인 대상 문화활동 참여 기회 확	o 기업 내 문화예술 동호회(미술, 악기 등) 결성과 기존 동호회	o 직장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미흡 추진	– 산업단지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 (목표) 14년 40개 →17년 70개/(실적)

추진과제		1차 문화진흥계획(2015년)	문화진흥 시행계획(2019년)	추진 현황	비고
	산	활성화를 위한 전문 강사 및 운영(연습실, 발표회 등) 지원 o '문화가 있는 날' 연계 문화가 있는 직장 분위기 확산 o 일하는 방식 문화 개선 캠페인 전개(고용부, 여성부 협력), 여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여가친화기업 선정 확대			19년 30여개 – 직장으로 찾아가는 공연 지원, 문화 퇴근일 확산, 일하는 방식 문화 개선 캠페인, 여가친화기업 선정 등
	7. (가정) 가족단위 문화활동 활성화로 유대와 결속 강화	o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체험 기회 확대 o 문화원, 문화의 집 등 지역문화시설 내 가족단위 프로그램 발굴·확대	o 토요문화학교 운영	미흡 추진	– 토요문화학교 : (목표) 14년 800개소→17년 1,000개소/(실적) 19년 700여개 – 토요문화학교는 문예회관, 미술관 및 박물관 등 문화시설 연계 프로그램 – 인문예술캠프 : 소외가족 대상 총 4회 → 일반 가족 대상 – 장애인 가족 대상 체험 프로그램 지원
1–4. 문화 소외계층 대상 문화복지 강화	1.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서비스 확대	o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차상위계층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 o 저소득층·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	o 지역 협력형 '꿈의 오케스트라' 육성 및 간접지원 구축 o 위기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상 추진	– 한국형 엘시스테마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 :(목표) 14년 32개→17년 40개/(실적) 19년 49개 – 청소년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비인가 대안학교 등 지원 –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차상위계층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

추진과제		1차 문화진흥계획(2015년)	문화진흥 시행계획(2019년)	추진 현황	비고
	2. 장애인 대상 문턱 없는 문화향유 환경 조성	o 장애인의 언어 환경 개선 추진 o 장애인 문화예술창작센터 설립, 장애인문화예술 창작아트페어 개최	o 〈2018 수어발전 시행계획〉 수립 o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 수립 o 문화예술 향수지원사업, 공연장 건립, 장애인문화예술정보시스템 구축,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장애인 창작플랫폼 및 메이커스 교육,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및 장애인 문화예술대상 개최,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등	정상 추진	–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16.2.3 – 「점자법」 제정 16.5.29, 개정 17.12.12 – 문화예술 향수지원사업, 공연장 건립, 장애인문화예술정보시스템 구축,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장애인 창작플랫폼 및 메이커스 교육,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및 장애인 문화예술대상 개최,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등 사업 추가
	3. 다문화 등 다양한 소수문화 계층을 위한 문화적 소통 강화	o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o '문화다양성의 날'(5.21, UN 총회 지정) 및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o 이주민 등 소수자문화의 문화적 적응 지원 및 문화표현 기회 확대	o 문화다양성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 o 2019년 문화다양성 주간 기념행사 개최 o 다양한 소수문화계층의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소통 활성화	미흡 추진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추진,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작성 및 국회 제출 – 문화다양성의 날 및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 무지개다리사업 등 다양한 소수문화계층의 문화표현 지원, 정책포럼 개최 –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문화다양성 위원회 운영 미이행
	4.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	o 생활 속 작지만 강한 문화체험 공간 확대 o 소외지역 문화순회 및 지역공연	o 작은 미술관 조성 지원 o 움직이는 예술정거장(문화예술체험버스), 예술꽃씨앗학교,	정상 추진	– 작은 미술관 : (목표) '15년 시범 5개 → 16년부터 매년 20개 확대/(실적) 19년 10개소 내외

추진과제		1차 문화진흥계획(2015년)	문화진흥 시행계획(2019년)	추진 현황	비고
		장 우수공연 지원 확대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등 운영 o 전국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지원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 (목표) 15년 320개관 80명 → 19년 720개관 180명/(실적) 19년 212개관 53명 –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 19년 150회 운영 – 농산어촌 등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예술꽃씨앗학교': (목표) 15년 40개교(누적 66개교) → 17년 60개교(누적 100개교)/ (실적) 19년 45개교 – 작은 영화관 : (목표)15년 26개관→19년 103개관/(실적)
1-5. 참여·체감형 문화 향유 환경 조성	1. 국민의 문화활동 참여를 위한 기반 조성	o 주민 문화예술 활동 거점으로 생활문화기반 확충 o 전국 도서관을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책이음 서비스' 확산	o 생활문화센터 조성 확대 및 운영 안정화 o 책이음 서비스(전국 도서관 이용 회원증) 확대	정상 추진	– 생활문화센터 조성 : (목표) 15년 30개소 →19년 150개소/(실적) 19년 187개소 – 책이음 참여도서관 : (목표) 15년 295개관→19년 930개관/(실적) 19년 1,776개관
	2. 체험·체감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강화	o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단계적·전국적 확대 o 권역별 및 전국 규모 생활문화동호회 축제 개최 o 지역별 영상미디어센터를 통한 영상문화활동 프로그램 강화	o 문화가 있는 날'지자체 참여 활성화 및 지역별 특성화 유도 o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및 마케팅 지원 o 단계별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지원		– 문화가 있는 날' 특별 프로그램 : (목표) 14년 384개→17년 1,500개/(실적) 19년 1,300여개 – 19년 지원 생활문화 동호회 교류협력 활성화 35개내외, 동호회 프로그램 35개 내외

추진과제		1차 문화진흥계획(2015년)	문화진흥 시행계획(2019년)	추진 현황	비고
		o 국민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o (인생나눔교실) 학교·병영·보호관찰소·지역아동센터 등 대상 멘토링		– 19.9월 문화가 있는 날 주간 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 – 영상미디어센터를 통한 영상문화활동 프로그램 – 문예회관 및 문화원 작은음악회, 공방운영 및 전시 – 지역 특색 있는 장소와 결합된 문화프로그램 지원
	3.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및 국민 인식 제고	o 문화자원봉사 매칭시스템 구축 및 운영('15.1월~) o 다양한 분야의 문화봉사단 형성 및 활동 지원 o 문화자원봉사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o 문화체육자원봉사매칭시스템 운영 및 관리 o 문화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정상 추진	– (인생나눔교실) 총 180명의 멘토 선발, 학교·병영·보호관찰소·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파견하여 총 2,430여 회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연중) – 문화체육자원봉사매칭시스템 운영 및 관리, 문화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정책목표 2. 지역에서 꽃피는 문화

〈표 2-7〉 정책목표 2. 지역에서 꽃피는 문화 추진실적

추진과제		1차 문화진흥계획 (2015년)	1차 문화진흥계획 실행현황 (2019년)	추진 현황	비고
2-1.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1. 전통문화자원의 창조적 계승과 확산	o 대표 문화유산 '아리랑'을 주제로 한 핵심 콘텐츠 개발 및 세계화 o 새로운 전통문화 자원의 발굴 및 확산	o 전통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지원 o 전통문화자원 DB 연계 및 정보 제공 o 아리랑 등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및 대중 확산 o 전통문화 활용 관광자원화 및 세계화 o 전통무용·전통음악 등 해외 진출 지원 o 지역전통예술전공생 균형성장	정상 추진	-
	2. 지역 전통 문화상품 발굴·기획·제작 인프라 조성	o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콘텐츠 구축 o 지역 스토리 발굴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지원 o 지역문화 공공콘텐츠 우선활용 시범사업	o 지역의 인문정신문화의 활성화 o 지역문화 공공콘텐츠 구축사업 지원	변경 추진	- 국립·공립·사립·대학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품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보급 - 지역 소재 공립·사립·사립대학박물관 소장품 DB 구축을 위한 등록인력 및 촬영인력 지원 - 문화유산 이야기자원 2차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유형별 이야기 자원 발굴 사업

추진과제		1차 문화진흥계획 (2015년)	1차 문화진흥계획 실행현황 (2019년)	추진 현황	비고
					– 지역 스토리 발굴 및 사업화 : (목표) 14년 8개 지역→16년 11개 지역/(실적)
	3. 지역 문화자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를 위한 지원 강화	o 지역문화 관련 문화예술기업 육성 및 지원 o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육성을 통해 글로컬(Glocal) 콘텐츠 개발지원 o 물적 담보 등이 어려운 지역 업계 특별지원과 지역문화 관련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추진	o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	미흡 추진	– 지역특화콘텐츠개발 : 18년 28개 선정, 72억원 지원 – 지역콘텐츠산업 유통 및 마케팅 지원, 콘텐츠페어 개최 – 사회적 예술기업 모델 개발·육성, 판로지원, 관련 정보제공, 교육, 경영컨설팅 강화 등 –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4. 현대화·대중화를 통한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 확보	o 전통문화산업의 생산–유통–보급 구조 현대화 o 전통문화 분야 간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o 한국전통문화전당('14, 전주), 한복진흥원('17, 상주) 건립을 통해 전통문화 진흥 거점 육성	o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현대적 계승 o 한지 제조·체험시설 건립	정상 추진	– 한지 제조·체험시설 건립(19년) – 전통문화 융복합제품 개발 지원 – 한복진흥원 개원(19년) – 한복문화주간(18년) – 전통문화산업실태조사 정례화 ('17년~, 3년마다), 품질표시제
2–2. 지역문화 가치 발굴 및 브랜드 정립	1.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o 지역문화진흥 및 협력 거점으로 (假)「지역문화진흥원」 설립·운영 o 지역문화자원 활용 및 접근성	ㅇ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 ㅇ 지역문화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미흡 추진	– 지역문화진흥원 설립 : 17.12.08 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 문화기관 간 연계 및 네트워크 지원 지역문화 원천콘텐츠 발굴(18년 184

추진과제		1차 문화진흥계획 (2015년)	1차 문화진흥계획 실행현황 (2019년)	추진 현황	비고
		강화를 위한 정보 전달체계 마련 o 향토문화자료의 보관·제공·활용을 위한 향토문화자료관 건립	o 향토문화자원 공모전 개최		건), 향토자료 발굴(19년 63개) 향토문화공모전(연중) 등 – 지역문화 다양성지도 개발 – 향토문화자료관 건립
	2. 지역문화브랜드 구축 및 확산 지원	o 지역문화브랜드 대상 선정 및 육성 o 지자체 간 문화브랜드 사업 연계 지원 강화 o 지역 문화브랜드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o 지역문화브랜드 선정 및 지원	정상 추진	– 지역문화브랜드 선정 및 육성(연중) – 지역 브랜드 발굴·개발을 위한 매뉴얼, 문화생태계 학습장 조성
	3. 문화도시의 지정 및 육성 강화	o 문화도시 추진체계 설립 및 운영 o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및 문화도시 지정 추진 o 동아시아 문화도시 지정 및 국내외 문화도시 교류 지원	o 동아시아 문화도시 문화행사 추진 및 한·중·일 문화도시 간 교류 o 문화도시 지정 추진	정상 추진	– 문화도시심의위원회 구성, 자문단 운영 추진 중 – 문화도시 지정 : 19년 예비도시 10개, 본도시 지정 추진 중 –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추진(연중)
	4. 문화지구 제도의 운영제도 개선 및 활성화	o 문화지구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도 개선 o 문화지구 특성을 강화하는 『문화지구 특성화 사업』 추진 o 문화지구 사업 평가 및 지원 강화	o 지자체 사업 설명을 통해 문화지구 연계 지자체 사업 참여 유도 o 문화지구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 등 개최	정상 추진	– 문화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18년 완료) – 문화지구 연계 문화마을 조성사업 지원 – 업종 및 업태, 행위 등에 적절한 규제 조치 마련, 문화지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우수문화지구 인센티브 사업

추진과제		1차 문화진흥계획 (2015년)	1차 문화진흥계획 실행현황 (2019년)	추진 현황	비고
					비 지원, 문화지구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2-3.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확대	1. 근·현대 역사문화공간 및 유휴 공간의 창조적 재생	o 근·현대 역사문화공간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융성센터 조성 o 쇠퇴한 원도심을 역사와 문화정체성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o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o '도청 이전 터 개발'을 위한 활용계획 마련 o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목포근대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 개발	정상 추진	–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도청 이전터 개발 활용, 근대역사문화자원 개발 – 지역문화융성센터 조성
	2. 지역 문화유산의 활용 활성화	o 문화유산과 창의력이 결합된 혁신적 문화관광상품 개발 o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확대	o 궁중문화축전개최 o 문화소외계층 참여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실천 o 유휴·복원 전각 대상 궁궐 관람 콘텐츠 다양화 o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사업 추진 o 지역문화유산 활용 사업 추진 o 지역문화재 활용인력 교육 및 모니터링을 통한 프로그램 품질제고	정상 추진	– 궁중문화축전(연중) – 궁궐 문화체험 및 궁궐개방 확대 – 생생문화재,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문화재 야행, 전통산시문화재 활용사업 등 지역문화유산 활용 사업 추진 –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 추진

□ 정책목표 3.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

〈표 2-8〉 정책목표 3.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 추진실적

추진과제		1차 문화진흥계획 (2015년)	1차 문화진흥계획 실행현황 (2019년)	추진 현황	비고
3-1. 문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1. 대한민국 대표 '국가상징' 정립 및 확산	o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통합 국가 이미지 연구개발 o 유·무형 전통문화와 정신문화 등 한국의 핵심가치를 국민과 함께 발굴하는 과정 중심(공동창조)의 쌍방향 국가브랜드 개발 o 인천국제공항 및 관광슬로건 활용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o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사연구	o 정부상징 디자인 개발·적용 o 올바른 정부상징 적용·확산 지원	정상 추진	– 정부상징 디자인 개발 및 배포(16년) – 「정부기에 관한 공고(대통령공고)」 개정·시행('16.3.29./행자부) 정부상징 적용 및 확산 : 각부처 및 소속기관 적용 – 인천공항 입출국장 디스플레이 디자인 개선, 관광슬로건 활용 –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 해외에서의 한국이미지 조사·연구
	2. 해외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전략적 기반 확충 및 운영 내실화	o 한류 전파 확산 및 문화산업 수출 전진기지로서 문화원 역할 강화 o 미국, 서유럽 등 주요 거점 지역 문화원*은 코리아센터로 확대 운영 o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세종학당 확대 및 한국어교육의 질 개선 o 권역별(북미, 유럽, 남미, 아시	o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교육 제공 o 세종학당 운영 체계 개선 및 지원 내실화 o 해외 박물관 주요 특별전, 한국실 운영 활성화, 한국실 전수조사, 한국실 신규 설치 지원, 우수관 고도화 o 문화원 대표 브랜드 사업 육성 o 현지 네트워크 허브 역할 강화	정상 추진	– 해외한국문화원 공간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추진 – 뉴욕, 파리 코리아센터 조성 중 – 세종학당 확대 : (목표) 15년 140개소 →19년 180개소/(실적) 18년 172개소 – 권역별(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 해외 대표박물관 내 한국실 집중 육성 : (목표) 15년 1개관 →매년 5개소

추진과제		1차 문화진흥계획 (2015년)	1차 문화진흥계획 실행현황 (2019년)	추진 현황	비고
		아 등) 해외 대표박물관 내 한국실 집중 육성	o 문화원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o 재외문화원의 인프라 확충 및 개선		씩 확대/(실적) 매년 3개소 이상
3-2. 호혜적 국제문화교류 강화	1. 호혜적 발전을 위한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o 세계문자의 전시·연구·교류 등 국제적 거점으로의 '국립 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추진 o 아시아문화전당 개관('15.11월), 아시아 대표 문화기관으로 육성 o 수교 기념행사, 국제회의 개최 등 주요 계기별 문화교류 확대 o 국제문화교류 증진 기반 조성	o 한-아세안 특별 문화장관회의 개최 o 정상회담 및 수교 등 계기 국제문화교류 추진 o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o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문화로') 운영 o 국제문화교류 유관기관 및 지자체 협의체 운영 o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o 재외한국문화원 개원 기념 계기 문화교류 추진 o 권역별 주요계기를 활용한 문화교류 추진 o 아세안 및 러시아CIS 지역 문화교류 강화 추진 o 한일간 문화교류 증진을 위한 한일 축제한마당 추진	정상 추진	- 국립 세계문자박물관' 건립 : (목표) 20년 개관·운영/(실적) 14년 연구완료, 21년 개관예정 -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수교기념 문화행사 개최 추진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정 : 17.3.21 -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추진과제		1차 문화진흥계획 (2015년)	1차 문화진흥계획 실행현황 (2019년)	추진 현황	비고
			o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계기 한·중·일 예술제를 통한 3국간 문화교류 강화		
	2.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o 지자체, 문화재청, KOICA, 유네스코 등 국내외 기관과 협업 강화, 타 분야와 문화 ODA를 결합하는 패키지형 사업 적극 추진 o 스텝(ST-EP, 지속가능한 관광-빈곤퇴치)재단 국제기구화('15년 연내 국내절차 추진)및 UNWTO 협력사업 연계 통한 관광 ODA 사업 효과 극대화	o 문화 ODA 총괄기능 강화 o 개도국 문화·예술의 생산성과 자립성 확보를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	정상 추진	– '문화 ODA통합관리회의' 실시 – 문화 ODA사업간 연계·조정 및 정보공유 – '복합문화센터' 건립 연구용역 – 스텝(ST-EP, 지속가능한 관광-빈곤퇴치)재단 국제기구화 및 UNWTO 협력사업 연계 통한 관광 ODA 사업 효과 극대화
3-3. 지속가능한 신한류 창출	1. 한류 콘텐츠와 타산업의 융합 강화 및 디지털 한류 조성	o K-pop, 게임, 캐릭터, 패션 등 한류콘텐츠를 기업 상품과 연계 o 'KT Klive(동대문)', 'SMTOWN(코엑스)' 등 활용하여 한류 콘텐츠홀로그램 전시·공연으로 한류 관심도 제고 o 장르별(영화·게임·방송·만화·음악 등) 국가별 맞춤형 진출전략을 마련하고 킬러 콘텐츠의 OSMU 기반 시장진출을 적극 지원	o 융합콘텐츠 육성 o 뉴콘텐츠 활용 신한류 조성 o 연관산업 동반성장	정상 추진	– 한류 콘텐츠 브랜드파워를 활용한 연관산업 연계 전략적인 홍보와 마케팅 지원 – VR, 홀로그램 등 문화기술을 활용한 한류 콘텐츠 전시 체험관 등 운영 – 장르·국가별 맞춤형 진출전략

추진과제		1차 문화진흥계획 (2015년)	1차 문화진흥계획 실행현황 (2019년)	추진 현황	비고
	2. 예술분야 국제적 인지도 제고 추진	o 공연예술 핵심거점인 서유럽 시장(프랑스, 독일 등)과 미주, 아시아, 동남유럽 등 신규거점 집중 지원 o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방식을 공모형 사업으로 개선하고 아트페어 개최 시 한국미술 전시 및 행사 등 지원 o 한국공예 국제교류전시(프랑스, 이탈리아 등)를 확대하고, 인지도 제고	o 서울아트마켓(PAMS) o 공연예술 해외진출기반 마련 o 전통 및 공연예술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o 창작뮤지컬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o 한국 작가, 작품을 해외 미술기관에서 전시할 경우 비용 지원 o 중소화랑에 대한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 o 한국공예의 세계화	정상 추진	– 공연예술 해외진출 기반 및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주력국가(공예선진국) :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 중소화랑 아트페어 참가 지원 – 한국공예 국제교류전시 및 페어 지속 참가

□ 정책목표 4. 남북의 통로가 되는 문화

〈표 2-9〉 정책목표 4. 남북의 통로가 되는 문화 추진실적

추진과제		1차 문화진흥계획 (2015년)	1차 문화진흥계획 실행현황 (2019년)	추진 현황	비고
4-1. 남북 문화교류협력 추진체계 구축	1. 남북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전담기구 및 문화협정 체결 추진	o 남북 문화교류 정책수립, 지원사업 집행, 전문인력 양성 등 남북 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o 안정적·지속적 문화교류협력 및 남북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남북문화협정' 체결 추진(통준위 북측에 제안	o 남북 문화교류 협력 특별 전담반 운영(부내) o 남북문화교류 포럼 운영 o 남북 사회문화교류 관련 정부 내, 민관 간 소통채널 강화 o 남북 회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민간·지자체 차원의 남북 사회문화 교류 관련 대북 협의 지원	미흡 추진	– 통일대비 남북 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TF팀 운영(문체부, 문화재청, 문광연 등), 남북 문화교류 협력 특별 전담반 운영(문체부 내) – '(假)남북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법률' 미제정 – '남북문화협정' : 15년 연구완료 – 양측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문화교류협의체」 논의 중 – 정부 내, 민관 간 소통채널 강화, 남북회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민간, 지자체 차원의 남북 사회문화교류 대북협의 지원 추가
	2.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 및 교육 확대	o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 아카이브 구축 o 남북문화공동체 인식제고를 위한 통일문화교육 추진 o 문화와 감성에 기반한 청소년 통일교육 추진(통일부)	o 통일문화교육 운영 o 일반 국민 및 통일 관련 단체·기관이 참여하는 「2019 통일문화행사」 개최 o 지자체와도 협조하여 지방특색에 맞는 통일문화의 저변 확산 o 청소년 참여·체험형 통일교육	정상 추진	– 통일문화교육 운영(연중) – 통일문화행사 추진 –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 아카이브: (목표) 16년 연구 추진 → 17년 아카이브 구축 → 18년 1980~1990년대 자료 수집 → 19년 1990~2010년대 자료 수집

추진과제		1차 문화진흥계획 (2015년)	1차 문화진흥계획 실행현황 (2019년)	추진 현황	비고
			프로그램 운영 o 문화적·감성적 접근을 통한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4-2.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 지원	1. 문화유산·언어 등 공동 발굴·보존 및 교류	o 문화유산 공동발굴 및 공동 전시·기획전 개최 o 북한지역 문화재 DB 구축 o 남북 간 언어 유산 공동 보존 및 교류	o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회의 재개 및 공동편찬사업 국민체감 제고 병행 추진 o 남북관계의 상황을 보아가며,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개성만월대 발굴사업 재개 추진 o 고려궁성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조사 o 천연기념물 크낙새 남북공동조사 o 북한 함흥 억새 건원릉 이식행사	미흡 추진	– 개성만월대 발굴사업 재개 추진, 18년 북한소재 세계유산 '고구려 고분벽화' 주제 국제심포지엄 개최 – 북한 지역 문화재 기초조사 및 디지털화기초 연구 활성화 및 교류 추진 – 겨레말큰사전 편찬추진: (목표) 19년 편찬/(실적) 18년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개정, 19년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회의
	2. 문화예술·체육 등 분야별 남북 문화교류 추진	o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남북 문화교류협력 확대 o 문화예술·체육·종교·학술 등 분야별 민간교류 지원	o 북한어 말뭉치 구축, 남북 전문용어 통합 방안 연구, 남북 언어 통합 국제학술회의 개최 o 2020 올림픽 공동진출 및 2032 올림픽 공동유치 추진 등을 위해 대북 협의 지속, 국제경기대회 상호 참가 등 체육교류 적극 추진	미흡 추진	– DMZ 평화음악회 개최 –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남북 왕래 체육교류 및 국제대회 공동진출 – 문화예술·체육·종교·학술 등 분야별 민간교류

□ 정책목표 5. 문화진흥 기반 구축

〈표 2-10〉 정책목표 5. 문화진흥 기반 구축 추진실적

추진과제		1차 문화진흥계획 (2015년)	1차 문화진흥계획 실행현황 (2019년)	추진 현황	비고
5-1. 문화재정 확충 및 재정운용 효율화	1.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문화재정 2% 달성	o (향유 기회 확대) 문화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사업 확대를 통해 국민행복 체감도 증진 o (문화 확산) 지속가능한 신한류 창출 및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 o (콘텐츠 집중 투자)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서 콘텐츠 부문의 투자 비중 확대	o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화재정 확충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반영 노력 o 문화재정 지방 이양	미흡	– 수요자 중심사업 확대, 신한류 창출 및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 콘텐츠 집중 투자 등 포괄적 내용을 다루고 있음 –19년 문화재정 비중 1.53%
	2. 효과적인 재정사업 운용 체계 마련	o 소액다건형 보조사업 개선 o 거시적이고 선순환형 진흥사업 적극 양성	o 기금 효율성 확보	변경 추진	– 보조사업 수 감축, 지속가능한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체계 구축 등 포괄적 내용을 다루고 있음 – 당초 계획보다 지방이양 관련 부처협의, 기금 재원불균형 해소 등 실적 내용 추가
5-2. 문화예술계 비정상의 정상화	1. 문화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	o 시각예술, 영화, 방송, 출판 등 분야별 표준계약서 추가 개발 및 표준계약서 사용의 국가재정 지원 연계 등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o 서면계약 의무화 및 불공정행위 근절 관련 제도 실효성 강화	정상 추진	–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조사권 및 시정조치권을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18년 – 불공정행위 신고창구 운영 및 확대,

추진과제		1차 문화진흥계획 (2015년)	1차 문화진흥계획 실행현황 (2019년)	추진 현황	비고
		o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확대			찾아가는 예술인 신문고 운영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운영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연간 교육 실시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종사경력 조사 수집 분석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 대중문화예술인 상담 교육프로그램 (심리상담 법률자문) 확대
	2. 예술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작지원 제도 개선	o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 우수 사업에 대해 집중 지원 o 기초예술 창작기반 강화를 위한 간접지원 지속 확대 o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사업효율성 강화 o 보조금사업 지원의 체계성·투명성 강화	o 제작부터 유통, 관객개발과 홍보 측면까지 고려하는 단계별 창작 지원 체계 마련 o 공연예술 종합연습장 조성·운영	정상 추진	– 창작 단계별 지원체계 운영 – 계속지원사업의 비율을 일정수준 축소하고, 신규사업 비율을 20~40% 선까지 확대 – 공연예술 종합연습장 조성·운영: (목표) 19년까지 15개소/(실적) – 예술인복지재단 신고센터에 임금체불 등 사항이 신고된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 배제
5-3. 문화예술 창작 기반 구축	1. 예술인 사회안전망 확대	o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 o 예술인 맞춤형 복지 지원사업 확대	o 예술인 맞춤형 복지 사업 추진	정상 추진	– 고용보험법('18.11.6/한정애의원실 대표발의) 및 예술인복지법 ('18.12.6/안민석의원실 대표발의) 등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산재보험 지원

추진과제		1차 문화진흥계획 (2015년)	1차 문화진흥계획 실행현황 (2019년)	추진 현황	비고
					(가입대행, 보험료 지원) 및 표준계약 체결 예술인과 사업주 대상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목표) 14년 1,860명→ 15년 약 3,500명/(실적) 19년 5,500명 – 기업·기관에 예술인을 파견하여 협업 활동을 기확운영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과 연계
	2. 문화예술후원 사회적 인식 확산 및 제도 개선	o (브랜드 정착) '예술나무'를 문화예술계의 대표 후원 브랜드화 o (대상별 전략 구분 시행) 개인과 기업을 구분하여 모금액 확대 주력 o (지속가능한 후원체계 마련) 만족도 높은 후원 상품 개발 및 예우 강화	o 문화예술 기부 캠페인 '예술나무운동' 인지도 제고 노력 o 문화예술 기부 프로그램 '예술나무운동' 현장 캠페인 확대 o 기업 예술후원 매칭펀드(메세나협회) 운영	정상 추진	– '예술나무' 후원캠페인 시행, 모금액 확대 주력, 영상 지상파 및 케이블 송출 – 예술나무 : (목표) 15년 3만그루→19년 14만그루/(실적) – 대기업, 중소기업 매칭펀드 운영 – 크라우드펀딩 개인 소액모금 활성화 – 문화예술후원인증사업 활성화
	3. 예술 유통 활성화 및 제도 개선	o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 고도화 o 전국 문예회관의 문화예술체험의 거점화	o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법제도 시행 o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데이터 활	미흡 추진	–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공연 홍보·마케팅 플랫폼 기능 확대, 공연소비 현황조사 시행 등을 통한 공연산업

추진과제		1차 문화진흥계획 (2015년)	1차 문화진흥계획 실행현황 (2019년)	추진 현황	비고
		o 미술시장 유통 구조 선진화	용 연구, 데이터 활용범위 확대 o 한국 미술시장 유통구조 선진화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 미술품 유통법 제정)		기여도 강화 – 공연법 개정 : 18.12.24 – 지역문예회관의 기획능력 제고 및 고정 레퍼토리를 확보 – 지역문예회관에 민간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 확대 – 미술시장정보제공 시스템 운영 및 분석보고서 제공 – 미술품 감정인력 양성 및 감정 관련 연구 지원, 원로작가 사업의 디지털 아카이빙 지원
5-4. 문화인력 육성 및 연구강화	1. 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체계 구축	o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차세대 창의 문화리더 양성 o 문화인적자원센터 설립하여 전국 지역문화 전문인력에 대한 종합적 인력양성 지원 및 경력관리 체계 구축 o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력개발원을 예술창작인력 및 문화 매개인력 재교육 핵심기관으로 정립 o '문화예술교육 창의인재원' 설	o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 및 기성 현장인력 재교육 추진 o 문화예술인력 일자리 확대 및 근로여건 개선 o 문화예술교육 핵심 전문인력 (예술강사, 교육기획자, 행정인력, 문화기반시설 종사자 등)의 전문성 강화 연수 기획·운영 o 문화예술교육 사업 협력인력 (학교 경영자, 교사, 비문화시설 담당자, 공무원 등), 예비인력의 문화예술교육 이해도 제	미흡 추진	– 지역문화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목표) 15년 권역별(4개) 1개소, 총4개소 → 17년 광역별 1개소, 총16개소/(실적) 19년 7개소 – 신진인력 육성, 일자리 확대 및 근로여건 개선, 청년인턴 정규직 유도 – 문화매개인력 양성 인원수 : (목표) 14년 4,720명→19년 6,171명/(실적) 18년 3,400명 – '문화예술교육 창의인재원' 설치·운영 미시행

추진과제		1차 문화진흥계획 (2015년)	1차 문화진흥계획 실행현황 (2019년)	추진 현황	비고
		치 운영('17년~)	고를 위한 연수 기획·운영 o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 문화인적자원센터 설립 미시행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반 마련	o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개선을 통한 예술교육·기획인력 양성 체계화 o 전문인력 자격 및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제도화 추진	o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9년) o 교육사 활용 사업 지원	정상 추진	–
	3. 문화 분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기능 강화	o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 분야 연구/평가/교육의 핵심 기관으로 정립	o 미래지향적 문화·관광 정책 아젠더 발굴을 위한 분야별 정책 연구추진 o 문화·체육·관광 분야 시의성 있는 통계 생산 및 활용 확대 o 미래 문화정책을 위한 정책연구 협의체 구성·운영 추진	미흡 추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융합연구 강화, 문화영향평가 및 지역관광평가센터 운영, – '국제문화관광정책대학원' 부설 설립 미이행
	4. 문화예술교육 자원 정보망 구축	o 문화예술교육 자원 정보뱅크 구축 o 문화예술교육 정책연구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대내외 연구협의체 운영 활성화	o 문화예술교육자원 통합관리체계 및 대국민 서비스 운영	정상 추진	– 문화예술교육 자원 정보뱅크 웹서비스 개선 – 문화예술교육자원 리파지토리(Repository) 구축, 메타데이터 구축 및 원문 스캔
5-5. 문화시설 운영 효율화 및 확충	1. 효율적 문화시설 설치 및 기능 조정 체계마련	o 문화시설 및 유사문화시설 실태조사('16년~)를 통해 설치 주체가 아닌 문화서비스 내용에 따	o 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 사전 평가	정상 추진	– 문화서비스 내용에 따라 범정부차원에서 문화시설 재분류 등 검토 – 문화시설 설치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추진과제		1차 문화진흥계획 (2015년)	1차 문화진흥계획 실행현황 (2019년)	추진 현황	비고
		라 범정부차원에서 문화시설 재분류 등 검토 o 문화시설 설치 및 기능 조정을 위한 기준 마련	o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시행 및 국립 박물관 대상 확대 추진 o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지표개발 및 시범평가 추진 o 문화기반 인프라 확충 및 생활밀착 시설 확대 o 문화재생 대상 확대(폐산업시설→유휴시설) 및 활성화		기준 마련, 모형개발, 가이드라인 –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 강화, 생활밀착 문화인프라 확대, 문화재생 확대 등
	2. 세종시 내 다양한 주제의 국립박물관 조성	o 디자인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디자인박물관' 건립 o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어린이박물관 건립 o 국가기록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o 어린이박물관 건축, 전시 실시설계 o 박물관단지 통합시설(통합운영센터, 통합수장고) 실시설계 o 박물관단지 건립 및 운영방안, 도시건축박물관 콘텐츠 등에 관한 연구용역	정상 추진	– 국가기록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디지털문화영상관, 건축·도시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등 5개 박물관, 통합수장고, 통합운영센터 등 2개 통합시설 구성 계획 – 일부 어린이박물관과 통합수장고, 통합운영센터 2022 개관 목표

제3절

문화정책 중기계획 외국사례 분석

1. 일본의 문화예술 추진 기본계획

가. 일본의 문화예술 추진 기본계획 수립 배경 및 과정

일본의 문화예술 추진 기본계획은 우리나라의 문화기본법과 유사한 문화예술기본법(이전의 문화예술진흥기본법) 제7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기본계획으로서 법정계획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문화예술 추진 기본계획은 일본 문화심의회 및 각의의 심의를 거쳐 발표된다. 현재 일본의 일본 문화예술 추진 기본계획 기간은 2018~2022년간으로 개정된 법률에 의한 제1차 계획이다.

문화예술기본법 제7조

① 정부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예술 시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문화예술 추진 기본계획'이라 함)을 정해야 한다.
② 문화예술 추진 기본계획은 문화예술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③ 문부과학대신은 문화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문화예술 추진 기본계획안을 작성한다.
④ 문부과학대신은 문화예술 추진 기본계획의 초안을 작성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에 관한 제36조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 추진회의에서 협의하여야 한다.
⑤ 문부과학대신은 문화예술 추진 기본계획이 정해지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해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은 기본방침의 변경에 대해 준용한다.

일본은 2001년 문화예술진흥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제7조에 문화예술진흥기본방침 수립을 규정하였다. 문화예술진흥 기본방침은 2002년부터 제4차에 걸쳐 수립되었다.

2017년 문화예술진흥기본법을 개정하여 법률의 명칭을 문화예술기본법으로 개정하였다. 문화예술기본법 개정 배경은 다음 같다. 첫째, 문화예술진흥기본법 제정 이후 16년이 경과하여, 저출산 고령화와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력양성, 고령자·장애인, 음식문화, 예술행사 등에 관한 정책을 추가하거나 강화하였다. 둘째, 문화예술 자체의 진흥에 관광, 마을 만들기, 국제교류, 복지, 교육, 산업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문화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2020년 도쿄 올림픽·장애인 올림픽 개최를 계기를 일본의 문화예술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문화산업 해외 진출 등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문화예술 추진 기본방침 대신 '문화예술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서도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방문화예술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문화예술 추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문화심의회는 5회의 전체회의, 14회의 분과(소)위원회/문화정책 그룹 회의, 기본계획 워킹그룹 회의 15회를 개최하였다. 분과(소위원회)는 ① 국어(국어과제, 일본어교육 등 2개 소위원회), ② 저작권, ③ 문화재, ④ 무대예술, ⑤ 미디어예술, ⑥ 미술, ⑦ 생활문화 등 7개 분과로 구성하였다.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단체 및 국민의견을 수렴하였다.

나. 일본의 문화예술추진기본계획(2018~2022) 개요

일본 문화예술 추진 기본계획의 슬로건은 " 문화예술의 다양한 가치를 살려, 미래를 만든다"로 설정되어 있다. 즉, 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 문화예술의 사회적·경제적 가치의 명확화. 문화예술입국 실현을 위해, 문화예술로 생산되는 다양한 가치를 문화예술 계승·발전·창조에 활용하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한다.

문화예술추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 및 배경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문화예술의 가치

○ 본질적 가치

- 풍부한 인간성을 함양, 창조력·감성 육성
- 문화적인 전통을 존중하는 마음 육성

○ 사회적 경제적 가치

- 타자와 공감하는 마음, 인간 상호 이해를 촉진
- 질 높은 경제활동 실현
- 인간존중 가치관, 인류의 진정한 발전에 공헌
- 문화의 다양성 유지, 세계평화의 주춧돌

□ 문화예술을 둘러싼 상황 변화

○ 새로운 문화예술기본법 통과

○ 소자 고령화·글로벌화·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진전 등 사회상황의 변화

○ 2020년 도쿄 올림픽 경기 대회 개최

문화예술추진기본계획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4개로 설정되어 있다.

① 목표 1 :문화예술 창조·발전·승계와 교육으로 문화예술의 창조·발전, 차세대 계승이 확실시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실 있는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② 목표 2 : 창조적이고 활력 있는 사회로 문화예술에 효과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혁신이 창출되는 동시에 문화예술의 국제교류·발신을 통해 국가브랜드 형성에 공헌하며, 활력 있는 사회를 형성한다. ③ 목표 3 : 마음 풍부하고 다양성 있는 사회로 모든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상호 이해하며, 다양한 가치관이 존중되고, 풍요로운 사회를 형성한다. ④ 목표 4 : 지역의 문화예술을 추진하는 플랫폼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을 추진하기 위한 플랫폼이 전국 각지에 형성되고, 다양한 인재나 문화예술단체·제반 기관이 연계·협동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 문화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6개로 설정되어 있다.

〈표 2-11〉 일본 문화예술추진기본계획 전략체계

전략 3	전략 2	전략 4
국제문화교류·협력추진과 문화예술을 통한 상호 이해·국가 브랜드에 공헌	문화예술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와 이노베이션 실현	다양한 가치관 형성과 포용적 환경 추진에 의한 사회적 가치의 양성

• 쿨 재팬 전략(내각부) • 방송컨텐츠 등의 해외진출(총무성, 외무성) • 외무성·국제교류기금의 문화·일본어사업(외무성) • 스포츠문화투어리즘(스포츠청, 문화청, 관광청) • 아동복지문화재(厚老省) • 장애인 예술문화 활동(厚老省) • 일식문화의 국내·외 발신, 국산화 및 차 수요확대, 고래류 관련 문화정보발신(농수성)	• 일본상품·서비스의 해외 수요개척, 전통적 공예품, 콘텐츠 산업(경제산업성) • 역사·문화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 해외일본정원 재생(國交省) • 방일프로모션, 문화관광자원의 활용, 다언어화 해설정비 지원(관광청) • 국립공원의 정보 발신(환경성) • 국제적인 문화발신 거점, 지역의 문화 클러스터(문화청)

사회적·경제적 가치

전통예능
생활문화
국어·일본어
예술

예능
문화재
미디어 예술
저작권

본질적 가치

전략 1	
문화예술 창조·발전·계승과 풍부한 문화예술교육의 충실	
다양하고 높은 능력을 가진 전문인재의 확보·육성	지역의 제휴·협동을 추진하는 플랫폼의 형성
전략 5	전략 6

이러한 전략과 연계하여 정책과제는 170개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계획은 환류체계를 설정하고 있다. 즉, 매년 문화 GDP등 36개 평가지표에 근거한 계획의 진척상황을 점검하고, 2020년도에 중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추진전략으로서 문화청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문화청의 정책기능 강화, 박물관·예술교육 등의 업무를 문부과학성에서 문화청으로 이관, 문화청의 교토 이전과 연계하

여 문화청의 조직과 부서를 개편하고, 2018년도에 신문화청을 출범하였다.

문화예술추진기본계획의 5년간의 방향성 및 미래상을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2-12〉 일본 문화예술추진기본계획의 방향 및 미래상

	지향해야 할 모습 (중장기적 관점)		기본적인 방향성 (2018~2022년도의 5년)
문화예술의 다양한 가치를 살려 미래를 만든다	(1) 문화예술의 창조·발전·승계와 교육 문화예술의 창조발전, 차세대 계승이 확실시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실 있는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활동의 참여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전략1 문화예술의 창조·발전·계승과 풍부한 문화예술교육 충실
	(2) 창조적이고 활력 있는 사회 문화예술에 효과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혁신이 창출되는 동시에 문화예술의 국제교류·발신을 통해 국가브랜드 형성에 기여하며, 창조적이고 활력 있는 사회가 형성되고 있다.		전략2 문화예술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와 혁신 실현
			전략3 국제 문화 교류 협력 추진과 문화예술을 통한 상호 이해·국가 브랜딩의 공헌
	(3) 마음 풍부하고 다양성 있는 사회 모든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가치관이 존중되고, 마음 풍부한 사회가 형성되고 있다.		전략4 다양한 가치관 형성 및 포섭적인 환경 추진으로 사회적 가치의 양성
	(4) 지역의 문화예술을 추진하는 플랫폼 지역의 문화예술을 추진하기 위한 플랫폼이 전국 각지에 형성되고, 다양한 인재나 문화예술 단체·제반 기관이 연계·협동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문화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다.		전략5 다양하고 높은 능력을 가진 전문인재의 확보·육성
			전략6 지역의 제휴·협동을 추진하는 플랫폼의 형성

〈표 2-13〉 일본 문화예술추진기본계획 성과지표

전략	성과지표
전략 1	• 국민의 자랑으로 "문화·예술"이 거론되고 있는 비율 • 일본의 예술에 대해서 "매우 좋다" "약간 좋다"라고 회답하는 비율 • 극장, 음악당 등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전략	성과지표
	•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의 입장객수, 이용자수 • 문화예술 활동이나 문화시설의 사회적 투자효과 • 예술가수 • 문화재의 적절한 수리의 실시상황 • 문화재의 방재·방범 대책의 실시상황 • 역사문화기본구상(지역 내 문화재의 종합적인 보존·활용에 관한 계획)이나 보존 활용계획의 책정건수 • "당신은, 일상의 언어나 말투, 혹은 문장 쓰는 법 등, 국어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관심이 있다"라고 회답한 사람의 비율 • "매일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를 소중히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소중히 하고 있다"라고 회답한 사람의 비율 • 국민의 감상, 감상 이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각각의 참가 비율 • 문화예술산업의 경제규모(문화GDP)
전략 2	• 문화예술산업의 경제규모(문화GDP)* • 국민의 감상, 감상 이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각각의 참가 비율[재게]. • 역사문화기본구상(지역 내 문화재의 종합적인 보존·활용에 관한 계획)이나 보존 활용계획의 책정건수* • 문화유산의 온라인 방문 횟수, 등록건수 • 국립미술관, 박물관의 기부금 등의 수용상황
전략 3	• 문화프로그램 인증건수 • 극장, 음악당 등에서 다언어화 대응 비율 • 문화유산 보존수복 등에 관한 국제협력의 실시상황 • 일본을 유학지로 선택한 이유(복수응답)로서 "일본어·일본문화를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 • 체류 외국인수에 차지하는 일본어 교육실시 기관, 시설 등에서 일본어 학습자 수의 비율 • 국내외 일본어 교육 실시기관·시설 등에서 일본어 학습자 수의 증가 비율 • 일본어교사 양성, 연수실시기관, 시설 등에서 일본어교사 양성, 연수강좌의 수강자수 문화예술산업의 경제규모 *
전략 4	• 국민의 감상, 감상 이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각각의 참가 비율[재게]. • 어린이 문화예술 활동 참가 비율 • 고령자의 문화예술활동 참가비율 • 장애자의 문화예술활동 참가 비율 • 체류 외국인의 문화예술활동 참가 비율 • 극장, 음악당 등에서 다언어화 대응 비율 * • 지역의 문화적인 환경 만족도 (문화예술의 감상기회, 창작·참가기회, 문화재나 전통적 마을 수준의 보존·정비 등) • 체류 외국인수 대비 일본어 교육 실시기관·시설 등에서 일본어 학습자수의 비율 *

전략	성과지표
	• 일본어 교육 실시기관·시설 등에서 일본어 학습자수의 증가 비율[재게재] • 일본어교사 양성·연수실시기관·시설 등에서 일본어교사 양성·연수강좌의 수강자수 * • 문화예술산업의 경제규모(문화GDP) *
전략 5	• 지방공공단체의 문화재를 담당하는 전문적인 직원 • 문화시설에서 전문적 인재 • 극장, 음악당 등 관리직에 있어서 전문적 인재의 남녀비율, 무대기술직원의 연령층 • 문화예술단체에서 아트 매니지먼트 인재 • 일본어교사 양성·연수실시기관·시설 등에서 일본어교사 양성·연수강좌의 수강자수* • 문화예술산업의 경제규모(문화GDP) *
전략 6	• 지역의 문화적인 환경 만족도(문화예술의 감상 기회나 문화재·전통적 시가지의 보존·정비 등) * • 창조도시 네트워크 일본(CCNJ)의 가맹 자치단체수 • 지방공공단체 문화예술에 관한 조례수, 지침(계획)의 책정수 • 문화예술에 관한 자원봉사자수 • 국민의 문화활동 기부활동 비율 • 기부금의 수용상황(전체 및 공적자금) • 국립미술관, 박물관 기부금 등의 수용상황 • 문화예술산업의 경제규모(문화GDP) *

주 : *은 중복 지표

다. 일본 문화청 교토 이전

일본의 행정기관 등의 이전은 1988년에 제정된 「다극분산형국토형성촉진법」에 근거하여 시작되었다. 이 법률은 인구 및 행정, 경제, 문화 등의 기능이 지나치게 도쿄에 집중되어 지가상승, 사회적비용의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집중된 지역의 기능 분산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발전할 수 있는 국토 형성을 목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국가 행정기관 등 이전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도쿄도 23구에 집중되어 있던 79개 기관(폐지 등에 의해 현재는 7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전을 추진하였으며, 66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다.

지방창생 전략에서 정부기관 등의 지방이전은 지방으로의 기관 이전이 새로운 인구 이동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 하에 2014년 '마을·사람·일 창출 종합전

략'을 수립하면서, 기업 본사 기능의 지방이전을 유도할 목적으로 정부기관이 먼저 지방이전을 결정하였으며, 정부 주도의 정부기관 이전이 아닌 지방으로부터 제안을 받는 방식으로 지방이전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마을·사람·일 창생본부는 2014년에 정부 관계 기관과 각 부처가 관리하는 연구기관, 연수기관 등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2015년에 지자체의 이전기관 유치를 위한 정비 방안을 제출하여 필요성이나 효과를 검증한 후, 기관의 이전 지역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정부기관의 이전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2016년 '정부 관계기관 이전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으며, ① 지방창생의 관점에서 지역의 일-사람의 선순환이 가능한가, ②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기능의 유지·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가, ③ 왜 거기인가, ④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의 협력체제는 어떠한가 등을 검토하여, 대상 기관이나 향후 방침이 제시되었다.

중앙부처는 문화청, 소비자청, 총무성 통계국, 특허청, 중소기업청, 관광청, 기상청의 7개 부처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이전, 이전을 위한 검증, 지방 거점의 체제 정비 등 3가지 방향성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연수기관 등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이전을 확정하고, 각 기관을 통해 이전을 위한 연차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종합전략 수립 후 현재까지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은 많지 않다. 그러나 2016년에는 문화청의 교토 전면 이전이 확정되었으며, 지방이전에 맞춰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교토에 지역문화창생본부(가칭)를 설치하여 문화청의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계획적, 단계적으로 교토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본격적인 이전은 2017년부터 시작되어 도쿄의 중앙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연계 방법 등 과제에 대한 검증을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2017년 6월에 선행적으로 30명 정도가 이주·이전하였으며, 2018년부터 관련 입법절차 및 행정적 후속조치가 시행 중에 있다.

1차 이전으로 ICT 활용 화상회의를 통한 기술적 과제와 업무의 융합적 추진에 의해 관광, 마을 만들기 등 문화 관련 분야와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하여 새로운

정책 수요에의 대응가능 여부 등 업무상 과제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증, 그리고 이전에 따른 예산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이전으로 제기된 인구이동, 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많은 기관 및 일본 정부에 지방이전 모델의 케이스로서 향후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 문화청의 교토 이전에 대응하여 문화청은 대대적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이전에는 문화부와 문화재부 등 2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었던 부제를 폐지하고, 영역별 부서 편제를 기능별 중심으로 개편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독립행정법인을 다루는 문화시설은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장관직속 업무로 조정하였다. 문부과학성 본부에서 담당하던 박물관 업무(부분적으로 문화청에서 실제 담당) 및 학교예술교육 업무를 문화청으로 이관하였다. 새로운 문화청 조직은 10개 부서에서 12개 부서, 인력은 231명에서 25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10월 1일자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부제가 폐지되면서 차장(차관) 2명이 신설되었고, 장관 직속 업무를 처리하던 장관관방이 폐지되고, 지역문화창생본부가 설치되어 교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2-14〉 일본 문화청의 새로운 조직도

부서명	기 능	비고
종합	장관 1명, 차장 2명, 심의관 2명, 문화재감독관 1명	
정책과	• 문화청 전반의 인사, 기구정원, 예산, 표창제도 • 문화청 전체의 종합조정, 일본문화 발신, 문화정책조사연구	2021이전
기획조정과	• 국회대응총괄, 문화예술추진기본계획 • 박물관, 극장, 음악당 등 문화시설, 아이누문화, 문화독법	
문화경제·국제과	문화경제전략 등 각 성과의 연대조정 • 국제문화교류, 국제협력	
국어과	국어의 개선 및 보급에 관한 일 •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 교육에 관한 일	
저작권과	저작권의 권리·출판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일 • 저작권 등에 관한 조약에 관한 사무처리	

부서명	기 능	비고
문화자원활용과	부동산인 문화자원의 활용에 관한 일 • 세계문화유산·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일, 일본유산에 관한 일	2021이전
문화재1과	건조물 이외의 유형문화재의 조사·지정 등에 관한 일 •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문화재보존기술의 조사·지정 등에 관한 일	2021이전
문화재2과	건조물인 유형문화재의 조사·지정 등에 관한 일 • 기록물, 문화적경관,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의 조사·지정 등	2021이전
종무과	• 종교법인에 관한 인정 등에 관한 일 • 종교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인 지도 및 조언을 하는 일	2021이전
문화·창조과	무형·동산이 있는 문화자원의 활용에 관한 일(※2) • 생활문화진흥, 문화창조지원, 문화에 의한 지방창생·공생사회 추진	2021이전
예술·문화과	실연예술, 영화·미디어예술 등 동경단체창구 • 학교에서의 예술에 관한 교육기준설정 등 인재육성	
합 계	12개 부서	

2. 미국 : NEA Strategic Plan FY 2018~2022

NEA는 2014년에 2014-2018 기간 동안의 전략계획으로 'ART WORKS FOR AMERICA'를 발표하였고, 2018년 2월 2018-2022 기간 동안 예술 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2018~2022 Strategic Plan는 4개 전략목표(Goal)와 14개 과제(Objective), 1개 교차과제(Cross-Cutting Objective)로 구성되어 있다.

NEA 전략계획은 모든 기관 활동에 적용되며, 그 중 대부분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되어 있지만, 리더십 이니셔티브, 회의, 전략적 제휴(연방 기관, 주 예술 기관, 지역 예술 조직 및 기타 공공 및 민간 조직 간) 및 기관의 내부 운영에도 적용된다.

가. 비전과 전략목표

미션은 모든 미국인에게 예술 참여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창의적 역량을 강화, 비전은 모든 미국인이 예술 참여로부터 이익을

얻고, 모든 공동체가 예술을 통한 성과와 열망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국가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미션과 비전 아래 ① 최고의 우수 표준을 충족시키는 예술 지원, ② 전국적으로 우수 예술의 다양한 형태와 함께 대중 참여와 접근성을 도모, ③ 예술의 공헌에 대한 대중의 지식과 이해를 증진, ④ 조직적 우수성을 통해 NEA 미션 활성화 등 4개 목표를 설정하였다.

나. 전략목표별 과제

목표 1의 '최고의 우수 표준을 충족시키는 예술 지원을 실천'하기 위해 3개의 과제가 있다. ① 전국의 예술 활동과 전통을 존중하고 지원, ② 미국 미술 포트폴리오를 확장, ③ 국가의 문화인프라 강화 등이다.

목표 2의 '전국적으로 우수 예술의 다양한 형태와 함께 대중 참여와 접근성을 도모'를 실천하기 위해 4개의 과제가 있다. ① 미국인이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② 미국인들이 삶의 모든 단계에서 예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③ 예술이 공동체 생활의 구조에 통합 될 수 있는 기회 제공, ④ 예술과 건강 분야에서 창조적인 예술치료와 증거 기반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지원 등이다.

목표 3의 '예술의 공헌에 대한 대중의 지식과 이해를 증진'을 실천하기 위해 3개의 과제가 있다. ① 미국 전역의 지역 사회에서 예술 활동 및 예술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국 국민의 활력에 중요성을 강조, ②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한 예술의 가치와 영향에 대한 증거를 확대하고 홍보, ③ 예술가, 예술 작품 및 예술 활동의 국제 교류의 기회를 제공 등이다.

목표 4의 '조직적 우수성을 통해 NEA 미션 활성화'를 위해 4개의 과제가 있다. ① 효과적이고 빈틈없는 공적자금 관리인이 될 것, ② 대중에게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 ③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지식이 풍부하고 생산적이며 동기가 부여된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 ④ 최고 수준의 우수성을 충족하는 NEA 상을 추천할 패널로 시민을 모집하고 참여 등이다.

목표의 세부과제 외에 1개의 교차과제(Cross-Cutting Objective)가 있으

며, 이는 전략적 파트너십과 지원 경험을 통해 NEA가 자금을 지원하는 활동이 전국 곳곳의 다양한 지역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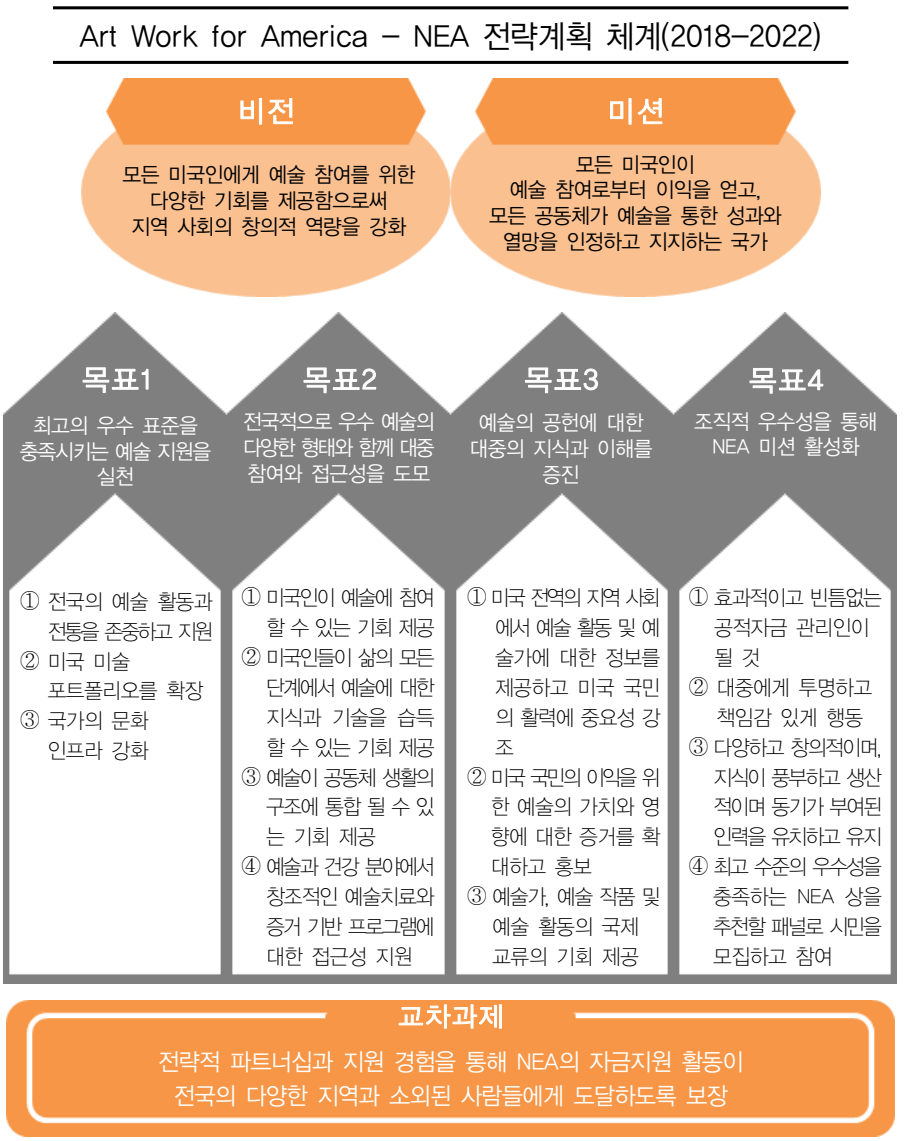

[그림 2-1] NEA Strategic Plan FY 2018~2022 전략체계

3. 영국 : ACE 전략계획(2020～2030)

2010년 ACE는 10년간 전략계획으로‘Great Art and Culture for Everyone’을 발표하였고, 2018년 가을 2020～2030 기간 동안의 새로운 전략 개발 초안이 발표되었다. 전략계획 초안에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변화를 위한 사례와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7가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략개발을 위한 틀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영국 전역의 37개 워크숍에서 전략 초안을 구체화하였다. ACE 계획수립 일정에 따르면 2020-2030년 전략초안은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두 번째 컨설팅을 받고, 이를 종합하여 2019년 12월에 2020~2030년 ACE의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고, 2020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본 연구보고서 작성 시점은 ACE의 2020-2030 전략계획 최종발표 전이므로 보고서에서는 ACE 2020-2030 전략개발을 위한 초안 보고서를 다루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변화를 위한 사례

ACE는 예술과 문화의 가치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전략계획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확인하였고, 이를 변화를 위한 근거 사례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단순히 사업의 추진실적, 양적 성과지표의 달성 등이 아니라 전략계획이 지향하는 근본적인 목표 및 미래상과 관련하여 분석한 것이다. 즉, ‘Great Art and Culture for Everyone’이 지향하는 모두를 위한 문화, 어느 지역, 어느 계층도 배제됨이 없고 균등한 문화의 접근 기회, 다양성의 증진, 문화에 대한 가치 증진, 혁신적인 창조산업과 인력양성, 조직문화, 예술단체의 역량강화 등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전략계획의 목표가 계량적인 목표와 함께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성과를 평가하고 환류하는 관점과 관련이 있다.

- 인구 전체에서 '예술과 문화'가 어떻게 정의되고, 이해되고 가치 평가되는지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Across the population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how 'arts and culture' are defined, understood and valued.)
- 문화분야 공적자금과 참여 수준에는 여전히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및 지리적 차이가 있습니다(There are still widespread socio-economic and geographic variances in levels of engagement with publicly funded culture.).
-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교 내외부에서 문화와 창조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전국에서 평등하지 않습니다(The opportunitie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to experience culture and creativity inside and outside school are not equal across the country.).
-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커졌지만 창조 산업과 공적 자금 지원을 받는 문화 단체 간에는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다(Although awareness of the issue is greater than it used to be, there remains a persistent and widespread lack of diversity across the creative industries and in publicly funded cultural organisations.).
- 공공 기금으로 운영되는 문화 단체의 비즈니스 모델은 주로 빈약하며 일반적으로 디지털 경제 내에서 운영되고 공공 기금이 감소하는 것과 관련된 도전과 기회를 해결할 수 있는 유연성이 부족합니다(The business models of publicly funded cultural organisations are often fragile and generally lack the flexibility to address emerging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especially those relating to operating within the digital economy and declining public funding.)
- 많은 창조적 실무자와 문화 단체의 지도자들은 혁신, 위험 감수 및 지속적인 인재 개발에서 퇴보를 보고합니다(Many creative practitioners and leaders of cultural organisations report a retreat from innovation, risk-taking and sustained talent development.).

나. 현재까지 성과

ACE는 지난 10년 동안 국가의 문화 발전과 창조적 업적에 긍정적인 영향 미친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였다. 성과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하고 있으며 첫째, 공공 기금으로 운영되는 문화 단체를 포함한 창의적인 산업의 품질과 혁신에 대한 국가적 및 국제적 명성이 날로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창조적인 재능의 복잡한 요구를 보다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관객들에게 보다 매력적이고 접근하기 쉽다고 보고하였다. 셋째, 결과적으로 영국의 여러 도시와 마을은 10년 전에 비해 문화적으로 크게 강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지방 정부, 고등 교육, 지역과 기업의 파트너십, 예술위원회를 포함한 국가 및 지역 파트너십에 의한 지속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실현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① 공공 기금으로 운영되는 문화 단체를 포함한 창의적인 산업의 품질과 혁신에 대한 국가 및 국제적 명성을 높이고 있다. (We have a grow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putation for the quality and innovation of our creative industries, including our publicly funded cultural organisations)
② 창조적인 재능의 복잡한 요구를 보다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관객에게 보다 매력적이고 접근하기 쉽다.(We have cultural buildings that are now better able to meet the complex demands of our creative talent, as well as being more attractive and accessible for audiences)
③ 그 결과 영국 전역의 많은 도시와 마을이 10년 전과 비교하여 크게 강화되었다. (And, as a result, many cities and towns across England have a greatly strengthened cultural offer compared with a decade ago.)

다. 미래계획에 대한 생각(기본방향)

2030년까지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Arts Council England)는 국가가 진정으로 창조적인 국가, 구체적으로 모든 지역 사회의 문화를 기념하고 모든 시민들의 창의성을 장려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삶의 모든 시점에서 모든 시민은 자신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한편으로는 삶과 관련된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것이 영국 예술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술가와 문화 단체,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라. 2030년까지 달성할 성과

앞서 변화를 위한 사례와 현재까지의 성과, 미래에 대한 계획 등을 고려하여 ACE는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 7가지를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종류의 문화와 창의력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나라(A nation that supports and celebrates culture and creativity of every kind)
② 모든 배경의 사람들이 문화에 대한 공공 투자로부터 혜택을 받음(People from every background benefit from public investment in culture)
③ 창조적 R&D 및 인재 개발의 활성화(Creative R&D and talent development are flourishing)
④ 영국의 다양성은 우리가 지원하는 조직과 그들이 생산하는 문화에 충분히 반영됨(England's diversity is fully reflected in the organisations we support, and in the culture they produce)
⑤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의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삶을 인정받고 양성됨(The creative and cultural lives of all children and young people are recognised and nurtured)
⑥ 문화 단체는 역동적이며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적절성이 있음(Cultural organisations are dynamic, focused on the future, and relevant)
⑦ 잉글랜드는 창조 산업의 질에 대한 세계적 명성을 지속적으로 높임(England continues to increase its global reputation for the quality of its creative indus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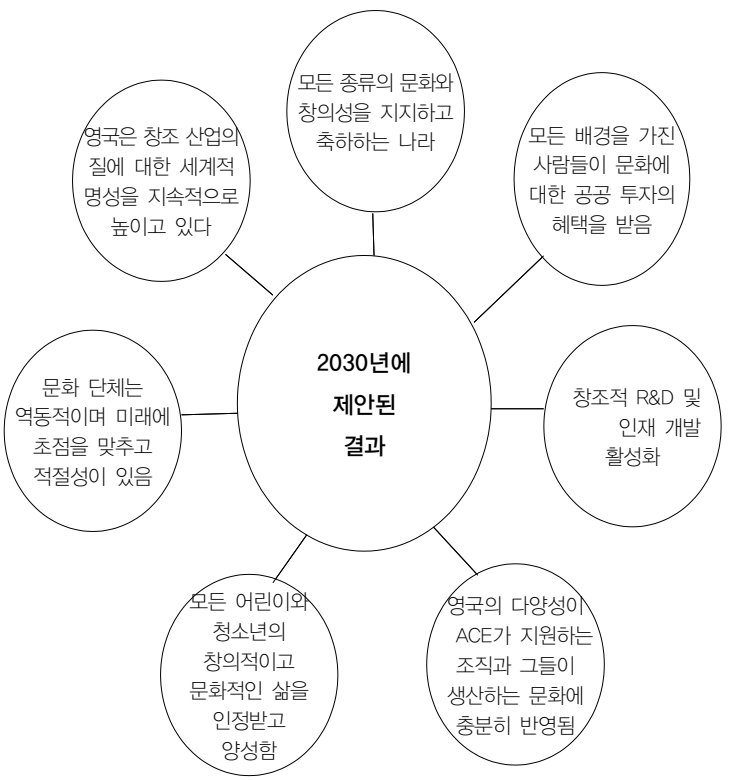

[그림 2-2] ACE 전략계획(2020~2030)의 7가지 성과목표

성과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에서 모든 종류의 문화와 창의력을 지원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① 전국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더 광범위한 문화와 개인 창의력에 도전(공개적인 캠페인, 대회 및 행사 등), ② 지역 사회 주도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 및 파트너십을 개발, ③ 문화적 경험과 창의적인 기회를 통해 건강과 복지(건강 및 사회 복지 제공자, 스포츠 클럽 등)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④ 문화 및 창의성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는지를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측정 기준 및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세계 정상급 연구 기관과 파트너십 구축, ⑤ ACE 지식개발과 커뮤니티 주도 문화활동 및 새로운 창의성에 대한 지식과 전문지식을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모든 배경의 사람들이 문화에 대한 공공 투자로부터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① 공공 기금으로 조성 된 문화 단체의 장소 기반 파트너십과 국가 네트워크에서의 결과를 공유하도록 요구, ② ACE가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여 작업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 ③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대중에게 유용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 ④ 지역과 관련된 문화적 성과를 내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더 적은 지원을 받는 장소에 더 많은 투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창조적 R&D 및 인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① 경력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 모든 배경에서 독립 창작 실무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 ② 공공 기금으로 운영되는 문화 단체가 자신의 조직 외부에서 창의적인 인재 및 컬렉션 전문성을 개발하도록 장려, ③ 혁신과 창조적 연구개발에 초점을 맞춘 문화단체, 대학, 기술기업 간의 파트너십 매개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④ R&D에 체계적으로 투자하고 상당한 '실패' 비율을 용인하는 창의적인 비즈니스가 장기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인식을 확대, ⑤ 관객을 즉시 찾지 못하는 혁신적인 신작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 지원을 제공, ⑥ 학습과 혁신을 촉진시키는 국제 협력, 공동 커미션 및 교환에 투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영국의 다양성이 ACE가 지원하는 조직과 그들이 생산하는 문화에 충

분히 반영하기 위해 ① 모든 배경의 사람들에게 창조 산업 분야에서의 경력 홍보, ② 다양한 인력채용과 유지에 대한 전문성과 ACE의 지식개발, ③ 문화단체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장벽 제거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④ 다양한 미래 지도자의 개발에 투자(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파견, 펠로우십, 멘토링 등), ⑤ ACE가 대규모 문화 단체의 선임 리더십 및 거버넌스 임명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⑥ 다양성 목표 달성에 대한 발전과 연결된 문화 단체에 기금 지원, ⑦ 공적 자금이 지원되는 문화 단체에서 리더십의 전환을 권장(성과 계획, 고정기간 계약 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의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삶을 인정받고 양성하기 위해 ① 청년의 문화와 창의력에 대해 배우고 장려, ② 부모, 보호자, 교사, 고용주, 어린이 및 청소년이 가치를 인정하는 고품질의 관련 예술 교과 과정 개발을 지지, ③ 학교의 교과 과정 전반에 걸쳐 창의력의 중요성에 대해 지지(기술 개발 및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 측면)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④ 취학 전 자녀를 둔 가정에 고품질의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문화 제공을 제공하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창출(초창기 공급자, GPs, 도서관, 가족), ⑤ 다양한 문화 및 교육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커미션 제휴를 통해 양질의 지역 문화 교육 제공, ⑥ 공공 기금을 지원하는 문화 단체가 어린이 및 청소년, 가족 및 보호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문화 경험을 공동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섯째, 문화 단체는 역동적이며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적절성이 있기 위해 ① 새로운 수입 흐름과 새로운 시장을 개발할 때 특히, 국내 및 국제적으로 창조 산업 분야의 기업조직 및 지도자들로부터 학습, ② 기술 회사와 협력하여 문화 기관용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의 smart한 사용을 모델로 하는 프로그램 및 연구 프로젝트 투자, ③ 기업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자금 및 투자 도구 개발(크라우드 펀딩, 보조금 대체, 경품 및 도전 수상), ④ ACE의 새로운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개발하고 문화 단체에 적절한 조언·지도 및 교육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⑤ 국가 및 지역 기관과 연결하여

문화 기관에 개선된 비즈니스 지원 제공, ⑥ 문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시간제한이나 창업투자의 활용도 높임, ⑦ 매개와 파트너십 및 합병을 촉진하여 '백 오피스', 교육, 마케팅과 같은 기능 전달 향상, ⑧ 공공 기금을 받는 문화 단체들은 환경 지속가능성 목표를 발전시킬 것을 요구, ⑨ 미래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둔 고품질 및 관련 리더십 프로그램 투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일곱 번째, 잉글랜드는 창조 산업의 질에 대한 세계적 명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① 선도하는 창의적 실행자, 문화 단체 및 소장품의 명성을 쌓기 위해 진흥 활동과 글로벌 파트너십 활용, ② 공공 기금으로 운영되는 문화 단체가 지속적으로 그들의 문화적 제안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청중 및 동료로부터 피드백을 구할 것을 요구하고 지원, ③ 여행과 다른 형태의 배부에 투자하여 가장 가치 있는 문화활동 및 수집품이 국내외에서보다 광범위하게 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 ④ 문화 단체들이 국제적인 동료들과 협력하고 그들과 배울 수 있도록 장려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프랑스 문화부 및 중장기계획

가. 프랑스 문화부(Ministere de la Culture)

프랑스 문화부는 1959년 샤를 드골에 의해서 창설이 되었고, 1997년에서 2017년까지는 문화통신부로 불렸다. 현재 문화부는 문화통신부와 크게 조직이 개편이 된 것은 없다. 프랑스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은 주로 문화통신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국가 단위의 공공서비스 제공 단체와 문화부 산하 공공예술기관들이 분야별 문화예술 행정, 지원, 예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 문화부는 6개의 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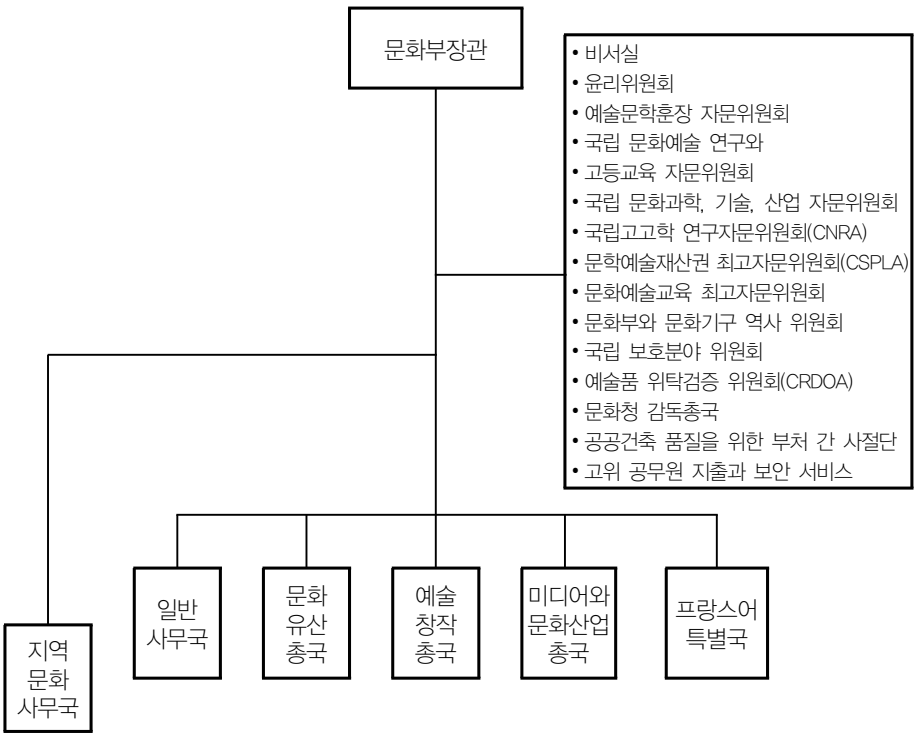

[그림 2-3] 프랑스 문화부 조직도

일반사무국(Secrétariat Général)은 10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Cycle des hautes études de la Culture(문화연구), Délégation à l'information et à la communication(정보통신), Département de l'action territoriale(국토활동), Département de la programmation et des moyens(프로그래밍), Département de la stratégie et des moyens(전략), Service des affaires financières et générales(재무 총무), Service des affaires juridiques et internationales(법무 및 국제), Service de la coordination des politiques culturelles et de l'innovation(문화정책 및 혁신조정), Service des ressources humaines(인사), Sous direction des systèmes d'informations(정보시스템) 등이다.

문화유산총국은 1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Département des affaires

européennes et internationales(국제연합협력부), Département de la communication(소통부), Département de la form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과학기술정보부), Département de la politique des publics: (공공정책부), Département du pilotage de la recherche politique(정책연구운영부), Département des systèmes d'informations patrimoniaux(문화유산정보시스템부), Inspection des patrimoines(문화유산감독부), Mission de la sécurité, de la sûreté et de l'accessibilité(안전, 보안, 접근성부), Service de l'architecture(건축서비스 담당), Service interministériel des archives de France(프랑스 고문서 부처간 서비스 담당), Service des Musées de France(프랑스 박물관 서비스 담당), Service du Patrimoine(문화유산 서비스 담당), Sous direction des affaires financières et générales(예산 및 총괄 업무 지도국) 등이다.

예술창작국(DGCA)은 9개 부처로 구성되어 있다. Service des arts plastiques (순수미술), Délégation au théâtre(연극), Délégation à la musique(음악), Délégation à la danse(무용), Inspection de la création artistique(예술창작조사), Sous-direction de l'emploi,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일자리, 고등교육, 연구 관리), Sous-direction de la diffusion artistique et des publics(예술확산), Sous-direction des affaires financières et générales(재정), Mission de la communication(소통) 등이다.

예술지원업무는 예술창작국(direction générale de la création artistique)이 조형예술과 공연예술 분야의 정부정책을 정의·조직·평가하고 예술 창작지원, 예술 전문인양성 보조, 예술 수집품수 증가, 대중의 접근성 증대와 유통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예술창작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술과 공연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예술창작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술창작국은 조형 예술 서비스, 사진심의회, 극장심의회, 음악심의회, 무용심의회, 고용·고등 교육 및 연구, 대중의 예술과 공공부문의 조화, 재정과 본질적인 문제들, 예술창작물 검사, 커뮤니케이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음. 문화부 내 예술창작국은 예술

분야의 정책 기획과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위한 지원 등을 담당한다.

미디어와 문화산업총국은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Département des affaires financières et générales(예산 및 총무부), Service du Livre et de la Lecture(도서와 독서 서비스), Service des médias(미디어 서비스), Sous-direction du développement de l'économie culturelle(문화경제 개발 지도국) 등이다.

프랑스어특별국(Délégation à la langue Française et aux langues de France)은 6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Bureau des affaires générales et financières(일반 및 재무담당), Mission développement et enrichissement de la langue(언어의 발전), Mission emploi et diffusion de la langue Française(프랑스어의 보급), Mission langues de France et Outre-Mer(프랑스어의 해외 전파), Mission langues et numérique(언어의 발전과 디지털), Mission sensibilisation et développement des publics(언어인식 및 청중 개발) 등이다.

지역문화사무국(Les directions régionales des affaires culturelles)은 21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Drac Auvergne-Rhône-Alpes(오메르뉴 론 알프 Drac), Drac Bourgogne-Franche-Comt(부르고뉴프랑슈콩테 Drac), Drac Bretagne(브리타니 Drac), Drac Centre-Val de Loire(상트르 Drac), Drac Corse(꼬르스 Drac), Drac Grand Est(그랑테스트 Drac), Dac Guadeloupe(과들루프 Dac), Dac Guyane(기아나 Drac), Drac Hauts-de-France(오드프랑스 Drac), Drac Île-de-France(일드프랑스 Drac), Dac Martinique(마르티니크 Drac), Dac Mayotte(마요트 Drac), Drac Normandie(노르망디 Drac), Drac Nouvelle-Aquitaine(누벨아키텐 Drac), Mission aux affaires culturelles de Nouvelle-Calédonie(누벨칼레도니 문화업무), Drac Occitanie(옥시타니 Drac), Drac La Réunion(레위니옹 Drac), Drac Pays de la Loire(페이드라루아르 Drac), Drac Provence-Alpes-Côte d'AzurZ(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 Drac), DCSTEP Saint-Pierre-et-Miquelon(생피에르 미클롱 DCSTEP), Mission

aux affaires culturelles de Polynésie Française(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문화 업무) 등이다.

나. 프랑스 중장기문화정책(2017-2020 문화부 연구전략)

장기적인 프랑스 문화정책에 대한 정책 방향 설정은 '2017-2020 문화부 연구전략'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2017-2020 문화부 연구전략은 2014-2016년 동안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 이 연구전략 수립은 국가경쟁력, 공공기관, 문화 고등교육기관 그리고 문화노조 대표단체들이 참여했다. 2017-2020 연구전략 수립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2014년에는 지난 문화통신부 실태파악과 진단을 시행했고, 이와 동시에 새로운 연구전략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했다. 2015년에는 문화통신부(현 문화부)와 프랑스국립과학연구원(CNRS)의 협정서 체결, 2016년에는 문화통신부에서 연구전략 프로젝트 수립을 추진했다. 이러한 연구전략 수립과 관련한 프랑스 문화부 문화정책은 문화민주주의와 '지식(savoirs)의 전수'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민주주의와 지식의 전수는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는 논리이다.

최근 프랑스 문화부의 조직운영과 재정은 국내차원에서의 고려뿐만 아니라 유럽차원에서의 단계에서도 함께 고려가 되고 있다. 국내 프로그램은 '프랑스 국립연구소 프로그램(programmes de l'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 ANR)'과 미래 투자 프로그램(Programme d'investissements d'avenir, PIA), '유럽연합의 혁신과 연구의 기본 프로그램(programmes-cadres de recherche et d'innovation de l'Union europeenne)'은 프랑스 문화정책과 연계되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에서 드러난 프랑스 문화부의 주요 테마는 ① 창작·창의성·혁신, ② 지역·지속 가능 개발·통합, ③ 사회·교류·규제 등 3가지이다. 주요 테마를 실천하기 위한 실천계획은 다음과 같다.

미래 투자 프로그램(PIA)는 570억 유로(57 milliards d'euros)를 3단계에 걸쳐서 집행이 되었다.

PIA 1 :2010년, 350억 유로
- Enseignement supérieur et formation : 11 Mds€
- Recherche : 8 Mds€
- Fili res industrielles et PME : 6,5 Mds€
- D veloppement durable 5 Mds€
- Numérique : 4,5 Mds€

PIA 2: 2014년, 120억 유로
- Enseignement supérieur et recherche : 3,7 Mds€
- Transition énergétique, rénovation thermique et ville de demain : 2,3 Mds€
- Innover pour une industrie durable : 1,7 Mds€
- Excellence technologique des industries aéronautiques et spatiales : 1,3 Mds€
- Excellence technologique des industries de défense : 1,5 Mds€
- Jeunesse, formation et modernisation de l'Etat : 600 M€
- Economie numérique : 600 M€
- Santé : 400 M€

PIA 3: 2017년, 100억 유로
- Enseignement supérieur et recherche : 2,9 Mds€
- Valorisation de la recherche : 3 Mds€
- nnovation et développement des entreprises : 4,1 Mds€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5억 유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이루는데 쓰였다.

1) 문화를 위한 혁신과 연구

(1) 혁신을 위한 장벽을 제거

과제 1 : 예상 기간(2017-2020), 문화부의 주요 테마의 기초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을 위한 학제간 연구 프로그램 시작

과제 2 : 예상 기간(2017-2020), 2016-2020년 기간 동안 프랑스국립과학연구원(CNRS)과 문화부 사이의 협정에 따른 세미나 혹은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 개발

과제 3 : 예상 기간(2017-2018),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발전에 따른 프랑스국립정보자동화연구소(l'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en informatique et en automatique, Inria)와 문화부의 협정서를 근간으로 연구개발 프로그램

시행

과제 4 : 예상 기간(2017년부터 시작), 기술이전 가속화하기 위한 기업, 프랑스국립과학원, 대학의 관계 강화

과제 5 : 예상 기간(2017년 새로운 시도), 문화접근과 관련된 프랑스인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연구조사 지원

(2) 문화영역 연구에 대한 국가차원의 우호적인 미래 프로그램 방향 기여

과제 6 : 예상 기간(2017-2020), 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연구주제에 대한 관심 강화(예를 들어, 아비뇽 축제에서 '연구와 창작의 만남'이라는 주제, 또는 국립연구소의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유산기금의 확산을 위한 실효적 추진)

과제 7 : 예상 기간(2017-2020), 문화기금의 운영의 효율성 강화 조치

(3) 참여적 접근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 도전에 대한 연구 장려

과제 8 : 예상 기간(2017년 새로운 시도), 시민사회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시행. 즉 문화예술창작을 위한 공간 제공

2) 문화연구와 사회 사이에 대화 확대

(4) 정부의 지원 및 추진 연구에 대한 소통 강화

과제 9 : 예상 기간(2017년 새로운 시도),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연구 관련 직업을 알리는 캠페인 시행

과제 10 : 예상 기간(2017년 새로운 시도), 대중 혹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연구활동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대중적 행사 기획

과제 11 : 예상 기간(2017년부터 시작), 문화부 서비스와 문화부 역사위원에서 문화연구에 대한 출판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온라인으로 연구의 결과를 제공

과제 12 : 예상 기간(2017년 새로운 시도), 젊은 연구자들의 문화연구에 대한

‘학술상(pix)’ 신설

(5) 문화부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를 보다 넓게 확산

과제 13 : 예상 기간(2017년 새로운 시도), 연구 결과의 열린 이용과 접근성 강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과제 14 : 예상 기간(2017년부터 시작), 문화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구결과와 연구출판물에 대한 대중적 확산을 위한 조치

과제 15 : 예상 기간(2017년부터 시작), 문화와 과학의 연계 강화

3) 유럽과 국제적 영역에서 연구문화 정착

(6) 유럽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에서 문화고등교육과 연구의 위상 강화

과제 16 : 예상 기간(2017년부터 시작), 유럽연합 ‘Horizon 2020’ 프로그램에 대한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의 투자에 대한 평가와 분석

과제 17 : 예상 기간(2017년 새로운 시도), 유럽연합 문화프로젝트의 연계를 위한 조치

과제 18 : 예상 기간(2017년부터 시작), 학생, 교육자, 문화부의 과학자 연구자들의 유럽 차원에서 교류 장려

과제 19 : 예상 기간(2017-2020), 석사와 박사과정의 유럽 차원에서의 공동학위 용이화(예 : Creator Doctus 프로젝트)

(7) 연구에 대한 유럽차원의 토대 발전

과제 20 : 예상 기간(2017-2020), ‘European Research Infrastructure for Heritage Science’와 프랑스 문화부 문화유산 담당, 그리고 문화유산 과학재단의 연계 강화

과제 21 : 예상 기간(2017-2020), 프랑스 기초연구시설 ‘Huma-Num’ 에 문화기관이나 문화부 서비스의 참여 용이화. 한편 유럽 연구시설의 컨소시엄

에 프랑스 단체 참여

(8) 유럽차원의 개발을 위한 미래 프로그램 지원

과제 22 : 예상 기간(2017-2020), 'Horizon 2020' 작업 프로그램 구상에 참여. 유럽연합의 미래를 위한 혁신과 연구에 영향 제공. 유럽연합과의 공조 속에서 프랑스 위상 제고

과제 23 : 예상 기간(2017-2020), 다양한 재정적 지원 접근 장려(예 : '문화유산과 글로벌 교류: 유럽의 새로운 도전'과 같은 공동연구기금에 참여)

(9) 문화부의 연구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공조와 협력 증진

과제 24 : 예상 기간(2017-2018), 2018 유럽문화유산의의 해에 문화부 차원에서의 참여를 위한 연구와 프로젝트 개발

과제 25 : 예상 기간(2017년부터 시작), 국제, 유럽 그리고 MOU를 통한 공동협력사업에 문화부의 지원과 참여를 위한 연구 전문가 참여 강화

4) 연구와 고등교육에서 문화의 역할 확대

(10) 연구를 위한 다른 기관과의 협력

과제 26 : 예상 기간(2017-2019), 문화부와 공공기관의 목적과 실천 계약에서 연구를 중심에 두고, 지방자치단체도 학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장려

과제 27 : 예상 기간(2017-2020, ENSA에만 적용), 문화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과제 28 : 예상 기간(2017년 새로운 시도),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연구에 대한 인증

과제 29 : 예상 기간(2017년부터 시작), 문화예술 관련 학제간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신설

(11) 문화부의 연구와 연구인력의 가치를 높게 평가

과제 30 : 예상 기간(2017-2020), 연구자 연구환경 지원

과제 31 : 예상 기간(2017-2020), 문화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자의 연구활동 중시

(12) 창작과 문화유산 분야에서 과학적 인력과 박사의 창의성 장려

과제 32 : 예상 기간(2017에 시행),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고등문화교육기관 장려

과제 33 : 예상 기간(2017-2020), 박사과정 연구와 문화부 주요 정책과 연계

과제 34 : 예상 기간(2017년부터 시작), 고등교육기관에서 연구 및 학습을 위한 재정지원 환경 개선

(13) 문화고등교육에서 연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위한 새로운 시도

과제 35 : 예상 기간(2017년부터 시작), 연구와 교육 기관의 상호간 교육을 위한 플랫폼 신설 적합성 평가

5) 문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수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14) 연구와 고등교육에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구축

과제 36 : 예상 기간(2017년부터 시작), '국립 고등교육과 문화예술 연구의회'의 전략적 주제에 대한 논의

(15) 문화부의 연구전략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추진

과제 37 : 예상 기간(2017년부터 시작), 대규모 연구 테마의 적합성과 합당성의 정기적인 평가를 위한 '국립 고등교육과 문화예술 연구의회'의 위원회 설립

(16) 고등교육과 연구성과의 연례 평가를 위한 지표와 목적 확인

과제 38 : 예상 기간(2017년에 새롭게 시작), 문화부에 의해서 지원되거나

시행하는 연구의 적합성과 효과성 평가를 위한 과학적 측정방법 시행

(17) 문화부 지원 또는 추진 연구에 대한 감시고등교육과 연구 평가를 위한 고등위원회 관리

과제 39 : 예상 기간(2017-2020), 문화고등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 프로그램을 고려한 가운데 '문화적 문제제기' 를 좀 더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HCERES와 협력 강화

(18) 문화부 연구 및 정책 우선 순위에 예산의 투입

과제 40 : 예상 기간(2017년부터 시작), 전략 실천을 위한 예산 강화

(19) 정책 실천을 위한 전문인력 수급 전략

과제 41 : 예상 기간(2017-2020), 인력에 대한 수급전략 수립

과제 42 : 예상 기간(2017년부터 시작), 전략의 실천을 위한 정책의 유연화 강화

(20) 연구 프로젝트 확립을 위한 분권적 서비스와 중앙서비스 운영 역량 강화

과제 43 : 예상 기간(2017-2020), 프로젝트에 맞는 재원과 관련해서 인력과 재정에 대한 고려. 중앙정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별화된 옵션에 대한 연구

제3장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환경변화 및 수요 분석

제1절

계획 기간 정치·경제·사회환경 변화 분석

1. 사회문화 환경변화 분석

가. 사회인구적 구조변화

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2017년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시기에 도달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14.2%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중 0~14세 인구비율은 13.0%로 세계평균 2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5%로 세계평균 9% 보다 높았다. 출산시 평균 기대수명은 83세로(남자 79.7년, 여자 85.7년) 매년 높아지고 있다.[2)]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인구수 감소(2033년 이후)로 초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2016년), 노인인구는) 707.6만명(2017) → 1,295만명(2030) → 1,853만명(2050)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7년 1.05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한 0명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2020년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의 은퇴에 따라 새로운 변화와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은퇴자 및 고령자들은 지금까지는 노후 보장에 대한 장치가 부족하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문화소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세대였다. 그러나 베이비 부머 세대는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이고, 일정한 노후 소득

2) 인구보건복지협회·유엔인구기금(UNFPA). 2019 세계인구현황보고서(한국어판)

(자산)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또한 생업에 몰두한 젊은 시절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개발과 창조적 노년생활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가장 상징적인 것이 베이비 부머 세대는 노인정을 찾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싫어하며, 이전의 세대와 자신들은 다르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Creative aging에 주목하고 새로운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미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50+ 신중년이라고 명명하여 생애전환기 은퇴자들에게 새로운 인생설계, 삶의 회고와 공유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50+ 세대의 퇴직 후 새로운 인생 길 찾기를 위해 서울시 50+ 재단을 설립하고 50+ 맞춤형 교육 및 지원, 일자리 모델 개발, 네트워킹 등을 추진하며, 권역별 50+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베이비 부머는 스마트 부머(Smart boomer) 세대로 새로운 실버문화를 주도하는 주역이 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고학력자, 인터넷이용에 익숙한 세대로 스마트폰 이용, SNS 활동 등 과거 은퇴세대와는 다른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50+', '창녕세대(創齡)' 등 다양한 용어로 칭하고 있다.

고령층과 신중년층은 은퇴 후 여가시간이 많고 다른 세대보다 문화생활 등 여가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특징적이다. 젊어진 중·장년층이 음악, 예술, 스포츠 등 적극적 여가소비 주체로 부상하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령인구의 증가세는 가속화되고 있어 이들의 여가욕구 충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2018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14.3%(738만1천명, 통계청)인데, 한국은 고령인구(65세 이상)와 신중년(5060세대)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65세 이상 20% 이상)이다. 또한 퇴직한 신중년(5060세대)은 2017년 기준 1,37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 생산가능인구의 1/3 수준이며, 2027년 신중년 비중은 31.5%까지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통계청, 2016).

인구 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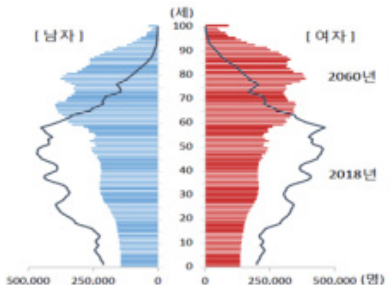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신중년 인구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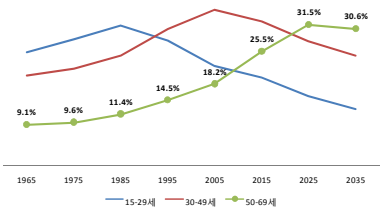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그림 3-1] 고령층 인구추계

2) 지역의 인구 감소

출산율이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낮아지면서 인구감소 시기가 더 빨라지고 절대적인 인구가 감소되면서, 지역에서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생산가능인구가 고령화되고 감소하며, 국제경쟁력, 다양한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으로 인구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 지역에 소재한 기업과 공장의 이전, AI 및 자동화 기기의 급속한 확산,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 소재 대학의 폐교 등으로[3] 지역에 따라서는 향후 5년 이내에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다.[4]

저출산 시기에는 문화 분야에서는 주요 문화소비층인 10-30대 계층의 인구가 더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문화소비 경험이 많은 계층이 40대 이상으로 확대되고, 반면에 고령층 인구의 증가로 문화복지정책의 확대, 세대 간 맞춤형,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정책의 중요성이 강화될 것이다. 단순히 문화복지

3) 이미 2019년도에 부산, 대전, 충남, 충북, 강원, 경북 등 6개 시도는 고교 3학년 학생 보다 지역의 4년제 대학 모집정원 숫자가 많은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지방 학생들의 서울진출을 고려할 때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교육부는 대학 수험생이 매년 5~6만명씩 감소되어 2021년도에는 본격적인 역전현상이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38개 대학이 폐교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역전현상에서는 상위권 대학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실제 대학과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4) 제2차 기본계획 기간은 아니지만 한국고용정보원은 향후 30년 후의 지역소멸을 기준으로 한 지역소멸위험지역이 전국 지자체의 43%인 97곳으로 수도원 도시지역과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19.11.5.)

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삶의 의미와 활력을 제고하는 문화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분산된 고령화 문화정책을 보다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은 문화서비스 전달체계의 새로운 구축을 필요로 한다. 기존의 문화시설 확충 기준 및 유형, 기존 문화시설의 새로운 활용체계, 수직적인 전달체계 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한다. 또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3)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문화소비의 변화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은 2010년 23.9%에서 2017년에는 28.6%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18). 1인 가구는 2020년에는 전체 가구의 29.6%, 2030년에는 30%를 넘어서면서 저출산과 연계하여 전통적인 4인 가구 비율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5] 또한 1인 가구는 젊은 층만이 아니라 노인층에도 확산되고 있고, 2035년에는 60세 이상 노인들의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1인 가구 비율의 5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싱글라이제이션(singleision)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솔로이코노미, 싱글규모, 가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나홀로 라이프 1인 문화콘텐츠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1인가구는 나를 중심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행복과 자기만족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가와 레저를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1인 가구는 일반적으로 소비패턴이 전통적인 다인 가구의 소비패턴과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박지혜 외, 2015). 1인가구는 일반적으로 문화소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화 및 공연, 여행 분야의 1인 1매 티켓 구매 비율, 나홀로 여행 비율이 증가하고, 이를 위한 전용공간 및 프로그램, 이벤트 등이 증가하고 있다.[6] 싱글족을

5) 2020년 가구유형별 추계비중은 1인 가구 29.6%, 2인 가구 29.0%, 3인 가구 21.1%, 4인 이상 가구 20.4%로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많아질 것이고, 60세 이상 1인 가구가 전체 1인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3%(2013) → 38.0%(2020) → 43.0%(202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장래가구추계),

6) 사회현상을 잘 반영하는 TV 프로그램에서도 나혼자 산다. 식샤를 합시다, 1인 가구 요리프로그램, 반려견 등의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

겨냥한 1인 맞춤형 문화서비스, 플랫폼 비즈니스와 결합한 문화활동 배송서비스, 소셜 액티비티 플랫폼 서비스 등이 확산될 것이다.

전통적인 가구형태가 축소되면서 전혀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등장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이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반려견과 관련된 도서, 문화프로그램, 공간, 반려동물을 이해하고 소품을 제작하는 방법 등 인스타그램(SNS)의 인기가 출판과 굿즈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1인 가구 문화서비스 및 트렌드는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인층의 1인 가구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루어진다고 하더라고 주로 노인들의 고독, 복지 등과 연계하여 다루어지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문화서비스 관점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인 가구를 포함하여 1인 가구의 증가는 혼삶(혼자의 삶)'의 저변이 확대되면서 구체적인 삶의 의미를 비롯해 행복의 참의미와 소규모 공동체에 대한 조명 등 다양하고 분화된 콘텐츠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주의와 강화와 함께 공동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면서 문화의 경험을 통한 공동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특히 노인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한 맞춤형 문화서비스, 공동체 문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단위 : 만 가구, %)

출처 : 뉴시스 기사(2018.9.28.) 이미지 인용

[그림 3-2] 1인 가구 변화 추이 : 2000-2017년

4) 밀레니얼(millenial) 세대의 경제활동 본격화

주요 소비계층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후속 세대인 밀레니얼(millenial) 세대로 전환되고 있으며, 소비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0~1990년초 출생한 베이비 부머 세대(1955년~1963년 사이 출생)의 자녀로 1990~2000년대 유년기를 보냈고 현재 20~30대 후반인 세대를 의미한다. 밀레니얼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빠른 발달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온 밀레니얼 세대는 교육수준이 높고 지식과 콘텐츠 수집과 전달이 빠른 특징을 가진 세대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기존의 세대 가치관·성향 측면에서 기성세대와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소비패턴은 주로 주택·차량 구매 등 물질적 소유보다 여가활동, 여행 등 문화적 경험을 중시하여 문화소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성세대보다 어릴 때부터 가족여행 경험이 익숙한 밀레니얼세대에게 여행은 높은 가치를 지닌 요소가 되었다. 즉 가격대비 기능 및 성능을 중시하던 가성비(價性比) 추구 소비에서 가격대비 만족감을 중시하는 가심비(價心比) 추구 소비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밀레니얼세대는 소비트렌드를 이끄는 세대이기도 하면서 주거 불안, 소득 감소 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는 2017년 발간한 '글로벌 부 보고서(Global Wealth Report)'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학자금 대출, 대출 규제, 집값 상승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별 평균소득은 29세 이하가 182만원, 60세 이상이 186만원으로 29세 이하 청년층이 60세 이상 노년층보다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과 자신을 위한 소비를 선호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이 여가 트렌드를 휴식, 혼술, 혼밥 등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쉼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2020년 이후 밀레니얼 세대는 노동인구의 35%를 차지하고 경제활동의 주력 세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 주력세대로 밀레니얼 세대가 부상하고, 밀레니얼 세대의 문화적 경험을 중시하는 특성이 문화소비를 보다 증폭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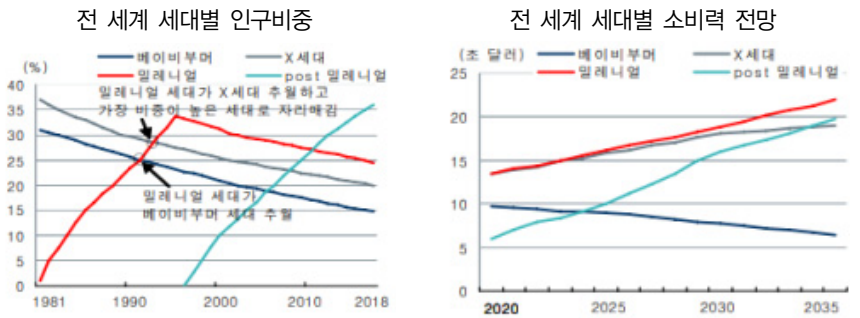

자료 : UN Population Division, FT;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8), 밀레니얼 모멘트(millennial moment) 주 : 연간 소득총액 추정치
자료 : World Data Lab, FT;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8), 밀레니얼 모멘트(millennial moment)

[그림 3-3] 세대별 인구 및 소비력 추정

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여가시간 확대

2018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1년 7월 1까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처벌조항을 가지고 있어 여가시간이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여가시간 확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중시 경향과 연계하여 더욱 확산될 것이다.

여가시간 확대는 문화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반드시 절대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 5일 근무제 시행 당시(법정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 문화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기대만큼 증가하지는 않았다. 주간 근무시간 및 업무강도의 확대에 따라 주말에 피로가 누적되었고,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의 감소로 문화소비가 그만큼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소득 감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또한 문화는 경험재로서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소득이 증가한다고 문화소비가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횡단적으로는 문화소비는 탄력성을 가진다. 그러나 문화상품은 종단적으로는 경험재의 특성상 소득탄력성이 낮은 특성을 가지게 된다(정홍익, 2008). 과거의 경험과 문화소비의 특성을 고려하면 여가시간이 확대된다고 이에 비례하여 문화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실제로 통합문화이용권 소비현황을 보면 여행에 대한 지출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여가시간이 확대된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간이나 근무형태의 특성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가시간을 즐길 때 오히려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문화를 즐길 때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 예술인, 문화인력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삶이 있는 문화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 3-1〉 문화이용권 분야별 이용건수 추이

(단위 : %)

분야	2015	2016	2017	2018
도서	40.5	39.8	36.6	35.7
영화	42.0	38.6	36.6	33.5
기타	7.5	7.1	7.1	6.9
문화소계	90.0	85.5	80.3	76.1
여행	9.8	14.2	19.4	23.3
스포츠	0.1	0.2	0.4	0.7
합계	100.0	100.0	100.0	100.0

출처 : ㈜선도소프트(2018). 통합문화이용권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참조 재구성

다. 신한류의 확산과 전환

한류는 새로운 전환기에 있다. 2018년 한국문화와 관련된 외신보도는 약 60% 증가하였다고 한다(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19). 방송·영화 등의 해

외수출이 대폭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에 음악 분야는 방탄소년단(BTS)로 대표되는 세계진출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게임 분야는 해외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에 대한 질병 분류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질병분류 도입추진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 논란, 사행사업통합감독위원회의 확률형 아이템의 도박유형 분류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반면에서 e-sports의 확산과 세계화에 따른 기회요인 등이 상존해 있다.

한류의 확산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 선호와 한국문화·한국상품 선호와 구매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가져오기 때문에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교류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제교류 및 진출과 관련하여 한국적인 것과 보편적인 문화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방탄소년단의 음악과 퍼포먼스가 한국적인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적인 특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논란과 연계하여 국립극장에서 스토리와 소재는 외국의 문화를 소재로 하면서, 이를 표현하는 방식은 한국적인 특성을 결합한 새로운 공연상품인 “트로이의 여인들”, “패왕별희” 등이 외국에서 높은 호평을 받는 것은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라. 개인주의의 심화 및 공동체에 대한 가치 확산 요구 증대

1인 가구의 확산, 주52시간 근무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확대 등은 기존의 개인주의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함께 하는 삶, 공동체에 대한 수요와 가치는 증가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문화는 학습과 공유를 기반으로 하므로, 공동체의 삶과 가치를 중시하게 된다. 기존의 문화정책은 개인적 차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향후 문화정책은 공동체적 가치에 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개인적 권리,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은 이러한 공동체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향유 중심에서 공동체적 가치, 문화자본의 확충 등의 정책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마.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

2017년 다문화 가정의 전체의 8.3%에 달하며, 2017년 전체 결혼 건수 중 21.9%에 달하고 있다.[7] 다문화 사회에서 출발한 문화다양성은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단순히 개인적·집단적인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그러한 문화유산의 전승과 보존, 창작·생산·유통·향유 등에서 확산과 권리 보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단순히 소극적인 표현의 자유의 보장 수준에 그치고 있고,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존·전승·진흥하는 차원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생물학적으로도 동일 품종·동일 유전자는 열성유전자가 발현하여 종의 쇠퇴를 가져오게 된다. 문화적으로도 문화적 혁신과 발전, 새로운 문화의 창조는 다른 문화의 접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다양한 가치, 다른 가치와 사회에 속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사고와 창의성이 넓혀지게 된다.

사람이 있는 문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표준적인 문화적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다양성과 선호의 차이를 고려한 질적인 차원, 다양성에 기반한 개인의 문화적 역량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바. 주체적 참여 문화활동 증가 및 다양화

1) 주체적 참여 문화활동의 증가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형태가 기존의 전문예술 장르에 참여하여 관람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화활동을 추구하고, 나아가서는 문화예술 창조자로서의 활동에 관심을 갖는 지역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주민은 기존의 전문 예술 장르 분야 뿐 아니라 대중문화, 생활예술, 전통문화, 지역문화 등 다양한 유형의 문화예술 활동 영역에서 소비자, 창작자, 매개자, 기획자, 협력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7) 통계청(2018). 2107 다문화인구통태통계

문화예술교육정책사업의 확대, 문화여가 생활에 대한 관심 확대, 평생교육의 문화프로그램 확대, 다양한 취향문화의 형성, 스마트 기술 및 미디어의 발전에 따른 프로슈머 확대 및 소통과 교류협력 활성화, 문화예술 커뮤니티 증가,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커뮤니티아트 확대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경제적, 기술적, 정책적 요인들이 이러한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변화 트렌드에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정책은 정책대상 집단인 지역주민을 수동적 문화 향유자 관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주체적 문화 창조자 관점으로 확대, 발전될 필요가 있다.

2) 지역주민 문화 활동공간의 다양화

작은 도서관, 카페, 동네 문화사랑방, 마을극장, 주민자치센터, 마을공동체시설, 구민회관, 지역 유휴공간 등 소규모의 커뮤니티 공간이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생활권 단위의 소규모 공간이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 참여 및 체험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흐름과 연관되어 있다.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동,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참여, 소규모 공연 및 전시 활동 참여,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커뮤니티 아트 활동, 지역주민이 함께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문화활동, 전통시장의 작은 공간을 활용한 한 평 갤러리, 소규모 미술관 및 박물관의 커뮤니티 공간 기능, 예술마을 등 다양하다. 마을, 골목, 거리, 전통시장 등 일상적 삶의 공간을 대상으로 한 문화프로젝트가 확대된 점도 지역주민 문화활동 공간 다양화 추세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3) 문화활동 영역의 다양화, 1인 미디어 시장의 크리에이터 부상

적극적 문화활동 추구형 시민들은 기존의 순수예술 및 전문예술 장르 분야 외에도 문화산업, 생활문화, 전통문화, 축제, 문화이슈 등 다양한 취향에 바탕을 둔 문화활동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하위문화가 나타나면서 문화동아리, 문화커뮤니티 활동 등 자발적 문화집단 또한 늘어나고 있다. 아마추어

예술과 전문예술의 엄격한 구분 보다는 상호 연계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즉, 비공식예술(informal arts), 아마추어 예술(amateur arts), 참여적 예술(participatory arts), 커뮤니티 예술(community arts) 등 기존의 전문예술영역과는 다른 다양한 유형의 예술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을 중심으로 1인 미디어 시장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개인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생산 및 유통하고 있다. 1인 미디어의 콘텐츠 제공 주체를 주로 창작자를 의미하는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데 과거에는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BJ(Broadcasting Jockey)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구글은 2020년이면 전체 미디어 가운데 기존 방송사나 스튜디오와 같은 주류의 매스미디어는 25%에 그치고, 나머지 70% 이상을 1인 미디어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인 미디어는 개인의 의지와 기획에 따라 누구나 제약 없이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의 연령대와 콘텐츠의 폭이 넓다. 주로 인기 있는 장르는 게임, 뷰티, 먹방 및 쿡방, 엔터테인먼트 등이지만 콘텐츠를 제공하는 크리에이터가 좋아하거나 즐기는 모든 것들이 소재가 된다. 예를 들어 장난감을 갖고 노는 '캐리', 어린이의 생활을 담은 "보람튜브", 감각적인 댄스 영상을 선보이는 '원밀리언', 영국남자의 한국생활을 담은 '영국남자 데이브'등 장르와 국적, 나이 상관없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인기 크리에이터가 탄생하고 있다.

2. 정치·행정 환경변화 분석

가. 자치·분권의 강화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고,[8] 국정과제로 '지역과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시대'를 선정하여 지역문화진흥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 재정구조 개선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국

8)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헌법개정안에서는 제1조에 분권형 국가 지향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작성하였다.

세 및 지방세 비중을 현행 76:24에서 60:40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재정 확충은 단순히 지방재정 확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 재조정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등으로 추진될 개연성이 높다(정광렬, 2017).

2004년 참여정부에서도 지방재정 확충, 지방분권과 연계하여 중앙정부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신설 등의 재정개혁이 이루어졌다.

정부에서는 재정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2022년까지 7:3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 2012~2020년간 11.7조원 이상의 추가 지방재정을 확충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약 3.5조원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할 계획이다.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일괄개정을 통한 권한이양이 추진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관광개발사업 등 지역밀착형 문화사업이 대규모 지방사무로 이양될 예정이다. 2020년 중앙-지방 기능조정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이양 사업 규모는 403,599백만원 규모이다(기획재정부, 2018).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문화시설 건립 지원 사업 등을 중심으로 다음의 〈표 3-2〉의 사업이 지방재정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표 3-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사업

구분	지방이양사업	중앙정부 존속사업
균특자율계정 (시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공공도서관건립지원)
	(역사·전통문화도시조성)	(생활문화센터조성)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작은도서관조성)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공립박물관건립지원)
	(문예회관 건립 지원)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구분	지방이양사업	중앙정부 존속사업
	(지방문화원 건립 지원)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 체육진흥시설지원
	(전통문화진흥지원)	(생활체육공원조성지원)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노인건강체육시설지원)
	(복합문화시설조성)	(지방체육시설지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제주 태고문화센터 건립)	(레저스포츠시설지원)
	■ 관광자원개발	
	■ 지방문화사업 기반지원	
	■ 지역문화행사지원	
문예기금	■ 예술의 관광자원화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자치와 분권의 강화는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프로그램이 더욱 확산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역 간 문화격차가 상존하는 여건에서 지역문화균형발전을 위한 과제가 부각될 것이다. 지역문화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반면에 자치·분권의 강화는 중앙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자체의 문화정책에 대한 권한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 분권의 강화는 자칫 지역 간 소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가져오게 되어 지역 간 문화교류, 문화자원 광역 간 활용과 교류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실제 지자체에서는 문화활동 지원에서 주민들의 관점 보다는 1차적인 지원의 전달경로에 초점을 두어 타 지역의 문화단체가 해당 지역에 와서 활동할 경우 지원을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자치 분권의 강화는 지역의 고유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며 피할 수 없는 추세이지만, 정보기술의 발달, 교통접근성의 확대, 생활권역 등과 연계하여 지역 간 연대, 교류, 문화자원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문화서비스 전달체계의 필요성을 제기된다. 사회·경제의 중요한 트렌드 중의 하나인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문화 분야에서도 중

요한 과제이다.

또한 지방분권·자치분권은 우리나라가 지향하여야 할 과제이기는 하지만 지방재정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고, 문화정책이 지자체에서 순위가 낮은 여건에서 자칫 국가 전체의 문화재정 총량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나. 정치적 요인

최근 문화정책은 정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었다. 실제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야 천당 간 문화 분야 공약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주로 차이가 있었던 것은 블랙리스트 대책, 인권과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정책방향·범주의 차이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정책도 정부의 교체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을 어쩔 수 없다. 2020년에는 총선이 있고,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다. 현 정부에서 수립된 문화비전 2030과 문화진흥 5개년 계획은 이러한 정부정책방향을 반영하여야 하지만, 정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 포용국가 비전과 보편적 문화서비스

한국사회가 저성장 지속, 계층 격차 심화, 성차별 관행, 고령자 비율 증가에 따른 복지재정 부담 등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29개국 중 7위, 사회갈등 관리지수는 27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노동시장 불평등이 소득, 자산, 교육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구조 고착화에 따라 상대적 빈곤율 감소(지니계수 완화 효과)는 한국 2.9BP로 OECD 35국(평균 10.5BP) 중 33위 수준이다(2018, OECD). 이러한 사회통합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과거와 달리 사회정책을 중시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사회정책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으로 ‘지속가능성과 사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을 제시하고 있다.‘포용적 성장’에 대한 강조는 국제적인 추세로 WEF, OECD, IMF 등 주요 국제사회기구에서도 포용적 성장을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정책 역시 보편적 문화권 확산,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등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WEF (World Economic Forum)	– 불평등 증가는 장기적인 경제성장 방해 요소 – 기회의 평등, 인적자본 강화를 위한 사회정책 강조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불평등이 초래하는 성장 저해 – 소득분배, 사회보장 강화, 사회투자를 통한 경제성장 제고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GDP 위주 지표 외의, 사회지표(문화, 환경, 고용 등) 역할 강조 – 성평등 정책, 인적자본 강화 중요성

포용국가 비전은 이러한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여 보편적인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문화정책은 대부분 선별적인 서비스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문화서비스는 개인적인 선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접근의 방식으로 접근하여 왔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행하는 예술교육(예술강사) 제도도 실제 이용하는 학생들은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정책에서 유일하게 보편적인 서비스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통합문화이용권이다. 통합문화이용권의 발급현황은 대상자 약 164만명 중 97% 내외가 발급을 받고 있어 보편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9] 통합문화이용권 이용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까지 세대당 10만원에서 2015년도에는 개인별 5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5만원(2016) → 6만원(2017) → 7만원(2018) → 8만원(2019)로 증가하였다. 정부에서는 지원금액을 2021년까지 1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2020년 예산(안)에 9만원이 반영되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정부가 70%를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평균 30%를 매칭하여 부담한다.[10]

그러나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인 문화서비스가 필요하며, 생

9) 문화바우처의 이용대상은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2019년 현재 약 164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중에서 2018년에는 1,645천명대비 96.7%인 1,591천명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았으며, 연도별로 발급율은 큰 차이가 없다.

10) 지방비 매칭은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지자체별도 차이가 있다. 2018년도의 경우 서울은 35%를 부담한 반면에 다른 지역은 27% 등을 부담하기도 한다. 중앙정부 재원은 정부의 재정적인 판단으로 문예진흥기금에 경륜·경정기금을 출연하는 대신 2016~2017에는 문예진흥기금으로 부담하였다.

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문화서비스가 체계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서는 시간·공간·비용·인력 등의 한계로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빅데이터, 5G 등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과 연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라. 문화비전 2030 이행 본격화

2018년 문화정책의 중장기 비전인 문화비전 2030이 발표되면서 2030년까지 정부의 문화정책 계획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비전 2030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라는 3대 가치는 문화정책의 기본원리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비전 2030에서는 3대 가치, 3대 방향, 9대 의제를 기본 골격으로 47개 대표과제와 186개 추진과제를 2030년까지 이행하고자 제시하고 있다. 3대 방향에 따른 9대 과제는 '개인의 자율성 보장'에는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확대', '성평등 문화의 실현'이란 의제가,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에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 문화분권 실현'이란 의제가, 그리고 '사회의 창의성 확산'에는 '문화자원의 융합역량강화',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이란 의제가 설정되어 있다.

마. 남북한 문화교류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와 교류는 현재 답보 상태이지만,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남북관계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협력과 갈등이 교차하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과거에도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앞 다투어 추진하였으나, 2008년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교체와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갈등관계로 전환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치 및 비경제적인 영역으로 사회통합에 효과적인 문화·체육 분야의 교류를 지속 전개하면서 현재의 남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한 간의 문화교류는 전통적으로 긴장완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이 지속될 것이다. 특히 남북한 간의 문화교류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문화, 문화유산 분야의 활동이 가장 먼저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다.

바. 문화재정

문화예술 분야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문예진흥기금은 정부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금 고갈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년 지출금액은 증가하고 있다. 문예진흥기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하며, 문화예술분야 공공지원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재정으로 1974년부터 본격적인 부과모금 및 사업지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문예진흥기금은 2001년 이후 정부 출연금이 중단되고 헌법재판소의 공연장·영화관 등 부과모금 위헌결정에 따라 2004년 부과모금제도가 폐지되면서 기금 적립금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적립금은 2003년 5,513억원에서 2019년 현재 1,844억원으로 감소하였고, 2016년 한때 814억원으로 최저 적립금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적립금 감소는 불안정한 재정운용으로 연결되어 중장기적 시각의 사업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제도 폐지로 인한 적립금이 감소되자 일부 대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2004년부터 복권기금의 일부를 전입하였고, 2010년부터 경륜·경정 수익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전입하여 자금을 충당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기부금으로 대체하도록 하여 자금을 충당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체재원의 조성 규모가 크지 않고 문화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지출을 늘어나는 까닭에 적립금 감소 추세는 지속되어 왔다.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일반회계에서 각각 5백억원이 전입되었고, 복권기금 전입금이 137,199백만원(2017)→182,103백만원(2018)→255,561백만원(2019)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추가 수익이 없는 여건에서 이러한 조치는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실제 2019년도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복권기금 사업만이 아니라 예술인창작안정자금(융자) 신규 85억원 뿐만이 아니라 예술창작지원 사업도 34,191백만원→45,033백만원(2019)으로 10,842백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3-3〉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추이(2000년~2019년)

(단위 :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적립금	3,933	4,432	5,148	5,606	5,513	4,929	4,548	4,336	4,091	3,739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적립금	3,163	2,631	2,522	2,395	1,546	1,110	814	546	920	1,844

자료 : 기획재정부(각년도) 기금운용 계획
주 1) 적립금은 누계 조성액에서 누계 사용액을 차감한 금액
2) 2019년은 계획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재정 지출규모는 5조 9,233억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5조 2,578억원 대비 12.6% 6,655억원이 증가하였다. 문화예술 부문은 16,387억원에서 18,853억원으로 15.0% 2,457억원이 증가하였고, 콘텐츠 부문은 7,140억원에서 8,292억원으로 16.3% 1,160억원이 증가하였다.[11] 2018~2022년도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문화 분야의 연평균 재정증가율은 5.5%로 설정되어 있다.

〈표 3-4〉 문화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2018~2022)

(단위 : 조원,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금액	6.5	7.1	7.4	7.8	8.0	
증가율	△6.3	10.1	4.7	4.3	3.0	5.5

자료 : 기획재정부(2018).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11)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3. 과학기술 환경변화 분석

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 소유에서 공유 중심 경제로의 변화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면서 국제적, 즉각적인 연결을 통해 사업모델이 점차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빅데이터, 5G, 클라우드 등과 결합된 AI 등 새로운 기술과의 결합된 문화콘텐츠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잠재적 소비자를 유입시키는데 효과적이며, 독서출판·유통산업의 성장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독서 분야에서는 온라인 기반 도서소비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도서는 소장 개념보다는 일시적 대여, 공유의 개념이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음악시장도 다운로드 등 보다는 스트리밍에 의한 소비가 일반화되고 있다. 앞으로의 소장 도서의 개념은 개인 맞춤형 출판에서 적용될 것이며, 독자가 요구하는 콘텐츠와 디자인으로 책을 만들어주는 'publishing on demand'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 맞춤형 출판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술품 등의 경우에도 이러한 공유 개념의 유통이 활성화될 것이다.

인문학의 가치가 강조됨에 따라 문화서비스의 양보다 질, 개인 맞춤형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도서관은 분야 간 다양한 융·복합 영역을 창조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블록체인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문화유통시장이 창출될 것이다.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은 온·오프라인 시장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티켓 구매, 출판시장 등에서 새로운 생산과 유통체계를 불러올 것이다. 특히 출판시장은 수익을 확장하고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신사업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나.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의 문화 플랫폼 서비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2019년 5G 서비스를 상용화하였다.[12] 5G 서비스에

따라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이 보다 활발해지고 스마트 거실·업무와 같은 디지털 공간이 확산됨에 따라 플랫폼 서비스 이용이 생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이전보다 콘텐츠 소비가 보다 자유로워지면서 출판·유통 단계가 생략된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접 연결 된 플랫폼이 활성화될 것이다. 초연결사회는 일상 생활 속에서 문화서비스에 접근하는 스낵컬처 문화를 더욱 확산시킬 것이다.

또한 4D 프린팅, 커넥티드 홈, 엣지 AI 등 일상생활과 온라인 상의 경계를 느낄 수 없는 초몰입 경험(Transparently immersive experience) 구현 기술이 실생활에서 활발히 활용될 예정이다. 즉,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기반 문화콘텐츠 플랫폼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가족 공용 모바일 기기의 등장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를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온가족 맞춤 태블릿 PC(family tab)의 개념을 강조하며 실시간으로 가족과 공유할 수 있는 '패밀리 쉐어링(Family sharing)' 기능을 추가하였다. 이 외 KT도 '패밀리박스' 상품을 출시, 가족 간 데이터 쉐어링이 자유롭게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 애플 워치(watch)와 에어팟(Airpods), 삼성 갤럭시워치와 기어아이콘(Gear IconX) 등 모바일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다양한 액세서리가 등장하면서 오디오북 콘텐츠 소비도 더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창의력·상상력을 가진 인재가 경쟁력인 문화·여가산업은 4차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맥킨지 보고에 의하면 자동화 대체율이 가장 낮을 분야로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18%), 연구직(18%) 등을 전망하였다(맥킨지, 2016). 또한 국내에서도 고용노동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30년까지 문화·예술·스포츠 인력수요 '16년 대비 11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다.

12) 5G 사회경제적 가치는 2025년 30조 3,000억 원, 2030년 47조 원으로 전망(KT경영경제연구소)

다. 문화콘텐츠서비스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가속화

향후에는 디지털 분야가 미디어·콘텐츠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앞으로 텍스트 전자책뿐만 아니라 인터렉티브·멀티미디어 요소가 가미된 문화콘텐츠가 다양화될 것이다. 특히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기술이나 증강현실(AR : Augmented Reality) 기술이 문화콘텐츠 서비스와 결합되어 새로운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빅데이터와 AI 기술의 발전은 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미학과 표현방식을 가져올 것이다. 수천년을 이어온 예술의 본질은 변화하지 않겠지만, 그 방식은 변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음악 분야는 악보를 연주자가 실제 연주하는 것 보다는 디지털 기술에 따라 가능한 유형, 가능한 연주가의 각각 분리된 코드를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이를 결합한 연주형태가 이미 OST 및 각종 사운드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창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술교육은 기술적인 재능과 차이보다는 창의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예술적인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에 초점을 둔 새로운 방식의 예술교육 체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악기 연주 보다는 자신의 감성과 창의성을 디지털 기기를 통하여 표현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과 코드로 연계하여 예술적 경험을 강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4. 경제 환경 변화 분석

가. GNI 3만불 시대, 제품의 기능·성능보다 경험의 만족을 중시

2018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1,349달러로 집계되면서 처음으로 3만달러를 돌파하여 경제대국으로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2018, 한국은행).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나라는 미국·독일·영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 6개국뿐이다. 국민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경제성장 이후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제품의 기능·성능보다 감성과 경험의 만족을 더 중시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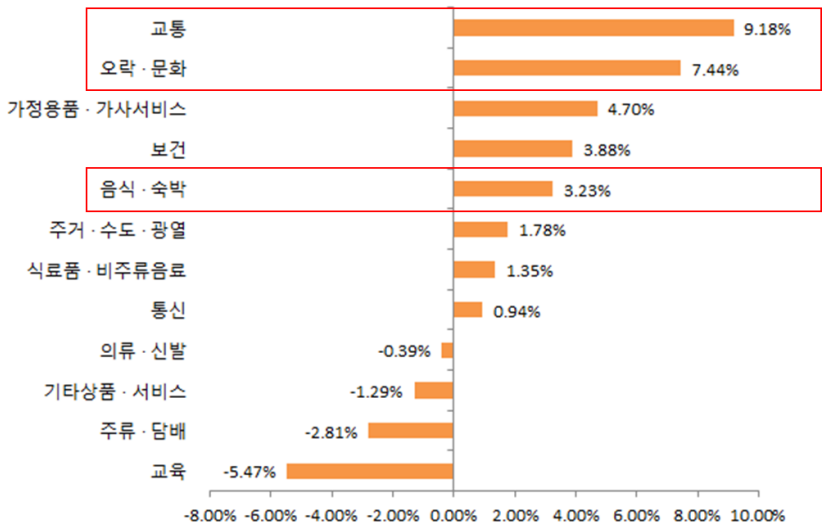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주1) 2012~2017년 연평균 증가율
주2)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1인 이상, 실질)

[그림 3-4] 가구 품목별 소비증감률(2012~2017년)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과 행복은 비례하지만,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만큼의 일정소득 이상에서는 여가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다수 발표되었고(Kelly et al, 1996), 실제로 문화소비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가계소비지출액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지난 5년 동안('12~'17년) 오락·문화 소비는 7.44% 증가하면서 교통(9.18%) 다음으로 품목별 가구소비 중 증가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경제수준에 비해 낮은 삶의 질 수준

경제지표(GDP, GNI)가 올라갈수록 삶의 질도 함께 상승하나 한국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경제성장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17년 기준 OECD BLI(Better Life Index) 지수에서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가 한국은 35개 국가 중 26번째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표 3-5〉 OECD 국가별 BLI 지수와 GDP(2017년 기준)

(단위 : 점, US 달러)

국가명	삶의 만족도	1인당 GDP	국가명	삶의 만족도	1인당 GDP
Australia	7.3	53,800	Korea	5.9	29,743
Austria	7	47,291	Latvia	5.9	15,594
Belgium	6.9	43,324	Luxembourg	6.9	104,103
Canada	7.3	45,032	Mexico	6.6	8,903
Chile	6.7	15,346	Netherlands	7.4	48,223
Czech Republic	6.6	20,368	New Zealand	7.3	42,941
Denmark	7.5	56,308	Norway	7.5	75,505
Estonia	5.6	19,705	Poland	6	13,812
Finland	7.5	45,703	Portugal	5.2	21,136
France	6.4	38,477	Slovak Republic	6.1	17,605
Germany	7	44,470	Slovenia	5.8	23,597
Greece	5.2	18,613	Spain	6.4	28,157
Hungary	5.3	14,225	Sweden	7.3	53,442
Iceland	7.5	70,057	Switzerland	7.5	80,190
Ireland	7	69,331	Turkey	5.5	10,541
Israel	7.2	40,270	United Kingdom	6.7	39,720
Italy	5.9	31,953	United States	6.9	59,532
Japan	5.9	38,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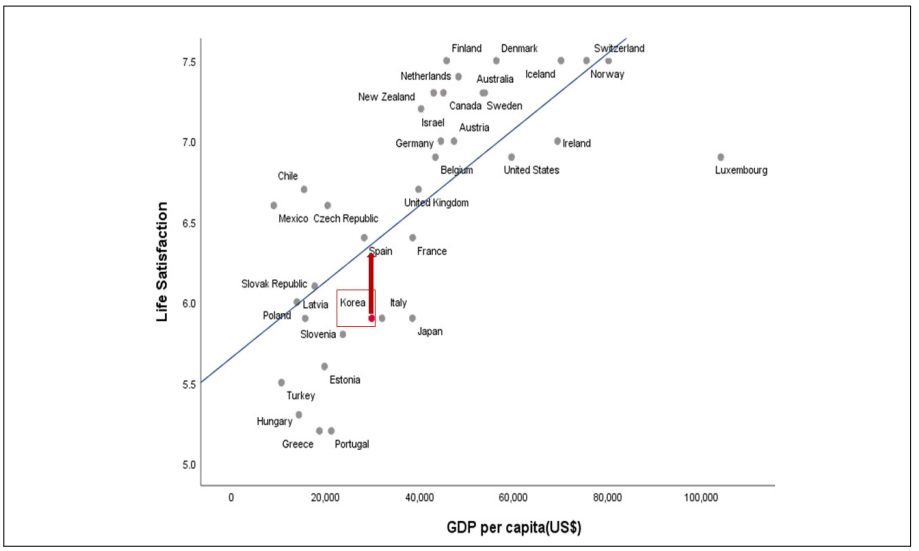

자료 : OECD Statistics; World Bank Open Data
주 1)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2017년 OECD의 BLI 지수 중 Life Satisfaction 점수임
2) 파란선은 회귀선을 의미(y=5.66+2.36E-5*x, R2=0.503)

[그림 3-5] GDP와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2017년 기준)

다. 저성장 시대 진입 및 양극화

우리나라는 2018년에 1인당 평균 국민소득(GNI)이 31,349달러로 3만 달러를 돌파하였다.[13] 그러나 경제성장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수출주도형 경제인 우리나라 여건에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의 수출 감소로 저성장 시대에 도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9년 경제성장율을 2.5%로 전망하고 있으며(당초 전망치 2.9%), 2031년에는 0%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14]

경제성장율이 저하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 등과 연계하여 소비가 감소하게 된다. 현재 자산이 있더라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를 축소하게

13) 한국은행은 최근 우리나라 1인당 평균 국민소득 돌파연도를 2018년에서 2017년으로 1년 앞당겼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조정하고 일부 통계자료 보강, 추계방법 개선 등에(예 : 공유경제 반영 등) 따른 것으로 2017년은 29,745달러에서 31,734달러로, 2018년은 31,349달러에서 33,434달러로 상향조정되었다(연합뉴스 2019. 6. 4일자)
14) KDI(2019). 고령화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되는데, 문화소비 감소는 다른 소비 보다 더욱 감소하게 된다. 실제 외환위기 당시에 문화소비는 30% 이상 감소된 적이 있다.

〈표 3-6〉 가구 문화여가비 지출 비중

(단위 : %)

2010	2012	2014	2015	2016	2017
4.3	4.2	4.4	4.4	4.4	5.3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문화소비의 감소는 전체적인 문화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며, 양극화에 대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양극화는 문화 분야에 역할과 함께 당면 현안을 같이 제시하게 된다. 양극화는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키게 되므로 문화를 통한 공동체 형성, 일자리 창출, 새로운 삶의 활력 등을 위한 문화의 적극적인 역할과 사회적 가치를 확산을 요구한다. 또한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복지 서비스의 증가, 보다 저렴한 문화서비스의 확산 등이 필요하다.

제2절

계획 기간 문화정책 환경변화 분석

1.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 및 실현

가. 문화다양성의 정책적 개념정의 및 범주 설정

1) 문화다양성 선언에서 협약까지

2001년, 유네스코 164개 회원국은 문화다양성 선언과 그 실행계획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선언은 4개 영역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4개 영역은 (1) 정체성·다양성·다원주의, (2) 문화다양성과 인권, (3) 문화다양성과 창조성, (4) 문화다양성과 국제연대였다.

이 선언을 통해 문화가 포괄적 개념(한 사회와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 예술이나 문자의 형식, 함께하는 방법으로서의 생활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 전통과 신앙 등을 포함)으로 규정되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문화권은 인권의 기본요소이며, 문화상품은 다른 상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선 안 된다고 명시되었다. 또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제법상의 장치 마련이 실행계획에서 권고됨으로써, 이를 토대로 문화다양성 협약이 추진되었다.

2005년, 제33차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the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이 채택되었다. 협약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다양성'은 정확히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가리키는 말

이다. 한국에서는 이에 관한 정책적 인식이 명확하게 공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문화다양성정책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무지개다리사업과 같은 특정 사업의 운영 정도로 축소되면서 표류해온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2010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협약 비준국이 되었으나, 이후에 특별한 조치 없이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2014년에 협약의 이행 근거 마련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 역시 국제협약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근거 정도로 간주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내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환경 전반에서의 변화와 함께, 2017년에는 한국이 제6차 유네스코 협약 당사국총회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되면서, 문화다양성 협약의 보다 적극적인 실행과 국제적인 리더십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2)'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에 따른 개념구조

문화다양성 협약 제4조(개념 정의)

문화다양성: 집단들이나 사회들의 문화들이 표현되는(find expression) 다양한 방식들을 말한다. (…)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문화유산이 문화적 표현들의 다변성 속에서 표현, 증대, 전달되는 다양한 방식들에 의해서 뿐 아니라, 예술적 창조, 생산, 전파, 유통, 향유의 다양한 양식들(이 때 사용되는 수단이나 기술은 상관없음)에 의해서 분명하게 만들어진다.

문화적 내용(cultural content): 문화적 정체성에서 기인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차원, 문화적 가치를 말한다.

문화적 표현들: 문화적 개인들, 집단들과 사회들의 창조성으로부터 기인하는 문화적 표현들, 그리고 문화적 내용을 갖는 문화적 표현을 말한다.

문화적 활동, 상품, 서비스들: 문화적 활동, 상품, 서비스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업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표현들을 구현하고 전달한다. 문화적 활동들은 그 자체로 목적일 수 있고, 문화적 상품 및 서비스들의 생산에 기여할 수도 있다.

문화산업들: 위에서 정의된 문화적 상품이나 서비스들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산업들을 말한다.

문화정책들과 수단들: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에 상관없이 문화와 관련된 정책들이나 수단들을 말한다. 이는 문화에 초점을 맞춘 것일 수도 있고, 개인들, 집단들, 사회들의 문화적 표현들(문화적 활동들, 상품들, 서비스들의 창조, 생산, 전파, 유통 및 그들에 대한 접근을 포함)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도록 고안된 것일 수도 있다.

보호: 문화적 표현들의 다양성을 보존, 보호(safeguarding), 강화할 목적으로 수단들을 채택하는 것

간문화성(interculturality): 다양한 문화들의 존재 및 공평한 상호작용을 말하는 동시에, 대화와 상호존중을 통해 공유된 문화적 표현들을 촉발할 가능성을 말한다.

※ 이 협약 및 지침에서 언급되는 문화·창조산업(cultural & creative industries)은 전통예술 및 동시대예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을 구별하는 한국의 정책체계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문화유산' 개념은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 생산물이나 서비스에 대한 통시적 접근으로서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차원에서 등장, 사용됨.

※ '예술'은 국내법상의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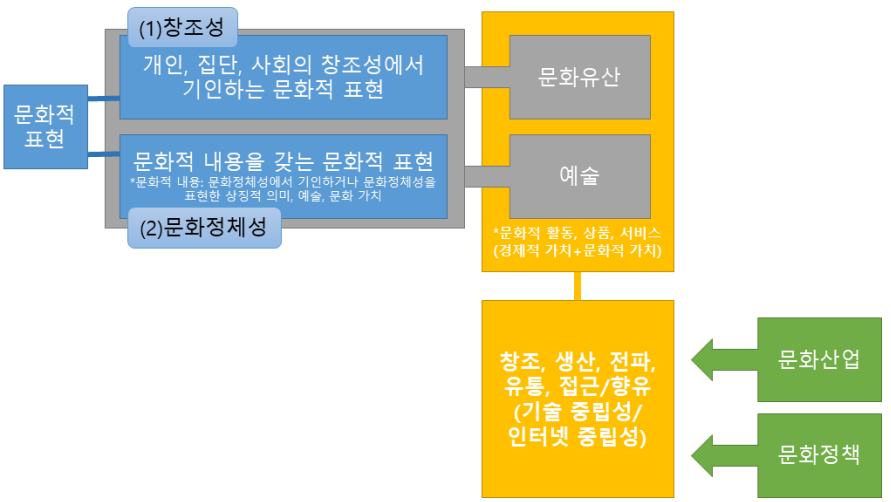

[그림 3-6] 문화다양성 협약에 따른 개념구조

협약에서의 문화다양성 개념은 복합적인 구조를 통해서 정의된다. 우선적으로 문화다양성은 문화의 '표현 방식'에서의 다양성을 말한다. 그리고 이 '문화적 표현'은 한편으로는 개인, 집단, 사회의 창조성에서 기인하는 문화적 표현과,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문화적 내용을 갖는 표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다양성의 정책적 개념은 창조성 및 문화정체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또한 '문화적 표현'은 시간의 흐름 또는 역사성을 반영한 개념이다. 따라서 문화유산과 예술을 모두 포괄한다. 현재의 예술은 미래의 문화유산이며, 문화유산 또한 과거의 예술이 현재에 존재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러한 통시적 관점 하에서 연결되는 예술과 문화유산은 공히 문화적 '활동'이기도 하고 '상품'이기도 하며 '서비스'이기도 하다. 따라서 예술과 문화유산은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규정된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이 생물다양성 개념을 토대로 구체화된 것처럼, 협약에서는 '문화적 표현'의 생태계 개념을 채택하며, 그에 따라서 창조·생산, 전파·유통, 접근·향유 등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가치사슬을 강조한다. 이러한 가치사슬을 작동시키거나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문화산업과 문화정책이 또한 개념구조에 내에서 정의되고 있다.

3) '문화비전2030'에서 '다양성' 가치와 3대 정책의제

'문화비전2030'에서 다양성은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이자 기본조건인 동시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통해서 더욱 증대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그 관계적 위상을 논할 수 있다.

또한 '문화비전2030'에서 다양성 가치는 '공동체'의 다양성으로서 규정된다. 문화다양성은 개인이나 집단을 고립된 단위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상호관계라는 측면에서 성립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 다양한 개인들과 집단들의 문화정체성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문화활동 및 문화적 표현들이 크고 작은 다양한 속성의 모든 공동체들 내에서 개별적 존엄과 관계적 차원에서의 다양성을 인권과 같은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받는 것을 지향한다. 여기에는 개인들의 문화정체성이 선천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후천적인 다양한 사회적 관계 및 문화공동체에의 소속을 통해서 다층적으로 구성된다는 점, 즉 개인의 문화정체성은 단일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복합적인 문화정체성들에 의해서 다층적·복합적으로 구성 또는 결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또한 특정 사회나 국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운명공동체로서의 의식을 전제로 한다. 현재는 물론 미래의 세대들이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필수요건으로서 문화다양성이 강제력을 수반한 정책개념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성 가치에는 3대 정책의제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이다. 이는 ① 다양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본적인 정책적 위상과 범위, 정책체계 및 원칙 등을 재정립하고, 이를 위한 실행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 ②'문화다양성 정책'의 문화정체성과 직결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한다. 둘째, 공정·상생을 위한 문화생태계 조성이다. 이는 문화다양성 개념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문화생태계' 개념 및 그 가치사슬(창조·생산–전파·유통–접근·향유)에서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문화다양성에 기반해 상보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는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안한다. 셋째, 지역 문화분권의 실현이다. 이것은 ① 문화정체성 및 창조성에 기인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위한 정책 기반 및 구조의 재설계, ②지 역 문화분권 개념을 문화에 대한 접근과 참여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의 실현방안으로 구현할 전략 수립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문화다양성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다양성의 개념구조는 보다 포괄적이고 확장된 범위설정을 요하는 것으로서, '문화비전 2030'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의제들과 과제들을 관통하는 것이기도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네스코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듯이, 문화정책 전반, 나아가 정부정책 전반의 영역에서 문화다양성이 '관점의 정책'으로서 관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상적인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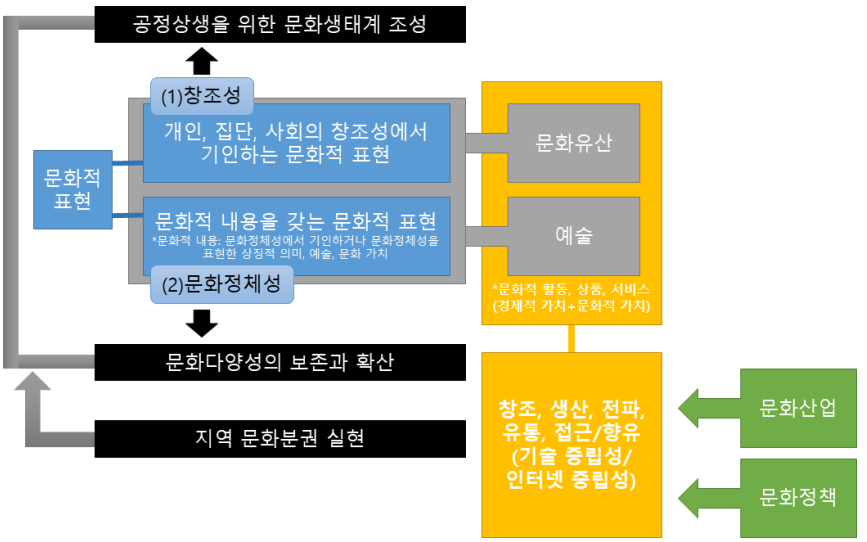

[그림 3-7] 문화다양성 협약의 개념구조와 문화비전2030의 다양성 의제의 관계도

더불어, 문화다양성에 관한 국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문화다양성 협약 차원에서의 정책성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4년 주기로 작성해 제출하는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 국가보고서는 협약 비준 이후 그로 인해 추진되는 문화정책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되어온 정책이나 사업을 단순 정리하는 방식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협약 비준 이후에 문화다양성 정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방식이 요청되고 있으며,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은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15)]

4) 혁신적 포용국가와 문화다양성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사회 정책 분야의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어서 11월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2019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안'임을 강조하고, 11월 19일 APEC 정상회담 발언에서도 향후 '다함

15) 제2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연구, 문화체육관광부,

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대한민국 정부의 새로운 국정 비전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2019년 2월, 정부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란 "국민 누구나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차별이나 배제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삶을 책임지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미래를 위해 혁신하는 나라"로 정의된다. 즉, '혁신적 포용국가'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배제와 독식이 아니라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도모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이며, 강자만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포용국가의 기본적 조건은 ▲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다. 문재인 대통령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은 정부의 국정비전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게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의 이러한 국가비전은 그에 앞서 발표된 '문화비전2030'과도 상통하는 것이며, 문화다양성 협약과도 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혁신적 포용국가'는 문화정책 분야의 비전과 과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내용적, 가치적 수준에서의 국제협약–국가비전–문화(정책)비전의 연계성을 넘어서, 실질적인 정책 차원에서 그러한 연계성을 구체화하는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나. 문화다양성 실현을 위한 전략방향

1) 국가정책 전반에서 '문화 주류화(cultural mainstreaming)', 문화정책 전반에서 '예술 주류화' 추진

문화다양성의 기반인 서로 다른 문화정체성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서 그 존엄성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존중해야 한다.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는 문화다양성은 곧 인권존중과 직결되며, 국적, 민족, 인종, 나이(세대), 성별(젠더), 장애, 종교, 성적 지향, 소득수준이나 직업, 지역, 언어 등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의 문화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소통, 이해와 협력을 위한 사회적 자원이자 기반이 된다.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2005)을 2010년에 비준하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법률'(2014)을 제정하였으나, 총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 및 위상 취약, 그로 인한 협약 실행의 정책적 수단 미비 등으로 그 이행에 한계를 노정해 왔다. 이에 유엔으로부터 한국의 다문화주의 수용도가 낮고 문화다양성 제고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주요 원칙으로서 '모든 문화들의 평등한 존엄 및 존중의 원칙'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조건들을 창출하기 위하여 모든 차원의 국가정책에 문화를 통합시키는 정책적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EU에서는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정책 영역에서 문화다양성을 반영하는 '문화 주류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문화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러한 '문화 주류화' 전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화권'의 규정, '문화영향평가'의 실행 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법률상 범정부 차원의 '문화다양성위원회' 운영도 이러한 관점에서의 소산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총괄부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위상이 취약하고, 정부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인식이 낮아, 법정 문화다양성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문화영향평가 역시 특정 부처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영역, 특정 사업 분야로만 제한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따라서 법률과 정책 현실과의 괴리를 타개하는 방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문화 주류화' 전략은 기본적으로 광의의 문화영역이 국가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았음을 인식한 위에서 추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창조적 성장동력 마련과 미래 문화유산의 다양성을 위해 모든 차원의 국가정책에서 예술을 통합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행 문화정책 내에서 문화재정책과 동시대 예술활동의 지원정책, 그리고 문화산업정책이 유기적, 통합적 관점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문화재정책은 이미 과거에 만들어진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현재의 다양한 예술작품이나 예술활동을 미래의 문화유산(cultural legacy for future generations)으로서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보존·계승한다는 관점은 취약하다. 과거의 전통을 보존·계승하는 것과 현재의 예술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미래 문화유산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문화향유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문화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경제적 차원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사회에서 ICT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그 중에서 문화산업·콘텐츠산업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창조성의 원천인 예술에 대한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은 시급한 과제이다.

2) 창조성 vs 문화정체성 : 정책영역의 명확화

위와 같은 문화 주류화, 예술 주류화의 방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정책영역의 설정이 요구된다.

현행법상에서는 '문화적 표현'이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률 제2조)으로 정의되어 있다. 다시 말해, 여기에서는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과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한 표현이 교집합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집합적 정의는 협의의 문화개념(문화예술)과 광의의 문화개념(선언에서의 포괄적 정의)의 구분을 모두 포함한다는 협약상의 접근방식을 모호하게 만드는 한계가 있다.

광의의 문화개념은 반드시 창의성에서 비롯된 문화적 표현일 수 없다. 여기에서 창의성은 어디까지나 문화예술적 창의성이라는 '문화·창조산업(cultural & creative industries)'에 특정되는 전문적인 속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다양성 선언에서 포괄적인 문화개념의 채택이 강조된 것은 이러한 전문적인 차원의 문화 또는 문화적 표현과 더불어, 문화 전반의 상징, 가치 등을 모두 '문화적 표현'으로서 간주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의 영역을 삶의 영역 전반으로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문화·창조산업' 영역 고유의 생태계가 안고 있는 특성과 문제점을 포착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생태계에 대한 접근과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징이나 가치의 영역에 대한 접근을 구분하면서 어느 하나도 배제하지 않는 포괄적 접근이 요청되는 셈이다.

창조성의 영역에서 다양한 문화정체성에 따른 표현이 차별받는 방식이나 구조를 용인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동시에 문화정체성에 관한 차별 없는 정책의 틀 안에서 창조성의 영역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접근방식에 있어서, 창조성의 영역과 문화정체성의 영역을 정책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보다 적확하고 입체적인 정책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에서는 창조성의 영역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발굴 및 보급”이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창조성의 영역을 문화다양성 증진의 방법론 내지 수단으로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의 한계를 인식하고, 창조성 영역과 문화정체성 영역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3) 문화정체성에 따른 다양한 표현의 보호 및 증진

(1) 문화다양성 정책의 출발점: 문화정체성에 따른 차별의 근절

김면(2017)은 문화다양성 협약 및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를 제안한 바 있다. 여기에는 기본영역(1차적 범주)과 환경영역(2차적 범주)의 구분 하에, 민족, 국적, 성별, 장애문화, 성적취향, 세대 등이 기본영역으로, 종교, 소득, 혼인, 전통, 지역, 예술취향이 환경영역으로 세목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영역설정은 국내법상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률 제8조3항)라는 조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률의 규정은 문화기본법에서도 기본이념과 국민의 권리로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문화기본법은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아,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인 문화권을 갖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기본법에 근거한 문화진흥기본계획은 이러한 차별 없는 문화권 보장의 차원에서 문화다양성의 원칙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바,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기본적으로 차별 없는 정책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문화정체성에 대한 규정은 차별이 발생하는 지점으로부터 명확해지는 속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차별은 역사적으로 지속됨으로써 이미 고착된 문화정체성의 범주를 드러내기도 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차별을 통해서 기존에 없었던 문화정체성을 사회적으로 형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정체성의 영역이나 범주는 고정되거나 닫힌 형태가 아니라,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문화정체성에 따른 차별의 근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영역에 한정되지 않는 까닭에, 다시 한 번 관점의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동시에 정부기관의 하나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소관 업무영역, 문화, 관광, 체육 등의 분야 내에서 문화정체성에 따른 차별의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실행이 요구되는 것이다.

(2) 문화정책 영역에서 문화정체성에 따른 다양한 문화적 표현 보장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스포츠 등 광의의 문화정책 영역에서 문화정체성에 따른 다양한 문화적 표현 보장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문화다양성 분류체계는 문화정체성에 따른 다양성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틀로서, 인종·민족, 국적(외국인, 외국적 동포, 북한이탈주민 포함), 성별, 신체능력(장애 여부 포함), 성적취향, 세대, 종교, 소득수준, 혼인 여부 및 가족형태, 전통, 지역, 예술취향 등을 항목으로 설정할 수 있다(김면, 2017). 이러한 각 항목에 입각해 차별 받지 않는 문화적 표현의 보장을 위한 정책 개발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은 기존 연구에 따르면, 협의의 다문화정책에서 광의의 다문화정책으로, 인종적 다문화정책 또는 이민정책에서 사회적 다문화정책으로, 동화주의에서 상호문화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한 사회가 기본적으로 동질적이지 않고, 다양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조건과 정체성을 갖는 개인 또는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관점이 전제되는 것이

다. 이러한 전제에 입각한 문화다양성의 보장은 서로 다른 문화정체성 사이에 위계적 관계나 '정상성·비정상성'이라는 자의적 규범을 설정하지 않고, 특정한 문화정체성에만 국한되지 않는 사회 내 다양한 문화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사회 구성원이 일상적 차원에서나, 제도적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문화정책 또한 문화다양성 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영역에서부터 문화정체성에 따른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보장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인 소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제도나 사업에 대한 다양성 관점에서의 평가와 조정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에서의 성과가 신규 사업이나 예산의 도입 또는 증액으로 평가되는 경향에서 본다면, 이러한 제도적 평가와 조정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소지가 크다. 하지만 정책의 '효과성' 차원에서 접근할 때, 문화다양성과 같은 '관점의 정책'은 우선적으로 기존 정책이나 제도의 평가와 조정을 우선적인 정책수단으로 삼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접근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화정체성에 따른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존중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실무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참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문화다양성에 관한 성과평가, 기관평가, 직원평가 등의 다양한 행정적 수단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별 기본계획이나 법정계획에서도 다양성을 위한 정책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령, 문재인정부의 생활SOC 확대 정책의 경우에도, 기존의 문화시설이 설립, 운영되는 방식을 반복하는 형태가 아니라, 다양성의 원칙이 반영되도록 하여, 기존의 문화시설에까지 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시설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한 양적 확대나 배분을 넘어선 정책적 접근에 있어서 다양성의 원칙을 반영하는 가이드라인 역시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다양한 문화정체성의 존중을 한국사회의 성장동력으로 설정 : 경제주체인 기업의 역할 강화

문화다양성 협약의 중요한 기본정신은 다양성의 존중이 시혜적이거나 이타적인 차원의 규범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양성의 존중은 평화와 마찬가지로 사회 내 존재인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성의 존중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문화다양성 협약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다양성이 개인들과 사회들을 위한 풍요로운 자산으로, 문화다양성의 보호, 증진, 유지는 현재와 미래 세대들의 혜택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 요건임을 강조한 것이다.

글로벌기업 및 국내기업에서 다양성은 사회적 책임의 차원을 넘어 기업의 성장과 생존을 위한 전략적인 필수요소로 강조되는 분위기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성장 차원에서도 기업 내 다양성 문화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임원급의 인종다양성이 상위 4분위에 드는 기업의 평균 수익률이 하위 4분위 기업보다 평균 33%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페이스북, 구글, 애플, 트위터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2014년부터 매년 다양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관련된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양성 총괄책임자라는 직군까지 신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페이스북 다양성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내 전 세계 여성직원 수, 고위직 여성인력 수, 흑인 및 히스패닉, 아시아 직원 수와 고위직 인력 비율 등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성별 및 인종의 다양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공식적으로 추진하여, 이용자들의 기업 신뢰도를 높이려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16]

이러한 경향은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할수록 사회적 부가 커진다"(윤수종,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거나 경제학자 스콧 페이지의 말처럼 기업의 창의성과 혁신의 원천으로 "다양성이 능력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초국적 기업들은 문화적, 인종적, 성별 차이를 다양한 사람을 고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들을 위한 시장을 만들고 소비자로 포용해 더 많은 부를 쌓는다."(윤수종)

16) 페이스북 다양성, '조금' 나아졌다, 블로터, 2018.7.13.

여성 임원이 많거나 직원의 다양성 지수가 높을수록 기업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연구들도 있으며, 2016년에 IMF는 이민 유입이 1% 증가할 경우 해당 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장기적으로 2% 가량 높아진다고 발표했다.[17)]

구글 코리아 또한 다양성과 포용을 강조하는데, 다양한 의견이 회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성이 함께 있는 경우 기업가치가 더 높아, 투자자도 여성이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데, 그 이유는 세상의 반이 여성인데 여성 고객을 모르고 개발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다른 인종,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비즈니스가 향상되며, 다양성과 포용의 문화가 직원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 직원들의 삶이 더 만족스러워질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한다.

호주의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다양성을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하기 위해 생산적 다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다양한 민족 출신자들을 고용해 언어적·문화적 다양성을 증대시킴으로써 해외 시장을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다양성을 국가경제의 생산성과 직접적으로 결부시키는 정책적 접근이 문화진흥기본계획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확산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설정했던 방향의 전환이 기본계획의 중요한 핵심이라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혁신적 포용과 포용적 혁신의 달성을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창조성 영역에서의 문화다양성 실현

(1) 문화생태계의 다양성 증진: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 제고

창조성 영역은 보다 정확히는 문화·창조산업(cultural & creative industries)

17) [창간기획–험오를 넘어](5)연령·인종·성별·성적 취향...다양성 공존하는 사회일수록 부·창의성 증가, 경향신문, 2017.11.5. 뿐만 아니라 이미 LG, 현대차 등의 국내 글로벌기업들 역시 다양성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강조하는 변화를 보이는 추세에 있다. (신원무, 인력의 다양성이 글로벌 경쟁력 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2009.9.28.; 김용근, 다양성 시대, 기업의 대응전략, 포스코경영연구원, 2012.3..13.; 현대차 미국법인이 인종다양성 확대하는 이유, 비즈니스 포스트, 2014.10.14.)

영역을 지칭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 영역이 국가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해 왔으며,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한류산업의 경우에서 잘 나타나듯이, 문화산업이 타 산업분야의 성장을 견인하는 흐름도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문화다양성을 국가경쟁력 내지 생산성과 결부시키는 정책적 관점은 이 창조성 영역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 즉, 문화생태계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창조성 영역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예술 및 문화산업 생태계 활성화라는 기존의 정책적 접근은 장르영역에서의 포괄적인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재구조화하기 보다는, 유통·시장 영역의 규모 확대를 통한 독점적 시장원리에 의존해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문화비전2030'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시장에서의 유통독점이나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지 못하고 창작자의 창작활동 보장은 물론 기본적인 생존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내의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영역에서도 불공정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와 문제점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어 왔다.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관행은 예술교육, 예술창작 및 제작, 예술배급과 유통시장에 두루 만연하고 있다.[18] 또한 문화·콘텐츠산업 규모(2005년 57조→2015년 100조원, 2배 증가)는 계속 커지는 데 비해,[19] 생산–유통–소비의 순환

18) 문화예술계의 불공정은 크게 보아, 권력과 위계에 의한 불공정, 계약상의 불공정, 보상에 대한 불공정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 권력과 위계에 의한 불공정은 권력을 가진 소수 상층부 예술인들과 힘이 약한 예술가들 사이에서, 스승과 제자의 사이에서, 선배와 후배 사이에서 권력과 위계를 이용하여 공정하지 않은 요구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계약상의 불공정은 창작활동이나 예술활동에 있어 갑과 을의 관계에서 계약을 해야 할 시에, 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하더라도 예술활동과 노동에 참여하는 을의 조건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는 말함. 갑의 권리는 많은 반면, 을의 의무는 지나치게 많이 부과되는 계약관계를 말함. 문화예술계는 창작활동에 따른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매우 부족(서면계약 체결 경험 25.5% '15년 기준), 서면계약 미체결로 인해불공정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입증 곤란. 가난한 예술인들의 안타까운 죽음과, 블랙리스트 사태이후,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음. 그동안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법 개정 제도 보완되어 예술인복지법이 개정(2013, 2016)되었고, 예술인 신문고 등이 신설. 예술인 신문고 도입 이후 신고건수 계속해서 증가추세(2014년 91건, 2015년 95건, 2016년 150건, 2017년 165건, 2018년 1월 63건)에 있음. 문화예술계 현장의 창작 및 활동에 필요한 재원은 대부분 국고 재원의 민간경상보조로 마련되고 있으나(2016년 결산 기준, 1조 6천억 원 이상이 민간경상보조금), 예술가들이 창작활동 과정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 지배적임. 보상에 대한 불공정은 계약에 의한 을의 보상에 있어 저작권 권리 보호와 보상, 활동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구조 및 제작자–배급자–창작자 간의 경제적 분배정의에 관한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대두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반 플랫폼 경제의 확산 속에서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문화·콘텐츠산업 생태계의 여러 위협 요인 중에는 유통독점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문화자본의 영향력이 막강해진 데 반해 창작자들의 권리가 위축되었음을 의미한다.[20]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는 한 창작자의 생존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문화향유나 문화산업·콘텐츠산업의 근간 역시 흔들리게 될 것이며, 디지털 경제 하에서 창작자에 대한 부당한 수익배분 구조나 창작자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존중 대신 무시와 착취가 정착한 데에는 이러한 문화정책의 흐름이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디지털 융합에 따른 초연결이 4차산업혁명의 핵심 모토로 강조되고 있으나, 이는 플랫폼의 집중화와 팽창, 기업 합병 등으로 인한 독점 심화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국 네스타(NESTA) 대표 제프 멀건은 “문화산업의 가치를 대부분 유통기업이 가져가는 역사가 오래 됐다. 영화, 잡지, 책 등이 다 그랬다. 특히 20세기 들어선 거대 유통망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우려할 점은 콘텐츠산업의 이익을 구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에서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콘텐츠 창작자들이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미래 콘텐츠산업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이익 배분 문제임을 강조했다.[21]

따라서 문화진흥기본계획은 디지털 플랫폼 기반 경제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 부응하여, 문화생태계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을 지향함으로써, 문화다양성과 생산성 내지 국가경쟁력의 긴밀한 연계를 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19) 세계 콘텐츠 시장 규모는 지난 5년간 평균 5.6%씩 증가했고, 향후 연평균 4.2%씩 증가할 전망이며, 한국의 시장 규모는 세계 7위 수준

20)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서 독점 강화 및 기업구조 양극화로 인해, 창제작 노동자의 생활고, 중소 제작사의 붕괴, 그에 따른 수익지향형 콘텐츠의 획일화 등 발생(기업수로는 전체의 7.8%에 불과한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이 전체 콘텐츠 산업매출의 86.1% 차지). 제작기업과 제작종사자 간 고용관계에서도 저임금, 임금 체불 등 불공정 관행 및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논란 계속됨. 방송 스태프의 76.2%가 서면계약 없이 제작참여, 급여체불 경험 42.3%('17.9월).

21) 제프 멀건, “거대 플랫폼 독점하는 콘텐츠산업 이익 나눠야”, 매일경제, 2017.10.23.

(2) 창작의 다양성 보장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의 다양성 보장

현재 예술지원사업은 창작지원과 향유지원 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예술정책을 지탱하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정책적 인식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해, 예술정책 역시 효율성을 제일원리로 국민세금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거나(예: 이명박 정부의 창조적 실용주의), 생활지원 위주의 복지정책 패러다임이 주도해 온 실정이다.

이러한 예술정책 기조 하에서 하드웨어와 향유자 중심의 정책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예술가에 대한 창작지원 비중은 낮은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은 확대되었으나(2008년 363억원→2017년 454억원) 창작지원 비중은 꾸준히 감소했다(2008년 42.7%→2017년 21%).[22] 여기에 최근 블랙리스트 사태를 겪으면서 창작지원 사업 자체가 폐지된 사례까지 가중되었다.

또한 창작지원과 향유지원 사이의 불균형은 사람에 대한 지원보다 시설 건립에 치중하는 방식으로 반복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정책 내에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시설건립 및 공공시설·단체 운영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해 왔다. 또한 사람에 대한 지원 중에서는 교육 및 향유 지원에 비해 창작지원의 규모가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예술지원사업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므로, 전체적인 공공부문 예술지원사업에서 창작지원의 비중이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안성아, 2014).

이러한 상황은 예술가/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저조한 창작지원 경험 및 낮은 예술활동 수입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예술인의 창작지원 경험(공공 및 민간 지원 포함)이 19%에 불과하고,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창작지원 금액의 규모가 평균 1천만원 대를 넘나드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예술활동 수입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약 65%를 차지해 다수의 예술가가 예술활동 수입으로 생계조차 곤란한 상황이니 만큼(가구 총지출 규모와 비교할 때 적자), 창작활동을

22)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 업무계획: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

대부분 창작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창작지원이 예술활동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창작지원 금액의 규모 및 대상의 규모는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창작활동의 위기는 예술생태계의 가치사슬을 따라 향유활동의 위기로 이어진다. 즉 기본적으로 현재 문화정책이 채택하고 있는 생태계 이론은 이러한 연쇄구조 속에서 문화정책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 연쇄관계에 있는 예술생태계 가치사슬의 구조상, 창작활동의 위기는 공공부문 지원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향유(시설건립 및 운영, 향유 및 교육 지원) 부문의 문제점들로 이전될 수밖에 없다.

공연예술분야의 경우, 최근 10년간 공연시설은 330개가 증가하고(2007년 662개→2017년 992개), 공연시설 종사자 수와 공연시설의 매출액 수도 증가했으나(종사자 수 2007년 9.037명→2016년 11,394명 / 매출액 2007년 2,879억원→2016년 3,435억원), 공연단체 수와 단체 종사자 수는 감소하고(단체 수 2008년 2,440개→2016년 2,364개 / 종사자 수 2008년 80,517명→2016년 51,195명), 공공 공연시설의 가동률 및 공연프로그램 가동률은 높지 않다. 즉 시설 중심의 정책적 접근은 시설 자체의 운영지표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예술창작 주체를 확대시키거나 시설에서의 예술 프로그램을 증가시키고 가동률을 높이는 형태로 환류되지 않는다. 오히려 공연단체 및 그 종사자 수가 감소하고 낮은 가동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예술창작 주체가 감소하는 현상은 현재와 같은 창작여건의 열악함 속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예술활동의 다양성 및 질적 저하, 예술향유 기회의 위축 등과 같은 예술향유의 기본적 조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이러한 열악한 창작여건과 빈약한 창작지원이라는 토대 위에서 국민의 문화향유를 정부가 통제하고 제한하려 한 사건으로서 문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태계 관점에서 창작에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 문화향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직접적인 해법이라는 관점에서 창작지원과 향유지원의 균

형을 추구하여야 한다. 즉, 예술 창작활동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예술향유의 출발점이자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창작지원의 확대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관점의 전환을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정책실무자·사업담당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프로그램, 설명회, 토론회 등 운영, 교육자료 등을 마련하고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3) 문화다양성 증진의 핵심주체인 예술가/창작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 및 향상

창조성 영역에서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활동이나 문화유산이 경제적 가치나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의해서 획일화되거나, 창작과 생산, 전파와 유통, 접근과 향유로 연결된 생태계에서 차별 또는 배제되지 않도록, 문화의 종다양성을 지키고 그 사회적·공공적 가치를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개인들과 사회집단들이 그들만의 문화적 표현들을 창조·생산-전파·유통-접근·향유라는 생태계의 가치사슬 별로 촉진시키는 것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가들, 그리고 창조적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들, 문화공동체, 그들의 작업을 지원하는 조직들이 한 국가의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국가가 인식하고, 국민 모두에게 정책적으로 인식시키고, 예술가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그 활동의 보장을 위한 통합적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나 초연결 플랫폼 경제체제에 대응한 문화예술/문화산업/콘텐츠산업의 독점 규제 및 예술노동/창조노동에 대한 정당한 수익배분구조를 정립해야 한다. 네스타의 멀건 대표는 플랫폼 경제가 가속화되고 거대 플랫폼 독점현상이 심화되는 속에서, “거대 플랫폼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가져가고 있는 이익이 창작자들에게 좀 더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영화산업에 부과한 세금으로 영화제작펀드를 조성하고 TV 분야에서도 유통망에 비용을 부담시켜 소규모 공급업자들의 제품을 구입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고, “페이

스북 등의 광고 수익에도 과세한 뒤 펀드를 조성해 소규모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업체들을 지원해야" 함을 강조했다.[23)]

이처럼 문화예술,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분야에서 핵심적인 사안이 되고 있는 수익배분 문제를 해결할 정책이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예술가 사례비의 제도화 및 공정보수(기준) 공시제도의 도입, 사전 서면계약 의무화 및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서면계약 체결지침 마련, 서면계약 준수여부 정기점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 강화 등의 추진이 우선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문화산업/콘텐츠산업 장르별 및 분야별 수직계열화(독점) 지수 또는 공정화 지수를 개발해 독점적인 산업구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문화산업/콘텐츠산업 분야별 창작(생산)–유통–소비/향유 과정에서의 경제적 가치(수익) 분배 현황 조사 및 불공정 수익배분 제재, 시정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여기에 총매출액 기준 산업평가 지표 외에 창작자 지위 및 경제적 분배 정도를 고려한 생산환경 지수 도입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문화예술교육의 창조성 및 다양성 강화

가.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역할 다변화와 그 한계

1) 문화예술교육에서 창조성 개념의 모호성 및 한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구분된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는 문화

23) 제프 멀건, "거대 플랫폼 독점하는 콘텐츠산업 이익 나눠야", 매일경제, 2017.10.23.

예술교육을 말하며, 사회문화예술교육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에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에서 행하는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제2조).

이 법률에서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라는 향유정책에 그치지 않고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문화다양성 협약에 따르면, 창조성 내지 창조력은 문화·창조산업과 직결되는 전문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이 된다.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학교예술교육을 포함하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문화예술교육에서의 창조성 개념이 문화다양성 협약에서와 같이 문화·창조산업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능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법정 개념의 창조력 함양이란 어떤 능력을 함양하는 것인가?

2015년에 수립된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15-19)에서는 문화정책의 성과로 문화적 창의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확대를 꼽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국악, 연극, 무용,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디자인, 사진 등 8개 분야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과 토요문화학교 운영의 확대, 그리고 예술꽃씨앗학교 지원, 아동·노인·장애인 복지기관 예술강사 지원 등 맞춤형 문화예술체험교육 실시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의 실시가 법률에서 말하는 창조력의 증진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문화적 창의성이라는 정책용어가 의미하는 바 역시 명시되어 있지 않다(문화체육관광부, 2015).

2) 문화전문인력 개념의 모호성 및 한계

창조성 또는 창조력 개념의 모호성 및 한계는 그대로 문화전문인력 개념의 모호성 및 한계와 직결된다. 지역문화진흥법의 '제3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에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제10조).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된다. 이때 지역문화란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포괄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전문성이란 문화의 기획, 개발, 평가 등에 관련된 전문성을 말하는 것으로, 문화생산·창작의 전문성을 핵심에 두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역문화전문인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중요한 요소, 특히 진흥기반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그 양성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학, 문화진흥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적 규정에 따라 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은 '문화인력 육성 및 연구강화'라는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1. 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체계 구축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차세대 창의문화리더 양성
   - 문화인적자원센터 설립하여 전국 지역문화전문인력에 대한 종합적 인력양성 지원 및 경력관리 체계 구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력개발원을 예술창작인력 및 문화매개인력 재교육 핵심기관으로 정립
   - 문화예술교육 창의인재원 설치·운영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기반마련
   -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개선을 통한 예술교육·기획인력 양성 체계화
   - 전문인력 자격 및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제도화 추진
3. 문화 분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기능 강화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 분야 연구·평가·교육의 핵심 기관으로 정립
4. 문화예술교육 자원 정보망 구축
   - 문화예술교육 자원 정보뱅크 구축
   - 문화예술교육 정책연구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대내외 연구협의체 운영 활성화

여기에서도 문화전문인력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중

심으로, 문화매개인력 및 문화예술교육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문화 분야의 전문적인 창조성을 담당하는 문화생산·창작인력의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정책적 접근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외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예술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에서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정책은 누락된 상태에서, 문화예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정책이 수립, 실행되어 온 점이 큰 특징이자 한계라 할 것이다.

3)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역할 확장 및 다변화

주목할 점은 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은 문화예술교육을 보다 다변화된 정책 수단으로서 광범위하게 채택했다는 데에 있다. 문화예술교육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과제만을 열거해도 아래와 같다.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한 초중등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역 문화기반시설에서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인문예술캠프 개최,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인문예술교육을 통한 전인적 창의 인재 양성, 소외계층 등 문화 사각지대 해소(소년원학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형자 대상의 인성함양 및 재범방지, 건전한 사회복귀 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강화, 심리적 상처를 가진 소외계층의 예술치유 프로그램 등), 군대 내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확대, 농촌형 작은 문화교실 지원,

대상별(미래세대, 노인세대, 직장, 가정) 맞춤형 문화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유아 발달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교육 강화, 토요문화학교 확대,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노인 영상미디어 교육 지원,

문화 소외계층 대상 문화복지 강화를 위한 저소득층, 위기 아동·청소년 대상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 확대,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농산어촌 등 소규모 학교 대상 예술꽃 씨앗학교 확대,

문화인력 육성 및 연구 강화를 위한 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기반 마련, 문화 분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기능 강화, 문화예술교육 자원 정보망 구축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확장에서 실질적인 정책수단은 문화예술이며, 그 교육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예술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에서 문화예술의 창작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문화예술이 교육을 매개로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 및 영역들과 관계를 확장해 가는 것을 지향한다면,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력 양성과정에서 이러한 사회적, 정책적 역할과 기능에 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대부분의 예술대학 커리큘럼에는 이러한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관한 교육내용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한 점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은 예술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방안이 없이, 대학과는 별도의 인력양성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대학교육과정을 소외시키고, 대학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인력들의 사회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문인력양성과 관련된 정책이 추구하는 전문인력 개념의 모호성과 성과에서의 한계를 수반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따라서 교육부의 대학정책과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문화 분야의 전문인력양성, 전문적인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양성에 관한 통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나. 문화예술교육의 창조성 및 다양성 강화를 위한 전략방향

1) 문화예술교육의 창조성 강화

(1) 문화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 생태계 관점에 따른 체계화

문화예술교육이 문화향유의 확산을 넘어서 법률상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의 창조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은 향후 더욱 중요한 소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임을 보다 전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창조성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체화된 정책개념을 바탕으로 인력양성계획도 함께 수립되어

야 할 것이다.

먼저,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이라는 정책적 인식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문화산업 분야의 인력까지를 포괄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화 분야 정책에서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생태계 관점에서 생태계의 각 가치사슬, 즉 생산·창작-유통·전파-소비·향유의 영역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포괄하는 형태로 체계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태계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존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은 특정한 가치사슬에 치우쳐 있는 불균형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국가 전반에서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의 소임을 맞고 있는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도외시하고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수립되어 온 점은 현재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범위나 사회적 기능, 나아가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설정하는 데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내왔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기본적인 위상과 역할을 설정하는 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고 조정하는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문화예술/산업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이라는 측면을 적극적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대학정책 내에서 예술대학의 위상이 불안정하고 그 위기가 지적되어 온 점은 특히나 이러한 정책적 접근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를 개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 역시 안정적으로 지속되거나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기존의 부처별 기능에 의해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설계되어 왔던 현실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생태계 관점에서의 체계화된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2) 기능적 창조성에서 사회적 창조성으로 : 통합적 문화예술교육의 설계

일반적으로 현장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각 장르별 고유한 기능의 학습과 숙

련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숙련을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이 다변화된 것 역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려는 의지와 그 수요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에 임하는 전문인력 양성 과정에서 이러한 사회적 기능에 관한 교육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이러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교육자는 물론 피교육자 입장에서도 교육의 목적과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심지어는 문화예술 현장에서 문화예술이 정부에 의해 수단화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정책적 차원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이 지향하는 창조성이 문화예술을 전공으로 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차원의 창조성 개념을 기능적 창조성에서 사회적 창조성(social creativity) 개념으로 전환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창조성이란 기본적으로 대부분 인간의 창조성은 사회적인 것이라는 관점을 전제로 한다. 인간의 모든 활동처럼 창조적 활동 역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컨텍스트 내에서 이루어지고, 창조적 활동의 산물들은 직간접적인 상호작용에 따른 집단적 지식을 구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 창조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창조성이 보다 확장된 사회적 차원에서 필연적으로 다른 개인적 창조성들과 만나고 관계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요청되는 과제는 천재적 개인의 창조성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적 창조성과 집단적 창조성을 증진시키는 일이 된다는 것이다.[24)]

24) Fischer, G. (2004) "Social Creativity: Turning Barriers into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ve Design." In F. deCindio, & D. Schuler (Eds.), Proceedings of the Participatory Design Conference (PDC'04)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July, 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CPSR), Palo Alto, CA, pp. 152–161.; Fischer, G., Scharff, E., & Ye, Y. (2004) "Fostering Social Creativity by Increasing Social Capital." In M. Huysman & V. Wulf (Eds.), Social Capital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T Press, Cambridge, MA, pp. 355–399.

다른 한편,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사회적 창조성의 증대는 예술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갖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예술적 창조성은 단순히 개인적인 예술적 기능의 숙련이나 감성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와 그에 관한 상상력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왔다. 창조적 기술을 공동체 내의 다른 사람이나 조직과 함께 일하기 위해 사용하고 공동체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예술가를 사회적 예술가로 규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예술가가 지향하는 바는 사회 전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만의 창조적인 표현 수단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의 예술가들이 스스로의 활동방식이나 범위를, 제작이나 퍼포먼스, 교육, 사회활동, 정책수립 및 실행, 공동체의 복지, 정치활동, 환경활동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시키는 경향과도 상응한다. 따라서 학교 문화예술교육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에서도 예술적 창조성 및 동시대적인 예술활동의 경향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적 접근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2) 문화예술교육의 다양성 강화

문화예술교육의 다양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교육대상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교육인력 및 교육내용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양성의 확대는 창조성의 자원들과 그 사회적 관계들을 확장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다양성의 증대를 통해서 사회 내의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문화예술교육의 다양성 강화는 문화다양성 정책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또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일부로서 기본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비전2030'에서 제시되었던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요소로서 문화다양성 교육의 정비 및 확대

문화다양성의 기본은 다양한 문화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문화적 표현이 차별 없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즉 다양한 목소리들이 안전하게 표현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정책의 중요한 소임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블랙리스트 사태를 통해 드러난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과 직결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정체성에서 비롯되는 문화적 표현들, 그 다양한 목소리들이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위협받지 않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들은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기본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 다양한 표현을 위한 환경 또는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및 문화매개인력에 대한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시행, 교원·공무원·공공기관 등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화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교육 전반에서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확산을 위한 지침과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직장 및 학교에서의 문화다양성 보호 및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이수 의무화, 문화다양성 보호 및 확산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지원 등이 포함된다.

(2) 문화기반시설에서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운영 규정 마련

도서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영화관 등 각종 문화기반시설은 문화예술교육의 장이기도 함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전반에 있어서, 문화다양성을 보호, 확산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적용하도록 한다.

이는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 기관장, 운영위원회 등의 인적 구성의 쿼터제 도입, 기관 소속 직원의 다양한 문화정체성 보장 의무화, 소수자의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전파 및 접근의 공평성 보장을 위한 기관운영의 방식 개선, 문화 프로그램에서 소수자의 문화정체성 관련 관점의 적용, 소수자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지원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기반시설 등에 대한 각종 기관평가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제도적 정비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지역문화 진흥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통합지침 마련 등 추진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일차적으로 생활권 내에서의 다양한 관계(가족, 이웃 등)를 통해서 형성, 변화, 고착화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다양한 문화정체성을 인정, 포용하는 문화다양성 정책을 지역문화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양한 지자체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고 있으나, 그 대상범위나 내용, 정책수단이 상이하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 제정 등에 준거가 될 수 있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확산을 위한 통합지침을 마련하여, 각종 정책 및 사업 실행 등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앙과 지역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문화정체성과 그에 기반한 문화적 표현의 활성화가 지역발전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이에 관한 자율적 참여 및 지역단위의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지역 문화다양성위원회 운영, 문화다양성을 척도로 한 문화다양성 도시 지정 등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3.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의 활성화

가. 생활문화의 개념 및 사업 재구성의 필요성

문화권은 문화민주주의와 관계가 깊다.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의 민주화를 넘어서서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소외계층 없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문화예술의 주체로서 참여함을 말한다. 구성원 모두는 문화생산과 향유의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야 하며, 문화예술을 통해 자신의 욕구와 문제를 표현하고 소통하는 것을 추구하며, 이것이 가능한 사회는 문화민주주의 실천이 작동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국가의 문화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과 국민의 권리, 책무, 기본원칙 등을 살펴보는 이유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어떻게 문화예술을 지원·육성·보호하느냐'에 대한 당대의 인식과 방향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을 잡기 위해서 문화기본법으로부터 출발, 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현재까지 축적해온 지식과 직관적이면서도 측정하기 어려운 지혜와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의 발전과 국민들의 문화권을 위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 및 행위이다. 지속가능한 문화정책을 위해 법적토대를 중심으로 시대, 시기, 환경적 변화에 따른 실현가능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따라서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은 1차 계획 수립 후의 실행과정 및 내용을 검토하면서 앞으로 5년에 있어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시하는데 목표를 잡아야 한다.

특히 문화기본법의 가치를 반영, 차별 없는 문화권을 통한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을 정책목표로 그동안 사업을 수행해왔다면, 앞으로 문화적 자본의 접근에 있어서 사회적 배제가 없고 모든 국민이 문화적 삶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계획이 지속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2018년 5월에 발표된 문화비전 2030은 문화기본법에 근거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의 가치를 통해 9개의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법 제 2조(정의)의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제2장 7조(생활문화지원)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간 및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비전 2030의 9대 의제 중의 하나인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를 위해서 문화권 확대, 일과 삶의 균형으로 여가 친화 사회환경 조성, 전 국민에게 문화복지 확산, 개인의 문화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등 제시된 5개의 대표과제와 관련이 있다.

그동안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 공급자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국민의 생활문화 속에서의 향유권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문화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의 문화에 대한 참여와 향유할 권리(문화권)의 장려가 보장됨으로써 문화소비에서 문화주체로 국민의 위상이 변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국가가 문화예술 수요자에 대한 민주적 균형 및 분배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문화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문화정책의 방향, 의제설정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위의 논의과정 및 의견수렴을 거쳐 만들어진 문화비전 2030은 방향 및 의제설정에 대한 근간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따라서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은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에서부터 지역 문화분권 실현, 그리고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이라는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위한 초석을 제대로 다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의 관계 속에서 생활문화와 지역문화의 재정의 및 재구성을 우선으로 다루고자 한다.

나. 생활문화의 개념과 정책대상 범위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은 지역문화정책의 방향설정 및 사업실행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많은 지자체는 조례제정이나 사업지원기준의 설정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본질적 구성요소로서의 공적영역(public sphere)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확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 행위, 토론, 합의의 과정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은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지속해왔던 예술동아리, 스포츠동아리, 기타 취향 및 취미동아리 등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촉진에 역할을 하며, 지역주민들은 단순한 동아리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능동적 참여를 통해 지역문제에 대한 인식, 문제에 대한 주민중심의 방안 찾기 등 지역공동체 형성에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다.

2015년에 제정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과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에 대한 시대적 변화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근로기준법에서 다룬 내용 중 주 40시간 기준근로시간과 최대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인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은 기업체, 공공기관, 그리고 개인 등의 삶에 상호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근거, '여가를 통한 휴식 있는 삶을 기본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삶의 시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민들의 휴식 있는 삶을 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 및 사업내용의 많은 부분은 생활문화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생활문화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즉 시설에 대한 법적인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생활문화시설의 법적인 범위이며, 이러한 공공시설은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한 시설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정부는 '사람과 지역경제 중심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다양한 문화, 교육환경 관련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 개념을 도입하였다. 종래의 SOC는 '생산(경제)의 기반이 되는 시설과 시설 효용 증진 및 이용자 편의시설'을 뜻하였다면, 생활SOC는 '국민생활 편익 증진시설이자 일상생활 기본전제인 안전시설'을 뜻한다.[25] 2019년 '20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National Minimum) 이상의 핵심 생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 3년간 30조원 수준의 예산투자를 발표하였다. 생활 SOC 정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는 '개인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고용이 증가되어 소득이 증

25)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생활SOC 3개년 계획안 발표] 참조

대'되고, '지역은 지역의 인구증가, 투자와 소득이 증대하고 지역의 경쟁력이 강화'되며, '사회는 경제 활성화와 신뢰 제고 등 무형적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사회안전망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는 데에 있다.

2019년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생활SOC 예산 내역을 보면, 도로 및 철도 안전 2.8조원, 노후 생활SOC 개보수 -노후상수도(0.5조원), 노후하수관로(0.3조원) 1.3조원, 깨끗한 생활환경-미세먼지저감숲(1,030억원) 7,467억원, 취약지역 기반강화-도시재생(1.7조원), 주거지 주차장(0.3조원) 3.5조원, 문화·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2,578억원), 공공도서관/문화센터(2695억원) 1.1조원 등 2019년 예산대비 29.8% 증액된 예산을 책정하였다.[26] 생활문화시설 범주에 들어가는 1.1조원의 문화·체육시설의 투자를 통한 시설확충은 앞으로 공간에 따라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기획 및 프로그램의 준비를 함께 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전근대에 있어서 예술은 재능 있는 소수 직업 엘리트들이 독점하는 활동으로 여겨졌다. 근대로 들어서면서 점차 예술은 특정 소수에 의한 특정한 기예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러서 다양한 변동요인으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것이 곧 예술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해지는 생활문화예술 프로젝트들의 지원기준을 보면 '자신의 감성적 역량을 가지고 공적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기본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일상생활 속에서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생활문화 활동이라는 비교적 넓은 범위의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화비전 2030의 인식적 기반은 사람이 있는 문화이며, 정책방향은 사람과 생명이 먼저이고 협력과 다양성, 쉼이 있는 문화를 지향에 있다. 문권 확산'과 일과 삶의 균형으로 여가친화 사회환경 조성이라는 과제의 방향에서 볼 때, 생활문화는 사람이 있는 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실천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26) 출처 : https://v.kakao.com/v/20190829090216299?from=tgt

이와 더불어 공간 및 장소의 관점에 따르면, 생활문화 SOC의 범주에 들어가는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하여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할 때 '문화권, 문화다양성, 문화생태계, 지역문화분권,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문화협력, 창의적 사회혁신'이라는 과제의 이상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야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 된다. 예컨대 생활 SOC에 속하는 건축을 공공건축으로 볼 수 있으며, 공공건축의 혁신, 다시 말해 공공성 증진, 설계방식 개선, 설계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기준과 원칙에 대한 재설계를 통해 공간과 주민, 공동체의 관계성이 반영된 생활문화 활성화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

생활문화는 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생활문화의 개념은 생활예술과 다소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개념의 모호함은 생활문화사업의 범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활문화를 정의함에 있어서 강윤주(2012)는 생활예술 개념에 보다 근접해 있으며 '공동체 구성원이 일상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감성적 역량을 발휘하는 행위'로 생활문화를 본다. 양건열(2014)은 생활문화를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예술적 활동'으로 봄으로써 생활예술개념에 근거하고 있으나 지역 지문의 일상생활로의 확장하는 단초를 보여준다. 조광호(2015), 정광렬(2016), 최혜자(2017) 등은 지역주민과 일상생활에 더 초점을 두고 있고 더 나아가 문화시민으로서의 주체적인 문화적 삶을 위한 활동으로 개념을 확장한다. 연구자 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이라는 정광렬(2016)의 개념이 무리 없이 수용되고 있다.

여전히 지역에서 생활문화 정책에 따른 사업이 수행될 때마다 개념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생활이라는 말은 생활양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 생활양식은 고정된 것이 아닌, 삶의 지속과 함께 계속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활문화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하였을 때, 기초(순수)예술과 생활문화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정책실현은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명확한 대상의 규정이 필요하였으며 따

라서 지원대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예술단체나 동호회(동아리)로 한정 짓는 경향이 있었지만, 문화정책 연구자들이나 현장전문가들은 점차 주민들 사적모임으로서의 동호회로 국한하기보다는 사적 공동체를 넘어선 공공적 성격을 가진 생활문화공동체 또는 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가 생활문화정책의 대상이자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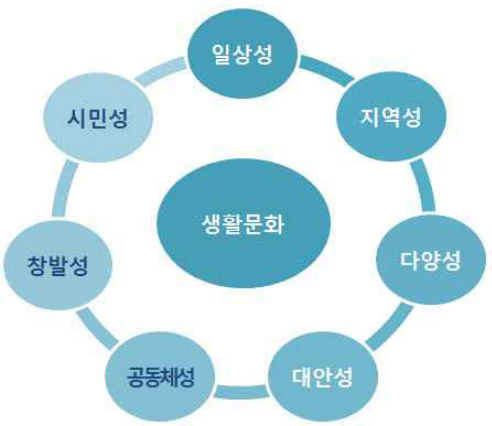

[그림 3-8] 생활문화 정책수립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

생활문화의 활동의 출발은 일차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개인의 욕구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함께 여럿이 공통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회성'을 통해 사회적 자본[27]이 형성된다는 이론을 수용한다면, 단순히 동호회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보다 동호회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발전에 더 이바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방주영, 2013). 경험적으로 보면, 생활문화 활동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점차 친밀한 개인의 사적 사교성에 초점을 둔 동아리 활동을 넘어서서 개인을 연결해 주는 관계와 규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다.

27) 사회적 자본의 유형으로 소통(communication), 교류(exchange)와 협력(cooperation), 연대(solidarity), 환대(hospitality)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한편, 생활문화가 일상 속에 정착하게 되면 참여예술로서의 효용성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시민들은 예술창작에 참여함으로써 창의성, 혁신성, 소통능력, 독창성, 응용력 등이 발달, 자연스러운 감정분출과 표현을 통해 생활세계 속에서 가치판단과 탐구, 스스로의 의사결정력 등의 향상에 도움을 얻게 된다고 한다. 특히 축제나 예술행사 등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가 맺어지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 이해, 경험의 공유, 자신감, 성취감 등이 고양되면서 공동체의 조화와 창의적 발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강윤주, 2014).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문화 지원정책과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지원 정책은 서로 다른 축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균형을 제대로 유지할 때 문화예술생태계가 건강해진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은 창작과 지원의 관점에서 예술(가)정책이 있고, 장르가 아닌 향유와 시민참여라는 측면에서의 생활문화 정책이 있다. 대개 예산비율을 볼 때 향유와 예술생산이라는 두 축이 균형을 잡고 있기 보다는 트렌드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한쪽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며, 문화정책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나 합의의 수준이 지원대상 및 방식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다. 생활문화센터의 조성과 운영방향

전국적으로 조성·운영되고 있는 생활SOC로서의 지역밀착형 생활문화센터는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과 상당히 밀접하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목적은 '기존의 문화시설 및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국민의 문화여가참여 및 생활문화 참여 접근성을 제고하고, 공존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문화공동체를 조성'하는데 두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장르 중심 예술의 보급·확산을 통해 문화의 민주화 전략을 주된 목표로 문화기반시설을 조성·운영해 왔다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의 핵심은 일차적으로 주민·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이나 문화예술창작 활동 등 생활예술, 생활문화의 접근기회 및 가능한 장(場)을 제공하여 문화민주주의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거점형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

다. 말하자면 생활문화센터는 우선 주민·시민 주체의 이용자 확대를 통해 교류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의 강화, 더 나아가 주체적인 공간운영 및 관리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곳으로 기대된다.

생활문화시설은 에 의하면 '우리 사회가 노동중심사회에서 여가중심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분절적 여가시설로는 문화나 체육 등 영역을 넘어선 통합적 여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개념의 시설이 요구된다고 분석하고 있다(양혜원, 2013). 보고서에서는 '대도시와 달리 중소도시나 기본적인 문화·체육·교육·의료 등의 인프라가 취약한 농산어촌 지역은 전문화·특화된 시설 보다는 한 공간에 여러 가지 기능이 집적,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더 요구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문예회관이나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의 문화공간들이 주민들에게 제공한 문화향유 서비스는 수동적 문화소비의 단계에 머물러 왔으며, 주민들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문화시설 등이 있지 않으면 물리적·심리적으로 접근의 곤란이나 제약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생활권 내에서 문화예술 활동의 직접 창작·참여가 가능한 여가 공간 요구는 주민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문화활동이 늘어날수록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창의성을 요구하는 사회일수록 예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진다. 소셜 미디어가 발달되고 다양한 플랫폼이 보편화되면서 문화영역의 일상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 문화적 욕구 또한 의식주와 함께 생활문화 속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의 하나라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수용되는 정도에 따라 지속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그동안 수혜라고 인식했던 수동적인 복지혜택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및 환경에 있어서의 문화복지 확대 및 이에 대한 주체적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담아낼 수 있는 장소로 조성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는 시민의 능동적이고 주체적 참여 및 운영이 가능한 지원체계 및 지역사회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한 생활권 중심의 거점공간으로서 자리잡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문화정책은 생활문화가 구현되는 지역에서 실행되므로 마땅히 지역문화정책과 통합적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커뮤니티 아트, 생활문화공동체(마을 만들기), 지역문화특화사업 등의 사업은 지역주민의 능동적 참여와 과정관리, 주민합의에 기초한 사업진행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생활문화정책 방향과 밀접하며, 따라서 지역과 생활문화라는 관점에서 지역 간/지역 내부 협력 및 네트워크 조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역문화진흥법의 지역문화진흥에 있어서 생활문화의 활성화는 지역문화진흥의 주요부분이며, 지역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대와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생태계 조성은 정책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문화원이나 문화의 집 등과 함께 지역문화재단들이 생활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라.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기본 방향 및 지원의 기본방향

첫째, 시민의 예산사용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게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과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대해 일차적으로 공유하고 시민들이 협의하여 정한 사업을 민주적 과정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열린 결정권 부여가 필요하다.

둘째, 생활공동체 내에서 생활문화에 활동이 서로를 구분하는 문화자본이 아니라 소통하는 사회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원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은 시민들의 공론장 형성능력, 의결과정의 민주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평가를 위한 기준이 아니라 참여를 통한 이해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넷째, 공동체 내에서 문화활동은 일반적으로 교육, 체험, 행사, 그리고 축제의 형태로 나타난다. 주민들은 지자체나 문화재단 등에서 기획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참여를 해왔다. 그러나 재단 등의 전문성에 기반한 프로그래밍과 함께 주민이 원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수시지원의 트랙이

필요하다.

다섯째, 이를 위해 주민주체 및 참여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기획에서부터 의사결정까지 참여하고 공간운영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주체적인 주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과정설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인 협의체 구성할 수 있도록 사전지원, 사후위임의 지원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공동체 구성원들의 직접 참여가 가능한 생활문화 활동 기회가 많아질수록 구성원들 간의 상호이해, 경험 공유의 기회를 나누고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는 자신감, 성취감을 얻고 사회적으로는 공동체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 능력의 배양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의식이 함양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섯째, 생활연계형 교육과 이에 따른 전문가의 양성이 함께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문화예술교육, 동아리 활동(자발적 예술활동), 커뮤니티 아트(예술가+전문매개자+주민), 마을 만들기, 그리고 법정사업인 문화도시조성 정책과 연동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사업과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서로 협력하는 구조이나, 실질적으로 주민의 주체적 역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도시재생뉴딜정책은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계획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런 점에서 능동적 주민주체를 지향하는 생활문화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지정되는 문화도시사업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제도적 연계지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곱째, 생활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방향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경쟁하듯이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활동양식을 파악하여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덟째,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재원조성의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조성을 위한 근거 및 체계가 필요하다. 복지분야, 평생교육,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지역에서 구현되는 연관사업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통합적 재원활용의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세부적으로 각 영역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이 필요하다.

① 리서치 & 통계 : 다양한 목적을 지녔던 유휴공간을 발굴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간 리서치 및 통계자료 확보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② 지표 : 보충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중앙단위의 일반지표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특성화 지표의 마련을 통한 지원의 원칙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과정관리 : 기확보된 공간의 경우 시설조성으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각각의 특징에 따라 장소성의 이해 및 시민의견을 형성(building up)을 우선해야 한다. 이 과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참여 및 주체성,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정책 대상의 주체성이 상실될 경우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숙려를 통한 제도화 : 우리나라의 경우, 사안에 따른 정치적, 정책적 속도가 매우 빠르다.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될 경우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나 규정의 엄격함이 현장의 창의성을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과 조례의 제정과 동시에 지역사회가 합의(consensus)를 도출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시민의 주체적 참여를 주장하면서 주체성의 요건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학습과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늘 누락되어 왔다.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사업의 속도, 세금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감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관리의 기술, 공공성과 개인권리의 균형 등의 사안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⑤ 공간의 발굴 및 활용 :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그리고 청년실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심사이다. 전국 어디에나 있는 경로당의 지원방식을 보면 난방비나 시설유지비, 쌀 등 음식물 지급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마다 경로당을 전유하고 있는 노인들이 있으며, 다른 한편 경로당의 분위기나 전유하는 사람들의 태도 등으로 인해 불편해하는 노인들도 상당하다. 노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요구하는 콘셉트를 중심으로 공간의 리모델링을 시도,

이 경우 규모에 따라, 장소성에 따라, 참여하는 주민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세대별 구성에 따라 노인들의 경로당이 타 연령대의 사람들에 빼앗긴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지근거리의 문화공간으로 인식,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운영의 대안공간 등도 생활 SOC 범주에 포함, 지원방식 및 내용의 변화를 통해 시민들 생활 곳곳에서 자발적인 촉진자(facilitator)이자 매개자로 활동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각각의 법적 기반과 고유목적, 특성에 따라 거버넌스가 가능한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전국문화원연합회 등 법인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4. 국제문화교류의 체계화·다양화·활성화

가. 국제문화교류의 정책방향과 기본계획[28)]

1) 국제문화교류의 추세 변화

국제문화교류는 교류형태, 교류분야, 교류주체, 교류내용 등에서 그동안 특징적인 변화 경향을 보여 왔다. 먼저 교류형태에서는 일방향적인 수신이나 발신 형태의 교류방식에서 벗어나, 점차 쌍방향 교류 또는 3개 이상의 주체가 관여하는 다자간 교류방식으로 이행하는 특징을 보인다.

교류분야와 관련해서는 순수예술이나 전통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교류를 넘어서, 문화정책, 연구, 문화산업 등으로 교류분야가 확장되고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사회적, 기술적, 정치적 환경 변화와 함께, 교류주체와 관련해서도 국가나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방식에서 민간 영역의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앙집중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들

28) 이하의 내용은 다음 문헌을 참조함. 김혜인 외(2018) . 국제문화교류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18).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2018~2022)

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전개되는 추세를 보인다.

국제문화교류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과거에는 공연, 전시 등 순수예술분야의 결과물을 중심으로 한 교류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프로젝트 기반의, 또는 과정 중심의 문화교류가 더욱 유의미한 형태로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는 기술적 환경의 변화가 크게 작용함으로써,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문화교류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국제문화교류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의 국제문화교류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주요 교류 대상국이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중국과 일본과의 교류가 가장 많고, 미국 및 일부 서유럽 국가, 즉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을 중심으로 문화교류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특징은 공공과 민간 모두 공통된 것으로, 국제문화교류가 특정 국가에 편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9] 공공과 민간의 교류대상국 현황

교류분야에서는 문화예술 분야 교류에 편중되어 있다. 공공 및 민간 영역 모두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2순위는 전통문화인데, 공공

기관보다 민간기관에서 전통문화교류가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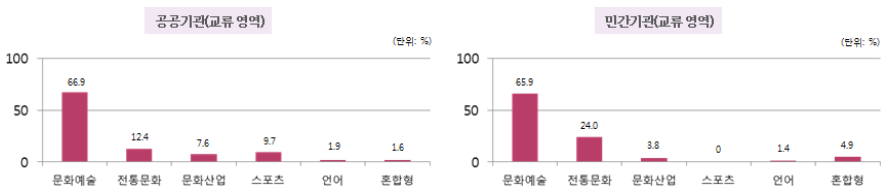

[그림 3-10] 공공과 민간의 교류영역 현황

교류내용 및 형식에서는 전시, 공연 등 작품교류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모두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은 작품교류가 1위, 2위가 국제행사참여, 3위가 학술·정책·인적교류 순이고, 민간기관은 작품교류, 국제행사 참여, 공동프로젝트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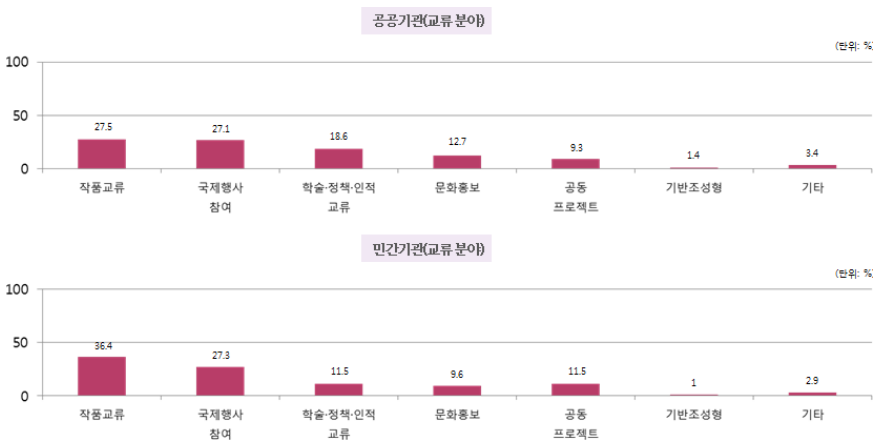

[그림 3-11] 공공과 민간의 교류분야 현황

교류방식에서는 일방향적인 발신이나 수신보다는 쌍방향(발신형+수신형)이 주된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문화를 해외에 소개하는 발신형 교류사업이 수신형 교류사업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에 공동기획·제작 방식의 국제문화교류는 저조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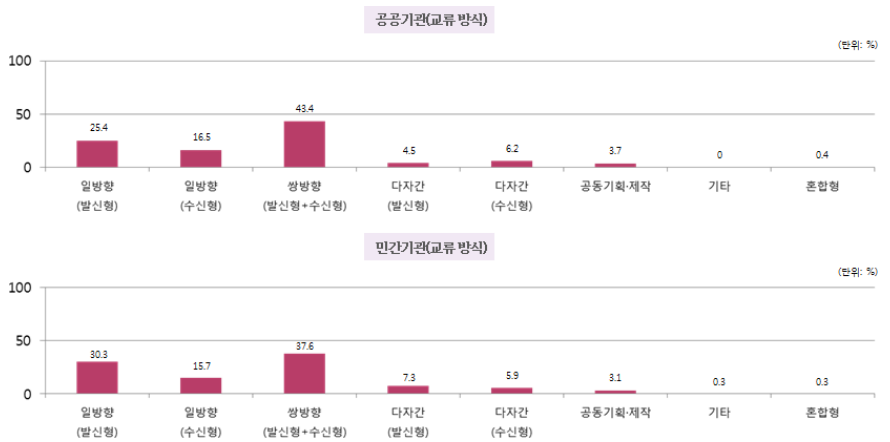

[그림 3-12] 공공과 민간의 교류방식 현황

이러한 국제문화교류의 현황에 더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국제문화교류 지원기관들 간 역할중복 및 협력부족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국제문화교류 지원기관들 간의 역할이 중복되고 있으며, 유기적인 협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문화교류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둘째, 국제문화교류 대상 국가 및 권역이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교류대상 국가가 5개국(중, 일, 미, 불, 독)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향후에는 북방(러시아, 몽골, 중앙아 5개국) 및 남방(아세안 10개국) 지역을 중심으로 교류대상 권역 및 국가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지역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지자체와 민간의 문화교류는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단발성 행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와 민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형태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제문화교류의 기반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이

현장 인력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인력 양성 규모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다수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추진주체들이 네트워크의 한계로 문화교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반조성 차원에서 다양한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2017년 국제문화교류진흥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그 목적은 "국제문화교류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본 법은 5년 단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제5조). 이 종합계획에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평가 및 제도개선, 기반조성,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전문인력 양성,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부의 유통 방안, 그 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문화교류진흥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발표했다. 따라서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은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이 법정계획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보완·연계하는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정부의 상위 계획 및 문화 분야 중장기 계획 체계 분석

1. 정부의 상위 계획(포용국가 비전)

포용국가는 사회정책 강화로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 구축하고자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위 계획이다. 여기에서 포용은 혁신능력을 높이고 기술혁신의 결과를 보완해 주는 상보적 관계를 의미한다.

【포용국가의 개념】

☞ (포용) 성장에 의한 혜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

☞ (포용국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는 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이고,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까지 포괄하는 것이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가차철학이 되어야 함.

포용국가 비전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설정되어 주로 복지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후 혁신과 결합하여 '혁신적 포용국가'로 변화되었다.

포용국가의 개념과 문화정책과의 관계는 이미 앞에서 다루었으므로 생략하고, 여기에서는 포용국가의 개념체계와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다루기로 한다.

포용국가의 체계는 다음의 〈그림 3-13〉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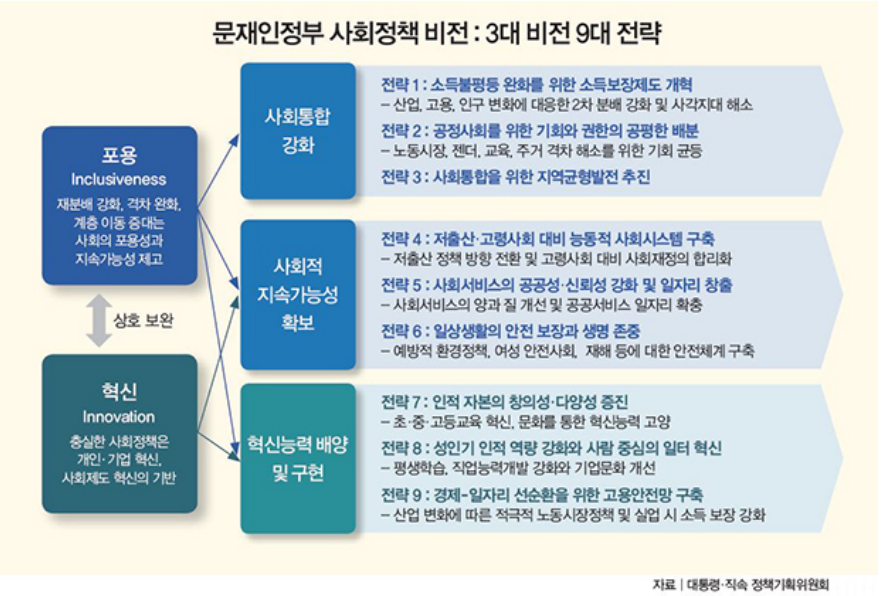

[그림 3-13]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

2. 문화비전 2030 분석

가. 문화비전 2030 수립 배경

2018년 5월 발표된 문화비전 2030은 경쟁·효율을 중시하는 일 중심의 사회, 타인을 혐오하고 상호 신뢰 부족 등 사회분위기와 4차산업혁명과 같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운동에 대한 성찰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수립되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중장기 비전으로 최초로 민간이 의제를 주도해 내용을 구성하고, 정부가 제안된 정책의 구체화를 지원하면서 완성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10월 민간위원 19명으로 구성된 새문화정책준비단 위원을 위촉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2018년 11월까지 약 1년간 운영하여 문화비전 2030을 수립하였다. 문화비전 2030은 민간 주도로 수립된 것으로 그동안 각종 중장기 계획이나 비전 수립 시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수립되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나. 문화비전 2030 계획 체계

문화비전 2030의 비전은 '사람이 있는 문화'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3대 가치로 하여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을 3대 방향으로 정했다. 문화비전 2030은 3대 가치, 3대 방향, 9대 의제를 기본 골격으로 47개의 대표과제와 186개의 추진과제들을 제시하여 2030년까지 국가 문화비전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자 했다.

핵심가치인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은 문화기본법에 규정된 문화의 가치와 동일하다. 다만 문화기본법에는 창조성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창의성이라고 약간 용어를 변경하였는데, 창조성과 창의성은 영어로 모두 creativity라는 동일한 개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창조성은 주로 예술적 관점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고, 창의성은 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창의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핵심가치는 문화기본법 이전에 수립된 노무현 정부의 "창의한국"에서 제시한 것을 유지한 것이다. 이러한 핵심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은 문화정책이 지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다만, 제2절의 문화다양성 개념에서 설명한 것처럼 창의한국에서는 다양성을 개인적인 자율성과 주체성에 좀 더 초점을 두었다면, 문화비전 2030에서는 집단이라는 공동체의 관점을 더 강조한 것이 차이이고 발전적인 측면이다. 다양성이 개인의 주체적인 결정에서 출발하지만, 이를 공동체의 관점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자율성 보장이 잘 이루어질 때 공동체의 다양성이 실현되고, 개인의 자율성과 공동체의 다양성이 실현될 때 사회의 창의성이 확산된다는 것이다.

3대 방향은 ① 개인의 자율성 보장, ② 공동체의 다양한 실현, ③ 사회의 창의성 확산이다. 3대 방향의 9대 의제는 ①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②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③ 성평등 문화실현, ④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⑤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⑥ 지역문화분권 실현, ⑦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⑧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⑨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등 9개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

〈표 3-7〉 문화비전 2030 전략체계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	
가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3대 방향 9대 의제	방향	의 제(47개 대표과제, 186개 세부과제)
	1. 개인의 자율성 보장	①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②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③ 성평등 문화실현
	2.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④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⑤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⑥ 지역문화분권 실현
	3. 사회의 창의성 확산	⑦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⑧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⑨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다. 추진과제 현황

문화비전 2030은 47개의 대표과제와 186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비전 2030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체 영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과제들을 다룰 필요는 없다. 문화비전 2030에서 제시한 과제 중에서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관광, 체육, 미디어 등을 제외한 추진과제의 내역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의 〈표 3-8〉과 같다.

〈표 3-8〉 문화비전 2030 추진과제

의제	대표과제	추진과제
1. 개인의 문화 권리 확대	1-1. 문화권 확산	문화권 2030, 헌법개정, 문화영향평가
	1-2. 일과 삶의 균형으로 여가친화 사회환경 조성	쉼이 있는 삶, 휴가권, 여가문화
	1-3. 전 국민에게 문화복지 확산	통합문화이용권, 생애주기별 문화복지/문화예술교육

의제	대표과제	추진과제
	1-4.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전면 확대	생활문화, 지역문화시설, 가족친화 문화놀이터, 참여형 문화정책
	1-5. 개인의 문화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분권화, 강사 등 권리 강화, 수요자 맞춤형 교육/수요기반 확대, 치유와 통합교육, 자생적 인문확산기반
2.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2-1.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	예술가권리법, 위원회
	2-2. 문화예술인·종사자 노동권·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확충	문화예술노동권위원회, 직업분류/취업기준 차별화, 저작권법 개정, 인식제고, 협력체계, 직업훈련 등 지원, 신진예술가 지원, 위계폭력 등 근절
	2-3. 예술인 복지 통합정책 지원체계 수립	연금제도, 고용보험, 복지지원센터, 창작주거복지, 복지금고, 복지지역협력위원회, 복지재단 운영개선
	2-4. 자율성과 협치 중심 문화예술 공공기관과 지원체계 혁신	협치기반 조성, 독립성/전문성 강화
3. 성평등 문화의 실현	3-1. 성차별·성폭력 없는 문화생태계 조성	제도화/침해구제, 실태조사, 지원센터
	3-2. 성평등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혁신	표준계약서, 위계폭력 징계강화, 여성대표성 등 제도화. 여성인력 처우개선/고용
	3-3. 여성친화적 생태계·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	여성활동 지원, 여성인식 제고, 성평등 문화확산, 전담조직
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4-1. 문화다양성 정책의 위상강화와 법제 정비	법제도/개념 정비, 문체부 역할, 협력체계 강화
	4-2. 문화다양성 침해(혐오표현 등) 금지와 인식제고	혐오표현 금지, 교육 확대. 기반시설/프로그램의 다양성 실현 지침
	4-3.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 보장	문화정체성 정립, 문화생태계 모델 개발, 지원다양성
	4-4. 언어문화의 다양성 실현	지역언어/특수언어 진흥
	4-5. 전통문화유산의 보호와 현대화	기반조성, 자원발굴/조사, 향유증진,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 전승
	4-6.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국내외 관광정책 마련	
5. 공정하고	5-1. 예술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성 지원, 생태계 조성, 예술/기술 융합 관객

의제	대표과제	추진과제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생태계 조성	체험형 문화공간, 커뮤니티 예술, 다문화 문화센터
	5-2.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공정한 대가체계 마련	공정보수 공시제도, 예술가 사례비 제도화, 지원심사의 공정성·다양성
	5-3. 문화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	표준계약서, 불공정행위 규제 지원, 창작보상체계
	5-4. 문화콘텐츠 유통과 노동 불공정 개선 법률 제정	
	5-5. 국공립 문화기반시설 운영혁신과 민간 예술단체 창작 다양성 실현	예술단체/문화시설 자생력·기획역량 강화
	5-6. 공정하고 다양한 스포츠 문화 조성	
	5-7. 출판 미디어의 다양성 실현	출판유통통합시스템/민간참여, 도서정가제/공정한 출판생태계, 재정확충/출판 혁신성장동력,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역량, 출판다양성
	5-8. 관광산업의 공정상생을 위한 지원	
6. 지역문화분권 실현	6-1. 지역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 조성	지역문화재원 확충, 포괄보조사업 확대, 참여문화예산제도, 문화정보화/정책전담기관, 생활문화/맞춤형 지원, 인력양성/배치, 협력체계 강화, 지역문화정보 플랫폼
	6-2. 지역문화의 고유성 유지·발전	문화도시 지정, 지역재생, 지역콘텐츠육성, 협력체계, 지역축제 지원체계 개선, 지역전통문화연구/활용, 지역학 육성, 책 마을공동체
	6-3. 지역문화 거점기관의 운영혁신과 지원체계 마련	커뮤니티 문화공간, 문화기반시설 운영혁신, 지역문화재단 운영 혁신, 지역문화재단 총액예산지원제도, 문화기관 운영/평가제도 개선
	6-4. 문화 협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지역문화/예술 협력체계
	6-5.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	
	6-6.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7. 문화자원의	7-1. 창의성과 상상력을 갖춘 시민·인재	생애주기 창의교육체계, 공간조성, 융합연구/교육 협업 프로젝트, 책 읽는 문화 조성

의제	대표과제	추진과제
융합역량 강화	7-2. 문화자원 관련 산업의 융합기반 조성	연구개발/전략기획 지원 강화, 융합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7-3. 문화자원과 신기술·지식 융합 촉진	
	7-4. 문화자원의 기록·보존 체계 강화	아카이브, 한글자원 활용
	7-5. 문화자원 융합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직무 재분류, 세제지원
8.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8-1. 문화·체육·관광 분야 남북 교류 협력사업 획기적 전환	기반조성, 교류확대, 동질성 회복
	8-2. 문화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적 지원	한류/문화콘텐츠 진출, 입체적 국제문화교류 활동 지원체계(재외문화원 강화)
	8-3. 지원과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국제교류 확대	쌍방향 인력 교류, ODA 확대
	8-4. 한반도 평화를 여는 문화의 섬·문화로드 프로젝트	백령도 문화(평화)의 섬, DMZ 문화로드
	8-5. 아시아 문화교류 확대와 국제교류협력 기반 조성	한중일, 아세안 교류 확대, 국제문화교류 협력 지원기반
9.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9-1. 사회의제를 주도하는 문화정책 협력체계 마련	사회문화부총리제도/협력체계, 문화영향평가 확대
	9-2. 더 나은 삶을 위한 공론·학습·해결의 문화플랫폼 모델 확산	문화로 바꾸는 삶, 문화지대 조성, 혁신학교
	9-3. 공공 문화서비스와 사회문화적 일자리 전환	공동체형 일자리 확충/양성, 미래일자리 변화 대응
	9-4. 문화 공유지 활성화에 의한 지역·공간 재생	지역주민 주도 문화자원 활용, 지역주민/지자체 역할 강화
	9-5. 기후변화에 문화적으로 대응	에너지 저감/생태 중심 문화시설/문화공간

※ 세부추진과제에서 관광 및 체육 등은 미기재

라. 문화비전 2030의 전략체계 및 추진과제 분석

1) 문화비전 2030의 가치 및 전략체계의 특성

문화비전 2030의 비전인 “사람이 있는 문화”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의

가치와 연계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서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설정되어 있다. 경쟁과 효율 보다는 사람과 공정·상생, 일 중심에서 쉼이 있는 문화, 인간 소외에서 인간 감성 문화, 젠더 불평등에서 젠더 평등, 갈등과 혐오에서 협력과 다양성의 문화로의 전환이라는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문화비전 2030의 3대 방향은 다른 전략체계가 대개 가치와 전략목표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과는 달리 전략(핵심) 가치인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략가치와 3대 방향인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은 문화기본법에 규정된 문화의 원리인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제2조 기본이념)을 인용한 것이다. 다만, 창조성을 창의성으로 약간 변형시켰다. 이러한 적용은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과 개성을 마음껏 포용하고, 타인의 정체성과 개성을 인정·포용하며, 그 바탕 아래 서로 협력하며 창의성을 발휘하는 문화"[29]로 확장되어 있다. 이러한 적용은 사람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문화의 기본가치에 충실한 문화정책과 비전을 제시한다는 문화비전 2030의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2) 문화정책 영역별 문화비전 2030 과제 분석

문화비전 2030의 전략체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표과제 및 추진과제를 문화기본법 규정에 근거한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영역으로 대분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조직기능을 고려하여 하위 기능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전략계획은 영역 및 조직부서를 넘어서 전략 중심으로 구성하게 되므로, 영역별·하위 기능별 중복·중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법률상 기본계획 수립 영역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기능별로 이를 분류하여 보면 계획의 지향가치, 전략적 방향, 과제의 층위체계, 영역별 비중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기준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분석결과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9)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비전 2030

첫째, 문화비전 2030은 장기비전이므로 중기계획의 체계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과제별 목표 등에서 구체성이 미흡한 경우가 있다. 본 연구는 방향 연구이지만,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둘째, 문화진흥기본계획이 포함하여야 할 영역과 정책기능에서 편차가 있다. 영역 및 기능별로 대표과제 및 추진과제가 많은 부문이 있고, 대표과제 및 추진과제에서 아예 다루지 않은 부문이 있다. 장기비전은 아젠더 중심이기 때문에 핵심 아젠더와 관련한 과제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예술정책은 대표과제에서 대부분 누락되어 있다. 문화비전 2030과 동시에 추진된 새예술정책에서 예술정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화비전과 새예술정책은 위상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문화예술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셋째, 과제별 층위가 다르거나, 추진과제가 중복된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 추진과제는 다른 과제와 배타적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문화시설, 예술인 권리 등은 중복되어 나타나거나 세부과제수가 많다. 이러한 이유는 정책기능 보다는 아젠더 중심으로 전략체계를 구성하다 보니 하나의 정책이나 사업이 각기 다른 아젠더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전략체계를 정책영역 중심으로 구성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전략목표 중심으로 구성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한계이다.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은 문화향유와 지원, 지역문화, 국제문화교류, 남북문화교류, 기반조성 등 정책영역별로 전략체계가 구성되어 사업간 중복이 발생하지 않지만 전략적 가치와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전략목표간 층위도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첩·중복이 발생하는 것은 문화비전 2030의 전략체계에서 일부 기인한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문화권리”대표과제에 설정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권리 이외에도 창의와 혁신, 공동체, 다양성 등 다양한 과제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전략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가능한

한 중첩과 중복을 최소화하되, 이러한 전략체계에서 발생하는 과제간 연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젠더 중심의 장기 비전임에도 추진과제의 세부내용을 보면 미래의 아젠더 중심 보다는 현재 추진되거나 계획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이 다수 제시된 경우가 있다. 이것은 정부조직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문제이다. 즉, 관료조직은 해당 부서의 정책이나 사업이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야 향후 지속적인 예산확보와 추진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식되어 평가에서도 유리한 기반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과정에서 문화비전 2030에 참여한 민간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음을 공통적으로 토로하였다.

넷째, 문화정책과 관련된 사업 보다는 주로 제도개선, 인식제고, 기반 조성 등에 관련된 과제가 많다. 그러나 보니 실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히 각 부서에서 추진할 사업은 부족하거나 비중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문화비전 2030이 장기비전이며, 블랙리스트 사태 등에서 비롯된 예술인 및 문화종사자의 권리, 문화권과 인권(시민 및 문화인력), 다양성과 성평등의 가치, 남북한 평화 등 문화 분야가 당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이다.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문화 분야 당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지향하는 문화비전 2030의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5년간의 법정계획임을 고려하여 정책과 사업을 더 강조하고 포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아젠더 중심으로 다루다 보니 해당 정책영역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누락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지고, 하위 영역이나 과제가 더 강조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국어정책의 경우 다양성 과제와 창의성의 영역으로 나누어 다루어지다 보니 국어정책의 기본적인 과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반면에 다양성 과제와 관련하여 특수언어와 지역언어, 창의성과 관련하여 아카이브, 한글자원 활용 위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기본법의 계획 수립 범위를 반영하여 해당 정책영역의 기본적인 과제를 먼저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문화비전 2030 및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 나타난 것처럼 문화

기본법에 제시된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영역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문화경관 및 문화자원 활용 등은 다른 정책의 하위 영역임에도 별도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실제 정책도 많지 않다. 반면에 문화다양성, 미래문화정책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정 기본계획이므로 문화진흥기본계획은 문화기본법에 규정된 정책영역을 모두 포괄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정책영역 간의 층위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방향은 제5장 제2절 추진전략에서 다루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비전 2030의 과제를 문화정책 영역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의 〈표 3-9〉와 같다.

〈표 3-9〉 문화 분야 영역별 문화비전 2030 과제

계획 영역	하위 정책	문화비전 2030 대표과제	문화비전 2030 추진과제
문화유산·전통문화	전통문화/전통예술	4-5. 전통문화유산의 보호와 현대화	기반조성, 자원발굴/조사, 향유증진,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 전승
	인문정신문화	1-5. 개인의 문화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자생적 인문확산기반
	문화다양성	4-1. 문화다양성 정책의 위상강화와 법제 정비	법제도/개념 정비, 문체부 역할, 협력체계 강화
		4-2. 문화다양성 침해(혐오표현 등) 금지와 인식제고	혐오표현 금지, 교육 확대, 기반시설/프로그램의 다양성 실현 지침
		4-3.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 보장	문화정체성 정립, 문화생태계 모델 개발, 지원다양성
		5-1. 예술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	다양성 지원, 생태계 조성, 커뮤니티 예술, 다문화 문화센터
국어의 발전과 보호	국어정책	7-4. 문화자원의 기록·보존 체계 강화	아카이브, 한글자원 활용
	지역언어/수어정책	4-4. 언어문화의 다양성 실현	지역언어/특수언어 진흥
문화예술 진흥	공연예술		
	시각예술		
	공예산업		

계획 영역	하위 정책	문화비전 2030 대표과제	문화비전 2030 추진과제
	문학		
	예술인복지/권리	2-2. 문화예술인·종사자 노동권·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확충	문화예술노동권위원회, 직업분류/취업기준 차별화, 저작권법 개정, 인식제고, 위계폭력 등 근절
		1-5. 개인의 문화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강사 등 권리 강화,
		3-2. 성평등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혁신	표준계약서
		2-3. 예술인 복지 통합정책 지원체계 수립	연금제도, 고용보험, 복지지원센터, 창작주거 복지, 복지금고, 복지지역협력위원회, 복지재단 운영개선
		5-2.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공정한 대가체계 마련	공정보수 공시제도, 예술가 사례비 제도화, 지원심사의 공정성·다양성
		5-3. 문화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	표준계약서, 불공정행위 규제 지원, 창작보상체계
	예술인력 양성	2-2. 문화예술인·종사자 노동권·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확충	직업훈련 등 지원, 신진예술가 지원,
	문화시설/문화기관/단체	1-4.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전면 확대	지역문화시설
		5-5. 국공립 문화기반시설 운영 혁신과 민간 예술단체 창작 다양성 실현	예술단체/문화시설 자생력·기획역량 강화
		6-3. 지역문화 거점기관의 운영 혁신과 지원체계 마련	커뮤니티 문화공간, 문화기반시설 운영혁신, 지역문화재단 운영 혁신, 지역문화재단 총액예산지원제도, 문화기관 운영/평가제도 개선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문화자원 개발	4-5. 전통문화유산의 보호와 현대화	자원발굴/조사, 향유 증진
	일자리	9-3. 공공 문화서비스와 사회문화적 일자리 전환	공동체형 일자리 확충/양성, 미래 일자리 변화 대응
	복융합/미래	5-1. 예술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다양성 지원, 생태계 조성, 예술/기

계획 영역	하위 정책	문화비전 2030 대표과제	문화비전 2030 추진과제
	/정보화	위한 생태계 조성	술 융합 관객체험형 문화공간, 커뮤니티 예술, 다문화 문화센터
		7–1. 창의성과 상상력을 갖춘 시민·인재	융합연구/교육 협업 프로젝트
		7–2. 문화자원 관련 산업의 융합 기반 조성	연구개발/전략기획 지원 강화, 융합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7–5. 문화자원 융합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직무 재분류, 세제지원
		9–5. 기후변화에 문화적으로 대응	에너지 저감/생태 중심 문화시설/문화공간
문화복지의 증진	문화복지	1–3. 전 국민에게 문화복지 확산	통합문화이용권, 생애주기별 문화복지
	문화향유 기회 확대	1–4.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전면 확대	생활문화, 지역문화시설, 가족친화 문화놀이터, 참여형문화정책
	문화예술 교육	1–3. 전 국민에게 문화복지 확산	문화예술교육
		1–5. 개인의 문화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분권화, 강사 등 권리강화, 수요자 맞춤형 교육/수요기반 확대, 치유와 통합 교육, 자생적 인문확산 기반
		7–1. 창의성과 상상력을 갖춘 시민·인재	생애주기 창의교육체계, 공간조성,
		9–2. 더 나은 삶을 위한 공론·학습·해결의 문화플랫폼 모델 확산	문화로 바꾸는 삶, 문화지대 조성, 혁신학교
	장애인문화		
	독서	7–1. 창의성과 상상력을 갖춘 시민·인재	공간조성, 책 읽는 문화 조성
여가문화의 활성화	여가문화 정책	1–2. 일과 삶의 균형으로 여가친화 사회환경 조성	쉼이 있는 삶, 휴가권, 여가문화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문화환경/디자인	1–1. 문화권 확산	문화영향 평가
국제문화교류	국제문화	8–2. 문화콘텐츠의 해외진출을	한류/문화콘텐츠 진출, 입체적 국

계획 영역	하위 정책	문화비전 2030 대표과제	문화비전 2030 추진과제
협력	교류/재외문화원	위한 전략적 지원	제문화교류활동 지원체계(재외문화원 강화)
		8-3. 지원과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국제교류 확대	쌍방향 인력 교류, ODA 확대
		8-5. 아시아 문화교류 확대와 국제교류협력 기반 조성	한중일, 아세안 교류 확대, 국제문화교류 협력 지원기반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문화/문화도시	6-1. 지역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 조성	지역문화재원 확충, 포괄보조사업 확대, 참여문화예산제도, 문화정보화/정책전담기관, 생활문화/맞춤형 지원, 인력양성/배치, 협력체계 강화, 지역문화정보 플랫폼
		9-4. 문화 공유지 활성화에 의한 지역·공간 재생	지역주민 주도 문화자원 활용, 지역주민/지자체 역할 강화
		6-2. 지역문화의 고유성 유지·발전	문화도시 지정, 지역재생, 지역콘텐츠육성, 협력체계, 지역축제 지원체계 개선, 지역전통문화연구/활용, 지역학 육성, 책 마을공동체
남북문화교류	남북문화교류	8-1. 문화·체육·관광 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 획기적 전환	기반조성, 교류확대, 동질성 회복
		8-4. 한반도 평화를 여는 문화의 섬·문화로드 프로젝트	백령도 문화(평화)의 섬, DMZ 문화로드
가타	문화권/인권	1-1. 문화권 확산	문화권 2030, 헌법 개정
		1-4.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전면 확대	참여형 문화정책
		2-1.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	예술가권리법, 위원회
		3-1. 성차별·성폭력 없는 문화생태계 조성	제도화/침해구제, 실태조사, 지원센터
		3-2. 성평등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혁신	위계폭력 징계강화, 여성대표성 등 제도화. 여성인력 처우개선/고용
		3-3. 여성친화적 생태계·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	여성활동 지원, 여성인식 제고, 성평등 문화확산, 전담조직
	거버넌스	2-2. 문화예술인·종사자 노동	협력체계

계획 영역	하위 정책	문화비전 2030 대표과제	문화비전 2030 추진과제
		권·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확충	
		2-4. 자율성과 협치 중심 문화예술 공공기관과 지원체계 혁신	협치기반 조성, 독립성/전문성 강화
		6-4. 문화 협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지역문화/예술 협력체계
		1-5. 개인의 문화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분권화
		9-1. 사회의제를 주도하는 문화정책 협력체계 마련	사회문화부총리제도/협력체계, 문화영향평가 확대

주 : 하위 정책영역은 현재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기능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구분한 것임.

3. 문화 분야 영역별 중기계획 체계 분석

가. 문화관련 법률의 영역별 중기계획 개요

문화관련 37개 법률 중 27개 법률에 기본계획(발전계획/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본계획 규정이 없는 법률은 저작권법, 문화예술진흥법, 작은도서관진흥법,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예술인복지법, 대한민국예술원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향교재산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이다. 영역별 중기계획이 규정된 법률 및 중기계획 수립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법률에 근거가 있는 27개 기본계획 중 8개 미수립 또는 수립중이어서 실제 계획이 수립된 것은 19개이다.

이렇게 많은 부문별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은 전체적인 조정과 협력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여건에서 문화정책의 체계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의 필요성을 잘 제시해 준다.

〈표 3-10〉 문화정책 영역별 중기계획 근거 및 현황 비교

중기계획 명칭	법률명	계획기간	현재계획	비고
문화진흥기본계획	문화기본법	5년	2015~2019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공연법	1년**	–	미수립
문학진흥기본계획	문학진흥법	5년	2018~2022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도서관법	5년	2019~2023	
박물관· 미술관진흥중장기계획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5년	2019~2023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5년	2018~2022	
인문정신문화진흥 기본계획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진흥에 관한법률	5년	2017~2021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문화예술교육지원법	5년	2018~2022	
국민여가활성화기본계획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5년	2018~2022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독서문화진흥법	5년	2019~2023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문화다양성의 진흥에 관한 법률	4년	2018~2021	미발표
국제문화교류진흥종합계획	국제문화교류진흥법	5년	2018~2022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지역문화진흥법	5년	2015~2019	
서예진흥기본계획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5년	–	미수립
국어발전기본계획	국어기본법	5년	2017~2021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한국수화언어법	5년	2018~20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특별법	5년	2018~2023	
문화산업진흥 중장기기본계획	문화산업진흥기본법	5년/ 10년*	–	미수립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콘텐츠산업진흥법	3년	2019~2021	
영상진흥종합시책	영상진흥기본법	**	–	미수립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법률	3년**	2019~2021	미수립
게임산업진흥중장기계획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5년*	2015~2019	

중기계획 명칭	법률명	계획기간	현재계획	비고
만화진흥기본계획	만화진흥에 관한법률	5년*	2019~2023	수립중
음악산업진흥중기계획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5년**	2018~2022	수립중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공예문화산업진흥법	5년	2018~2022	
출판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출판문화산업진흥법	5년	2017~2021	
인쇄문화산업진흥5개년계획	인쇄문화산업진흥법	5년	2017~2021	

주 : * 시행령 규정 ** 법령 근거 없음

문화 분야 부문별 기본계획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다른 부서에서 추진이 되고 있어서 일부 체계가 다른 점이 나타난다. 앞의 〈표 3-10〉에서 정리한 것을 토대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에 규정된 대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법률에 기본계획(중기계획) 수립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수립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며, 시기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30] 또한 법률의 기본계획 명칭과는 다르게 발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콘텐츠산업진흥계획은 2014~2016년을 대상으로 한 제2차 계획 이후 후속 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법률 근거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산업 중장기 정책비전 명칭으로 2017~2018년을 건너뛰고, 2019~2021 기간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시행령에는 5개년 중기계획 및 10개년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법률상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담당자 목록에서도 누락되어 있다.

둘째, 기본계획의 계획 근거, 계획에 대한 법률규정 내용, 수립 기간에 대한 것이다. 기본계획은 법률에 계획기간이 명확히 설정된 경우가 있는 반면에, 시행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도 있으며, 아예 법률 및 시행령에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은 계획기간에 대한 기준 없이 1년 단위의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중

30) 2017년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23개 중장기(3~5년) 계획 중 절반이 넘는 13개 계획이 제때 수립되지 않거나 시기가 지나 발표되었다고 지적되었다(김병욱 의원 국정감사 자료, 한국경제 2017. 10.13).

기 기본계획의 보기 어렵다.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기본계획, 계획기간 및 절차 등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립 박물관 및 지자체에서는 기본시책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은 2019년에 처음으로 수립되었다. 서예진흥기본계획은 2019년 6월부터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차 기본계획을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기본계획의 수립주체에 대한 것이다. 기본계획의 수립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만, 실제 기본계획의 수립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닌 경우도 있다. 영화진흥기본계획은 법률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인문학진흥기본계획은 교육부 소관이며,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과 함께 발표되었다. 인문학진흥 기본계획은 교육부 소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인문정신문화진흥 기본계획과 함께 발표된다.

넷째, 계획기간은 대부분 5년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계획은 3년 또는 4년으로 설정된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문별 계획기간이 각기 다르다 보니 상위계획인 문화진흥기본계획과 하위 계획인 각 부문별 계획 간의 연계성, 각 부문별 계획 간의 정합성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다섯째, 기본계획의 명칭에 관한 것이다. 명칭은 “기본계획”이 가장 많지만, “종합계획”의 명칭도 6개나 되며, “중장기(기본)계획”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5년 이내는 중기계획, 10년은 장기계획이라고 하는데, 박물관·미술관 분야의 계획은 5년 계획이면서도 중장기계획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다. 명확한 관점 없이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중기계획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관점이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나. 문화진흥기본계획 관련 문화예술 분야 기본계획 현황

문화진흥기본계획과 관련된 정책은 문화기본법 제8조 3항에서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국어의 발전과 보전, 문화예술의 진흥, 문화산업의 진흥,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문화복지의 증진, 여가문화의 활성화,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국제 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지역문화의 활성화,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등 11가지로 명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진흥기본계획과 관련된 정책영역에서의 기본계획 사례를 살펴보되,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된 문화산업 분야는 다루지 않았다.

문화진흥기본계획과 관련된 법정 계획(문화산업 분야 제외)으로는 13개의 기본계획 혹은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들 계획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 및 평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2018년(2018~2022) 또는 2019년(2019~2023)에 계획이 수립되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의 경우 2015년부터 제1차 기본계획(2015~2019)이 수립·진행되어 2019년 현재 1차 계획에 대한 평가와 2차 계획(2020~2024) 수립중이며, 국어발전기본계획은 2017~2021년으로 다른 계획기간과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이중에서 다음 12개의 기본계획의 체계를 살펴보고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새예술정책이 별도로 수립되었는데, 새예술정책의 법적 성격이 모호하므로 지속적으로 수립할 경우 향후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별도로 기본계획의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는 미술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법률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 없이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었다.

〈표 3-11〉 문화예술 분야 부문별 주요 중기계획 현황

계획명	근거법률	정책 목적	계획수립 현황
국어 발전 기본계획	국어기본법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	제3차 국어발전기본계획(2017~2021)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독서문화 진흥법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9~2023)

계획명	근거법률	정책 목적	계획수립 현황
		마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도서관법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제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2019~2023)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지역문화 진흥법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	제1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15~2019)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2018~2022)
문학진흥기본계획	문학진흥법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	제1차 문학진흥기본계획 (2018~2022)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	제1차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 (2018~2022)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	제1차 국제문화교류진흥 종합계획(2018~2022)
박물관·미술관 진흥시책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 지원·육성·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진흥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해 균등하고 보편적인 문화예술 교육 기회 제공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2022)
새예술정책	–	예술정책에 대한 예술계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예술창작과 향유의 선순환이 가능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문화예술발전에 기여	새예술정책 (2018~2022)
미술진흥 중장기계획	–	정부의 정책변화에 부응하여 미술진흥을 위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미술로 행복한 삶과 선순환 미술생태계 조성	미술진흥 중장기계획 (2018~2022)

다. 문화진흥계획 관련 영역별 중기계획 개요

1) 제3차 국어발전기본계획(2017~2021)

국어발전기본계획은 국어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 또한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3차 국어발전기본계획(2017~2021)은 '온 국민이 누리는 국어, 전 세계가 함께하는 한국어'를 목표로 하고, 5대 추진전략과 20개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9~2023)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 제2차 독서문화진흥계획은 ① 사회적 독서, ② 포용적 독서복지, ③ 생활 속 맞춤독서, ④ 미래독서생태계, ⑤ 독서정책 협력 체계 등 5대 아젠더를 기반으로 "사람과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독서"의 비전을 설정하고, 4대 전략과제 13개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3) 제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19～2023)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은 도서관법 제14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2조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설치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한다. 제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19～2023)은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을 비전으로 하고, 3대 핵심가치, 4대 분야, 13대 핵심과제, 36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4) 제1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15～2019)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근거하여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15~2019)은 '문화로 행복한 지역창조'를 비전으로 하고, 3대 추진목표, 3대 핵심가치, 3+1 핵심과제, 37개 추진과제, 113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5)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2018~2022)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7조에 근거하여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2018~2022)은 '보다 나은 삶, 일과 여가의 혁신적 균형'을 비전으로 하고, 3대 추진목표, 3대 추진방향, 3대 핵심가치, 3대 추진전략 , 6개 추진과제, 32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6) 제1차 문학진흥기본계획(2018~2022)

문학진흥기본계획은 문학진흥법 제5조에 근거하여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문학진흥법 제7조에 근거한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1차 문학진흥기본계획(2018~2022)은 '사람과 세상을 잇는 문학, 문학을 통한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의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3대 추진목표, 4대 추진전략, 15개 추진과제, 58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7) 제1차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2018~2022)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은 공공디자인법 제5조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공공디자인법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변경된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차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2018~2022)은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있는 삶'을 비전으로 하고,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 , 19개 추진과제, 49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8) 제1차 국제문화교류진흥 종합계획(2018～2022)

국제문화교류진흥 종합계획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하여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시·도지사는 매년 지역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차 국제문화교류진흥 종합계획(2018～2022)은 '세계와 공감하고 협력하여 모두가 행복한 국제문화교류'를 비전으로 3대 정책목표, 4대 추진전략, 17개 추진과제, 33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9)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의 기본시책 수립에 근거하여 2019년 6월에 발표되었다. 법률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존에는 2012년에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이 발표된 이후에 처음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비전은 "문화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박물관·미술관"으로 설정하고, 3대 목표로 ① 공공성 강화, ② 전문성 심화, ③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제시하고, 5대 전략과제, 16개 핵심과제, 39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0)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제2차 계획이(법정 계획으로는 제1차) 2018년 1월에 발표되었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은 2015년 법 개정에 따라 법정계획 규정이 신설된 이후 2016년도부터 연구를 거쳐 다른 계획보다 수립기간이 길었던 것이 특징이다. 비전은 "삶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설정하고, ① 지역기반 생태계 구축, ② 수요 중심 교육 다각화, ③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등 4개의 추진전략과 10개의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11) 새예술정책(2018～2022)

새예술정책은 블랙리스트 사태로 무너진 예술지원정책을 재정비하여 예술정책에 대한 예술계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예술창작과 향유의 선순환이 가능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수립되었다. 새예술정책은 문화비전 2030과 연계하여 수립되었고, 문화비전 2030의 비전인 사람이 있는 문화와 연계하여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① 자율과 분권의 예술행정 구현, ② 예술가치 존중의 창작환경 조성, ③ 함께 누리는 예술참여 확대, ④ 예술의 지속가능성 확대 등 4대 목표 8대 전략과제, 25개 실행과제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새예술정책은 예술분야

종합계획이지만, 법정계획의 위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12)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

미술진흥 중장기계획은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새정부 정책방향을 반영한 계획 수립 필요성에 따라 수립되었다. 비전은 “미술로 행복한 삶”으로 설정하고, “선순환의 미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 16개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4절

전문가 FGI 조사결과 분석

1. 전문가 FGI 조사개요

가. 전문가 FGI 조사의 목적 및 방법

표적집단면접법(FGI : Focus Group Interview)은 소수의 대상자들과 그룹별로 집중적인 조사와 토론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도출하는 정성적 면접조사 방법이다. 개인적인 의견 제시와는 달리 참석자간 상호작용과 공유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과 함께 공감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다. 문화진흥기본계획과 관련된 미래전망, 제1차 계획의 성과, 추진과제, 제안 등은 양적인 조사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거나, 미리 정해진 응답범주 내에서 조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대상으로 FGI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문화정책 환경변화 및 대응 방향, 정책과제 우선순위 및 정책 제안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방향 설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조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조사에 참여하기로 섭외된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조사 질문지를 제공하였다. 다만, 정량적인 조사가 아니므로 FGI 진행시에는 질문지의 순서나 일부 내용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진행하였다.

조사는 연구팀에서 설계 및 분석을 담당하고, ㈜글로벌리서치에서 조사진행 및 기초분석을 담당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문화 분야 교수, 연구자, 행정가, 예술가 등으로 대상자들의 명단은 연구팀에서 제공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조

사업체에서 사전에 조사대상자와 접촉하여 조사에 참여하기로 응답한 전문가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나. 전문가 FGI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크게 ①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에 대한 주요성과 및 인식, ②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의 주요 환경변화, 전략방향, ③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정책과제 우선순위, 정책방향, ④ 기타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관련 정책 제안 등 4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질문항목은 1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질문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3-12〉 전문가 FGI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문화정책 관련 전문가, 문화비전 2030 참여자
조사 방법	전문가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유효 표본 수	40명
조사 기간	2019. 9. 10 ~ 2019. 9. 27

2. 전문가 FGI 조사결과

가.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에 대한 주요성과 및 인식

1) 긍정적 성과

참여자들은 대체로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긍정적인 성과로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즉, ①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② 참여·체감형 문화 향유 환경 조성, ③ 문화인력 육성 및 운영강화, ④ 문화시설 운영 효율화 및 확충 등이다.

첫째,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추진과제 1)은 인문학 및 정신문화의 진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정보 제공 측면에서는 성공적인 수준에 도

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제1차 계획에서 새롭게 제시된 문화정책 과제이다. 그러나 참여 및 체감을 통한 인문학 가치 확산 측면에서는 부족한 단계라고 평가되었다.

둘째, 참여·체감형 문화 향유 환경 조성(추진과제 5)는 문화가 있는 날, 도서관·박물관 인문학 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향유 환경조성과 실제 참여자 확산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셋째, 문화인력 육성 및 운영강화(추진과제 17)는 인턴부터 작가까지 다양한 예술인 및 문화전문인력을 양성과 지원하여 문화기반을 확충한 것이 높게 평가되었다.

넷째, 문화시설 운영 효율화 및 확충(추진과제 18)은 정부의 문화시설 운영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을 통하여 문화시설 활성화에 기여한 것이 성과로 평가되었다.

2) 미흡한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참여자들은 대체로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성과가 미흡한 측면을 정책목표 중에서는 ① 남북의 통로가 되는 문화, ② 지역에서 꽃피는 문화 등 2개를 제시하고 있다. 긍정적 성과와는 달리 정책목표 자체가 미흡하였다고 평가한 것이 특징이다. 과제별로는 ①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 ② 참여·체감형 문화 향유 환경 조성, ③ 문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정책목표 중에서 미흡하다고 평가된 남북의 통로가 되는 문화는 핵문제 등으로 남북교류 중단, 국제적인 북한 제재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문화정책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분야이다. 정책 목표 중에서 지역에서 꽃피는 문화도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되었다. 문화도시·지역재생 등 지역브랜드 등 도시를 중심으로 한 성과는 있지만, 근본적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의 문화생태계 조성이 미흡하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자치분권 등 변화하는 환경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효율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히 지자체와의 새로운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다.

추진과제 중에서 미흡하다고 평가된 과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추진과제 2)은 문화영향평가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실제적인 효과가 미흡하고 추상적인 목표에 비해 실제적인 실현수단과 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되었다. 둘째, 참여·체감형 문화 향유 환경 조성은 긍정적 인식과 함께 미흡하다는 인식이 모두 제시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정량적 조사와는 다른 정성적인 조사의 특성이기도 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양적인 측면에서 문화향유 환경조성의 성과는 있지만, 문화활동이 참여·체감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와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재능기부 등 적극적인 문화참여 활동에 대한 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시되었다. 셋째, 문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추진과제 9)가 의외로 미흡하다고 평가되었다.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한류는 자생적으로 발생한 문화이며 이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 필요성 낮고 관련 정책을 수출 개념으로 적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전반적인 국가브랜드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며, 정부는 현장에서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미국, 유럽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기업들이 예술인의 해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간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다.

3) 지속 혹은 강화해야 할 정책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추진과제 중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에도 지속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과제는 최근의 정책방향과 트렌드에 부응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전반적인 정책목표로는 자치분권 강화에 부응하여 지역에서 꽃피는 문화의 정책목표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제시되었다. 추진과제 중에서는 ① 대상별 맞춤형 문화참여 기회 확대, ② 문화 소외계층 대상 문화복지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정책목표 중에서 지역문화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은 자치분권 강화 지역문화의 가치에 따라 자연스러운 의견이다. 세부적으로는 특히 최근에 강조가 되

고 있는 도시재생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즉,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레지던시를 지원할 때 실용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예술가들이 거주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인건비, 제작비 등의 지원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뉴딜정책에 예술가를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금천문화재단의 빈집 프로젝트는 유휴 공간에 레지던시를 하여 예술가들이 작품활동 및 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월급, 4대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맞도록 경제 활동과 문화활동을 일치시켜야 하고, 이벤트성이 아닌 지역의 이야기가 문화 자원이 되어 지역 주민들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추진과제 중에서 지속 또는 강화하여야 할 과제로 대상별 맞춤형 문화참여 기회 확대(추진과제 3)가 제시되었는데, 역시 최근의 정책방향 및 수요에 부응한 것이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은 정책의 중요한 트렌드이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서비스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과제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 제시된 문화 소외계층 대상 문화복지 강화(추진과제 4)도 최근의 포용국가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정책이다. 전반적인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과 함께 특히 가장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 문화정책에 대한 정책을 장애인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각 장애인의 경우 시각을 위주로 한 전시·공연은 참여하기 힘들지만, 이들에게도 수요가 있으므로 청각, 촉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들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나.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의 주요 환경변화 및 방향

1) 제2차 기본계획에 영향을 줄 환경변화

제2차 기본계획에 영향을 줄 환경변화로 1인 가구, 고령화, 과학기술 변화, 양극화 등 일반적인 환경변화 이외에 문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로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문화 유통·수용 방식 변화가 제시되었다. 문화서비스의 유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정책은 여전히 기존의 방식 위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계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유통의 개념 자체가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매체적 특성, 유통 구조 등을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전통적 지원 방식에서 새롭게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수요자의 임금수준, 근무시간, 주거 형태 등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방식의 문화 유통·수용 방식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술 직업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제시되었다. 1인 미디어 산업의 발달로 예술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과거 예술활동 자체를 중시하던 과거와는 달리 대가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미디어 창작자는 아마추어이지만 직업 예술인으로 포섭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문화 예술 관련 법령의 예술의 범주나 대상으로는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화인력, 예술인에 대한 개념 재정의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은 환경변화에 따라 창작자와 소비자, 전문가와 아마추어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트렌드와 관련이 있다.

세 번째로 SNS 활성화로 인한 홍보방식의 변화가 제시되었다. 전통적인 우편물, 포스터 등의 방식에서 SNS 및 유튜브 등의 활용이 중요하게 되었다. 대체로 젊은 작가층은 이러한 IT기술의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고 활용하고 있지만, 기성 작가들은 이러한 흐름에 대체로 둔감하다는 것이다.

2) 제2차 기본계획의 방향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정책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창작물 전시를 위한 공간 및 매개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제시되었다. 창작물에 대한 기획전시 공간 등 다양한 지원 정책 확대로 창작활동 활성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다. 직접적인 지원 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문화 상생 및 기업기부 확대를 위한 정책이 제시되었다. 공공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업의 예술지원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세액공제), 문화예술단체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상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및 문화예술 지원기업 포상 혜택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K-POP 처럼 정부의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확산되는 문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외지역 및 계층에 대한 체감정책, 모든 생태계를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국내에 국한하지 말고 전문가들의 해외활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공연 및 전시행사 위주가 아니라 전문인력의 활동기반, 교육·연구·체험·창작 등이 해외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다섯째, 전문 예술가와 아마추어 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 생활문화 의 확산 등을 기반으로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므로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전문 예술가와 협업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

여섯째, 예술교육에서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문화기관 등에서의 전문적인 예술교육이 학점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다.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정책과제 우선순위 및 전략

1) 제1차 기본계획 대비 우선순위

제1차 계획 대비 제2차 계획의 정책 우선순위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첫째, 문화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향유와 소비가 창작·매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선순환구조의 정착을 위해 미래 성장분야를 발굴·지원하여야 한다. 창작과 매개 분야를 포괄하는 창작 생태계의 역량 강화, 양성 시스템 등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지원으로 변화해야 하며, 예술의 잠재적 수요자 개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이 필요하다. 시장에 민간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간접지원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면서, 책의 역할과 독서가 축소되고 있는데, 책은 단순히 미디어나 산업 매체가 아니며 미래 세대에 완전히 멸종되지 않도록 문화생태계에서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둘째, 지역문화의 자율성이 보장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을 벗어나 자치 분권의 관점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자체 재정의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셋째, 인문정신 문화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이해 교육과 문화체험 확대 등의 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넷째, 문화인력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지원과 교육 이외에 문화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플랫폼, 워크숍 등의 인적 네트워크 확충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다섯째, 개념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견은 연구진 및 자문회의에서도 제시된 것이다. 정책에 사용되는 개념들이 실제 현장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정리하는 것이 정책사업의 기본적인 성공조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생활문화에 대한 논쟁이 없도록 구체적인 정의의 재정립 필요하다. 또한 문화 다양성의 개념도 재정립이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을 다문화(Multi-Culturalism)의 개념과 혼용하여 사용하는데, 이것은 문화다양성의 기본 개념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정책이 다문화 정책에 치우쳐 있거나, 유네스코 국가보고서 작성 관련 정책과 연계되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애주기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도 필요하다. 생애주기의 개념은 한 연령대에서 다음 연령대로 지속적인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의 정책은 연령대별 분리된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2) 제2차 기본계획의 중점적인 방향

제2차 기본계획의 중점을 두어야 할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가 제시되었다. 첫째, 문화적·사회적 약자계층에 관한 관심이다. 이러한 방향은 제1차 계획의 지속적인 강화의견과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차이를 가진 계층들이 소통하고, 문화를 관통하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의 경제적·지역적 약자 이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했던 학교 밖 청소년, 학교내 문제아 집단, 교도소 재소자, 노숙자 등에 대해 문화정책을 통해 문화적인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의 특성상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을 넘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문화콘텐츠산업의 외국 진출시에는 외교부와 협력이 필요하며, 외국에서의 문화교육, 특히 교재 개발에서는 교육부와의 협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외교부의 하드웨어 부분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활용하고, 재외문화원의 경우 예산집행과(문화체육관광부) 업무평가(외교부)의 주체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력이 필요하며, 축제의 유형에 따라 다른 부처와의 협력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되는 순천만 흑두루미 축제는 농림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성공적인 협력사례이다. 예술가를 양성하는 예술 대학 또는 사설 기관에 대한 현황 파악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사이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는데, 예비 예술가를 키워내고, 예술계 진입 장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영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각 부처 간 경쟁이 아닌 협력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사업별 협력체계 보다는 부처 간 종합적인 협력의 틀과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유통체계에서 새로운 매체, 서비스 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다 유연하고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체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만화시장에서 웹툰은 시장과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책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라.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관련 제안

1) 제2차 기본계획의 문화비전 2030 반영

문화비전 2030과 제2차 기본계획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아젠더 중심의 문화비전과 5개년 법정 기본계획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문화비전 2030의 전략체계를 그대로 기본계획의 전략체계로 설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문화비전의 가치와 철학을 법정 기본계획으로 실현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문화비전 2030은 수립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공론화를 거친 것이므로 문화비전 2030과 연계하여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문화비전 2030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 평등의 가치는 제2차 계획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성 평등의 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인식이 낮으므로 간접적인 방식 보다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 평등의 가치는 양성 평등이나 특정 부서·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하여야 하며, 여성 인력의 처우 개선 및 계약서 불이행에 대한 강제 조항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문화인력의 권리와 처우 개선 문제는 단순히 인력의 권리 문제 뿐만이 아니라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제2차 계획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공공 영역에서 적절한 재정적 보상을 통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예술인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수요자 맞춤형 정책도 중요하지만,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예술인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었다. 문화적인 권리는 개인의 권리에서 출발하므로 개인 보다 공동체의 가치를 강화하면 가치의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반면에 문화비전에서 제시한 공동체의 가치가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더욱 중점적으로 다루

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개인보다 공동체·사회가 더 중요하다는 가치를 확산하여야 하며, 문화가 개인 중심적 사회에서 공동체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제도가 필요하다.

문화다양성의 가치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 문제는 다양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이 낮기 때문이며, 문화의 지속성과 발전을 위해서도 문화다양성은 매우 중요하다. 포용은 다양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변화, 인구구조변화, 국제교류 등에서도 단순히 교류 차원을 넘어 포용과 다양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 및 정책 우선순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역 및 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자체의 분권 강화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었다. 자치분권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고 지역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 문화의 결정권은 지역에서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재정의 확충과 독립성, 지역문화기관의 문화재정 집행에서의 자율성 보장, 지역문화인력의 활용 제고를 위한 통합 플랫폼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반면에 지역의 문화분권은 원론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지역의 권한이 강화되면 문화 분야는 정책 우선순위가 낮아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문화 영역의 특성상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면 예산이 축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방향 제시 및 컨설팅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격차가 상존하는 여건에서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지자체간 정보공유와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즉,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간의 관계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을 위해 권한을 부여하고, 이러한 권한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위상 확립 및 체계성 제고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체계성과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문화행정체계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의견은 자문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제시된 것이다. 전달체계 및 효율성 문제 차원을 넘어 문화행정체계의 근본적인 가치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즉, ① 하향식 정책에서 상향식 정책 수립으로, ②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③ 행정 중심주의적 정책에서 문화현장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과지향적 정책 위주에서 미래 가치 지향적 정책이 필요하고, 공공재원 의존 중심에서 공공과 민간의 문화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문화재원의 확충 및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며,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과 참여자들의 참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비전 2030 및 문화진흥기본계획을 비롯한 수많은 정책이 발표되고 추진되었지만,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은 이유는 정책의 완성도가 아니라 정책운용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위상과 부문별 계획과의 관계는 부문별 계획을 모두 담으려고 하기 보다는 영역별 기본계획의 실현과 성과관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문화진흥기본계획은 모든 사업을 담으려고 하기 보다는 필수적으로 달성하여야 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즉, 문화기본계획에 중요과제를 모두 포괄하는 방식에서 최소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진흥기본계획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범위를 넘어 다른 부처에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의제를 정하는 것보다 지역사회, 예술가, 단체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과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4)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공적인 추진과 실현가능성 제고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공적인 추진과 실현가능성 제고와 관련되어 제시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차 기본계획의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조직의 특성상 단기적·가시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의 정책목표 설정과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사업에 대한 산출로서의 성과의 관점이 아니라 문화정책을 통하여 민간과 지역의 성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성과라는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과 지역의 역량, 커뮤니티 조성,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의 차원에서도 문화재단의 설립이 오히려 지역의 민간단체의 자원과 역량,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이를 활성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문화예술정책이 1회성 지원 및 직접 지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생력 강화,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기초 인프라 조성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문화정책이 관광 및 체육과 분리된 칸막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수요자의 관점에서는 이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므로 융합이 필요하다.

5) 기타 의견

기타 의견으로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문화교류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국제문화교류 관련 기관들이 많은데, 이를 종합적으로 협력·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나 관리기구가 필요하다. 둘째, 남북문화교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통일부가 남북교류사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문화에 대한 전문성이 약하며, 향후 남북문화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전담기관 신설과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남북교류와 관련하여 분단 이후 남북한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민족적 동질성과 문화적 다양성 간의 조화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문화진흥기본계획의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제2차 기본계획의 계획기간 동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므로 정부의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

계획의 가치와 방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본계획의 가치와 과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의 이기주의와 기존 관행을 유지하는 편의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다섯째, 문화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선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과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공간의 문화적 활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문화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 유휴시간에 개방·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며, 시민과 예술가들이 협력하여 기획·운영하는 시설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제4장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전략체계

제1절

종합분석 및 제2차 계획 반영방향

1. 계획기간 국내외 사례 및 조사결과 종합분석

가. 외국의 문화 분야 중기 계획의 특성과 방향

본 연구에서는 일본, 미국, 영국 및 프랑스 등 4개 국가의 중기계획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미국은 NEA, 영국은 ACE 등 예술지원기관의 중기계획으로 차이가 있고, 프랑스는 문화부가 있지만 별도 중기계획이 없이 미래를 위한 연구계획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문화진흥기본계획과 가장 유사한 것은 정부부처와 법률에 의한 법정계획인 일본 사례가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중기계획으로서 공통적 특성을 살펴보면, 국가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문화의 본질적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영향 등을 중점적인 가치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과학기술변화에 따른 복융합·혁신, 지역분권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특히 일본은 지역분권을 위하여 일본 문화청의 교토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는 문화생태계 조성, 문화예술교육 강화 및 인력양성, 모든 사람들에게 문화접근 기회 확충과 공유 확산, 공동체 강화,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등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전략계획의 형식적 체계에서는 구체적인 성과지표와 함께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상을 설정하고 평가하며, 기존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은 특히 기존 전략계획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의 관점에서 달성도와 함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계획의 추진과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각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일본은 경제수준에 상응한 일본문화의 국제적 위상과 진출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다원화 사회이므로 예술을 통한 공동체성 강화, 즉, 예술이 공동체 생활의 구조에 통합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을 중요하게 설정하고 있다. 영국은 창의성 제고, 영국의 창조산업 강조, 파트너십 강화 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혁신을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와 구조 설정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역분권과 함께 연구계획이기는 하지만, 혁신과 융합,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외국사례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방향과 과제는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도 거의 수용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외국과 다른 환경에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즉, 남북문화교류와 협력, 문화인력의 권리, 사회갈등 해소, 공정·상생 등을 중심적인 과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

나. 전문가 FGI 조사결과 종합 분석

전문가 FGI 조사결과 지역문화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역문화는 자치분권 등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 강화에 필요하다. 또한 최근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문화도시 정책 등에 대한 관심과 함께, 문화예술인력이 도시재생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강화하여야 할 정책으로 맞춤형 문화서비스와 참여, 문화복지 강화가 제시된 것은 수요자의 관점에서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포용국가, 지방분권, 문화도시·도시재생 등의 정책방향과 연계되어 있지만, 문화정책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사실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 전환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자치분권과 연계하여 지역문화균형발전도 중요한데, 분권과 균형발전은 상반된 가치가 아니라 서로 보완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환경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이 문화생태계 조성이

다. 문화생태계 조성도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계획과 정책에 제시되고 있지만, 문화정책은 오히려 영역별·장르별 칸막이 현상이 심하고, 정책대상별·가치사슬별 정책은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 변화에 따라 창작자·매개자·소비자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유통체계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문화생태계 조성은 더욱 중요하다.

전문가 FGI에서는 문화진흥기본계획의 방향으로 ① 하향식 정책에서 상향식 정책 수립으로, ②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③ 행정 중심주의적 정책에서 문화현장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결과지향적 정책 위주에서 미래 가치 지향적 정책이 필요하고, 공공재원 의존 중심에서 공공과 민간의 문화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문화재원의 확충 및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며,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과 참여자들의 참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추진전략과 관련하여서는 과제 중심 보다는 추진 프로세스와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진흥기본계획에 추진과제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실제 과제가 수행되는 프로세스와 가치, 추진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자문회의에서도 유사하게 제시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문가 FGI 의견을 반영하여 제2차 계획 수립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다. 문화 분야 중장기 계획 종합 분석

상위계획인 문화비전 2030은 사람 중심의 가치, 문화의 본질적 가치인 자율성, 창의성, 다양성의 가치를 개인-공동체-사회의 혁신과 연계하고 있다. 문화비전 2030은 3대 방향과 9대 의제를 설정하고 있는데, 3대 방향은 (전략)가치를 확장하여 설정하고 있다. 9대 의제는 장기 아젠더 중심이므로 추진과제는 각 과제별로 법제도적인 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은 상위 비전인 문화비전 2030의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정 중기계획이므로 기본적인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화비전 2030은 아젠더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법정계획으로서 목표와 성과평가를 명확히 하고, 정책과제와 사업에 대한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제도적인 아젠더는 기반조성 과제로 통합하여 전체 전략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법 제도적인 과제가 정책과제나 추진과제로 설정되면, 법제도는 한번 실현되면 그 이후에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진보와 정책을 추진하는 체계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문화비전 2030은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완성된 계획이라기 보다는 과정적인 계획으로서 위상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비전과 전략가치, 방향, 의제와 핵심적인 과제의 방향과 실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체계를 문화진흥기본계획에 그대로 수용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또한 헌법 개정처럼 법정 기본계획에서 다룰 수 없는 과제도 있다.

부문별 계획은 서로 계획기간이 다르고, 비전과 가치지향이 다르며, 정책과제와 세부과제에 너무 많아서 이를 모두 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화 분야 상위 기본계획으로서 문화진흥기본계획이 각기 시기가 다른 부문별 기본계획의 단순 종합 계획이 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상향식 정책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취지는 오히려 문화진흥기본계획의 가치와 방향이 부문별 기본계획 및 정책과 연계하여 문화정책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전략적 가치와 과제를 부문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연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각 부문별 계획의 비전과 전략이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각 부문별 계획의 향후 방향을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는 너무 많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도식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는 전략과 방향에 적합한 부문별 기본계획의 과제를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종합하여 반영하고자 하였다. 다만,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현재 수립 중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반영하지 않았다.

부문별 기본계획의 핵심내용과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은 다음의 〈표 4-1〉과 같다.

〈표 4-1〉 부문별 기본계획과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연계

계획수립 현황	전략 방향	제2차 계획 반영방향
제3차 국어발전기본계획 (2017~2021)	• 바른 언어문화와 국어능력 향사 • 남북한 및 지역어·특수어 등 진흥과 통합 • 한글의 세계화 및 산업화	• 바른 언어와 문화다양성, 소통 • 남북한 통합과 교류 • 한글의 세계화 및 산업화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2019~2023)	• 사회적 독서와 독서의 가치 공유 확산 • 포용적 독서복지와 미래 독서생태계 • 독서를 통한 사람과 사회의 변화	• 사회적 독서와 공동체성 • 보편적 독서복지 및 복융합, 독서생태계 변화
제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2019~2023)	•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도서관 공간을 혁신하고 운영체계·서비스 혁신 • 도서관 서비스를 통한 삶의 변화	• 보편적인 도서관 접근서비스 • 도서관 서비스 체계 혁신과 사람 중심 도서관 서비스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2018~2022)	• 일상에서 여가를 누리도록 여가권과 여가 접근성 제고·기반조성 • 수요자 맞춤형 여가서비스 및 여가생태계 조성과 혁신	• 제1차 계획으로 기간이 다르므로 작성하지 않음.
제1차 문학진흥기본계획 (2018~2022)	• 문학창작 기반조성(지원 확대) • 문학 향유 기반 및 기반 구축 • 한국문학 세계화 및 남북 교류	• 문학인의 권리 강화 • 문학 생태계 조성 • 한국문학 세계화
제1차 공공디자인진흥 종합계획 (2018~2022)	• 안전하고 편리하고 체감하는 공공디자인 • 모두를 위하고 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 공공디자인 기반 구축	• 공공디자인을 통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 사람중심 공공디자인
제1차 국제문화교류진흥 종합계획 (2018~2022)	• 체계적인 문화교류 지원 • 국제문화교류의 자율성 강화 • 지속가능한 문화교류 생태계 조성	• 공감과 지속가능한 국제문화교류 협력 • 칸막이에서 협치 와 연계 중심 정책 체계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 (2019~2023)	• 공공문화기반시설로서의 위상강화 • 모두가 누리는 박물관·미술관 • 박물관의 전문적 기능·역량 강화 • 지속가능한 체계·혁신 및 협력체계	• 보편적인 접근 서비스 • 박물관·미술관 거버넌스 체계 • 박물관·미술관 생태계 조성
새예술정책 (2018~2022)	• 자율과 분권의 예술행정 혁신 • 예술가치 존중의 창작환경 조성 • 함께 누리는 예술참여 확대 • 예술의 지속가능성 확대	• 예술인의 권리 강화 • 예술생태계 조성 • 자치·분권·문화거버넌스 • 지역중심 예술 지원체계

2. 계획기간 환경변화 종합 분석 및 계획수립 반영방향

가. PEST 분석의 틀

기존 계획 및 다른 문화 분야 계획에서는 대개 SWOT 분석을 활용하고 제안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SWOT 분석 대신에 PEST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SWOT 분석은 요인에 대한 통제 가능성(SW : 조직내부의 강점과 약점), 통제 불가능성(OT : 조직 외부 환경의 기회와 위협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4분면의 매트릭스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장점이 있다. 그러나 SWOT 분석은 조직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석방법으로 대부분 통제가 불가능한 환경요인 자체를 분석하여야 하는 정책의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즉, SWOT 분석은 각 요인별 세부요인 구성이 너무 모호하여 보다 체계적인 전략 수립에 적합하지 않으며, 요인 도출을 위한 PEST 등의 사전분석과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PEST(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analysis) 분석은 정치·경제·사회·과학기술 요인을 사분면으로 설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환경(Environment)+법규(Legal) 요인을 포함하여 PESTEL 분석이라고 하기도 한다.

제3장 제1절의 환경변화 분석은 이러한 PEST 분석 방법에 따라 정치(P), 경제(E), 사회(S), 과학기술(T) 4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다만, 문화진흥기본계획은 특성상 문화 자체 및 문화정책 측면이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는 별도로 핵심적인 요인들만을 대상으로 제2절에 문화정책 환경 변화를 별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이러한 분석내용들도 모두 PEST 분석에 포함되어 있다. 정책의 PEST 분석에서는 광의의 측면에서 정치로 분류되는 행정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치(P)는 정치·행정적 측면으로 수정하여 분석하였다.[31]

31)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서 정치-행정 일원론과 정치-행정 일원론에 대한 논쟁은 오래된 관점이지만, 정치-행정 이원론적 일원론의 관점을 채택한 것이다.

나. 문화진흥기본계획 PEST 분석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기간 동안의 PEST 요인은 다음의 〈표 4-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2〉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PEST 분석 요인

정치적 요인 (P)	경제적 요인(E)
•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차별화정책 •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와 정부의 지역(도시) 재생 정책 강화 •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 생활문화(생활 SOC) 확충 정책 • 문화기본권 확립을 위한 법률 개정추진 • 대통령 선거 및 총선 • 문화 분야 자율성 및 참여정책 강화 • 남북한 긴장완화 및 교류 • 포용국가 정책으로 보편적 문화복지 추진	• 소유에서 공유중심 경제 모델 확산 • 저성장 시대 진입 및 양극화 •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 문화재정 위기 • 소득에 비해 낮은 삶의 질

사회문화적 요인 (S)	과학기술적 요인 (T)
• 주52시간 근무제 정착 등 여가시간 확대 및 일과 삶의 균형 추구 • 참여적 문화활동 증가 • 저출산 고령화 등 초고령화사회의 진입 • 1인가구 및 문화소비 변화 • 지역의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 양극화 및 디지털 격차에 소외계층, 격차 확대 • 문화의 사회적 가치 제고 • 사회적 갈등 확산 • 신한류의 확산 • 인권 및 문화민주주의 확산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 개인주의 심화와 공동체 가치 제고 • 주체적 문화활동 및 문화활동 다양화	• 4차 산업혁명 시대. 5G 등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 수평적/소비자 중심 유통체계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기술의 발전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성과 인문학, 융합의 가치 제고 • 초연결 사회 문화플랫폼 서비스 • 4차 산업혁명 시대 문화콘텐츠 서비스 디지털 전환 • 환경문제에 대한 심화

다. PEST 분석을 통한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반영방향 도출

각 요인별로 문화진흥기본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고 제2차 문화흥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향과 연계성을 구성하여 반영하였다. PEST 분석에 따른 요인별 문화진흥기본계획의 반영방향의 핵심 내용은 다음의 〈그림 4-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4-1] PEST 분석을 통한 제2차 기본계획 반영방향 요약

PEST 분석에 따른 요인별 문화진흥기본계획의 반영방향의 내용은 다음의 〈표 4-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3〉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PEST 분석 반영방향

요인	분석 내용	기본계획 반영 방향
정치적 요인	•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차별화정책 •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와 정부의 지역(도시) 재생 정책 강화 •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 생활문화(생활 SOC) 확충 정책	• 지역문화균형발전과 분권의 조화 • 보편성과 지역의 정체성 조화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및 일자리 모델 • 문화서비스 전달체계, 지역 간 교류와 연대(문화자원 공동활용)

요인	분석 내용	기본계획 반영 방향
	• 문화기본권 확립을 위한 법률 개정추진 • 대통령 선거 및 총선 • 문화 분야 자율성 및 참여정책 강화 • 남북한 긴장완화 및 교류 • 포용국가 정책으로 보편적 문화복지 추진	• 지속가능한 문화정책 • 남북한 문화교류 기반 및 활성화 • 문화정책 및 지원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시행 • 인문정신문화, 문화복지의 확산
경제적 요인	• 소유에서 공유중심 경제 모델 확산 • 저성장 시대 진입 및 양극화 •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 문화재정 위기 • 소득에 비해 낮은 삶의 질	• 공유경제, 사회적 경제의 확산 지원 • 문화소비 감소에 따른 문화시장 경쟁력 제고 • 양극화에 대응한 갈등 해소의 문화정책 • 삶의 질 제고에 초점 • 계층별 장벽 없는 문화접근 서비스
사회적 요인	• 주52시간 근무제 정착 등 여가시간 확대 및 일과 삶의 균형 추구 • 참여적 문화활동 증가 • 저출산 고령화 등 초고령화사회의 진입 • 1인가구 및 문화소비 변화 • 지역의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 양극화 및 디지털 격차에 소외계층, 격차 확대 • 문화의 사회적 가치 제고 • 신한류의 확산 • 인권 및 문화민주주의 확산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 개인주의 심화와 공동체 가치 제고 • 주체적 문화활동 및 문화활동 다양화	• 문화자본 및 경험의 축적 • 문화복지, 세대간 맞춤형, 생애주기별 문화정책 • 종합적·체계적 고령자 문화복지 정책 • 참여적, 주체적 문화정책과 문화민주주의 • 50+ 신중년 문화정책 • 인문정신문화와 공동체 문화 형성 • 1인 가구 문화프로그램 및 서비스 • 지역재생 및 일자리 창출 • 문화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문화다양성 정책 • 신한류의 성과를 국가문화브랜드 및 일반문화예술로 확산 • 양적 문화정책에서 질적 문화정책 • 문화공동체, 문화자본 축적 정책 강화 • 주체적 생활문화 및 문화의 일상화
과학기술적 요인	• 4차 산업혁명 시대. 5G 등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 수평적/소비자 중심 유통체계 혁신과 개인정보보호기술의 발전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성과 인문학, 융합의 가치 제고 • 초연결 사회 문화플랫폼 서비스 • 4차 산업혁명 시대 문화콘텐츠 서비스 • 환경문제에 대한 심화	•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확산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준비 • 초몰입 문화경험 기술 발전과 복융합화 • 문화서비스 경험의 일상화, 스낵컬처 문화확산 • 블록체인 기반 문화생산 및 유통 플랫폼 • 가족 공유 문화경험과 서비스 확산 • 문화분야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및 서비스 • 환경문제 대응 문화정책 기준 및 방향

3.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방향

가.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첫째, 문화비전 2030의 전략체계 및 과제를 반영하면서도, 장기비전이 아닌 5년간의 법정계획임을 고려한다. 제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문화비전은 장기비전으로서 전체적인 전략과 가치는 잘 제시되어 있으나, 거시적인 과제, 법·제도적인 과제가 많고, 실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으로 이어지는 과제는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제[2차 계획에서는 실제 정책과 사업 중심으로 과제를 구성하고, 법·제도적인 측면은 정책기반 조성에 종합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둘째, 문화비전에서 제시한 문화의 본질적인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사회문화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과 과제를 반영한다. 본 연구의 배경에서도 문화비전 2030은 사회문화환경 변화 분석이 문화의 본질적 가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이를 분석하고 반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문화비전 2030의 전략은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등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3가지 전략은 문화의 본질적 속성에 속한 것으로 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는 정부의 법정계획으로서 정책방향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구성한다.

셋째, 제2차 계획이 현 정부의 임기 중에 추진되므로, 정부의 정책방향과 국정과제를 반영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정부의 핵심적인 사회정책 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이 전략과제에 명확히 드러나도록 한다.

다섯째, 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미래지향적인 가치가 제시되도록 한다. 최근 문화트렌드와 가치를 반영하여 소통과 공동체 문화, 미래가치 등을 제시하고, 모두가 행복한 문화의 가치를 명확히 제시한다. 한편 문화비전 2030에서 제시한 자율성과 다양성 등도 전략적 가치로서 중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나.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전략체계 및 추진과제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전체적인 전략체계와 세

부과제의 구성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첫째, 영역별 법정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영역별 계획의 핵심방향 및 과제가 반영되도록 한다. 제2차 계획 기간과 겹치는 영역별 계획은 종합하여 과제가 반영되도록 하며, 계획기간과 기간이 거의 겹치지 않는 영역별 계획은 기존 계획의 지속성을 고려하면서도 환경변화를 고려한다. 즉, 문화비전 2030과 연계하고, 각 부문별 기본계획의 층위를 고려한다.

둘째, 전략과제-정책과제-세부과제의 층위에서 과제설정의 층위가 서로 유사하도록 구성한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과제가 정책과제나 세부과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셋째,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위하여 실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과 정책 추진단위(부서)를 고려한다. 다만, 향후 이러한 추진단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로 기능 중심으로 접근하며, 관련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협력체계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과제의 제시에서 계획과 문화정책의 전략적 방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것은 전략계획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과제명에서 전략방향이 드러나도록 한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것처럼 문화기본법은 각 문화정책의 전략적 가치와 철학이 제시되지 못하고 정책영역만 제시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개념의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 연구과정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지적하였다. 그러나 모든 개념의 정의에 대해 다수설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워라밸(Work and Balance)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다수가 사용하고 있지만, 일과 여가의 균형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다수가 워라밸을 영어의 뜻과는 다르게 사용하게 되면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사용하였다. 문화가 있는 삶과 삶이 있는 문화의 개념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보편적이고 훨씬 넓은 개념인 문화가 있는 삶을 사용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와 문화적 삶을 위한 관점에서는 삶이 있는 문화로 사용하였다. 다만, 모든 개념을 재정의하는 것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과제가 의미하는 방향을 요약하여 설명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는 기본계획 수립방향 연구이므로 과제의 기본방향 위주로 제안하는 것에 국한한다. 이것은 서론에서 제시한 이 연구의 범위에 따른 한계이기도 하지만, 전략계획으로서 기본계획이 지향과도 관련이 있다.

여섯째, 문화 분야 법정 상위 기본계획으로서 문화기본법에 규정된 대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 분야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방향이 가장 잘 드러난 기본계획 사례가 사회보장기본계획이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 차원의 넘어 국가 전체와 정부의 관련 부처 모두와 관련된 계획이다. 일본의 문화예술 추진기본계획도 핵심과제 중의 상당수는 관련 정부부처와 직접 관련되어 각 부처와의 연계성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곱째, 이 연구는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가 아닌 방향 연구이므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체계 및 세부과제는 제2차 기본계획 수립에 제안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략체계 및 과제를 “설정”이 아닌 “제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제2절

기본계획의 전략체계

1.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위상

가. 문화비전 2030과 문화진흥기본계획과의 관계

문화비전 2030이 발표된 여건에서 문화비전 2030 기간 내에 있는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과의 관계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화비전 2030과 문화진흥기본계획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반된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

한 편에서는 문화비전 2030을 장기비전(계획)으로 보고, 문화진흥기본계획은 계획기간이 5년간이므로 5년간의 중기계획으로 접근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문화진흥기본계획이 기본계획이지만, 문화비전 2030과의 관계에서는 실행계획으로 간주하는 관점이다. 즉, 문화비전 2030의 영역·위상과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영역·위상을 대등하게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문화진흥기본계획은 문화비전 2030의 전략체계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관점은 문화진흥기본계획의 계획 영역을 문화비전 2030의 영역과 대체로(관광 및 체육을 제외하면)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문화비전 2030이 법적 위상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문화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서 법정 기본계획인 문화진흥기본계획이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

다른 한 편에서는 문화비전 2030과 문화진흥기본계획은 상위 비전과 하위 기본계획과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접근한다. 문화비전 2030이 법적 위상은 없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전체의 장기비전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고, 문화진

흥기본계획은 문화 분야(특히 문화예술)에 국한된 영역의 부문별 계획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문화진흥기본계획이 문화 분야의 부문별 계획의 상위 기본계획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듯이 문화비전 2030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다양한 영역별 기본계획의 상위 비전으로서 계층별 위상을 가진다고 본다. 다만, 문화진흥기본계획도 문화정책의 체계성과 가치지향의 일관성을 위해서 문화비전 2030의 전반적인 가치지향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관점을 채택하여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체계를 개발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문화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적 위상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문화기본법에 이를 포함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화기본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정책영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협의의 문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정할 경우 법적인 체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문화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화의 개념(제3조)은 매우 포괄적이지만, 실제 각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기본법과 문화정책 영역(제8조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문화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은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와 국회에서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문화비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할 수는 있으며, 문화 분야와 관광 및 체육 등에서의 실제 활동의 복합화, 정책의 연계가 확대되고 있는 여건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정책에 대한 가치와 체계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비전 2030과 같은 장기 아젠더 수립을 문화기본법에 직접 근거를 규정할 수 없지만,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에 대한 법적 대안 제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대안을 제안하였다.

나. 문화 분야 부문별 기본계획과 문화진흥기본계획과의 관계

문화 분야에는 많은 법정 기본계획과 비법정 기본계획이 있지만, 부문별 계획 간의 위상은 동등하지 않다. 새예술정책은 비법정계획이지만, 예술 분야의 세부계획인 국제문화교류진흥계획, 문학진흥기본계획, 공공디자인진흥기본

계획 등은 새예술정책의 하위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비법정계획인 미술진흥 중장기계획도 새예술정책의 하위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지역문화의 포괄적인 개념에 따라 새예술정책처럼 다른 세부영역별 기본계획 보다 상위인 중간단계의 기본계획 위상을 가진다.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도 각 부문별 기본계획과 연계된 기본계획이므로 층위가 다르다.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여가활성화기본계획, 국어발전기본계획, 박물관·미술관진흥중장기계획은 새예술정책이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과는 달리 세부 영역별 기본계획의 위상을 가진다.

문화의 영역은 상호 중첩되고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층위가 엄격한 위계를 지니는 것을 아니다. 또한 부문별 기본계획 간에도 정책이 상호 연계되어 있다. 콘텐츠진흥기본계획은 문화기본법에 따르면 문화진흥기본계획의 하위 기본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하지만, 실제 지금까지 그러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본계획 체계는 다음의 〈그림 4-2〉와 같은 4개의 층위를 가진다. 즉, 문화비전 2030을 상위 비전으로 하여, 문화(문화진흥기본계획)-관광(관광진흥기본계획)-체육(체육진흥기본계획)이 각각 다음의 체계에 있고, 문화진흥기본계획 아래에는 지역문화-예술-콘텐츠-문화다양성 등의 기본계획이 있고, 비법정계획이지만 새예술정책 아래에 장르별 예술 기본계획이 있으며, 예술장르가 아닌 문화정책 영역 또는 기능별 기본계획이 존재하는 체계이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부영역별 기본계획은 일부 중첩·중복되기도 한다. 국어의 경우 국어발전기본계획 아래에 수어진흥기본계획이 세부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4개의 체계이지만, 특수한 경우이므로 생략하였다. 이러한 체계는 대안에서 다루겠지만, 문화 분야 기본계획의 연계 또는 통합의 필요성을 제시해 준다.

그림이 너무 복잡하므로 콘텐츠진흥기본계획의 세부 영역별 기본계획(음악, 만화, 영화 등)은 생략하였다. 또한 미술 분야 진흥계획은 비법정계획이므로 생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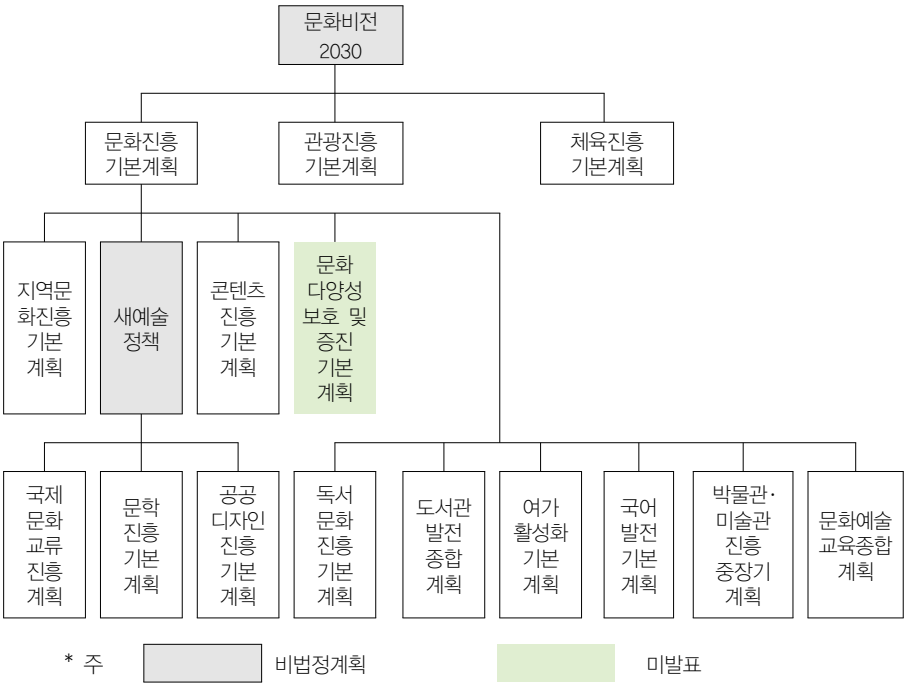

[그림 4-2] 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 체계도

2.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체계

가.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체계 층위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은 비전-가치-정책목표-정책과제-세부과제의 층위로 구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전략체계 층위는 정부의 전략계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체계이다. 문화비전은 아젠더이므로 3대 방향을 설정하였으나, 법정계획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책목표별로 보다 구체적인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비전은 문화비전 2030의 비전을 반영하여 '사람이 있는 문화'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비전은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이 지향하는 미래상으로 기본계획이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사회 및 개인의 궁극적

가치와 바램을 뜻한다. 따라서 사람이 있는 문화의 비전은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미래상으로서 문화비전 2030의 실현과 연계되어 있다. 또한 사람이 있는 문화는 현재 및 미래 한국사회의 가장 중심적인 가치일 뿐 아니라 현 정부의 핵심적인 가치와 연계되어 있다. 사람중심의 비전은 문화비전 2030이나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만 연계된 것이 아니다. 문화의 가치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문화를 통한 행복한 삶, 삶의 질 제고가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융성 정책을 내세운 것도, 국가주의 관점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경쟁이 심화되고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국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성이 적고 오히려 행복하지 않다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 자체, 사람의 행복에 초점을 둔 것이다. 또한 사람중심의 가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혁명으로 인하여 자칫 사람이 소외될 수 있는 여건에서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사람의 본질적 가치와 목적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가치도 문화비전 2030의 가치인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제안하였다. 비전과 가치는 궁극적으로 달성하여야 할 미래상이며, 모든 계획과 과제를 관통하는 철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또한 문화비전 2030에서 제시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의 가치는 문화비전 2030에서 새롭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제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문화기본법에 규정된 것이며, 문화기본법의 체계에서 수립하는 문화진흥기본계획에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의 가치는 참여정부의 중기계획인 “창의한국”의 3대 목표인 창의적인 문화시민(창의성), 다원적인 문화사회(다양성, 자율성), 역동적인 문화국가 등에서 제시된 가치가 문화기본법에서 더 구체적으로 구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비전 및 가치를 문화비전 2030과 동일하게 제안한 것은 문화기본법 및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취지에 따라 문화정책의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나.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정책목표

종합분석에서 제시한 방향을 토대로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전략과제는 다음과 같은 6개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의 가치를 정책목표로 구성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전략체계 수립의 원칙과 문화비전 2030의 체계와 관련되어 있다. 전략계획 수립에서 가치는 전체 전략계획을 모두 관통하는 철학과 방향이기 때문이 특정한 정책목표로 구성하게 되면, 다른 정책목표 적용에 한계가 있어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성평등 문화의 실현은 문화비전 2030에서는 개인의 자율성 보장 방향에 포함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평등의 문화는 다양성의 가치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의한국」에서는 소수자의 문화권 권리 보장은 다원적인 문화사회의 정책목표에 포함하고 있으며, 다원적인 문화사회에 대한 설명에서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을 문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개성이 넘치는 사회"(문화체육관광부, 2004)로 자율성의 관점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다. 문화비전 2030이 다양성을 개인의 주체적인 권리에서 나아가 공동체의 다양성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므로 성평등 문화는 개인의 권리인 자율성과 공동체의 다양성이 모두 관련된 개념이다.

첫째, 모두가 행복한 문화가 있는 삶이다. 행복사회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가치일 뿐 아니라, 개인과 국가가 모두가 지향하는 가치이며, 문화의 핵심적인 가치이다. 따라서 모두가 행복한 문화가 있는 삶을 첫 번째의 전략과제로 제안하였다. 주52시간 근무제, 일과 삶의 균형, 개인주의에 따른 과제 등은 모두 문화를 통한 행복한 삶과 연계되어 있다. 또한 문화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의 관점에서 문화역량을 축적하고, 사회의 문화자본이 축적되어야 한다.

둘째,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실현이다. 문화비전 203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실현은 문화정책이 추구하여야 할 중요한 가치이며, 문화의 핵심적인 속성이다. 자율성은 지방분권의 트렌드, 환경변화에서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과거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되어 있다. 다양성은 문화의 본질적인 속성이며, 미래사회에서는 다양성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계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성평등 문화, 공정·상생의 문화시장 조성 등은 다양성과 자율성을 위한 가치로 중요하다.

셋째, 포용적·참여적 문화복지 확립이다. 포용국가 비전은 정부의 핵심적인 사회정책으로 정부의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포용국가에서는 단순히 시혜적인 문화복지가 아니라 참여적인 문화복지가 중요하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자의 보다 적극적인 문화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다. 포용국가 비전은 단순히 비배제성의 차원을 넘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권리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문화인력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과제와도 연계되어 있다.

넷째, 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가치 확산이다. 우리사회는 세대간, 지역 간 갈등이 심각하며, 문화를 통한 갈등해소가 중요해 진 시기이다, 또한 문화활동은 기존의 개인적·정서적 관점에서 사회적·공동체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문화의 속성은 창조성과 다양성 이전에 학습과 공유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은 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초점을 두기 이전에 문화가 가진 본질적 가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시대에 문화를 통한 국제협력과 교류, 문화를 통한 남북한 교류와 통합도 문화의 본질적 가치인 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가치 확산과 연계되어 있다.

다섯째, 문화의 미래가치 제고이다.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전략이 필요하다. 예술과 콘텐츠산업, 예술과 과학, 예술 장르간, 창작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기존의 전통적이고 수직인 문화유통체계가 새로운 체계로 대체되고 있다. 문화는 창조성을 기반하고 새로운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문화예술의 콘텐츠 자체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이지만, 다른 분야와의 연계 및 전달하는 방식에서는 상대적으로 혁신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융합과 문화예술 시장의 혁신은 문화의 미래가치 제고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핵심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혁신과 미래를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젊은 문화

예술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문화예술 전문인력은 오랜 동안의 교육 훈련을 거쳐 동료평가 및 대중의 평가를 모두 거쳐야 시장이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문화진흥기반 구축이다. 분권과 문화권 확산, 거버넌스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략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문화 분야 기본계획에 문화진흥기반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 기반조성은 형식적인 목표가 아닌 다른 모든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목표이다. 시민사회의 성장, 자치분권·지방분권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전되고, 공공부문보다 민간 부문의 가치가 더 중시되는 여건, 다른 분야보다도 세분화된 정책영역과 법제도, 다양한 기관과 전달체계는 문화거버넌스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킨다. 지역문화는 앞의 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 체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화기반시설 등 다른 정책영역과 동등한 위상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지역중심의 문화기반과 정책을 지향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정책의 목표와 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문화권을 중심으로 법 제도 정비, 체계성 제고 등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비전-가치-정책목표-정책과제의 전략체계는 다음의 〈표 4-4〉와 같다. 정책과제는 각 정책목표별로 3~4개씩 구성하도록 제안하였다. 전체적인 과제수를 보면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은 6개 정책목표, 21개 정책과제, 55개 세부과제로 구성을 제안하였다.

〈표 4-4〉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전략체계도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	
가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정책목표	정책과제
	1. 모두가 행복한 문화가 있는 삶	1.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강화 및 혁신 2. 일과 삶의 균형으로 문화가 있는 삶 조성 3. 문화자본과 문화역량 축적 4.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2.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실현	5. **문화다양성의 보존**과 진흥을 통한 **문화생태계 조성** 6.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문화활동 강화 7. **성평등 문화 실현** 8. **공정**·상생·협력의 문화시장 조성
	3. 포용적·참여적 문화복지 확립	9. 문화소외계층 참여적 문화복지 확산 10. 100세 시대 고령자의 활력 있는 문화적 삶 조성 11. **문화인력의 지위와 및 권리 보장**
	4. 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가치 확산	12. 함께 하는 문화적 활동과 가치 확산 13. 문화를 통한 갈등 해소와 소통 강화 14. **미래와 평화를 위한 남북 문화협력 확대** 15. 공감과 지속가능한 국제문화협력 확산
	5. 문화의 미래 가치 제고	16. 문화자원과 시장의 **융합역량 강화** 17. 지속가능한 젊은 예술인력 활동 기반 조성 18. 혁신적인 문화예술시장의 기반 구축
	6.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문화진흥기반 구축	19. 분권·효율적인 문화거버넌스 체계 구축 20. **지역문화분권** 및 지역중심 문화기반 조성 21. 자율·미래·**문화권** 확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

* 굵은 글씨는 문화비전 2030의 정책과제와 연계

다. 문화비전 2030의 추진과제와 연계

문화비전 2030의 9대 의제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정책과제
①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⑨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1.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강화 및 혁신 2. 일과 삶의 균형으로 문화가 있는 삶 조성 3. 문화자본과 문화역량 축적 4.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④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③ 성평등 문화 실현 ⑤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5. 문화다양성의 보존과 진흥을 통한 문화생태계 조성 6.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문화활동 강화 7. 성평등 문화 실현 8. 공정·상생·협력의 문화시장 조성
①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②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보장	9. 문화소외계층 참여적 문화복지 확산 10. 100세 시대 고령자의 활력 있는 문화적 삶 조성 11. 문화인력의 지위와 및 권리 보장
⑧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12. 함께 하는 문화적 활동과 가치 확산 13. 문화를 통한 갈등 해소와 소통 강화 14. 미래와 평화를 위한 남북 문화협력 확대 15. 공감과 지속가능한 국제문화협력 확산
⑦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⑨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16. 문화자원과 시장의 융합역량 강화 17. 지속가능한 젊은 예술인력 활동 기반 조성 18. 혁신적인 문화예술시장의 기반 구축
⑥ 지역문화분권 실현 ①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19. 분권·효율적인 문화거버넌스 체계 구축 20. 지역문화분권 및 지역중심 문화기반 조성 21. 자율·미래·문화권 확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

[그림 4-3] 문화비전 2030과 문화진흥기본계획 과제의 연계도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은 상위 비전인 문화비전 2030의 가치와 의제의 실현이 필요하다. 추진과제 모두의 연계성을 도식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9대 의제의 실현과 연계는 중요하므로 직접적인 과제 위주로 이를 도표로 구성하여 보면 앞의 〈그림 4-3〉과 같다. 이미 문화비전 2030 체계의 특성에 대해 설명한 바와 같이 문화비전 2030은 법제도적인 과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정책목표 6의 기반조성의 과제에는 대부분의 문화비전 과제가 연계되어 있는데, 이는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세부추진과제간의 일부 중복이 있으므로 주요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라. 포용국가 비전과 문화진흥기본계획과의 연계

정부의 상위 계획인 포용국가 비전과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과의 연계도는 다음의 〈그림 4-4〉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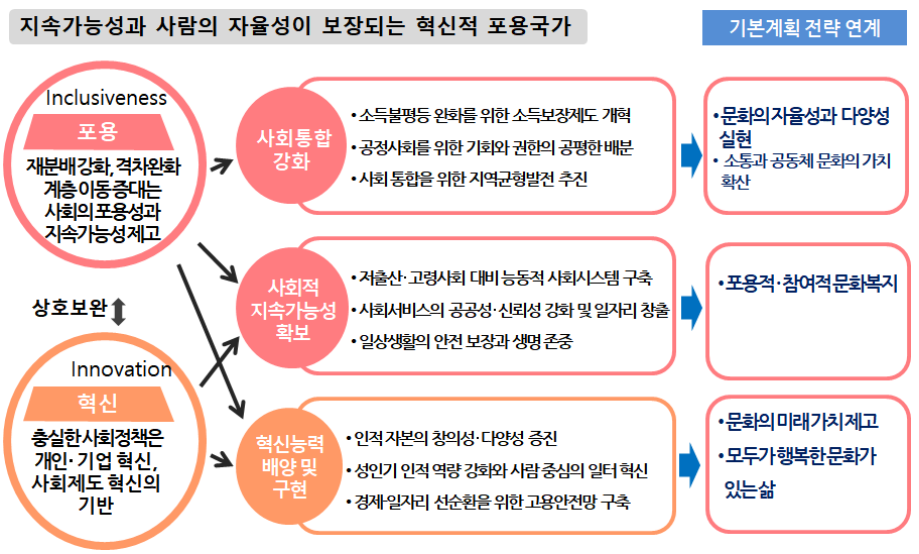

[그림 4-4] 포용국가 비전과 제2차 기본계획의 연계도

마. 제2차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환경분석과의 연계성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분석한 여건 및 환경변화가 제안된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정책목표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연계되는 지를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핵심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의 〈표 4-5〉와 같다.

〈표 4-5〉 제2차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별 환경분석 연계성

정책목표	환경변화		정책방향
모두가 행복한 문화가 있는 삶	• 주52시간 근무제 • 일과 여가 균형 • 개인주의화	→	• 수요자 중심 문화정책 • 문화역량과 문화자본의 축적 • 예술지원체계 혁신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실현	• 지방 자치 분권 • 과거 정부의 간섭과 통제 • 정부 중심의 문화시장 • 문화생태계 구조적 문제	→	• 문화의 자율성 보장/민간중심 시장 • 다양성 실현/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 성평등 문화 실현 • 공정·상생·협력의 문화시장 조성
포용적 참여적 문화복지 확립	• 고령화 사회 • 포용국가 정책 비전 • 문화인력 권리 보장 미흡	→	• 참여적 고령자 문화정책 • 보편적·참여적 문화복지 • 문화인력의 권리와 지위 보장
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가치 확산	• 개인적 정서적 위주 문화정책 • 사회적 갈등과 혐오사회 • 글로벌 시대	→	• 공유/공동체의 문화의 본질적 가치 • 사회적 공동체적 가치와 활동 • 남북한 문화교류 및 국제협력
문화의 미래가치 제고	• 4차 산업혁명 • 문화시장의 높은 진입장벽 • 문화시장구조의 혁신 미흡	→	• 문화시장의 융복합 및 유통체계 혁신 • 실험적/젊은 예술인력 활동 기반 조성 •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문화진흥 기반 구축	• 지방 자치 분권 • 중앙정부/공공 중심 문화시장 • 칸막이/문화권 보장 미흡	→	• 지역 중심 문화정책 기반 구축 • 문화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문화권/자율성 확립을 위한 법 제도

바.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 지향하는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는 다음의 〈표 4-6〉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표 4-6〉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구분	기존		전환
문화활동지원	혜택의 관점	→	문화적 권리(문화권)
문화지원의 방법	칸막이/분리 지원	→	문화생태계의 선순환구조/융합
문화정책의 대상	선별적 접근	→	보편적 접근
문화생활의 관점	여가시간 활동 (일과 여가 분리)	→	일상의 삶속의 문화(일과 삶의 균형)
문화의 가치	도구주의	→	국민행복/문화자체
문화예술의 접근	개인화된 주관적 정서	→	공동체/리터러시
문화정책 성과의 기준	문화 향유	→	문화참여/문화적 삶
문화행정	하향식 전달체계	→	거버넌스(협치)

첫째, 문화활동 지원은 혜택의 관점에서 문화적 권리(문화권)의 관점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국가가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지원대상에 대한 시혜적 관점으로는 규제, 선별 등을 하게 된다. 국가가 지원을 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문화권의 관점에서는 지원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으며, 규제가 아닌 보장의 차원에서 접근하게 된다.

둘째, 문화지원의 방법은 칸막이/분리 지원에서 문화생태계의 선순환구조/융합의 관점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문화정책의 영역이 다양하고 근거 법률이 다르다 보니 지원방식에서 칸막이 분리 지원의 문제가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심지어 동일한 정책영역 내에서도 지원사업이나 추진부서(전달체계 경로상)가 다를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생애주기별 문화서비스에서도 계층별 단절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수요자

의 관점에서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문화생태계의 관점에서는 연계와 융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의 생산자와 유통자가 문화생태계의 관점에서 서로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지원을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문화정책의 대상은 선별적 접근에서 보편적 접근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선별적 접근의 관점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단체와 인력들이 잠재적인 경쟁자가 되어 협력을 기피하는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보편적 접근에서는 경쟁이 아닌 협력의 관점에서 수행하게 된다.

넷째, 문화생활의 관점은 여가시간의 활동에서 일상의 삶 속의 문화인 일과 삶의 균형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문화를 여가시간의 활동으로 국한하게 되면 문화는 사치재가 된다. 일과 여가의 균형이라는 관점도 유사한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 일상의 삶과 문화가 분리되지 않고 문화가 삶이고, 삶이 문화가 되는 것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이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다섯째, 문화의 가치는 도구주의에서 국민행복과 문화자체로 변화하여야 한다. 문화정책이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닌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지의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사람이 있는 문화이다.

여섯째, 문화예술의 접근은 개인화된 주관적 정서에서 공동체와 리터러시로 변화하여야 한다. 문화가 공유와 학습을 기반으로 공동체에 기반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 문화정책의 구체적 대상은 개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문화정책의 성과도 문화예술관람율 지표에서 나타나듯이 개인적인 정서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동아리 활동도 결국은 유사한 선호를 가진 개인들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동아리 활동을 통한 공동체성 등에 대한 관점은 미흡하다. 문화진흥기본계획이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개인화된 주관적 정서에서 공동체와 리터러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일곱째, 문화정책 성과의 기준은 문화향유에서 문화참여와 문화적 삶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공동체와 관련하여 문화정책 성과의 기준을 문화향유에서

문화에 대한 참여와 문화적 삶의 질 제고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성과지표 설정과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년에 한번 어떠한 장르 중 하나의 문화예술을 관람하였다고 삶의 질이 제고되고 행복한 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여야 한다. 외국의 사례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양적인 지표 이외에 정책목표에 대한 궁극적인 미래상과 질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문화행정은 하향식 전달체계에서 거버넌스(협치)로 변화하여야 한다. 문화정책과 관련된 제도, 정책 및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것을 전달체계에 따라 최종 단계까지 수직적으로 전달하고 추진하는 체계이다. 이러한 관점은 중앙정부 중심, 공공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점에서는 자치 분권에 따라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정부/공공과 민간의 관점에서는 민간과 시장의 성장에 따라 역시 여건이 달라지고 있다. 정책 참여자들이 단순히 협력하는 수준을 넘어 민간이 중심이 되는 협치로 변화하여야 한다.

3.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정책과제 개요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정책과제는 21개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정책목표 1 모두가 행복한 문화가 있는 삶에서는 ①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강화 및 혁신, ② 일과 삶의 균형으로 문화가 있는 삶 조성, ③ 문화가본과 문화역량 축적, ④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등 4개 정책과제이다. 법정 기본계획으로서 문화정책의 핵심은 지원정책이므로 지원의 강화 및 혁신을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문화시장의 변화에 따라 연계성 있고 지원방식 변화,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체계 혁신과 강화, 이를 위한 기반으로 문화재정 확보 등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정책과제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일과 삶의 균형으로 문화가 있는 삶을 제안하였다. 여가시간과 근무형태 변화에 따라 문화에 대한 접근성의 혁신과 제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여가문화 등을 제안하였다.

정책목표 2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실현에서는 ① 문화다양성의 보존과 진흥을 통한 문화생태계 조성, ②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문화활동 강화, ③ 성평등 문화실현, ④ 공정·상생·협력의 문화시장 조성 등 4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다양성은 공동체의 관점에서는 다양성이지만, 개인의 관점에서는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결정인 자율성을 의미하므로 이를 연계하여 제안하였다. 문화다양성과 문화생태계 조성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소수자를 위한 문화활동과 권리 보장, 성평등 문화 실현, 공정·상생의 문화시장 등은 개인의 권리와 다양성의 관점이기도 하지만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문화생태계 조성은 연구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시된 개념이며, 공공 및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의 역량 강화, 자치분권의 문화정책을 위한 핵심적인 방향이다.

정책목표 3 포용적·참여적 문화복지 확산에서는 ① 문화소외계층 참여적 문화복지 확산, ② 100세 시대 고령자의 활력 있는 문화적 삶 조성, ③ 문화인력의 지위와 및 권리 보장 등 3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문화활동은 개인의 선호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선별적인 접근을 하여 왔으나, 포용국가와 관련하여서는 보편적 접근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즉, 누구도 배제됨이 없이 동등한 혜택을 누려야 한다. 공급자 관점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평등권은 공급의 기회에서의 차별성을 해소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나, 수요자 관점에서 진정한 포용국가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문화향유권을 확보하였는지가 중요하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100세 시대 고령자의 참여적 문화활동,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도 중요하다, 문화인력의 지위와 권리 보장은 문화인력의 복지뿐만 아니라 권리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책목표 4 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가치 확산에서는 ① 함께 하는 문화적 활동과 가치 확산, ② 문화를 통한 갈등 해소와 소통 강화, ③ 미래와 평화를 위한 남북 문화협력 확대, ④ 공감과 지속가능한 국제문화협력 확산 등 3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문화활동과 정책의 방향, 지표는 주로 개인의 주관적·정서적 활동에 초점을 두어 왔다. 문화정책에서 대표적인 지표가 문화

예술관람율이 제시되는 것이 사례이다. 문화의 가치는 개인을 기반으로 하기 이전에 공동체의 가치에 있으며, 공유와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소통과 갈등해소라 다른 사회적·경제적 가치 이전에 최우선적인 가치이다. 함께 하는 공동체 문화활동은 이러한 문화의 본질적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1인 가구, 개인주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이다. 이러한 문화의 가치는 사회적 갈등 해소에 문화가 기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글로벌 시대에는 일방향적인 국제문화교류보다는 국제문화교류의 협력이 중요하다. 또한 미래와 평화를 위한 남북한의 문화교류와 협력도 중요하다.

정책목표 5 문화의 미래가치 제고에서는 ① 문화자원과 시장의 융합역량 강화, ② 지속가능한 젊은 예술인력 활동 기반 조성, ③ 혁신적인 문화예술시장의 기반 구축 등 3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전통적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지만, 문화 분야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미흡하므로 인력, 콘텐츠, 유통, 서비스 등의 융합과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진입장벽 해소와 창의성을 갖춘 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창작자·매개자·소비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에 창의성을 갖춘 시민과 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정책목표 6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문화진흥기반 구축에서는 ① 분권·효율적인 문화거버넌스 체계 구축, ② 지역문화분권 및 지역중심 문화기반 조성, ③ 자율·미래·문화권 확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3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지역문화정책을 다른 하위 정책영역이나 기반에 두지 않고 기반조성에 설정한 것은 지역문화정책이 문화정책의 현장이 되기 때문이다. 자치분권 시대,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도 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문화기관의 혁신과 전문성 강화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또한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방향의 정립, 관련 법률, 특히 문화기본법의 정비와 문화권 확립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정책과제와 세부과제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의 〈표 4-7〉과 같다.

〈표 4-7〉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세부과제

정책목표	정책과제	세부과제
1. 모두가 행복한 문화가 있는 삶 (4/14)	1-1.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강화 및 혁신(3)	• 문화가치사슬에 따른 체계적 지원 • 자율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창작활동 지원 •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문화재정 확보 및 운영
	1-2. 일과 삶의 균형으로 문화가 있는 삶 조성(4)	• 시간·공간 제약 없는 문화공간 및 프로그램 조성 확대 • 생산적인 여가문화 확산 • 직장에서의 문화활동 활성화 •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기반 조성
	1-3. 문화자본과 문화역량 축적(4)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성 및 문화역량 증진 • 참여적인 생활문화 활성화 • 문화가 있는 가정 확산 •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1-4.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3)	• 모두에게 열려있고 품격 있는 문화환경 및 디자인 조성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 문화가 이끄는 사람과 사회의 변화
2.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실현 (4/11)	2-1. 문화다양성의 보존과 진흥을 통한 문화생태계 조성(4)	• 문화다양성 증진을 통한 종 다양성 강화 • 실험적이고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 강화 •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조화 • 언어문화의 다양성 실현
	2-2.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문화활동 강화(2)	• 모두가 누리는 문화활동 기회 확충 • 소수자의 문화활동 및 권리 보장
	2-3. 성평등 문화실현(2)	• 성차별·성폭력 없는 문화생태계 조성 • 여성친화적 문화정책 및 권리 보장
	2-4. 공정·상생·협력의 문화시장 조성(3)	• 문화 분야 공정·상생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공정계약 제도 확립 • 공공·민간, 예술·기업의 상생 협력 강화 • 문화유통시장의 공정·상생 체계
3. 포용적·참여적 문화복지 확립 (3/7)	3-1. 문화소외계층 참여적 문화복지 확산(3)	• 보편적인 문화복지체계 구축 • 취약지역·계층의 맞춤형 문화복지 • 장애인 문화활동 및 복지 강화
	3-2. 100세 시대 고령자의 활력 있는 문화적 삶 조성(2)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 신중년 참여적 문화활동 활성화
	3-3. 문화인력의 지위와 및 권리 보	• 예술인·문화종사자의 권리 보장

정책목표	정책과제	세부과제
	장(2)	• 예술인 사회보장 및 창작환경 개선
4. 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가치 확산 (4/9)	4-1. 함께 하는 문화적 활동과 가치 확산(2)	• 공동체 문화의 확산 • 함께 하는 문화활동 지원 강화
	4-2. 문화를 통한 갈등 해소와 소통 강화(2)	• 사람 중심 문화정책 및 프로그램의 가치 제고 • 국어능력 향상을 통한 소통과 문화가치 확산
	4-3. 미래와 평화를 위한 남북 문화 협력 확대(2)	• 남북한 평화를 위한 공동협력과 교류 • 남북 언어 통합 기반 구축
	4-4. 공감과 지속가능한 국제문화협력 확산(3)	• 국제문화교류 체계화 및 다양화 • 국제 문화 기여 및 협력 강화 • 한국문화의 국제적 브랜드 제고 및 콘텐츠의 세계적 대중화 확산
5. 문화의 미래 가치 제고 (3/7)	5-1. 문화자원과 시장의 융합역량 강화(3)	• 문화자원 융합기반 조성 • 예술 분야 기술융합 지원 • 혁신적인 문화일자리 창출
	5-2. 지속가능한 젊은 예술인력 활동 기반 조성(2)	• 창의성과 상상력을 갖춘 시민·전문인력 양성 • 새로운 예술인·문화전문인력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
	5-3. 혁신적인 문화예술시장의 기반 구축(2)	• 4차산업혁명 시대 문화유통시장의 혁신 • 복융합·커뮤니티 문화공간 조성
6.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문화진흥 기반 구축 (3/7)	6-1. 분권·효율적인 문화거버넌스 체계 구축(2)	• 혁신적인 문화행정전달 및 협력체계 • 문화기관의 운영혁신 및 전문성 강화
	6-2. 지역문화분권 및 지역중심 문화 기반 조성(3)	• 지역중심 문화행정 및 진흥체계 구축 • 지역문화의 고유성 및 역량 제고 • 지역문화 균형 발전
	6-3. 자율·미래·문화권 확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2)	• 문화기본법 및 문화법률의 정비 • 미래지향적 문화전략 및 추진기반 조성
합계	6개 정책목표, 21개 정책과제 55개 세부과제	

제5장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

제1절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와 방향

1. (정책목표 1) 모두가 행복한 문화가 있는 삶

가. 배경 및 추진방향

주 52시간 상한근무제 도입, 여가시간 확대, 워라밸 트렌드는 문화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이러한 기회에서 단순히 문화가 여가시간의 활동 중의 하나, 기존의 문화프로그램 서비스, 문화접근성 제고 등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행복한 삶의 필수 요소로서 문화가 있는 삶의 정책목표는 문화정책의 오래된 핵심방향이다.

문화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의 관점에서 문화역량을 축적하고, 사회의 문화자본이 축적되어야 한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양적인 목표와 방향이 아닌 행복한 개인과 사회의 실질적인 목표와 요인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문화예술관람율 지표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연 1회 문화를 관람하는 것이 행복한 삶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실질적이고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삶, 문화역량과 문화자본 축적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질적인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적인 여가, 가정·직장·생활권역에서 문화활동이 일상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상에서 접하는 문화환경과 공공디자인은 품격 있고 모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가 여가활동이라는 사치재의 관점이 아니라 문화를 통한 사람과 사회의 변화, 지역의 재생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개인 및 사회의 행복한 삶,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는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강화와 혁신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문화가 생활양식의 총체이기는 하지만, 문화정책은 미국 NEA의 전략계획에서 보듯이 우수한 문화예술을 창작할 수 있는 기반과 접근이 전략적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이다.

나. 추진과제 개요

정책목표 1 모두가 행복한 문화가 있는 삶에서는 ①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강화 및 혁신, ② 일과 삶의 균형으로 문화가 있는 삶 조성, ③ 문화가본과 문화역량 축적, ④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등 4개 정책과제, 세부과제는 14개로 구성을 제안하였다.

〈표 5-1〉 모두가 행복한 문화가 있는 삶 과제 개요

정책과제	세부과제
1-1.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강화 및 혁신(3)	• 문화가치사슬에 따른 체계적 지원 • 자율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창작활동 지원 •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문화재정 확보 및 운영
1-2. 일과 삶의 균형으로 문화가 있는 삶 조성(4)	• 시간·공간 제약 없는 문화공간 및 프로그램 조성 확대 • 생산적인 여가문화 확산 • 직장에서의 문화활동 활성화 •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기반 조성
1-3. 문화자본과 문화역량 축적(4)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성 및 문화역량 증진 • 참여적인 생활문화 활성화 • 문화가 있는 가정 확산 •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1-4.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3)	• 모두에게 열려있고 품격 있는 문화환경 및 디자인 조성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 문화가 이끄는 사람과 사회의 변화
합 계 : 4개 정책과제	14개 세부과제

2. (정책목표 2)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실현

가. 배경 및 추진방향

문화의 자율성,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나타나듯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적인 제도의 미흡과 함께 미흡한 인식과 관행의 축적 등이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단일민족, 단일문화의 인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다양성에 대한 관용이 미흡한 것이 원인이다. 다름을 배척하고 혐오하는 수준이 이르기도 하며, 이러한 문제는 사회갈등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권위주의적 정부는 문화정책에서도 지나친 간섭과 통제의 유혹을 쉽게 벗어버리지 못했다. 문화정책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오래 전부터 자리 잡았지만 실질적인 구현의 제도와 인식은 미흡한 실정이다.

다양성은 문화의 본질적인 속성이며,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창조된다. 다양성은 자연의 섭리이기도 한다. 종다양성은 자연에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원리이며, 순혈주의는 퇴보를 가져온다.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새롭고 실험적이며 다양한 문화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소비되어야 한다. 공정·상생의 문화시장은 규제의 관점, 정의의 실현 보다는 다양성의 관점에서 상생을 통한 문화생태계 조성, 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다양성은 공동체의 관점에서는 다양성이지만, 개인의 관점에서는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결정인 자율성을 의미하므로 분리하기 보다는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추진과제 개요

정책목표 2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실현에서는 ① 문화다양성의 보존과 진흥을 통한 문화생태계 조성, ②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문화활동 강화, ③ 성평등 문화실현, ④ 공정·상생·협력의 문화시장 조성 등 4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세

부과제는 11개로 구성을 제안하였다.

〈표 5-2〉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실현 과제 개요

정책과제	세부과제
2-1. 문화다양성의 보존과 진흥을 통한 문화생태계 조성(4)	• 문화다양성 증진을 통한 종 다양성 강화 • 실험적이고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 강화 •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조화 • 언어문화의 다양성 실현
2-2.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문화활동 강화(2)	• 모두가 누리는 문화활동 기회 확충 • 소수자의 문화활동 및 권리 보장
2-3. 성평등 문화실현(2)	• 성차별·성폭력 없는 문화생태계 조성 • 여성친화적 문화정책 및 권리 보장
2-4. 공정·상생·협력의 문화시장 조성(3)	• 문화 분야 공정·상생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공정계약 제도 확립 • 공공·민간, 예술·기업의 상생 협력 강화 • 문화유통시장의 공정·상생 체계
합계 : 4개 정책과제	11개 세부과제

3. (정책목표 3) 포용적·참여적 문화복지 확립

가. 배경 및 추진방향

4차 산업혁명으로 일한 산업구조와 일자리의 혁신적 변화는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산출한다. 고령화 사회, 100세 시대의 진입은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증가시킨다. 특히 우리사회는 사회복지안전망의 역사가 짧고 노후의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선진국에 비해 더욱 취약한 수준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비교적 고학력, 국민연금의 초기 도입기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 형성이 이루어진 베이비 부머 세대의 퇴직은 기존의 고령자 정책과는 새로운 정책을 필요로 한다.

포용적 문화복지는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특히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어느 누구도 배제됨이 없이 보편적인 문화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장애인 등 특수한 계층, 지역적인 소외계층 등이 생애주기별로 보편적이고 맞춤형 정책이 가능하도록 한다. 기존의 생애주기별 문화복지 정책이 세대별/계층별 분리된 정책 위주였지만,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문화복지 정책을 지향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학력·안정적 자산을 가진 계층의 퇴직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고령자 문화정책을 필요로 한다. 보다 건강수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후에 문화를 통한 새로운 인생설계와 전환, 적극적인 문화활동이 가능하도록 참여적인 문화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포용국가 비전은 단순히 비배제성의 차원을 넘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권리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문화인력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과제와도 연계되어 있다. 예술인의 직업형태가 변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술인력은 기본적으로 자유직업의 형태가 대부분이며, 향후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이므로, 안정적인 창작활동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 및 창작환경을 개선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이 복지의 관점인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예술인의 기본적인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나. 추진과제 개요

정책목표 3 포용적·참여적 문화복지 확산에서는 ① 문화소외계층 참여적 문화복지 확산, ② 100세 시대 고령자의 활력 있는 문화적 삶 조성, ③ 문화인력의 지위와 및 권리 보장 등 3개 과제, 세부과제는 7개로 구성을 제안하였다.

〈표 5-3〉 포용적·참여적 문화복지 확립 과제 개요

정책과제	세부과제
3-1. 문화소외계층 참여적 문화복지 확산(3)	• 보편적인 문화복지체계 구축 • 취약지역·계층의 맞춤형 문화복지 • 장애인 문화활동 및 복지 강화
3-2. 100세 시대 고령자의 활력 있는 문화적 삶 조성(2)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 신중년 참여적 문화활동 활성화
3-3. 문화인력의 지위와 및 권리 보장(2)	• 예술인·문화종사자의 권리 보장 • 예술인 사회보장 및 창작환경 개선
합계 : 3개 정책과제	7개 세부과제

4. (정책목표 4) 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가치 확산

가. 배경 및 추진방향

개인이 혼자서 축적하고 생활하는 방식은 문화가 아니다, 문화는 공동체를 통하여 공유되고 학습되어 축적하여야 문화가 되는 것이다. 문화를 통하여 사람들은 소통을 하고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식한다. 개인이 창조적인 활동은 무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공유되고 전승된 문화적 축적과 역량이 기반이 되는 것이다. 문화에 대한 경험은 개인적인 경험이기 이전에 공동체의 경험이었다. 그러나 산업사회 이후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문화예술은 개인적인 주관적·정서적 활동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독서가 대표적이다. 인쇄술 발명 이전의 산업사회에서 독서는 개인적인 활동이기도 했지만, 다수는 낭독을 통한 공동체의 경험이었다. 공연예술이나 음악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매체의 발달과 보급으로 이러한 문화예술의 접근이 개인화되었다. 특히 청년계층의 가구 독립, 비혼과 만혼, 고령화에 따른 독신 고령자의 증가 등은 1인 가구와 개인주의의 문제를 심화시키며, 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본질적 가치가 중요하게 되고 있다.

문화활동과 접근의 개인주의화는 문화의 기본적인 가치인 소통의 가치를 약화시

키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는 최근 세대간, 지역 간 갈등, 혐오사회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활동은 기존의 개인적·정서적 관점에서 사회적·공동체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향은 문화의 본질적 가치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가치 확산이다. 우리사회는 세대간, 지역 간 갈등이 심각하며, 문화를 통한 갈등해소가 중요해 진 시기이다, 또한 문화의 속성은 창조성과 다양성 이전에 학습과 공유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은 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초점을 두기 이전에 문화가 가진 본질적 가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시대에 문화를 통한 국제협력과 교류, 문화를 통한 남북한 교류와 통합도 문화의 본질적 가치인 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가치 확산과 연계되어 있다.

글로벌 시대에는 일방향적인 국제문화교류 보다는 국제문화교류의 협력이 중요하다. 다른 나라의 문화와의 차이를 인정하고 문화적인 소통을 통한 글로벌 공동체의 인식이 중요하다. 최근의 한류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에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이 있지만, 문화를 통한 소통과 공감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한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서구문화가 보편화된 여건에서 한국문화의 특성과 보편성을 조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중기계획에서 나타나듯이 국제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문화적 역량과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성과 국제협력,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국제협력과 기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미래와 평화를 위한 남북한의 문화교류와 협력도 중요하다. 문화적인 관점에서 가장 간극이 큰 대상이 남북한 간의 문화이다. 그러나 소통과 공동체성을 제고하는 문화의 힘을 신뢰하고 남북한 간의 문화교류와 통합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나. 추진과제 개요

정책목표 4 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가치 확산에서는 ① 함께 하는 문화적 활동과 가치 확산, ② 문화를 통한 갈등 해소와 소통 강화, ③ 미래와 평화를 위한

남북 문화협력 확대, ④ 공감과 지속가능한 국제문화협력 확산 등 3개 과제, 세부과제는 9개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표 5-4〉 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가치 확산 과제 개요

정책과제	세부과제
4-1. 함께 하는 문화적 활동과 가치 확산(2)	• 공동체 문화의 확산 • 함께 하는 문화활동 지원 강화
4-2. 문화를 통한 갈등 해소와 소통 강화(2)	• 사람 중심 문화정책 및 프로그램의 가치 제고 • 국어능력 향상을 통한 소통과 문화가치 확산
4-3. 미래와 평화를 위한 남북 문화협력 확대(2)	• 남북한 평화를 위한 공동협력과 교류 • 남북 언어 통합 기반 구축
4-4. 공감과 지속가능한 국제문화협력 확산(3)	• 국제문화교류 체계화 및 다양화 • 국제 문화 기여 및 협력 강화 • 한국문화의 국제적 브랜드 제고 및 콘텐츠의 세계적 대중화 확산
합계 : 4개 정책과제	9개 세부과제

5. (정책목표 5) 문화의 미래가치 제고

가. 배경 및 추진방향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 혁신은 개인과 사회의 생활양식, 문화의 창작과 유통 및 소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예술과 콘텐츠산업, 예술과 과학, 예술 장르간, 창작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기존의 전통적이고 수직인 문화유통체계가 새로운 체계로 대체되고 있다. 기존에 프로슈머 등의 개념이 등장하였지만,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경계 파괴와 융합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대체로 문화예술의 콘텐츠 자체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이지만, 다른 분야와의 연계 및 전달하는 방식에서는 상대적으로 혁신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이 직관적인 개인적인 창의적 활동에 기반하고 있으므

로 과학기술과는 관련성이 낮고, 문화예술인력의 최신 과학기술 적용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은 전통적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지만, 문화 분야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미흡하므로 인력, 콘텐츠, 유통, 서비스 등의 융합과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진입장벽 해소와 창의성을 갖춘 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창작자·매개자·소비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에 창의성을 갖춘 시민과 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나. 추진과제 개요

정책목표 5 문화의 미래가치 제고에서는 ① 문화자원과 시장의 융합역량 강화, ② 지속가능한 젊은 예술인력 활동 기반 조성, ③ 혁신적인 문화예술시장의 기반 구축 등 3개 과제, 세부과제는 7개로 구성을 제안하였다.

〈표 5-5〉 문화의 미래가치 제고 과제 개요

정책과제	세부과제
5-1. 문화자원과 시장의 융합역량 강화(3)	• 문화자원 융합기반 조성 • 예술 분야 기술융합 지원 • 혁신적인 문화일자리 창출
5-2. 지속가능한 젊은 예술인력 활동 기반 조성(2)	• 창의성과 상상력을 갖춘 시민·전문인력 양성 • 새로운 예술인·문화전문인력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
5-3. 혁신적인 문화예술시장의 기반 구축(2)	• 4차산업혁명 시대 문화유통시장의 혁신 • 복융합·커뮤니티 문화공간 조성
합계 : 3개 정책과제	7개 세부과제

6. (정책목표 6)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문화진흥기반 구축

가. 배경 및 추진방향

문화진흥기본계획이 정책과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지만,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정책추진체계, 기반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존에 많은 기본계획과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었지만, 비전과 정책목표·정책과제는 레토릭에 그치고 실제 추진과제는 기존의 방식대로 추진되거나 회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공공정책에서 정책을 실제로 추진하는 공공조직이 기본계획과 정책의 패러다임과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공공조직의 속성상 제도와 프로세스가 혁신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기존의 방식과 프로세스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진흥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추진체계, 법제도 정비, 혁신적인 프로세스 개편 등이 중요하다.

시민사회의 성장, 자치분권·지방분권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전되고, 공공부문 보다 민간 부문의 가치가 더 중시되는 여건, 다른 분야보다도 세분화된 정책영역과 법제도, 다양한 기관과 전달체계는 문화거버넌스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킨다. 지역문화는 앞의 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 체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화기반시설 등 다른 정책영역과 동등한 위상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지역 중심의 문화기반과 정책을 지향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정책의 목표와 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문화권을 중심으로 법 제도 정비, 체계성 제고 등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방향의 정립, 관련 법률, 특히 문화기본법의 정비와 문화권 확립 등이 필요하다.

나. 추진과제 개요

정책목표 6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문화진흥기반 구축에서는 ① 분권·효율적인 문화거버넌스 체계 구축, ② 지역문화분권 및 지역중심 문화기반 조성,

③ 자율·미래·문화권 확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3개 과제, 세부과제는 7개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표 5-6〉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문화진흥기반 구축 과제 개요

정책과제	세부과제
6-1. 분권·효율적인 문화거버넌스 체계 구축(2)	• 혁신적인 문화행정전달 및 협력체계 • 문화기관의 운영혁신 및 전문성 강화
6-2. 지역문화분권 및 지역중심 문화기반 조성(3)	• 지역중심 문화행정 및 진흥체계 구축 • 지역문화의 고유성 및 역량 제고 • 지역문화 균형 발전
6-3. 자율·미래·문화권 확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2)	• 문화기본법 및 문화법률의 정비 • 미래지향적 문화전략 및 추진기반 조성
합계 : 3개 정책과제	7개 세부과제

제2절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추진전략

1. 기본계획의 추진체계

가.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위상 및 체계성 확보

문화진흥기본계획은 문화비전 2030이 발표되기 전에는 기존 부문별 계획의 종합계획의 위상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문화기본법 및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취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위상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단순히 종합계획이 아니라 부문별 계획의 방향을 정립하고, 체계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영역별 집행법률과 이에 따른 부문별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고 있는 여건에서 이를 실제로 실현하는 것은 어렵다. 더구나 각 법률의 제정시기, 각 계획의 계획기간이 서로 달라 체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먼저 수립된 부문별 계획의 방향이 나중에 수립된 문화진흥기본계획과 차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체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과 같은 대안이 있다. 첫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나치게 세분화된 영역별 기본계획을 법률에도 불구하고 연계된 영역별로 통합하는 것이다. 예술분야는 예술진흥기본계획으로, 독서-도서관 등을 통합한 정책 등이 사례이다. 둘째,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이후에 각 부문별 계획이 수립되도록 문화기본법 부칙에 일괄적으로 부문별 계획의 수립기간을 통일하는 것이다. 셋째, 먼저 수립된 부문별 계획이 문화진흥기본계획의 가치 및 방향과 차이가 있을 경우 수정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각 부문별 계획의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문화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수립되는 부문별 계획은 문화진흥기본계획의 가치와 방향을 따르도록 문화기본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나. 부문별 계획과의 체계성 확보를 위한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기간 조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뿐 아니라 다른 부처 소관의 기본계획의 수립 기간도 대부분 5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이 단일한 정책영역이고 다른 정책영역과의 관계나 위상은 거의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위상 및 체계가 논란이 되는 것은 문화의 영역이 다양하고, 부문별 기본계획이 많으며, 이러한 부문별 기본계획과의 위상과 체계성 확보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문화 분야와 차이는 있지만, 다른 계획이나 부처 등과 관련되어 체계성 확보가 필요한 기본계획이 국토기본계획이다. 국토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에 의하여 수립되는 기본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 계획으로 구분하며, 부처별 실천계획이 별도로 수립된다.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기간으로 하여 수립하는 장기계획이며, 국토종합계획의 방향에 따라 하위 계획이 수립된다. 동법 시행령(제7조)에는 실천계획은 5년을 기간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국토종합계획은 20년간의 장기계획이므로 환경변화 및 성과평가를 반영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수정계획을 수립한다.

문화정책의 기본정책과 방향은 어떤 정책보다도 장기적인 계획과 기조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문화의 가치인 자율성·다양성·창의성 확보는 단기적으로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진흥기본계획은 세부적인 과제나 실행계획 보다는 전략적인 아젠더, 방향, 핵심적인 과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이러한 전략적 가치와 방향에 따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문화정책의 체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문화기본법의 제정과 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취지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토종합계획의 방식을 준용하여,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전략방향을 반영하여 부문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체계로 개선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의 교체나 환경변화, 성과평가 등에 따라 필요시 수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진흥기본계획뿐만이 아니라 각 부문별 기본계획이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전략 방향을 반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반영하는 체계를 법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 중기계획의 명칭 및 방향 체계화

제3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부문별 계획의 명칭은 “기본계획”이 가장 많지만, “종합계획”의 명칭도 6개나 되며, “중장기(기본)계획”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5년 이내는 중기계획, 10년은 장기계획이라고 하는데, 박물관·미술관의 경우처럼 5년 계획이면서도 중장기계획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어 문화산업의 경우 5년을 기간으로 한 중기기본계획, 10년을 기간으로 한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32] 따라서 5년 이내의 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 아니므로 명칭을 수정하여야 한다.

기본계획과 종합계획 간의 명칭에서 기본계획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전략계획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아젠더, 전략, 핵심적인 과제 중심으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본계획이라는 명칭은 이러한 전략계획의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계획은 자칫 가능한 과제를 대부분 모두 제시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처럼, 기본계획의 경우에도 주요 과제를 모두 기본계획에 반영하려는 관련 부서의 유인 동기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종합계획은 이러한 유인동기를 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향후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기존의 기본계획 보다 더 아젠더, 전략과제, 가치와 방향, 핵심과제 등을 중심으로 실행계획(시행계획)과 차별화된 전략계획으로 수립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32) 문화산업진흥법 제4조(문화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동법시행령 제4조(중·장기기본계획의 수립)

라. 문화진흥기본계획 성과지표의 평가와 환류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성과지표는 각 정책목표별로 총괄적인 성과지표를 균형 있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추세와 목표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정하고 환류할 필요가 있다. 세부사업 단위로는 불가능하지만, 정책과제별로 양적인 성과목표와 질적인 성과목표를 균형 있게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과제별로 방향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나 규모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양적인 성과목표는 투입지표가 아닌 결과지표 중심으로 구성하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반이 조성되어야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실질적인 추진과 성과가 가능할 것이다.

마. 프로세스의 혁신

계속 강조하지만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새로운 방향의 설정과 제시 등은 기존에도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새로운 방향 설정에도 불구하고, 프로세스 및 접근방식은 기존의 방식과 관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연구과정에서 일부 자문위원은 문화진흥기본계획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과제나 사업 보다는 프로세스 혁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각 정책과제 추진시 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방향을 준수하는 지에 대한 점검과 반영, 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행실적 평가 등에서도 사업실적 평가만이 아니라 프로세스 혁신, 방향과 가치의 실현 등도 포함하여야 한다. 향후 문화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되면 이러한 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점검과 평가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가. 문화기본계획 대상 영역 명확화

문화진흥기본계획은 문화정책의 체계성과 가치지향을 명확히 하여 문화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진흥기본계획은 문화기본법의 핵심적인 배경과 가치와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기본법에 규정된 문화진흥기본계획이 포함하여야 할 대상은 다른 기본계획과는 달리 정책영역과 정책내용·방향이 중첩되어 제시되어 있다. 즉, 제8조(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항 제1호에서 제11호는 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제4호는 문화정책 영역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어 다른 호들의 규정과 관점이 달라 어려움이 있다. 제3호, 제5호에서 9호는 제4호의 정책영역의 각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다른 법률의 기본계획 수립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의 체계를 유사하게 따르다 보니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다른 법률과 기본계획과는 달리 문화기본법과 문화진흥기본계획은 범주가 넓다 보니 정책영역을 추가하였기 때문이다.

제5호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제6호 문화권의 신장, 제7호 문화여가시설이 조성과 활용, 제8호 문화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 등은 각 정책영역에서 모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제4호의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시책에 관한 사항 등으로 통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성과평가 및 추진체계

문화기본법에는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작성하고 활용하다 보니 큰 효과가 없었다. 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실적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체계적인 내용이나 법적인 근거, 활용방안이 없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구조였

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회에 이행실적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으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효율적인 성과평가 및 추진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관련 기관 등의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개정안은 정부의 업무평가와의 중복성을 이유로 삭제되어 한계가 있다.

문화진흥기본계획의 문제점은 위상이 불명확하다 보니 기존 부문별 계획의 종합판이 되어서 성과평가와 환류에 큰 관심이 없고, 이에 대한 별도의 기능이 유명무실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행령에는 각 기관의 이행실적 평가는 불가능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자체에서 기본계획의 목표와 성과지표, 이행실적으로 매년 평가하고, 환류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화진흥기본계획과 부문별 기본계획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각 부문별 기본계획이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전략 방향을 반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민관이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개정안을 준비 중이므로 이 위원회의 기능에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성과점검 및 방향 제시가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문화권 확립을 위한 문화기본법 개정

기본권에 대한 유형과 이론은 학자마다 다양하다. 그러나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중에서 문화권과 관련된 유형은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등이다. 이미 헌법전문과 총강에서 문화권과 관련한 평등권과 자유권이 규정되어 있다. 즉, 헌법 전문에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권은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나

행복추구권(제10조)에 포함되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선진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본권은 국가가 침해할 수 없는 자연법적 권리를 전제로 하였으므로 미국의 제헌헌법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규정이 포괄적이지 않다. 그러나 기본권 보장의 역사가 짧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책추진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여건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문화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에 대한 관심이 낮은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문화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보듯이 헌법에 규정된 권리도 자의적으로 남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건에서 문화기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의 핵심정책인 노동시간 단축, 사회적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인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에서 문화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자유권과 평등권은 국가의 적극적인 사회권 보장의무를 통하여 실현이 가능하다. 특히 문화의 자유와 평등은 개인에게 맡겨두고 간섭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인 진흥이 필요하다. 아직도 문화격차가 문제가 되고 있고, 미투운동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구조적인 문화의 자유가 제약이 있는 여건에서 사회적 문화권의 보장은 더욱 필수 불가결하다.

문화권의 확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헌법 개정을 통하여 문화권을 기본권으로 확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헌법개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여건에서 문화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서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에 규정된 포괄적인 기본권을 토대로 법률에서 문화권을 먼저 확립할 필요가 있다. 문화권을 세분화하여 접근할 때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평등권은 헌법 및 문화기본법상의 정의가 잘 이루어져 있고 다른 권리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문화향유권에서는 자유만이 아니라 자율과 주체적 참여 등 자기결정권에 대한 문화민주주의의 관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극적인 향유와 간섭/배제로부터의 자유 이외에 적극적인 향유의 권리와 역량 등 문화적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환경권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문화환경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문화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문화환경권의 확립은 문화권 확립과 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영향평가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다. 즉, 문화유산과 공동체문화의 보존·계승·발전과 연계하여 개인주의적·정서적 관점의 문화권, 문화예술 중심의 향유와 참여의 권리에서 광의의 문화, 지역사회와 공동체 기반의 문화기반 보존·가치 실현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문화환경권이 신설되면 문화기본법에 의한 문화영향평가가 권고적 규정에서 의무적 규정으로 강화되어 문화가치 확산을 위한 실질적 수단을 가지게 된다.

넷째, 예술가의 권리도 국민의 권리에 포함되어 있지만, 예술가의 권리를 별도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관련 법률에서 정작 예술가의 권리 및 문화인력의 권리가 복지 측면 및 공정 상생의 측면을 제외하고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헌법에 규정된 예술가의 권리는 주로 지적 재산권 측면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문화기본법에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예술가의 권리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예술가의 권리와시민의 권리 균형을 위한 예술가의 권리 및 원칙 강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특히 문화비전 2030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치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

다섯째, 문화권의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문화기본법에는 문화권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제6장

결론 및 제안

결론 및 제안

문화 관련 37개 법률 중 27개 법률에 기본계획·발전계획·종합계획 등 다양한 명칭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기본계획은 19개가 수립되어 있다. 문화정책 영역과 부문별 기본계획의 다양성은 문화정책의 세부 영역별 특성과 대상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만, 세분화된 정책 추진은 자칫 칸막이 현상으로 인하여 문화정책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정책 영역, 문화관련 법률, 기본계획, 문화기관·단체와 전달체계는 문화정책의 정합성에 대한 지속적인 한계와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문화기본법과 문화진흥기본계획은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문화정책의 가치와 방향성을 정립하여 문화정책의 체계성과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되고 수립되었다.

그러나 문화기본법과 문화진흥기본계획은 현실적인 문제해결만을 대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다. 문화가 중심이 되는 삶과 사회,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권이 확립되어야 하고, 문화가 우리의 삶에서처럼 국가정책에서도 모든 영역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문화정책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문별 계획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정책 영역 내에 국한하는 경우가 많지만, 문화진흥기본계획은 문화기본법 제7조의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의 범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국가문화발전의 목표와 방향, 문화권 신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화기본법 제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된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은 문화영향평가의 도입 등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책, 생활문화 정책과 가치의 확산,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정책과 가치 확산, 문화누

리카드로 대표되는 문화복지정책의 확산 및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 문화가 있는 삶 등 참여·체감형 문화정책 추진, 인문학 진흥과 가치 확산,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과 문화도시 조성, 한류의 확산, 연구개발 및 문화인력 양성의 강화, 문화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도 기반 도입과 실행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성과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문화향유율 지표가 71.3%(2014)에서 81.5%(2018)로 4년 만에 10.1%가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사태나 미투 운동이 나타내듯이 문화계의 구조적인 문제는 그동안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다. 문화기본법과 문화진흥기본계획이 최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문화권의 신장과 자율성이 미흡한 수준인 것이다. 또한 사회적 갈등과 혐오의 확산은 문화가 가진 특성인 다양성, 공동체성의 가치가 여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의 콘텐츠 자체는 창의적이지만, 문화를 생산·유통·소비하는 방식은 오히려 다른 영역 보다 창의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가치는 초지능·초연결성에 있는데, 지나치게 세분화된 문화정책의 영역과 기본계획은 이러한 가치와 혁신적 창의성에 저해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복융합의 정책과 문화시장의 혁신은 일부에서만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혁신과 융합은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PEST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향후 5년간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개인주의화 등으로 인한 문화시장의 변화, 자치분권과 지역 인구의 감소에 따른 기회와 위기요인의 중복, 저성장과 이로 인한 양극화로 문화복지의 수요 증가, 일과 삶의 균형과 문화가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새로운 문화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신한류의 확산에 따른 한국문화 선호와 확산의 기회 활용, 문화시장구조의 혁신과 융합에 따른 혁신적인 문화생태계의 조성, 공유경제와 시공간의 장벽이 없는 초몰입과 문화경험, 공유문화경제, 소비자 중심 문화유통체계 등 새로운 변화가 몰려 올 것이다.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방향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과 미래환경 분

석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새로운 문화정책 목표와 방향, 문화정책 영역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제시하기 위한 진흥전략, 문화계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현 방안, 미래지향적인 아젠더 제시를 통한 문화정책의 효과성 제고,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비전으로 문화비전 2030의 비전인 "사람이 있는 문화"로 설정하고, 핵심가치는 문화기본법과 문화비전 2030의 가치인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으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정책목표는 ① 모두가 행복한 삶이 있는 문화, ②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실현, ③ 포용적·참여적 문화복지 확립, ④ 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가치 확산, ⑤ 문화의 미래가치 제고, ⑥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문화진흥기반 구축 등으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하여 21개의 정책과제, 55개의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문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시민, 예술가, 문화인력 모두가 문화적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문화활동을 아무런 제약 없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사회구성원이 가진 차이를 단순히 배려하거나 존중 받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그 다양성을 발휘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와 건강한 문화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과학기술·경제의 혁신이 문화시장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활판인쇄와 출판문화산업이 근대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산업이 창의성과 삶의 방식의 변화를 가져 왔듯이 문화적 혁신과 창의성이 사회의 혁신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은 이러한 목표와 방향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것이 "사람이 있는 문화"의 비전,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의 가치인 것이다.

이 연구는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광범위한 문헌조사, 정부의 상위계획과 관련 계획 분석, 문화 관련 중기계획의 분석, 외국의 전략계획 분석, 미래환경 변화에 대한 PEST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FGI, 단계별 연구진 워크샵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의 등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다른 부문별 기본계획 수립 연구와는 달리 제한된 여건과 범위에서 추진되어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다. 2018년에 수립된 「문화비전 2030」은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용이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문화비전 2030」은 장기적인 아젠더 중심이기 때문에 연계성과 함께 법정 기본계획으로서 문화진흥기본계획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논란과 어려움도 있었다. 또한 수많은 부문별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위 기본계획인 문화진흥기본계획의 포지셔닝과 정합성·체계성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진흥기본계획이 계획으로서 그치지 않고, 실천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혁신과 법·제도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그동안 문화정책이 정책과 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혁신이 부족한 것은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문화정책의 추진구조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업 중심에서 전략 중심으로 문화정책의 초점을 전환하고, 프로세스의 근본적 혁신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업 성과평가 이외에 사업의 구조와 방향에 대한 성과평가와 환류체계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가 차원의 문화정책 방향, 문화정책의 가치와 철학의 일관성, 시민과 전문가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체계성 제고를 위한 방안, 문화거버넌스 등을 제안하고, 문화권 신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체계성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방향 중에 다른 기본계획과 차이가 있는 것은 지역문화를 접근하는 방식이다. 「창의한국」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정책에서 지역문화는 다른 문화정책영역과 같은 정책영역 중의 하나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지역문화의 총화가 국가사회의 문화이므로 지역문화는 문화정책의 한 영역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문화 중심의 문화정책을 지향하고, 지역문화 중심의 문화정책 기반 조성을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방향, 패러다임,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전략체계와 정책과제 등은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과 그대로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

을 수 있다. 또한 연구과제명에서 나타나듯이 방향 연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세부적인 과제와 추진계획 등은 연구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가장 아쉬운 것은 이 연구에서 강조한 방향과는 달리 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된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는 한계상 연구범위에서 제외된 것이다. 문화콘텐츠 산업이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되면 제2차 계획의 전략체계는 기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정책 개발과 함께 현재 당면한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모두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 방향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방향은 어쩌면 전략 중심의 기본계획의 정체성을 희석시킬 수 있으나, 정부의 법정계획으로서 가지는 한계이자 특성이기 때문이다.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더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정책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추진계획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이러한 내용은 이 연구와 연계한 후속과제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할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은 핵심적인 내용으로 요약되어 발표된다. 이 연구의 내용과 향후 발표될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이 다를 수 있지만,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기본적인 배경, 분석, 전략과 목표, 방향과 과제, 추진전략 등을 세부적으로 이해하는데 이 연구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윤주(2014). *문화예술을 통한 정치적, 도덕적 실천사례-영국의 자발적 예술네트워크*.「생활예술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국회의원 김윤덕·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계부처 합동(2018). 재정분권 추진방안.

기획재정부(2018).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201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김 면(2017). 문화다양성 정책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용근(2012). 다양성 시대, 기업의 대응전략. 포스코경영연구원

김혜인(2018). 국제문화교육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비전 2030 - 사람이 있는 문화

_____(2019). 제3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2019~2023).

_____(2019).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9~2023)

_____(2019).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문화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박물관·미술관

_____(2018). 새예술정책(2018~2022).

_____(2018).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2018~2022).

_____(2018).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2018~2022).

_____(2018).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미술로 행복한 삶.

_____(2018).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_____(2018). 공공디자인진흥 종합계획(2018~2022)

_____(20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제2차 수정계획(2018~2023)

_____(2018). 2018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_____(2017). 제1차 문학진흥 기본계획(2018~2022).

_____(2017). 인문정신문화진흥 기본계획(2017~2021)

_____(2017).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18~2021)
_____(2017).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18~2022)
_____(2017). 콘텐츠산업 중장기 정책비전 - 미래 콘텐츠산업 준비보고서
_____(2017).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2017~2021)
_____(2017). 인쇄문화산업진흥 5개년계획(2017~2021)
_____(2017). 공예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2018~2022)
_____(2016). 성과관리 전략계획(2016~2020)
_____(2015). 문화진흥 기본계획(2015~2019).
_____(2015). 제1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15~2019)
_____(2014). 제2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2014~2016)
_____(2014).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2015~2019)
_____(2014).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_____(2019). 2019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_____(2014).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 설명자료.
_____(2013). 성과관리 전력계획(2013~2017)
_____. 2016~2019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시행계획
_____(2004). 창의한국
문화체육관광부·국회위원 김윤덕·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박영정(2013).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천문화재단·문화연대 생활예술위원회(2018). 2018 다시, 생활문화를 생각하다
박지혜 외(2015). 1인 가구의 문화소비 지출행태 분석. 산업연구원
방주영(2013). 생활예술인의 사회성 여가활동이 사회적 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산업연구원(2018). 여가행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여가서비스의 등장. 「KIET 산업경제」 2018년 9월호
서울문화재단(2017). 「생활예술의 비전과 쟁점 포럼」 자료집. 서울시

성해영(2016). 인문정신문화 중장기 정책 및 사업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신원무(2009). 인력의 다양성이 글로벌 경쟁력 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아난드, 바라트(김인수 역)(2017). 콘텐츠의 미래. 리더스북
안성아(2014). 공공·민간부문 예술지원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양건열(2014).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양혜원(2013).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영화진흥위원회(2016). 한국영화진흥 종합계획(2016~2018)
오준호 외(2019). 혁신의 목격자들. 어크로스
장 훈(2018). 제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19~2023)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_____(2016).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정광렬(2018a).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9~2023)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_____(2018b). 문화 분야 법제 정비를 위한 기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_____(2017). 지역문화사업 지원체계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정종은(2017). 예술정책, 미래비전과 전략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정홍익 외(2008). 문화행정론. 대영문화사
㈜선도소프트(2018). 통합문화이용권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최재붕(2019). 포노 사피엔스. 쌤앤파커스
통계청(2018). 가계동향조사
통계청(2019). 장래가구추계
하라리, 유발(전병근 옮김)(2018).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김영사
하라리, 유발 외(정현옥 역)(2019). 초예측. 웅진지식하우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19). '18 한류백서
_____(2019). 글로벌 한류 트렌드 2019
한국개발연구원(2019). 고령화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 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방안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1).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7). 2017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설명자료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2015). 문화재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연구. 문화재청
한국출판학회(2016).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2017~2021) 수립연구

Arts Council England(2018). Developing a New Strategy for Arts Council England 2020~2030(Draft).
Fischer, G. (2004). *Social Creativity: Turning Barriers into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ve Design.* In F. deCindio, & D. Schuler (Eds.), Proceedings of the Participatory Design Conference (PDC'04)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July, 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CPSR), Palo Alto, CA, pp. 152-161.
Fischer, G., Scharff, E., & Ye, Y. (2004). *Fostering Social Creativity by Increasing Social Capital.* In M. Huysman & V. Wulf (Eds.), Social Capital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T Press, Cambridge, MA, pp. 355-399.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2018). Strategic Plan FY 2018~2022.
Ministère de la culture(2017). la statégie de la reherche du ministère de la culture 2017-2020
UN Population Division, FT;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8), 밀레니얼 모멘트(millennial moment)
文化廳(2018). 文化藝術 推進 基本計劃

경향신문(2017.11.5.). 다양성 공존하는 사회일수록 부·창의성 증가
국무조정실(2019.4.15.). "생활SOC 3개년계획 발표" 보도자료

뉴시스(2018.9.28.). 1인 가구 변화 추이
대한민국국회(2019.7.18.). 국회회의록 - 20대 369회 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매일경제(2017.10.23.). 제프 멀건, “거대 플랫폼 독점하는 콘텐츠산업 이익 나눠야”
매일경제(2018.7.9.). 5G, 2030년 사회경제적 가치 최소 48조(KT경제경영연구소)
문화체육관광부(2018.1.29.). 2018년도 업무계획 :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9). 문화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 검토보고
블로터(2018.7.13.). 페이스북 다양성, ‘조금’ 나아졌다
비즈니스 포스트(2014.10.14.). 현대차 미국법인이 인종다양성 확대하는 이유
연합뉴스(2019. 6. 4). 1인당 국민총소득 3만달러 초과(한국은행)
조선일보(2019.11.5.). 소멸우려 지자체 100곳 육박
한국경제(2017. 10.13). 김병욱 의원 국정감사 자료
https://www.gouvernement.fr/le-ministere-de-la-culture
https://www.gouvernement.fr/le-programme-d-investissements-d-avenir 2
https://stats.oecd.org(OECD Statistics; World Bank Open Data)

ABSTRACT

A Study on Establishment of the 2nd Culture Development Strategic Plan

1. Goal, scope and method

The Culture Development Master Plan is a statutory national plan established every 5 years based on the Fundamental Act on Culture. As the first Strategic Plan(2019～2019) expires in 2019, the secondary Culture Development Strategic Plan(2020~2024) must be establish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basic direction and to provide the reference for establishing the 2nd Strategic Plan. The Fundamental Act on Culture specifies the scope of the Culture Development Strategic Plan as to include the entire cultural fields except tourism and sports. The scope of this study was limited to the cultural fields except cultural contents industries and cultural assets.

Although not a statutory national plan, because Cultural Vision 2030 was established to encompass the entir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MCST), the 2nd Culture Development Strategic Plan was established to propose the tasks and direction specialized in the field of culture or not specifically addressed in Cultural Vision 2030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its long-term vision, while reflecting the values and strategic tasks of Cultural Vision 2030. It also aims to enhance efficiency and systemicity of the cultural policy by improving the linkage with the master plan by sectors of culture.

For this study, the performance of the 1st Strategic Plan was evaluated and the environmental change during the term of the 2nd Strategic Plan was forecasted through the PEST analysis. Inputs from the sectoral workshop of researchers, experts' advice and experts' FGI were incorporated into the study. In addition, examples and trends of foreign mid-term cultural plans were analyzed.

2. Analysis for establishment of the 2nd master plan

27 out of the 37 cultural-related laws provide that the strategic plan should be established. 13 strategic plans have been established or are being established in the cultural field except the cultural content field. In Japan, they have established the Culture and Art Development Strategic Plan(2018~2022) with the vision of "shaping the future based on various values of culture and art"according to the Fundamental Act on Culture and Art. Although they don't have any statutory plan in US and UK, the NEA Strategic Plan (2014~2018) of US and the ACE Strategic Plan (2020~2030) of UK were analyzed and referenced.

The 1st Culture Development Strategic Plan had 5 policy goals, 18 objectives and 58 projects, with the vision of "Powerful Korea with Rich Culture". Most tasks were carried out as planned, but overall performance was insufficient. Most of the key performance indicators are not expected to be achieved since they are too high, failing to reflect the environmental changes. In terms of policy goals, "culture in life" and "promotion of local culture" were well performed in general, but "culture as a gateway between two Koreas" and "foundation building for cultural promotion" were considered insufficient.

3. Proposal of direction and tasks of the 2nd Strategic Plan

The vision of the 2nd Culture Development Strategic Plan was proposed, for consistency with Cultural Vision 2030, to be "culture in people", which also was the vision of Cultural Vision 2030. Similarly, it was proposed to set the core values of the 2nd Strategic Plan as "autonomy, diversity and creativity" which also were also values of the Fundamental Act on Culture and the Cultural Vision 2030. The policy goals proposed were: ① a culture where everyone is happy, ② realizing autonomy and diversity of culture, ③ establishing inclusive and participatory cultural welfare, ④ disseminating values of communication and community culture, ⑤ enhancing future values of culture, and ⑥ building sustainable and innovative foundation for cultural promotion. To realize these policy goals, 21 policy objectives and 55 projects were proposed.

First, "a culture where everyone is happy" includes the following tasks: 52-hour work; a balance between work and leisure; a response to individualization; an accumulation of cultural competency in the aspect of consumer; and a promotion of cultural policy. Second, "realizing autonomy and diversity of culture" includes the following tasks: decentralization; creation of cultural ecosystem; exclusion of interference of the government in the cultural activities and establishment of autonomy and the culture right; gender equality culture; and creation of fair and win-win culture market. Third, "establishing inclusive and participatory cultural welfare" includes the following tasks in connection with the government's vision of inclusive country: participatory cultural welfare; response to aging society; and guarantee of status and rights of cultural personnel. Fourth, "disseminating values of communication

and community culture" includes the following tasks: emphasis on sharing and community, which are the essential values of culture; and shifting the direction of cultural policy from the personal and emotional perspective to the social and community perspective. Fifth, "enhancing future values of culture" includes the following tasks: convergence between cultural areas in response to future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ustainable innovation in response to the changes in cultura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ystems; and fostering creative and experimental professionals and citizens. Sixth, "building sustainable and innovative foundation for cultural promotion" includes the following tasks: building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in response to the new cultural policy paradigms, such as decentralization, expansion of cultural rights and governance; and regional cultural policy in response to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carry forward the 2nd Culture Development Strategic Plan,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paradigms of the cultural policy as follows: ① in terms of support of cultural activities, from perspective of benefits to cultural rights, ② in terms of the method of cultural support, from partition and separation to support of virtuous cycle and convergence of the cultural ecosystem, ③ in terms of the targets of cultural policy, from selective approach to universal approach, ④ in terms of cultural life, from separation between work and leisure to culture in life (balance between work and leisure), ⑤ in terms of values of culture, from instrumentalism to people's happiness and culture itself, ⑥ in terms of approach to culture and art, from personalized subjective emotion to community and literacy, ⑦ in terms of policy performances from cultural enjoyment to cultural participation and cultural life, and ⑧ in terms of cultural administration,

from top-down delivery system to governance.

4. Direction of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2nd Strategic Plan

The Fundamental Act on Culture and Culture Development Strategic Plan are intended to improve systemicity and effectiveness of the diverse and partitioned sectoral cultural policies. To this end, the Culture Development Strategic Plan should not be a mere comprehensive plan merely consisting of sectoral plans, but should be an effective strategic plan in which the value and direction of the cultural policy are clearly defined. In reality, however, because there is a lack of linkage between the Strategic Plan and the sectoral strategic plans, it is required strengthen linkage institutionally.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o enhance linkage between the strategic values and the planned period.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ic Plan, instead of simply suggesting the tasks, it was emphasized that the cultural policy must be promoted by focusing on strategies (e.g., shifting paradigm of the cultural policy and process innovation) rather than projects. This study also proposed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performance indicator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eriodic and practical performance assessment and feedback.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MCST) will establish and publish the 2nd Culture Development Strategic Plan after additional steps for announcement, revision and establishment of detailed tasks.

부록 1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FGI 질문지

<부록 1>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FGI 질문지

문화진흥기본계획은 문화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문화 분야 법정기본계획이며, 각 영역별 기본계획의 상위계획입니다. 다만,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영역은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및 전통문화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1차 계획기간이 만료되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2차 계획(2020~2024) 수립방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2차 계획은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론화를 거쳐 12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FGI는 정답이나 통계적인 목적이 아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심층적으로 듣고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시적인 방향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사업이나 추진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기간 중에 문화정책에 영향을 줄 중요한 정치(행정)·사회·경제(과학기술 포함) 등의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기간 중에 문화 분야의 주요한 변화, 트렌드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방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의 주요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개요는 붙임 참조(본 보고서에서는 생략)

   3-1. 성과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나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2. 성과가 가장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나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3. 기존의 문화정책 또는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 중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지속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정책이나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의 전략체계 및 사업은 붙임자료 참조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은 문화콘텐츠 분야를 제외한 문화예술 분야에 국한)

4.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와 비교하여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은 전략이나 정책에서 어떠한 차별성이나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문화정책이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가장 중점을 두거나 새로운 전략방향을 설정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 포용국가, 사회적 갈등, 공동체, 고령화, 1인가구 및 개인주의 등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장기 비전인 "문화비전 2030"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화비전 2030" 그 가치에도 불구하고 법정계획이 아닌 한계가 있습니다.

6. 문화비전 2030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은 문화비전 2030의 틀 내에서 5년간의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비전과 법정기본계획의 차이 등으로 문화비전 2030의 전략적 가치와 정책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정책의 실행을 위한 전략체계로 재구성하여야 한다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비전 2030의 전략체계 및 주요과제는 붙임 참조(본 보고서에서는 생략)

7. 문화비전 2030의 비전은 "사람이 있는 문화"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비전을 문화비전 2030의 비전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의견이나 부제 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문화비전 2030이 이전의 중장기계획과 가장 큰 차별성 중의 하나는 문화다양성 및 성 평등의 가치, 문화인력의 권리 강화와 정책을 중점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이나 정책/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 정부는 지방분권/자치분권과 지역문화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축소되어야 하는 반면에 지역문화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격차가 있는 여건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관광부의 역할은 어떻게 설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 문화진흥기본계획은 문화 분야 상위 기본계획이지만, 다양한 영역별 기본계획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기간도 각각 차이가 있고, 문체부 각 정책영역에서는 부문별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화진흥기본계획이 상위 기본계획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문화정책의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 분야 영역별 기본계획은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여가활성화기본계획, 문학진흥기본계획, 국제문화교류진흥계획,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등 9개가 있습니다.

11. 법정 기본계획으로서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성공적인 추진과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 기타 문화진흥기본계획과 관련한 정책방향, 사업제안, 고려사항 등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부록 2

문화 분야 영역별 기본계획 개요

<부록 2>

문화 분야 영역별 기본계획 개요

1. 제3차 국어발전 기본계획(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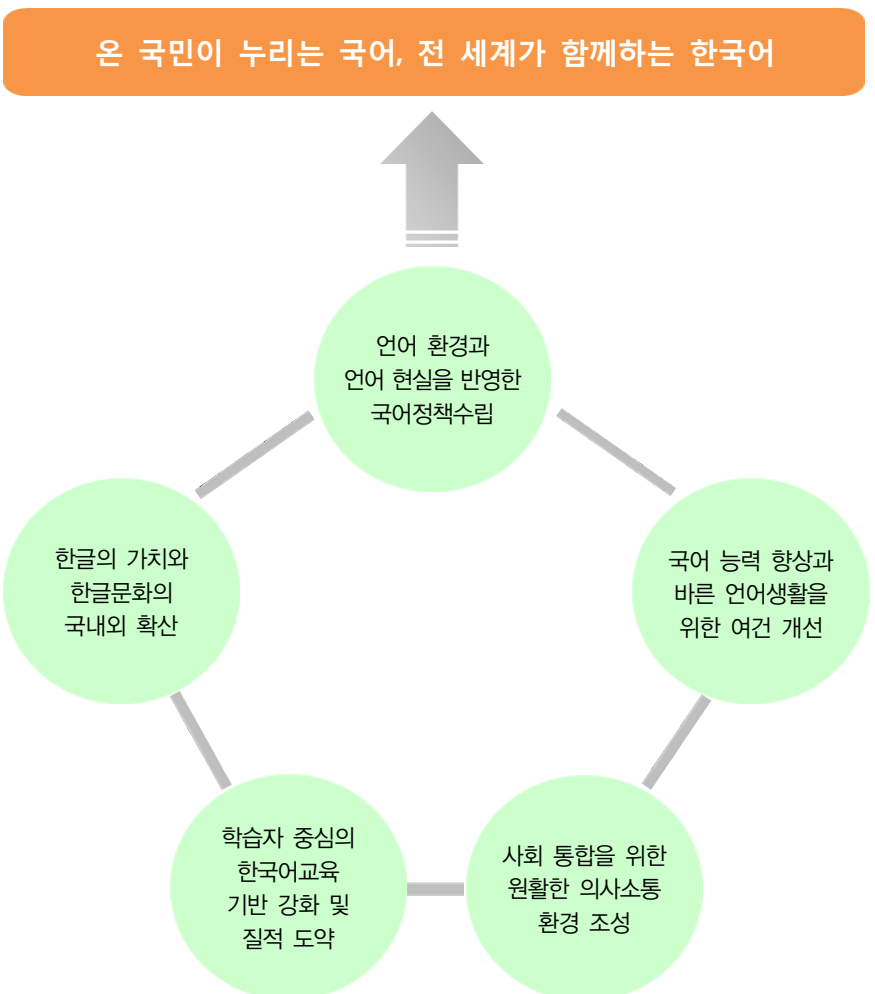

추진 과제	실행 과제
01 수요자 중심의 언어정책 기반 조성	• 어문규범 현실화 • 국어사전의 개방적 운영 및 활성화 • 언어 정보 자원 구축 및 활용 • 국어 기본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
02 바르고 편리한 언어 환경 지원	• 공공언어 개선 활성화 • 바른 언어문화 기반 조성 •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지원 • 지역 언어문화 기반 국어문화원 활성화
03 국민 언어 통합을 위한 사회·문화적 환경 구축	• 남북 언어 통합 기반 구축 • 특수 언어 환경 개선 및 보급 확대 • 언어 취약 계층 지원 • 사회·지역 방언 정보의 구축과 활용
04 한국어 확산과 교육 기반 강화	• 국외 한국어 보급 대표기관으로 세종학당 육성 • 한국어교육 체계화 및 기반 강화 •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 운영 및 교원 연계망 구축 • 한국어교원 연수 과정 운영
05 한글문화 진흥 및 향유 확대	• 다양한 한글문화 자원의 수집 및 전시 • 한글문화 연구·교육 및 산업화 기반 구축 • 한글날 기념 및 한글문화 관련 포상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제3차 국어발전 기본계획(2017~2021) 목표 및 추진전략

2.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9~2023)

비전	사람과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독서
목표	◈ 독서율 '17년 59.9% → '23년 67.4% ◈ 독서동아리 참여율 3% → '23년 30%

전략 및 중점 과제	**전략 1. 사회적 독서 활성화**
	(중점과제 1) 함께 하는 독서공동체 확산 지원
	(중점과제 2) 일상에서 책 읽는 환경 조성
	(중점과제 3) 나와 우리가 만드는 독서문화 정착
	전략 2. 독서의 가치 공유 확산
	(중점과제 4) 사람 중심 독서로 공감능력 제고
	(중점과제 5) 50+(신중년) 참여 독서 실현
	(중점과제 6) 대중매체 연계 독서문화 확산
	(중점과제 7) 독서나눔문화 활성화
	전략 3. 포용적 독서복지 실현
	(중점과제 8) 생애주기별 맞춤독서 강화
	(중점과제 9) 학교독서 생활화
	(중점과제 10) 포용적 독서복지 체계 구축
	전략 4. 미래 독서생태계 조성
	(중점과제 11) 독서정책기반 조성
	(중점과제 12) 디지털 독서 확산 기반 마련
	(중점과제 13) 독서가치 및 독서요인 분석 연구 강화

전략 및 과제		
전략1. 사회적 독서 활성화		
중점과제① 함께 하는 독서공동체 확산 지원		
	①-1. 독서동아리·독서공동체 지원	
	①-2. 지역사회의 책 읽는 기반 구축	
	①-3.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행사 지원	
중점과제② 일상에서 책 읽는 환경조성		
		②-1. 가정에서 책 읽고 토론하는 문화 확산
		②-2. 일상에서 누리는 독서문화 공간 조성
		②-3. 책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조성
		②-4. 전자책 읽는 지하철 및 이동도서관
중점과제 ③ 나와 우리가 만드는 독서문화 정착		
		③-1. 읽고 쓰고 토론하는 독서문화 활성화
		③-2. 참여형 독서프로그램 지원
		③-3. 우수도서 지원
		③-4. 독서친화지표 개발 등 독서역량 제고
	③-1. 읽고 쓰고 토론하는 독서문화 활성화	
	③-2. 참여형 독서프로그램 지원	
	③-3. 우수도서 지원	
	③-4. 독서친화지표 개발 등 독서역량 제고	
전략과제2. 독서의 가치 공유 확산		
중점과제④ 사람중심 독서로 공감능력 제고		
		④-1. 문화기반시설 활용 인문독서학교 운영 지원
		④-2. 사람책 활성화
중점과제⑤ 50+(신중년) 참여독서 실현		
		⑤-1. 50+(신중년) 등 참여독서 체계 조성
		⑤-2.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
중점과제⑥ 대중매체 연계 독서문화 확산		
		⑥-1. 신문·방송·잡지 협력 독서문화 확산
		⑥-2. 책문화 크리에이터 지원

전략 및 과제	
중점과제⑦ 독서 나눔문화 활성화	
	⑦-1. 독서 재능기부 네트워크 구축
	⑦-2. 독서 나눔문화 확산
전략3. 포용적 독서복지 실현	
중점과제⑧ 생애주기별 맞춤독서 강화	
	⑧-1.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지원
	⑧-2. 맞춤형 북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중점과제⑨ 학교 독서 생활화	
	⑨-1. 학교독서환경 조성
	⑨-2. 학교 밖 청소년 독서프로그램 지원
중점과제⑩ 포용적 독서복지체계 구축	
	⑩-1.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 독서복지 강화
	⑩-2. 장애인 대체자료 확대
	⑩-3. 책 읽는 병영문화 만들기
	⑩-4. 교정시설 독서 프로그램 지원
전략4. 미래 독서생태계 조성	
중점과제⑪ 독서 정책기반 조성	
	⑪-1. 독서정책 협력체계 구축
	⑪-2. 독서문화진흥법 개정
	⑪-3. 민간 독서전담기구 설립 운영
중점과제⑫ 디지털 독서 확산 기반 구축	
	⑫-1. AI 기반 참여형 독서플랫폼 개발운영
	⑫-2. 디지털북 콘텐츠 확산 지원
중점과제⑬ 독서가치 및 독자개발 연구 강화	
	⑬-1. 독서가치 및 효과분석 연구 강화
	⑬-2. 독서요인 및 독서실태조사

3. 제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19~2023)

비전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		
핵심 가치	사람에 대한 포용성	공간의 혁신성	정보의 민주성

4대 분야 / 13대 핵심 과제

1 개인의 가능성 발견

① 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 확대
② 이용자 정보접근의 편의성 확대
③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강화

2 공동체 역량 축적

④ 분권형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⑤ 공동체 기억의 보존·공유·확산
⑥ 교류협력의 플랫폼 기능 강화

3 사회적 포용 실천

⑦ 적극적 정보복지 실현
⑧ 공간의 개방성 확대
⑨ 경계를 넘는 서비스의 연계

4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⑩ 도서관 운영체계의 질적 제고
⑪ 도서관 협력체계의 강화
⑫ 도서관 자원의 공유기반 구축
⑬ 도서관 인프라 확대

제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19~2023) 전략체계

제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19~2023) 추진과제

추 진 과 제
분야 1. 개인의 가능성 발견
1-1. 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 확대
1-1-1. 인문·문화·예술·체험 등 문화서비스 확대
1-1-2. 소통·토론형 사회적 독서 프로그램 확대
1-2. 이용자 정보접근의 편의성 확대
1-2-1.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확대
1-2-2. 도서관 정보서비스 연계 확대
1-3.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강화
1-3-1. 도서관 이용자 조사·연구 강화
1-3-2. 이용자 맞춤형 큐레이션 정보서비스 강화
1-3-3. 온라인 개방형 학습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확산
1-3-4. 생애초기 독서운동 시행 확대
1-3-5. 자기주도, 교과연계 학습서비스 강화
1-3-6. 학술·연구지원 서비스 강화
1-3-7. 생활 밀착형 전문정보 서비스 강화
1-3-8. 국가도서관 정보서비스 강화
분야 2. 공동체 역량 축적
2-1. 분권형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2-1-1.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재정립
2-1-2. 지역 자료의 납본·보존 체계 구축
2-2. 공동체 기억의 보존·공유·확산
2-2-1. 공동체 자료의 아카이빙 및 활용 강화
2-3. 교류협력의 플랫폼 기능 강화
2-3-1. 공공도서관 지역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2-3-2. 학교도서관 교육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2-3-3. 대학도서관 지식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분야 3. 사회적 포용 실천

추 진 과 제
3-1. 적극적 정보복지 실현
3-1-1. 정보불평등 지수 개발 및 활용
3-1-2. 정보 및 매체이용 교육 강화
3-1-3.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3-1-4. 도서관 아웃리치의 지속적 확대
3-2. 공간의 개방성 확대
3-2-1. 모두의 접근이 가능한 포용적 개방공간 확대
3-2-2.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
3-3. 경계를 넘는 서비스의 연계
3-3-1. 사회서비스 연계 도서관서비스 개발 및 확대
3-3-2. 문화정보서비스의 확대
분야 4.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4-1. 도서관 운영체계의 질적 제고
4-1-1. 도서관 사서 인력의 지속적 확대
4-1-2. 사서의 재교육 및 조직역량 강화
4-1-3. 도서관 법·제도·평가의 현실적 개정 추진
4-2. 도서관 협력체계의 강화
4-2-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역할 제고
4-2-2. 도서관계 대내외 협력체계 강화
4-2-3. 도서관 국제교류의 강화
4-3. 도서관 자원의 공유기반 구축
4-3-1. 오픈액세스(open access) 체계 구축 및 확대
4-3-2. 디지털 자료의 확대 지속
4-4. 도서관 인프라 확대
4-4-1. 도서관 시설·장서 지속적 확충 및 리모델링 확대
4-4-2. 스마트도서관 모델 구축 및 시범사업

4. 제1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15~2019)

비 전	문화로 행복한 지역 창조
추 진 목 표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기반 구축 (문화 동호회 참여율 '14년: 4.2% → '19년: 7%)
	지역문화 균형발전 토대 마련 (문화기반시설 '14년: 2,515개소 → '19년: 3,375개소)
	문화를 통한 지역가치 창출 (문화도시 · 문화마을 '14년: 3개소 → '19년: 50개소)

사람중심 | 지역중심 | 과정중심

중 점 추 진 과 제	지역문화 역량강화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생활문화 진흥 ▣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지역문화 격차해소	▣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 문화접근성 향상 ▣ 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지역문화 발굴창조	▣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 지역문화 가치 발굴 ▣ 지역문화브랜드 세계화 추진

▣ **지역문화 추진체계 정비**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목표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세부추진과제

추 진 과 제	세부 추진과제
과제 1. 지역문화 역량 강화	
1-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1-1-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 지역문화 청년인력 발굴 지원 • 문화귀촌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지역문화 창조인력의 지역문화 활동 연계 강화 • 지역문화 지도자 대상 인식 전환교육 실시
1-1-2. 지역문화전문인력 현업종사 지원	• 지역문화 기획평가 인력 운용 • 지역문화 사업·기관과의 연계
1-1-3. 지역문화전문인력 종합인적자원 관리체계 마련	• '지역문화인적자원센터' 설립 • 지역문화인력 직종 개발 및 인증제(등록제) 도입
1-2. 생활문화 진흥	
1-2-1.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 생활문화 거점인 '생활문화센터 조성 • 문화기반시설의 생활문화시설 기능 강화 • 지역문화패스제 도입 및 지역문화 ZONE 설치 • 민간 여가시설의 공공 공간화 추진
1-2-2.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	• 주민 주도 자생적 생활문화 형성 및 활성화 지원 • 문화취약지역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지원 • 생활문화참여 확산을 위한 동호회 지원 확대 • 학생(초·중·고)층 생활문화 수요층 편입 추진
1-2-3.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 문화자원봉사 국민 인식 제고 • 온라인 문화자원봉사매칭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 문화시설의 문화자원봉사 운영 전문성 확대 • 은퇴자들의 재능나눔형 문화자원봉사 활동 지원
1-3.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1-3-1. 지역문화관련 법·제도의 정비	• 지역문화 진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법 정비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 지역의 품격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지역 중심 행정 강화
1-3-2. 지역문화 기초현황 조사 및 지표 개발	• 지역문화 현황 조사를 통한 지역문화 실태 파악 • 삶의 질과 문화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문화지표 개발 • 지역사업 추진 시 사전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정례화

추 진 과 제	세부 추진과제
1-3-3. 도시 및 지역의 통합적 문화계획 수립	•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문화 분야 포함 • 국가 등 각종 계획과 정책 수립 시 문화영향평가 실시
1-3-4.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역문화 사업 지원	• 지역문화컨설팅 내실화 • 지역의 공간·인력·콘텐츠가 만나는 '창조플랫폼' 구축
1-3-5. 지역문화주체 역량 강화	• 지역문화 진흥의 핵심 주체인 지역문화재단 역량 강화 • 지역문화기관 및 단체 운영의 파트너십 강화 • 지역문화기관 간 사업 중복 방지 및 상호 연계 강화 • 주민자치센터를 활용, 지역문화 네트워크 구축
과제 2. 지역문화 격차 해소	
2-1.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2-1-1. 수요맞춤형 문화기반시설 조성	• 지역별 문화지행도, 문화기상도 마련 •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기반 시설 등 조성
2-1-2. 지역문화기반 시설 균형적 확충	• 도시화 등에 따른 지역문화기반 시설의 균형적 확충 • 지역문화기반시설의 기능 중심 리모델링 지원
2-1-3. 지역문화시설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 지역문화기반시설 활성화 계획 수립 • 공연장, 공연예술단체를 연계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 지방 문예회관 활용, 민간 우수공연 초청 및 자체 기획공연 운영 지원 • 지역영상미디어 센터 활용,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 도서관·박물관의 운영 활성화
2-2. 지역의 문화접근성 향상	
2-2-1.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확대	•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 '작은 영화관' 등 맞춤형 지역문화서비스 제공 • 취약지역에 대해 문화프로그램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상시 프로그램 운영
2-2-2.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프로그램 확대	•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지원 • 지역 어르신 사회참여 프로그램 확대 • 지역 문화소외계층 공연 활성화 지원 • 맞춤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
2-2-3.「문화가 있는 날」지자체 참여 활성화 및 지역별 특성화 유도	•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및 정책과 연계한 지역 프로그램 강화

추 진 과 제	세부 추진과제
	• 지역의 민간시설과 연계한「문화ZONE」사업 활성화
2-3. 지역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2-3-1. 지역문화 지원방식 개선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역협력형 사업 운영 방안 개선 • 지방 이양사업의 평가 및 개선 • 예산지원 방식의 개선
2-3-2. 협력을 통한 재정확충 및 체계화	• 문화관련 제한적 호괄 지역정책 추진제도 마련 •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지원 • 지역과 중앙의 역할 분담 및 효율화
2-3-3. 지역문화재원 다각화	• 재원 확충 사례 발굴 확산 및 제도 개선 • 지역문화 기업메세나 활성화 • 문화기부 활성화
과제 3. 지역문화 발굴 창조	
3-1.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3-1-1. 지역문화루트 개발	• 근·현대 산업유산 문화루트 개발 • 지역과 역사를 연결하는 '역사문화길' 조성
3-1-2. 근현대 역사문화공간 및 유휴공간 창조적 재생	• 근·현대 역사문화공간 및 유휴 공간의 창조적 재생 • '원도심'의 문화적 재생을 통한 지역가치 향상
3-1-3. 지역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활용 확대	• 한식, 한옥 등을 활용한 한문화(K-CULTURE) 3.0 사업 추진 • 나루터·포구 등 수변문화 및 해양문화 활성화 • 문화유산의 공간 계획적 연계 • 매장문화재 등 문화유산의 적극적 활용
3-1-4. 마을별 전통놀이문화 복원 및 확산	• 세시풍속의 지역문화 자원화 • 전통축제 및 공동체 놀이 문화의 복원·전승 • 전통문화체험교육의 운영 활성화 • 전통지식자원의 발굴 및 활용
3-2. 지역가치 발굴	
3-2-1. 문화자원의 발굴·개발·활용	• 지역문화자원 정보 수집 및 공유시스템 구축 • 지역문화 다양성 지도 개발 • 지역문화 커뮤니티 맵칭 인프라 조성 • 향토문화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3-2-2. 지역 생활문화자원의 체계적 개발 및 활용	• 지역문화아카이브 공간 조성 • 기초단위 생활권별 지역문화사업 육성
3-2-3. 지역별 특화된 콘텐츠사업 기반 마련	• 지역별 문화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 및 육성

추 진 과 제	세부 추진과제
	• 지역문화 공공콘텐츠 활용 시범사업 추진 • 지역문화관련 문화예술기업 육성 및 지원 • 장소성에 기반을 둔 지역 문화산업 육성
3-3. 지역문화브랜드 정립	
3-2-1. 국토 및 지역문화브랜드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	• 국토 및 지역브랜드 계획 수립 추진 • 지자체간 문화브랜드 사업 연계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우수 지역문화 프로그램 교류 활성화
3-2-2. 지역문화 특화사업 추진	•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 지원 •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 확대
3-2-3. 문화도시의 지정 및 확대	• 문화도시의 지정 • 문화도시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추진체계 마련 •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문화 창조도시 조성 •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지원 연계 추진
3-2-4. 문화지구 운영제도 개선 및 활성화	• 문화지구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도 개선 • 문화지구 특성을 강화하는「문화지구 특성화 사업」 추진 • 문화지구 사업 지원 및 확대
3-2-6. 지역문화브랜드 대상 선정 및 확산	• 지역별 특성을 살린 지역스타일 창조 • 우수 지역문화브랜드 발굴 및 육성 • 지역문화브랜드 구축 및 확산 지원 • 지역문화브랜드 세계화 추진
추진체계	
지역문화관련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역문화 부처협의체 구성 • 지역문화사업 범부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문화행정 기능 강화 및 연계 협력
효율적 지역문화정책 수립·집행체계	• 지역문화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체계적 평가 • 상향식 전달체계 구축 • 지역문화의 정책주체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강화
지역문화진흥원 설립·운영	• 지역주민의 문화향유와 문화복지 서비스 총괄 지원 • 지역문화정책 추진 지원 및 평가·분석 기능 • ‘국가문화인적자원센터’ 기능 수행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지원 • 지역문화 정책 수립 및 추진 네트워크 역할

5.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2018~2022)

비 전	보다 나은 삶, 일과 여가의 혁신적 균형

목 표	여가참여 확대	여가접근성 제고	여가서비스 혁신
	≪ 지속적 여가 참여율 ≫ 47.2%('18) → **55%('22)** ≪ 소비지출액 ≫ 212조('18) → **300조('22)**	≪ 문화활동공간 이용률 ≫ 64.8%('18) → **70%('22%)**	≪ 여가서비스 일자리창출 ≫ 36천명('18) → **56천명('22)**

추 진 방 향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여가기반 구축
	모 두 의 참여가 가능한 여가서비스 구현
	다 양 한 경험이 가능한 여가생태계 구축

사람중심 **일상중심** **연계중심**

추 진 전 략		
	1. 여 가 참 여 기 반 구 축	1-1. '여가권'의 사회적 확산 1-2. 잃어버린 '삶의 시간' 회복 1-3. 일상의 '여가 공간' 확대
	2. 여가접근성 개 선	2-1. 수요자 맞춤형 여가프로그램 확대 2-2. 장애 없는 여가서비스 구현 2-3. 수요자 친화적 여가공급체계 구축
	3. 여가생태계 확 대	3-1. 여가서비스 전문인력 관리체계 구축 3-2. 미래 여가산업 생태계 구축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전략체계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추진과제

추 진 과 제
전략 1. 여가참여기반 구축
1-1. 여가권의 사회적 확산
1-1-1. 여가친화기업인증제 확대
1-1-2. 여가의 발견 프로젝트 추진
1-1-3. 여가인식 확대를 위한 여가교육 강화
1-1-4. 〈삶을 살다!〉 여유 캠페인 실시
1-1-5. 공감형 국민여가지수의 지속관리
1-2. 잃어버린 삶의 시간 회복
1-2-1. 노동시간 총량 관리
1-2-2. 근로자 휴가권 강화
1-2-3 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휴식보장
1-3. 일상의 여가공간 확대
1-3-1. 생활밀착형 여가공간 확대
1-3-2. 국공유지를 활용한 여가접근성 확대
1-3-3. 여가친화도시 구축 지원
1-3-4. 여가공간 관리체계 구축
전략 2. 여가접근성 개선
2-1. 수요자 맞춤형 여가프로그램 확대
2-1-1. 순수 장르의 대중화 지원
2-1-2. 예술체험 확대
2-1-3. 수요 창출형 여가프로그램 개발 지원
2-2. 장애 없는 여가서비스 구현
2-2-1. 무장애 여가서비스 기반 조성
2-2-2. 아동·청소년·여성 여가서비스 확대
2-2-3. 실버세대 여가서비스 확대
2-2-4. 직장인 ‘일과 여가의 균형’ 지원
2-2-5.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추 진 과 제
2-3. 수요자 친화적 공급체계 구축
2-3-1. 여가서비스 네트워킹 구축 지원
2-3-2. 복합여가서비스 모델개발 및 리모델링 지원
2-3-3. 스마트 여가정보체계 구축
2-3-4. 여가서비스 편의성 강화 지원
2-3-5. 여가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전략 3. 여가생태계 확대
3-1. 여가서비스 전문인력 관리체계 구축
3-1-1. 여가산업 분류체계 구축
3-1-2. 여가전문인력 통합관리
3-1-3. 재정지원 여가서비스 일자리 창출
3-1-4. 여가서비스러닝 시스템 구축
3-2. 미래 여가산업 생태계 구축
3-2-1. 여가산업 종 다양성 확대
3-2-2. 지속가능한 여가산업 육성
3-2-3. 체험형 여가산업 플랫폼 구축

5.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

비전	문화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박물관.미술관
3대 목표	공공성 강화 / 전문성 심화 / 지속가능성 확보
	◈ (박물관.미술관 이용률) '18년 16.5% → '23년 30% ◈ (1개관 당 인구수) '19년 4.5만 명 → '23년 3.9만 명
전략 및 핵심과제	**1. 공공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위상 강화** ① 박물관.미술관 정책기반 체계화 ② 박물관.미술관 운영관리 내실화 ③ 박물관.미술관 평가제도 정비
	2. 모두가 누리는 박물관.미술관 ④ 전국적인 박물관.미술관 문화향유 기반 구축 ⑤ 누구에게나 열린 박물관.미술관 조성 지원 ⑥ 박물관.미술관 고객관리 선진화
	3. 전문적 기능 및 역량 강화 ⑦ 사립과 대학 박물관.미술관 특성화 지원 ⑧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확충 및 역량 제고 ⑨ 소장품 등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⑩ 연구.출판.아카이브 기능 강화
	4.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마련 ⑪ 첨단기술 기반 미래형 박물관.미술관 구축 ⑫ 박물관.미술관 세제 개선 및 후원 활성화 ⑬ 박물관.미술관 안전 기능 강화
	5. 협력을 통한 시너지 제고 ⑭ 국내 박물관.미술관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⑮ 박물관.미술관 국제협력 확대 ⑯ 박물관.미술관 남북교류 활성화

사 업 명
1. 공공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위상 강화
1-1. 박물관·미술관 정책기반 체계화
1) (가칭)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추진
2) 지역문화거점으로서의 박물관·미술관을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
1-2. 박물관·미술관 운영관리 내실화
1) 박물관·미술관 등록유형 정비
2) 박물관·미술관 운영관리 실태조사 강화
1-3. 박물관·미술관 평가제도 정비
1) 박물관·미술관 건립타당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2)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 내실화
3) 박물관·미술관 평가 관련 전담기관 운영
2. 모두가 누리는 박물관·미술관
2-1. 전국적인 박물관·미술관 문화향유 기반 구축
1)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확충계획 수립
2) 문화향유 소외지역의 박물관·미술관 접근성 강화
2-2. 누구에게나 열린 박물관·미술관 조성 지원
1) 박물관·미술관의「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 촉진
2) 박물관·미술관 장애인이용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제시
3) 모두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 확대
2-3. 박물관·미술관 고객관리 선진화
1) 국립박물관·미술관 고객관리 시스템 고도화
2) 공·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대상 고객관리 지원
3. 전문적 기능 및 역량 강화
3-1. 사립과 대학 박물관·미술관 특성화 지원
1)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특성화 지원 확대
2) 대학박물관·미술관의 연구·인력교육형 프로그램 지원
3-2.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확충 및 역량 제고
1) 학예인력-예비학예인력 현황 기초조사 실시
2) 학예사 자격증 제도 개선을 통한 실효성 제고
3) 박물관·미술관 종사인력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

사 업 명
3-3. 소장품 등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1)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개선 및 이용자 중심서비스 강화
2) 공·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 관리시스템 구축 확대
3-4. 연구·출판·아카이브 기능 강화
1) 박물관·미술관 공동연구 강화
2) 박물관·미술관 출판·유통 지원체계 마련
3) 박물관·미술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공공이용 활성화
4.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마련
4-1. 첨단기술 기반 미래형 박물관·미술관 구축
1) 국립 기관의 선도적인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2) 미래형 박물관·미술관을 위한 기초 연구 활성화
4-2. 박물관·미술관 세제 개선 및 후원 활성화
1) 박물관·미술관 법인화 전환 지원
2) 기타 세제 관련 개선사항
3) 박물관·미술관 기부 여건 조성 지원
4) 민간의 사회공헌활동과의 연계·협력 강화
4-3. 박물관·미술관 안전 기능 강화
1) 안전한 박물관·미술관 관람환경 조성
2) 광역 공동 수장고 건립 및 보존처리서비스 지원
5. 협력을 통한 시너지 제고
5-1. 국내 박물관·미술관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1)「박물관·미술관 협력망」운영 활성화
2) 박물관·미술관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5-2. 박물관·미술관 국제협력 확대
1) 주요 계기 활용 박물관·미술관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2) 해외 박물관·미술관 한국실 지원사업 체계화
5-3. 박물관·미술관 남북교류 활성화
1) 남북 박물관·미술관 공동전시 추진
2) 남북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상호대여 등
3) 북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보존처리 기술 지원

7. 제1차 문학진흥 기본계획(2018~2022)

비 전	사람과 세상을 잇는 문학 문학을 통한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의 실현
목 표	안정적 창작 기반 마련 문학을 쉽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한국문학의 세계적 확산

추 진 전 략	(전략 1) 문학 창작 지원 확대	(과제 1-1) 창작 단계별 체계적 지원 강화 (과제 1-2) 공공기관 상주작가 프로그램 지원 (과제 1-3) 신진작가 발굴 및 기성작가 문학활동 활성화 지원 (과제 1-4) 문학인 창작 안전망 구축 (과제 1-5) 지역문학 활성화 지원
	(전략 2) 문학 향유 기반 구축	(과제 2-1) 문학향유 및 접근 기회 확대 (과제 2-2) 생애 주기별 문학활동 기회 확대 (과제 2-3) 문학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
	(전략 3) 한국문학의 해외진출 및 문학교류 강화	(과제 3-1) 한국문학의 해외진출 확대 (과제 3-2) 국제 문학교류 활성화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과제 3-3) 이산문학 및 남북 문학교류 활성화 지원
	(전략 4) 문학진흥 인프라 구축	(과제 4-1) 문학진흥 정책의 실효성 제고 (과제 4-2)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및 지역문학관 육성 (과제 4-3) 문학진흥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 및 기능 확대 (과제 4-4) 문학진흥 전문인력 양성

제1차 문학진흥기본계획(2018~2022) 전략체계

제1차 문학진흥기본계획(2018~2022) 추진과제

사 업 명
〈추진전략 1〉 문학 창작 지원 확대
1-1. 창작 단계별 체계적 지원 강화
1) 창작 취재 및 워크숍 개최 지원
2) 문학 창작공간 상주 지원
3) 문학 작품 발표 지원
4) 우수문학도서 선정, 지원사업 복원 추진
1-2. 공공기관 상주작가 프로그램 등 지원
1) 도서관 상주작가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지역문학관 상주작가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초·중·고 내 명예문예교사 파견 지원
4) 작은서점 살리기 작가 파견 지원
1-3. 신진작가 발굴 및 기성작가 문학활동 활성화 지원
1) 신진작가 출판 기회 확대를 위한 전문 출판 편집인 컨설팅 제공
2) 재생시설·공간 프로젝트를 통한 기성작가 창작 및 작품 발표 활성화 지원
3) 문학전문 독립출판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작품 발표 기회 확대
1-4. 문학인의 창작 안전망 구축
1) 문학인 대상 문학 분야 출판 표준 계약서 보급 확대 및 저작권 교육 강화
2) 불공정 관행 방지 및 창작준비금제도 개선 등 사회 안전망 제도내의 문학인 편입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1-5. 지역문학 활성화 지원
1) 지역문학의 가치 확산을 위한 행사 개최 지원
2) 지역 문학인·문학단체 활동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시행
3) 거대 생활권역별로 지역문학이 입체적으로 활기를 띨 수 있도록 문학 활성화 단지 조성
〈추진전략 2〉 문학향유 기반 구축
2-1. 문학향유 및 접근 기회 확대
1) 온라인 문학 플랫폼 사이버문학광장 운영 활성화
2) 문학동호회 정보 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활동 활성화 여건 마련
3) 천천히 읽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 업 명
4) 문학향유 디지털 접근성 확대 시스템 구축
5) 공공 공간 활용 문학전문 반짝매장(팝업스토어) 지원
6) 문학경관 조성 사업 추진 및 전국 문학답사지도 개발·보급
7) 문학 전문서점 육성 지원
2-2. 생애주기별 문학활동 기회 확대
1) (가칭) '씨앗문학' 활성화 사업 지원
2) 청소년 대상 방과후 문학창작교실 및 독서교실 활성화
3) 시니어, 은퇴세대 등 노장년 대상 문학향유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4) 문학 생활화를 위한 문학놀이프로그램 개발, 보급
5) 병영 및 교도소 등 문학 향유 소외지역 문학 체험 기회 확대
2-3. 문학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
1)「문학의 날」및「문학주간」법제화 추진
2)「문학주간」행사의 연례적 개최를 통한 지속적인 붐 조성
3) 문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문학 사회공헌 프로그램 활성화
4) 문학의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확대
〈추진전략 3〉 한국문학의 해외 진출 및 문학교류 강화
3-1. 한국문학의 해외 진출 확대
1) 한국문학 세계화를 위한 지원 체계 정비 및 핵심기반 마련
2)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 및 출판 지원의 확대 및 다변화
3) 한국 고전작품 대상 해외 현지 교육·연구 활성화 기반 조성
4) 한국문학 번역·출판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3-2. 국제문학교류 활성화 및 관련 국제 네트워크 구축
1) 국내 개최 국제 문학 포럼·축제의 전문화·내실화를 위한 집중 지원 및 문학교류 국제 콘퍼런스 개최
2) 해외 주요 국제문학교류 행사에의 작가 참가 지원 및 해외 현지 국제 문학 교류 협력 네트워크 강화
3) 한국문학 작가·작품의 해외교류 지원 확대
4) 외국문학 작품 국내 번역 활성화를 통한 쌍방향 교류 토대 마련
3-3. 이산문학 및 남북문학교류 활성화 지원

사 업 명
1) 이산문학 지원 범위 확대 및 지원 기반 마련
2) 이산문학인의 창작 및 이산 민족(국민)의 문학 향유 활성화
3) 이산문학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가치 재발견을 위한 문학 교류협력 사업 강화
4) 남북문학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 및 북한 문학의 국내 향유 기회 확대
〈추진전략 4〉 문학진흥 인프라 구축
4-1. 문학진흥정책의 실효성 제고
1) 문학계 인사 중심의 문학진흥정책위원회 구성·운영
2) 문학창작 환경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3) (가칭)「문학진흥 미래정책 포럼」운영
4-2.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및 지역문학관 육성
1)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부지 선정 조속 추진
2) (가칭)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시설 건립·운영계획 수립 등 체계화
3) 설립추진위원회 내에 (가칭) 국립한국문학관 자료수집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 문학유산의 수집 및 보존대책 마련
4) 거점형 지역문학관 제도화를 통해, 중앙-지역, 지역-지역간 문학관 연계 및 협력 사업 강화로 지역 문학 진흥의 중심축으로 육성
5) 문학관 전문인력 배치 지원 및 문학관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4-3. 문학 진흥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 및 기능 확대
1) 문학 단체 역량 강화와 역할 확대`
2) 민간단체(영역)의 문학에 대한 지원 활성화 및 민간협력 거버넌스 체제 구축
4-4. 문학진흥 전문인력 양성
1) 문학관 전문인력 역량 제고
2) 지역문학관 해설사 양성
3) 문학출판 전문인력 양성
4) 문학 분야 전문 연구인력 확보 추진

8. 제1차 공공디자인진흥 종합계획(2018~2022)

비 전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
목 표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 - 생활안전 마을 35곳 / 생활편의 도시 67곳 / 품격도시 30곳 구축 -

추 진 전 략	(전략 1)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과제 1-1) 범죄예방 협력체계 디자인 (과제 1-2) 교통안전 디자인 (과제 1-3) 재난대비 안전 디자인
	(전략 2)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과제 2-1) 누구나 걷기편한 거리 조성 (과제 2-2)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문화생활공간 유니버설디자인 (과제 2-3) 누구나 이용하기 편한 행정서비스 디자인
	(전략 3)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과제 3-1) 길 찾기 쉬운 도시 만들기 (과제 3-2) 교통거점지 안내체계 개선 (과제 3-3) 이용하기 쉬운 체육관광시설 만들기 (과제 3-4) 이용하기 좋은 공공공간 및 공공용품 디자인
	(전략 4)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과제 4-1) 우리 동네 맞춤형 디자인 (과제 4-2) 도시 품격저해 시설 개선 디자인 (과제 4-3) 도시 틈새공간 활성화 디자인 (과제 4-4) 밤에도 품격있는 문화관광 환경조명 디자인 (과제 4-5) 공공시각이미지 품격제고 및 품질관리
	(전략 5)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	(과제 5-1) 공공디자인 교육 및 참여확대 (과제 5-2)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역량 강화 (과제 5-3) 공공디자인 R&D 기반 조성 (과제 5-4) 공공디자인 관리 및 검수체계 구축

제1차 공공디자인진흥 종합계획(2018~2022) 전략체계

제1차 공공디자인진흥 종합계획(2018~2022) 추진과제

사 업 명
1.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1-1. 범죄예방 협력체계 디자인
1) 마을단위 범죄예방 통합협력체계 디자인 및 시범적용
2) 학교 폭력예방 통합협력체계 디자인 및 시범적용
3) 여성 폭력예방 및 안심디자인
1-2. 교통안전 디자인
1) 어린이 교통안전 통합협력체계 디자인 및 시범적용
2) 공영주차장 안전디자인 및 시범적용
1-3. 재난대비 안전디자인
1) 재난 대비 공간 및 공공용품 안전 디자인 보급
2.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2-1. 누구나 걷기 편한 거리·공간 조성
1) 누구나 걷기 편한 가로 조성
2) 모든 이를 위한 열린 관광지 조성
2-2.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문화·생활공간 유니버설디자인
1) 장애인을 위한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2) 고령자를 위한 인지건강 디자인 및 시범적용
2-3. 누구나 이용하기 편한 행정서비스 디자인
1) 고령자·시각장애인 이용이 편한 행정 웹사이트 개선
2) 작성자 중심의 간소화된 행정서식 개발, 보급
3.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3-1. 길 찾기 쉬운 도시 만들기
1) 통합형 보행자 길찾기 시스템 디자인 및 시범조성
2) 도로표지판 디자인 개선·보급
3) 도로 색깔유도선 디자인 보급
4) 광역철도/지하철 노선도 디자인
5) 전문상점가로 활성화를 위한 안내체계 디자인

사 업 명
3-2. 교통거점지 안내체계 개선
1) 지하공간 안내체계 개선 디자인
2) 버스 환승센터 플랫폼 통합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
3) 터미널 안내체계 개발
3-3. 이용하기 쉬운 체육관광 시설 만들기
1) 대형 체육시설 안내체계 디자인 개발·보급
2) 탐방로 안내체계 디자인 개발
3)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3-4.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공간 및 공공용품 디자인
1)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보건소 실내 공간디자인
2) 문화예술공간의 청소용품 등 디자인 및 조급
4. 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4-1. 우리 동네 맞춤형 디자인
1) 동마을 단위 시각이미지 디자인 및 시범조성
2) 주민들이 행복한 주거공간 디자인
3) 미래문화유산이 될 멋진 골목 보존 디자인 가이드라인
4-2. 도시 품격저해 시설 개선 디자인
1) 도시 주요 공간 공공시설물 통합 개선
2) 지자체 접경 지역 공공 시설물 공동개발 및 설치
3) 지역축제 공간과 시설물 개선 공공디자인
4-3. 도시 틈새공간 활성화 디자인
1) 쌈지공원, 노후 어린이공원 활성화 디자인 개선
2) 공개공지 연계 이미지 활성화 디자인
4-4. 밤에도 품격 있는 문화·관광 환경조명 디자인
1) 문화·관광자원 품격향상 개선 환경조명 디자인
4-5. 공공 시각이미지 품격제고 및 품질관리
1) 차세대 여권디자인 개선
2) 공공시설물 및 안내사인 표준색채 개발 및 보급

사 업 명
3) 공공디자인 시각기호(픽토그램) 개발 및 적용
5.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
5-1. 공공디자인 교육 및 참여 확대
1) 어린이 청소년 대상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2) 생활불편 국민 아이디어 공모 및 거버넌스 모델 개발
3) 주민협의체 운영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개발
5-2.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역량 강화
1)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 및 의무이수 제도 실행
2) 주민협의체 운영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개발
3) 공공디자인 행정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5-3. 공공디자인 R&D 기반 조성
1)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및 연구개발 지원
5-4.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및 검수체계 구축
1) 공공디자인 통합조례 개발
2) 공공디자인 정보공유체계 구축
3) 공공디자인 행정매뉴얼 개발 및 보급
4) 우수 공공시설물 광역인증제도 지원
5) 공공디자인 관련 제도 개선

9. 제1차 국제문화교류진흥 종합계획(2018~2022)

비 전	세계와 공감하고 협력하여 모두가 행복한 국제문화교류

정 책 목 표	체계적인 문화교류 지원	국제문화교류의 자율성 강화	지속가능한 문화교류 생태계 조성

<추진전략 1> 국제문화교류 진흥 체계화	과제 1-1. 국제문화교류 정책 추진체계 구축 과제 1-2.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운영 과제 1-3. 재외문화원 인프라 확충 및 다기능화 과제 1-4.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세종학당 활성화
<추진전략 2> 국제문화교류 대상의 다양화	과제 2-1. 북방지역 문화교류 활성화 과제 2-2. 신남방협력 증진을 위한 문화교류 활성화 과제 2-3. 한중일 문화교류 심화 과제 2-4. 유네스코와의 협력 강화 과제 2-5. 한국문화를 매개로 한 국가이미지 제고
<추진전략 3> 지역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과제 3-1.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사업 지원 과제 3-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활동 지원 과제 3-3.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사업 활성화 지원 과제 3-4.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 강화
<추진전략 4>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	과제 4-1.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 과제 4-2.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과제 4-3.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실시 과제 4-4. 미래기술 활용 문화교류 사업 지원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2018~2022) 전략체계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2018~2022) 추진과제

사 업 명
〈추진전략 1〉 국제문화교류 진흥 체계화
1-1. 국제문화교류 정책 추진체계 구축
▢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 구성·운영
▢ 시·도 지자체의 국제문화교류 기반 구축
▢ 문체부(국제문화교류)-외교부(공공외교) 협력채널 구축
1-2.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운영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전담기관 지정·운영
1-3. 재외문화원 인프라 확충 및 다기능화
▢ 재외 문화원 국유화를 통한 시설 개선
▢ 권역별 코리아센터를 통한 다기능 서비스 제공
1-4.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세종학당 활성화
▢ 세종학당별 수요자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정 지원
▢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 품질 제고
▢ 지역별·문화권별 특화된 고품질 문화프로그램 운영
〈추진전략 2〉 국제문화교류 대상의 다양화
2-1. 북방지역 문화교류 활성화
▢「2020년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개최
▢ 북방지역 문화 ODA 협력 강화
2-2. 신남방협력 증진을 위한 문화교류 활성화
▢ 아세안 국가 대상 필코리아(Feel Korea) 행사 개최
▢ 아세안 3개국「상호 문화교류의 해」추진
▢ 아세안 지역 문화 ODA 협력 강화
2-3. 한중일 문화교류 심화
▢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통한 문화 협력 강화
▢ 동아시아문화도시 협력 강화
▢ '한중 축제한마당' 행사 개최 추진
2-4. 유네스코와의 협력 강화

사 업 명
▢ 유네스코 신탁기금 협력 강화
▢ 유네스코 관계기관 협력 강화
2-5. 한국문화를 매개로 한 국가이미지 제고
▢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효율적 개최
▢ 한국문화 해외홍보 사업 추진
〈추진전략 3〉 지역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3-1.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사업 지원
▢ 지역 우수 문화교류 사업 발굴·지원
3-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활동 지원
▢ 지자체의 국제문화교류 컨설팅 지원
▢ 국제문화교류 전문가 파견 지원
3-3.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사업 활성화 지원
▢ 민간 공연·전시 프로그램 지원 사업 확대
▢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지원 확대
3-4.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 강화
▢ 지자체 및 유관기관 정책협의체 운영
〈추진전략 4〉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
4-1.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 국제문화교류 실무역량 강화 지원
▢ 인력양성 프로그램 체계화 및 사업규모 확대
▢ 국제문화교류 인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4-2.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4-3.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실시
▢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실시
4-4. 미래기술 활용 문화교류 사업 지원
▢ 새로운 기술기반 문화교류사업 발굴·지원

10.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비 전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목 표	문화예술교육의 재도약 :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성장과 실적 제고

추 진 전 략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①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 ② 지역 문화예술교육 공간 및 자원과의 연계 강화 ③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활성화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④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⑤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속 확대 ⑥ 문화예술교육 지원 다각화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⑦ 기획 및 연구역량 강화 ⑧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⑨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활성화 ⑩ 가치확산 및 홍보강화

추 진 과 제	
1.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1-1.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
	1. 자율적 협업 관점에서의 지역 중심 추진체계 개편
	2.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육성기반 체계화
	3. 광역센터 기능 및 역할 강화
	4. 생활권 중심의 기초지자체 단위 추진체계 구축
	1-2. 지역 문화예술교육 공간 및 자원과의 연계 강화
	1. 창의적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전용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2. 지역 내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공간 지원
	3.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 강화
	1-3.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활성화
	1. 중앙과 지역 간 협력 강화
	2.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3. 문화정책 내 연계협력 강화
	4. 지역 중심 문화시설 및 타 영역과의 협력 강화
2.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2-1.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1. [유아]유아 대상 창의놀이교육 확대
	2. [아동·청소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개선으로 질적 내실화
	3.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다각화
	4. [청년·중년] 직장인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5. [장년·노년]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6. [전 연령층] 자발적·주체적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
	2-2.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속 확대
	1.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속 지원
	2.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강화
	3. 치유와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2-3. 문화예술교육 지원 다각화
	1. 다양한 영역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추 진 과 제	
	2. 통합·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3.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4.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이해 증진
	5. 문화예술교육 사회적 경제 지원
3.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3-1. 기획 및 연구역량 강화
	1. 문화예술교육 연구 개발 활성화
	2. 문화예술교육 통계 및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3.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정책 대응 및 전략 구축
	4. 문화예술교육 정책협의체 활성화
	3-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체계화
	2. 문화예술교육 연수의 체계화 및 전문화
	3.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협력 활성화
	4.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개선
	5. 협력 관계자 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 체계화
	3-3.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활성화
	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국제적 역량 강화
	2.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 확대
	3. 국제사회에서 협력 및 리더십 강화
	3-4. 가치 확산 및 홍보 강화
	1. 대국민 문화예술교육 홍보 활성화
	2. 문화예술교육 인식 확산
	3.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을 통한 가치 확산

11. 새예술정책

〈표〉 새예술정책(2018~2022) 전략체계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	
4대 목표	8대 전략과제	25개 실행과제
자율과 분권의 예술행정 혁신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및 행정혁신 •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보장 • 예술계 성평등 실현으로 예술활동의 다양성 증진
	예술행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겠습니다	• 기관별 역할 재편을 통한 예술지원체계의 재구성 • 예술지원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 국민이 신뢰하고 참여하는 예술지원체계 형성
예술 가치 존중의 창작 환경 조성	예술 가치 창출과 발현에 중점을 둔 창작 지원을 하겠습니다	• 예술 현장의 자생성을 강화하는 창작 지원 • 경력 단계별, 창작 과정별 지원 프로그램 강화 • 공공 예술 자원과 민간 예술계의 상생 협력 강화
	예술인의 삶을 지키는 복지를 펴겠습니다	• 예술인 사회보장 확대 • 예술인 생활 지원 확대 • 예술인 직업 환경 개선 및 직업 활동 다양화
함께 누리는 예술 참여 확대	모두에 열려 있는 예술 참여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예술 향유 역량 강화 • 수요 창출형 관객 지원 제도 도입 • 일상에서 누리는 예술 향유 기반 조성
	소수자가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소수자의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 • 소수자 예술공간 조성 및 교류 • 소수자 예술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예술의 지속 가능성 확대	공정하고 활력 있는 예술시장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상생협력의 예술시장 환경 조성 • 활력 있는 예술시장을 위한 혁신 역량 지원 • 예술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예술의 미래 가치를 키워가겠습니다	• 청년세대를 위한 예술지원 강화 • 진화하는 기술의 예술분야 활용 지원 확대 • 실험과 도전의 새로운 예술 공간 조성 • 국제 예술 교류와 협력 확대

〈표〉 새예술정책(2018~2022) 실행과제 및 대표사업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

4대 목표	8대 전략과제 25개 실행과제 83개 대표사업		
1. 자율과 분권의 예술행정 혁신	1-1.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1-1-1.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및 행정혁신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조사 결과의 보존 및 공개 • 국가에 의한 예술 표현의 자유 침해 금지와 피해자 보호 법제화
		1-1-2.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보장	• 예술 창작지원과 향유지원의 불균형 해소 •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한 법제 마련 • 예술인의 노동·직업에 관한 권리 보장 법제화
		1-2-3. 예술계 성평등 실현으로 예술활동의 다양성 증진	• 문화예술계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마련 • 예술계 성평등을 위한 예술행정의 혁신 • 여성 예술인 지위 보장을 통한 예술활동 다양성 증진
	1-2. 예술행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2-1. 기관별 역할 재편을 통한 예술지원체계의 재구성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술지원체계 재편 •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능과 역할 조정
		1-2-2. 예술지원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확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1-2-3. 국민이 신뢰하고 참여하는 예술지원체계 형성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혁신 • 예술인 참여형 협치 및 분권체계 형성
2. 예술 가치 존중의 창작 환경 조성	2-1. 예술 가치 창출과 발현에 중점을 둔 창작 지원을 하겠습니다		
		2-1-1. 예술 현장의 자생성을 강화하는 창작 지원	• 예술단체 장기/집중 지원제도 도입 • 예술이 살아있는 공간으로서 지역 문예회관 운영 혁신 • 다양한 예술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확대
		2-1-2. 경력 단계별, 창작 과정별 지원 프로그램 강화	• 예비 예술가 지원 방식 개선 및 확대 • 중견 이상 집중 지원 지원체계 마련 • '창작산실'의 개선 및 확대
		2-1-3. 공공 예술 자원과 민간 예술계의 상생 협력 강화	• 공공 예술기관과 민간 예술계의 상생 협력 모델 개발 • 국공립 예술 기관/단체 자율과 책임 경영체계 기반 구축 • 공연예술 축제 및 경연대회 혁신

	2-2. 예술인의 삶을 지키는 복지를 펴겠습니다		
		2-2-1. 예술인 사회보장 확대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 및 지원 • 예술인 사회보장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 예술인 산재보험 개선 및 지원 강화 • 지속가능한 창작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강화
		2-2-2. 예술인 생활 지원 확대	• 예술인 복지금고 도입을 통한 생활대출 지원 도입 •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지원 • 예술인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예술인 패스' 제도 개선 •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사업 확대
		2-2-3. 예술인 직업 환경 개선 및 직업 활동 다양화	• 예술인 직업군 분류와 실태조사 • 예술 기반 일자리 지원사업의 개선 및 재구조화 • 공정한 예술 사례비 및 보수 체계 마련 • 예술인 공공 참여를 위한 사회적 예술 교육 프로그램 강화
3. 함께 누리는 예술 참여 확대	3-1. 모두에 열려 있는 예술 참여환경을 만들겠습니다		
		3-1-1.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예술 향유 역량 강화	•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 수요자 맞춤형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강화 •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및 활성화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3-1-2. 수요 창출형 관객 지원 제도 도입	• 세제 지원을 통한 예술소비 활성화 • 문화시설 관객 체험 프로그램 및 예술주간 행사
		3-1-3. 일상에서 누리는 예술 향유 기반 조성	• 지역/마을단위 예술단체/예술인 상주 지원 • 생활 속의 예술 향유 환경 조성 • 찾아가는 예술감상 프로그램 개선
	3-2. 소수자가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3-2-1. 소수자의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	•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기반 조성 • 장애인 문화예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보조장비 개발
		3-2-2. 소수자 예술공간 조성 및 교류	• 장애인 전용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 소수자 예술 창작의 수월성 제고 및 활성화 • 이산(디아스포라) 문학 활성화 지원

			• 소수자 예술 매개자 및 협력 예술가 육성 • 장애인 남북 예술교류 및 국제 네트워킹 확대
		3-2-3. 소수자 예술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 장애인 참여 사회적 예술 활성화 • 지역에서의 소수자 예술 플랫폼 구축 • 소수자 예술의 사회적 인식 및 정책 기반 강화
4. 예술의 지속 가능성 확대	4-1. 공정하고 활력 있는 예술시장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4-1-1. 상생협력의 예술시장 환경 조성	• 예술시장의 공정 기반 구축 • 예술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 예술의 종 다양성을 위한 지원 확대 • 예술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식정보생태계 조성
		4-1-2. 활력 있는 예술시장을 위한 혁신 역량 지원	• 예술기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창업 지원 • 예술 매개자의 혁신역량 지원 • 새로운 예술시장 창출을 위한 예술과 기업의 협력 강화
		4-1-3. 예술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 전략적·입체적 해외 진출 지원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공공지원 체계화 • 해외유통 전문 에이전시 교육 및 지원 확대 • 예술기관/단체의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지원
	4-2. 예술의 미래 가치를 키워가겠습니다		
		4-2-1. 청년세대를 위한 예술 지원 강화	• 청년 예술인 지원 기반 조성 • 청년 예술인 창작 지원 확대 • 청년 예술인 일자리 지원 확대
		4-2-2. 진화하는 기술의 예술 분야 활용 지원 확대	• 기술혁명시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예술적 상상 촉진 • 예술인의 기술융합 역량 강화 • 예술-기술 융합형 문화예술공간 조성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예술시장 연계 기반 구축
		4-2-3. 실험과 도전의 새로운 예술공간 조성	•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 •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추진 • 전통문화예술TV 설립 • 전통공연예술 창작공간 조성
		4-2-4. 국제 예술 교류와 협력 확대	• 예술인의 국제 이동성 지원 • 차이와 공존으로서의 예술교류 생태계 조성 • 한반도 평화번영시대 남북예술교류·협력 활성화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광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1장, 제2장 제2절~제3절 일부, 제3장 제1절 및 제3절 일부, 제3장 제4절, 제4장, 제5장, 제6장, 연구총괄

공동연구자

정보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 제3장 제2절～제3절 일부, 제3장 제1절 및 제3절 일부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제3장 제2절 제1항, 제2항, 제4항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 제3장 제2절 제3항

자문위원

권병웅 (중앙대학교 교수)
김보성 (송파문화재단 대표이사)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신의 (경희대학교 교수)
박은실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손동혁 (인천문화재단 팀장)
양효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문위원)
이동민 (이오공감 대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원재 (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교수)
정종은 (상지대학교 교수)
최도인 (메타기획 본부장)
추미경 (다음기획 대표)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방향 연구

발 행 인 김 대 관
발 행 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 쇄 일 2019년 12월 11일
발 행 일 2019년 12월 11일
인 쇄 인 (주)디자인여백플러스

ISBN : 978-89-6035-781-5 93300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www.kcti.re.kr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93300
9 788960 357815
ISBN 978-89-6035-781-5